

2003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 개혁 위원회



2003년도 규제개혁 연찬회(정부중앙청사, 2003. 5)



연찬회시 멕시코 규제개혁 담당국장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2003. 5)



고건 국무총리가 박종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2004. 3)



고건 국무총리가 김완순 경제1분과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2004. 3)



박종규 위원장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04. 5)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2004. 5)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1997년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규제개혁작업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정부 5년간 11,000여건의 기존규제를 발굴하여 첫해에 50%를 폐지하였고,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통해 매년 약 1,000여건의 규제심사 대상 중 약 30~40%를 철회 또는 개선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벤처기업 창업, 전문자격사제도 등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핵심덩어리 규제도 약 100개의 과제를 일괄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단편적이고 양적 접근방식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의 양적 접근방식에서 질적 접근방식으로, 진수나 퍼센티지 접근이 아닌 규제의 내용을 합리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우선 공장설립, 외국인투자, 토지이용, 수출입, 식품안전 등 10개 분야를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과제별로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로베이스 접근을 통한 규제개선, 규제절차개선(BPR), 선진국 규제개혁사례 벤치마킹 등 새로운 기법과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규제영향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 4월에는 수요자 중심·현장 위주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가 센터장을 맡는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여 기업활동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접수된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개최, 즉시 해결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사업, 규제순응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규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규제지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0년 2만불시대 진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특히 기업인 여러분께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규제개혁 백서 발간에 부처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 4월 출범한 이후 약 11,000여 건의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절반을 줄였으며, 이후 환경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새로운 규제가 발생하여 현재 약 7,800여 건에 달합니다.

2,700여 건의 새로운 규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비를 통해 최대한으로 억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규제완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핵심덩어리 규제들이 완전히 개혁되지 못하고 있고 일선행정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양(量)보다는 질(質)을 중시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규제개혁을 단순히 규제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통해 피규제자들이 규제를 준수하기 편하게 하여 규제의 준수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규제를 통과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명확하고 간편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 공장설립 및 창업, 기업 관련 행정조사 등의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덩어리 규제들을 10대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개선하였고 규제개혁 이행실태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도에는 총 947건의 신설·강화규제를 심사하고 이 중 285건(30.1%)을 철회 또는 개선 권고하여 불필요하고 모호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이정표로 삼기 위해 이번에 6번째로 규제개혁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백서는 제1장에서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기존규제 정비에 대해, 제3장에서는 신설·강화규제 심사에 대해 법령별·규제사항별로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은 규제개혁 교육훈련과 국제협력에 대해, 제5장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소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백서가 공무원들에게는 규제개혁 업무지침서로서, 국민 여러분에게는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규제개혁 작업에 적극 동참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이 분야에 관심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종규

제1장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제1절 규제개혁 추진배경과 필요성 · 17

제2절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원칙 · 21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23

제4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 34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절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추진 · 43

1. 개요 · 43

2. 기업활동분야 · 44

(1) 물류·유통분야 규제개선방안 · 44

(2)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규제개선방안 · 50

(3) 준조세 정비방안 · 67

(4) 공장설립·임지관련 규제개선방안 · 71

(5) 수출입 통관 규제개선방안 · 76

(6)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 관련 규제개선 · 82

3. 국민생활분야 · 88

(1) 건축규제 합리화방안 · 88

(2)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 94

(3)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방안 · 98

제2절 기존규제 일제정비 · 103

제3절 기업·지역 건의과제 처리 · 126

제4절 규제개혁 순용도 제고 · 138

1. 개요 · 138

2. 부처별 조사결과 · 139

제5절 규제신고센터 운영 · 233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 241

제2절 공정거래분야 · 243

제3절 재경금융분야 · 250

제4절 산업자원분야 · 284

제5절 건설교통분야 · 301

제6절 보건복지분야 · 331

- 제7절 일반행정분야 · 358
- 제8절 교육분야 · 365
- 제9절 문화관광분야 · 370
- 제10절 노동분야 · 388
- 제11절 외교 · 국방 및 보훈분야 · 410
- 제12절 환경분야 · 419
- 제13절 해양수산분야 · 458
- 제14절 농림분야 · 488
- 제15절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 · 512

제4장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 제1절 규제연구센터 설립 · 운영 · 533
- 제2절 규제개혁 교육훈련 · 536
- 제3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 542
- 제4절 선진국 규제개혁 사례 · 572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실적 평가 · 589

제2절 규제개혁 추진평가 및 향후과제(외부기고) · 611

제3절 200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 627

제6장 부 록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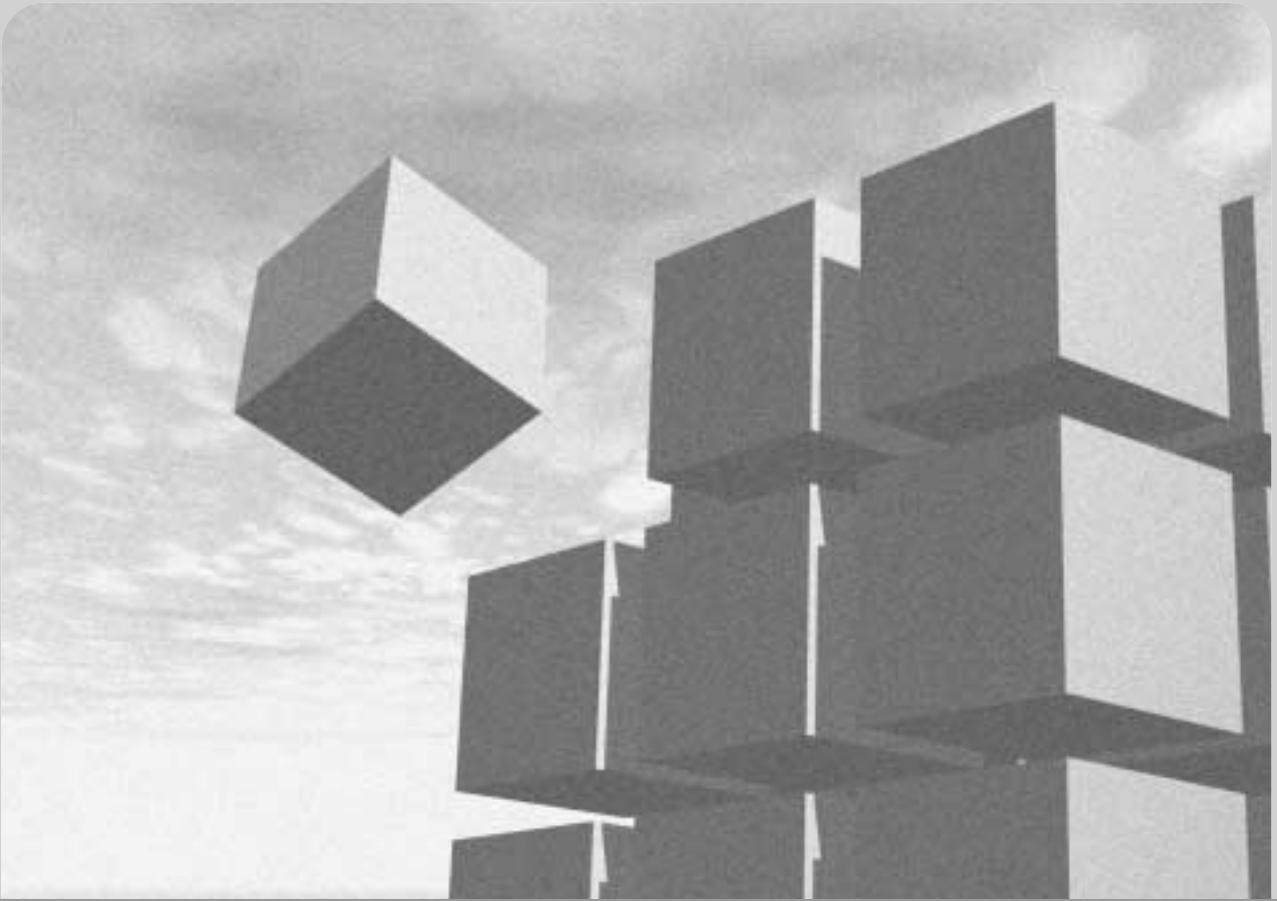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 662

2003년도

규제개혁 백서

2004. 5

규제 개혁위원회



제1장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제1절 _ 규제개혁 추진배경과 필요성

제2절 _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원칙

제3절 _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제4절 _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1절 _ 규제개혁 추진배경과 필요성

1.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형의 경제성장 전략을 선택하여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시장은 경쟁의 원리조차 습득하지 못한 불완전한 형태를 띠었으므로, 단기간에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간의 성장잠재력이 커감에 따라, 민간의 정부에 대한 각종 개혁요구가 시작되었다. 그 중 정부의 합법적 권한인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권한의 재검토 요구, 즉 규제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경제주체들의 경쟁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최선의 자원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개혁은 시장경제주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제시하고 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시장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고, 정부에 의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작업으로는,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997년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서도 약 100여 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개혁작업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97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1998년 4월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기존규제의 정비, 신설·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특징 및 문제점

우리나라 행정규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 내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규제의 양보다질이 문제

현재 등록되어 있는 7,800여 건의 규제 수가 문제 아니라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는 규제가 많으며 규제의 내용이 서로 얽혀 있어 집행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규제의 질이 더 큰 문제이다.

(2) 규제가 모호하여 예측이 불가능하며 비리발생 소지가 큼

우리나라의 규제들은 그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을 주고 있어 예측이 불가능하다. 즉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로비, 부패와 비리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분명하고 모호한 규제들을 선진국처럼 투명화, 구체화함으로써 되는 것은 확실히 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아 규제의 집행률과 준수율이 낮음

규제가 당위론과 명분론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른바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규제가 많다. 즉 현실이 그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보다 국민정서나 정치논리, 이상론에 의해 규제가 양산되어 준수율이 낮다. 이러한 지켜지지 않는 규제들은 없는 것보다 오히려 나쁘다. 왜냐하면 비리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만들어 사회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4) 사전규제가 과다

우리나라 규제들은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여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사전규제방식(Positive Regulation)이 많다. 이렇게 소수의 문제자들을 막기 위해 선의의 양심적인 다수 사람들에게 큰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인허가 제도들이 큰 문제이다.

(5) 중복규제가 많음

동일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기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복규제가 많고 또한 이들 중복규제의 집행이 분산된 각 행정기관의 주관적 판단과 기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과잉 집행되거나 범정부적인 일관성 결여를 초래하여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규제개혁의 필요성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의 과감한 개혁은 필수이다.

(2)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이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을 신설·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4) 부정부패 추방

모호한 규제, 과도한 재량을 인정해 주는 불확실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5) 규제제도의 국제화

선진국들의 새로운 규제기법들과 규제개혁기법들을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 (T.3703-3926, twinjin@opc.go.kr)

제2절 _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원칙

1. 규제개혁의 목표

정부의 규제개혁은 우선 현존하는 기존규제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반드시 경쟁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기업이나 국민에게 주는 규제를 철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만 보건, 환경, 안전 등 국민 전체의 공익 실현을 위해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하여야 한다.

또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또다른 중요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결국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 규제개혁의 추진원칙

(1) 사전적 규제는 기준을 설정한 후 사후적 규제로 전환

사전적이고 원칙적 규제방식(Positive System)에서 사후적이고 예외적 규제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한다. 즉 사전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반자에 대한 적발, 처벌 등을 강화한다.

(2) 주관적·추상적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

상위법령의 위임을 초과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준수율이 낮거나 규제 효과에 비해 비용이 더 큰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

준수율이 낮은 비현실적인 규제는 기준을 현실화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체하고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여 주어진 규제목표에 대해 최선의 규제수단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정비한다. 또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규제일몰제를 적용한다.

(4) 다수의 기관에 중복 제출토록 하는 규제는 주된 규제로 통합·정비

중복규제에 대한 심사시 관계부처의 소관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하고 원 스톱 서비스(One-Stop-Service)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5)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폐지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 해당 부처가 외국에서도 동일(유사)한 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과다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3703-3926, twinjin@opc.go.kr)

제3절 _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1. 개요

(1)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추진기구 구축

1998년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별로 자체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2) 추진기구

①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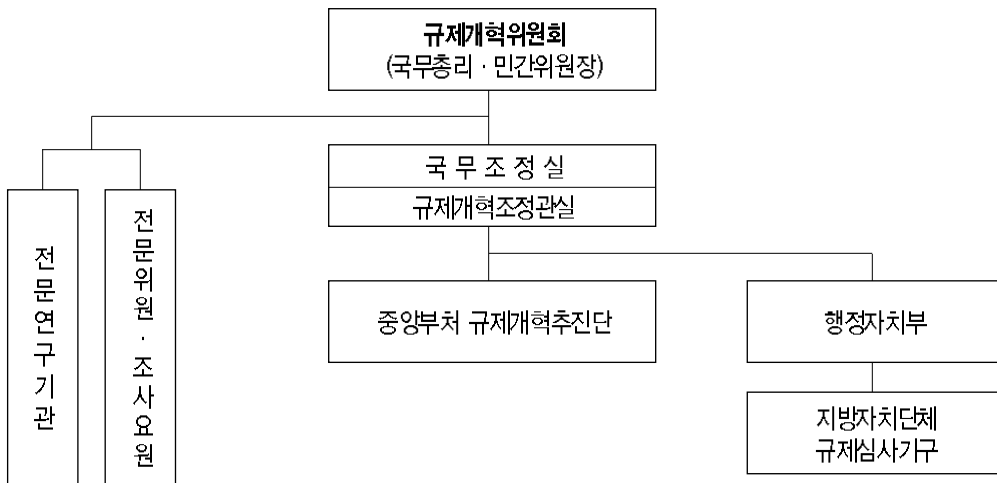
② 중앙행정기관별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관리실장, 실·국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단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중앙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 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 체계도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②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③ 구성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2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2004년 3월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
위원장	고 건 박 종 규	국무총리 (주) KSS해운 고문
정부위원 (6)	이 헌 재 허 성 관 이 희 범 한 덕 수 강 철 규 성 광 원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민간위원 (12)	강 응 선 김 완 순 김 재 옥 김 종 석 남 공 근 남 영 숙 서 윤 석 이 영 남 제프리존스 정 문 수 조 건 호 최 종 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 외국인투자유무부즈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교원대 환경교육과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경영대학장 이지디지텔(주) 대표이사 사장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前)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 회의운영

①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매주 개최한다.

②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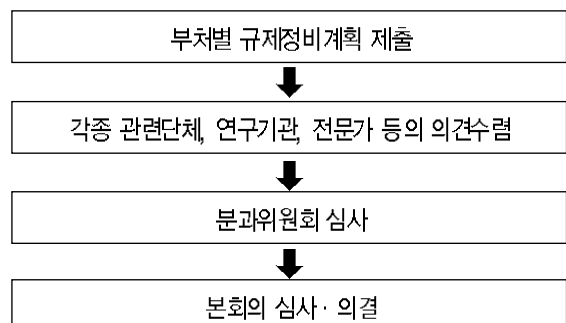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심사절차

①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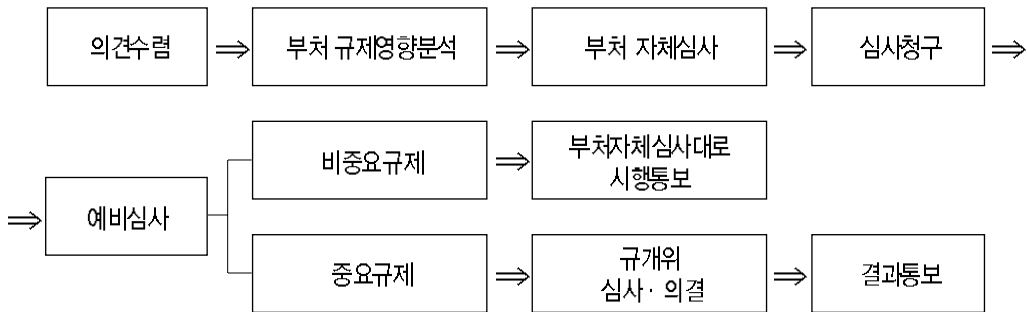


② 신설·강화규제 심사

①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요규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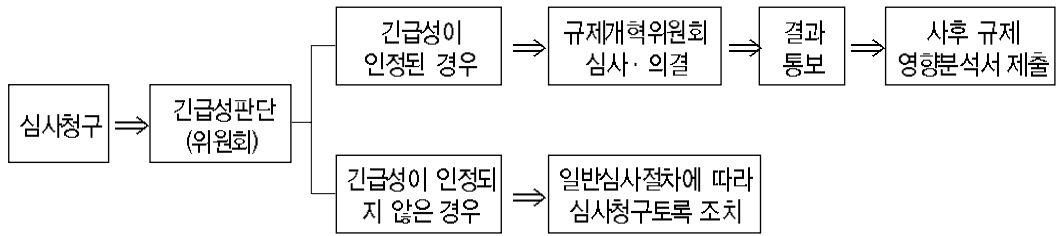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②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기능

①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1998.4.18,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②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경제1분과, 경제2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4인, 정부위원 3~4인 등 7~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04년 4월 현재)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1	민간위원	김완순(위원장) 강응선 서윤석 이영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13개 기관)
	정부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경제2	민간위원	조건호(위원장) 김종석 남영숙 제프리존스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9개 기관)
	정부위원	산업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정문수(위원장) 김재욱 남궁근 최종원	부패방지위원회, 방송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법제처, 병무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20개 기관)
	정부위원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2) 회의 운영

① 회의 소집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

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 출석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중요규제 여부 및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추진기구

① 규제심사위원회

① 기능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행정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촉진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구성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있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

① 기능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는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각분과 작업반에 대한 지도·조정,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평가, 정부 내 규제개혁관련 부처간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구성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혁신(법무)담당관, 정책평가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중앙부처 규제개혁 추진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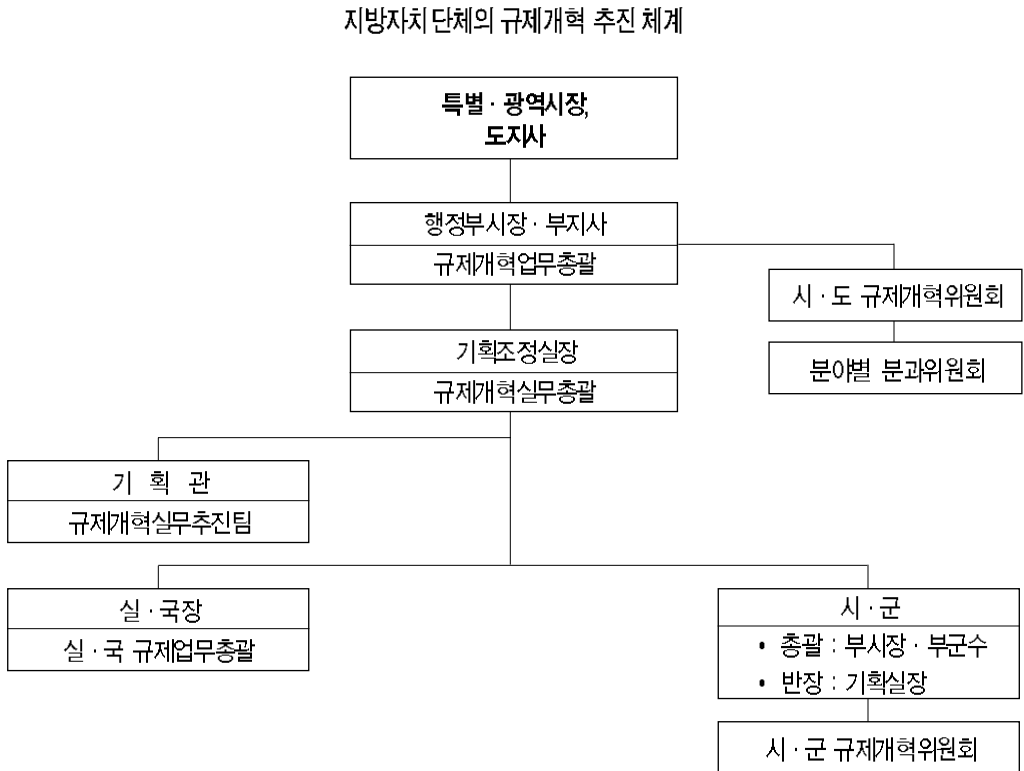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기구

① 기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별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추진기구에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② 구성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3703-3926, twinjin@opc.go.kr)

제4절 _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1.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국민의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기존규제의 50%를 정비하는 등 규제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인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노력이 배가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대폭적인 규제의 감축이 이루어졌으나 기업활동, 금융, 건축 등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이 미흡하고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과거 양 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에서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전환하여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이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통과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1) 규제정비의 전략적 추진

① 핵심덩어리규제의 전략적 개선 추진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를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규제개혁위 주도로 전담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특히 경쟁국 벤치마킹, 제로베이스 접근, BPR 등 과제별 특성에 맞는 추진방식을 활용하여 규제정비의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핵심덩어리 규제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업무혁신, 자체 인력조정 등을 통해 「전략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전략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② 기존규제 일제정비

각 부처, 지자체, 준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준수도가 낮거나 환경변화로 타당성이 낮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특정분야를 선정,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일괄 폐지하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정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③ 신설·강화규제의 엄격한 심사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을 확대하여 계량적 비용효과분석에 기초한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하고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토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규제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

또한 기술발달 등 급속한 여건변화로 규제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이 짧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규제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④ 규제의 투명성 제고

전자정부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의 전자서식화 등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단을 전자정부, 인터넷 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 규제심사 자료 등 규제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등 규제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의 재량 여지를 최소화하는 등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한다.

(2) 규제개혁 추진역량의 제고

① 규제개혁 네트워크 강화

국무조정실, 감사원, 고충위, 부방위 등으로 규제개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부처 관련규제나 개별부처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해결하고 규제집행시 심의지연 등 공직자 행태관련 사항은 감사원에 통보하여 이를 시정하고 신속한 집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② 공무원들의 인식·행태 개선

규제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기관장과 일반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각급 교육프로그램에 규제개혁에 관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에서 교재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규제영향분석 기관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파견하여 규제영향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③ 규제개혁의 전문성 제고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개혁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행정연

구원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규제에 대한 계량적 분석연구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규제영향분석 전문가 집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규제개혁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규제영향분석 연구를 특화하여 세계적인 규제개혁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3) 규제개혁 추진방식 개선

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학계, 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정비, 평가에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5단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의 건의를 정례화하여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기업과 민원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인터넷을 통한 규제개혁 신고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② 규제개혁 추진실태 점검 및 피드백기능 강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각종 지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이를 폐지하는 등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 전체 및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규제지수(Index)를 개발하여 부처별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하고자 한다. 규제지수에는 기존규제 정비실적·신설·강화규제 적정성 등 규제개혁 추진실적, 자체심사기구 운영·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수준 등 규제개혁 추진역량,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규제지수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3.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

(1) 기존규제의 정비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의 기존규제 정비는 우선 핵심당어리규제로서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불편과 애로를 초래하는 과제들을 10대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0대 전략과제는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 규제개선, 공장설립·입지관련 규제완화, 기업 준조세 정비, 물류·유통분야 규제완화, 수출입통관 규제완화, 건축규제의 합리화 등이다.

또한 40개 중앙행정기관이 2003년도 규제정비 추진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7,855건의 규제 중 659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키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5단체 등 기업 및 지역 건의과제를 접수하여 상당부분을 개선하였다.

한편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17개 부처에서 33개 규제에 대해 규제순응도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및 기업의 규제 인식도, 규제인정도, 규제준수도 및 규제순응도를 조사함으로써 규제의 내용중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총 9,106건의 규제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이 중 기존규제 정비 및 핵심과제 등으로 865건(9.5%)를 반영하였고, 단순 정책참고 및 개별민원성격의 제안들은 부처에 이첩(2,910건, 31.9%)하거나 정책에 참고(5,331건, 58.6%)하였다.

(2)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1분과, 경제2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회의를 거쳐 2003년도에 총 947건의 신설·강화규제 심사대상 중 285건(30.1%)을 철회 또는 개선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철회 또는 개선 권고된 대상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규개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조직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어 기업과 국민 터나아가서 국가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의 자체 사전규제심사의 내실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3)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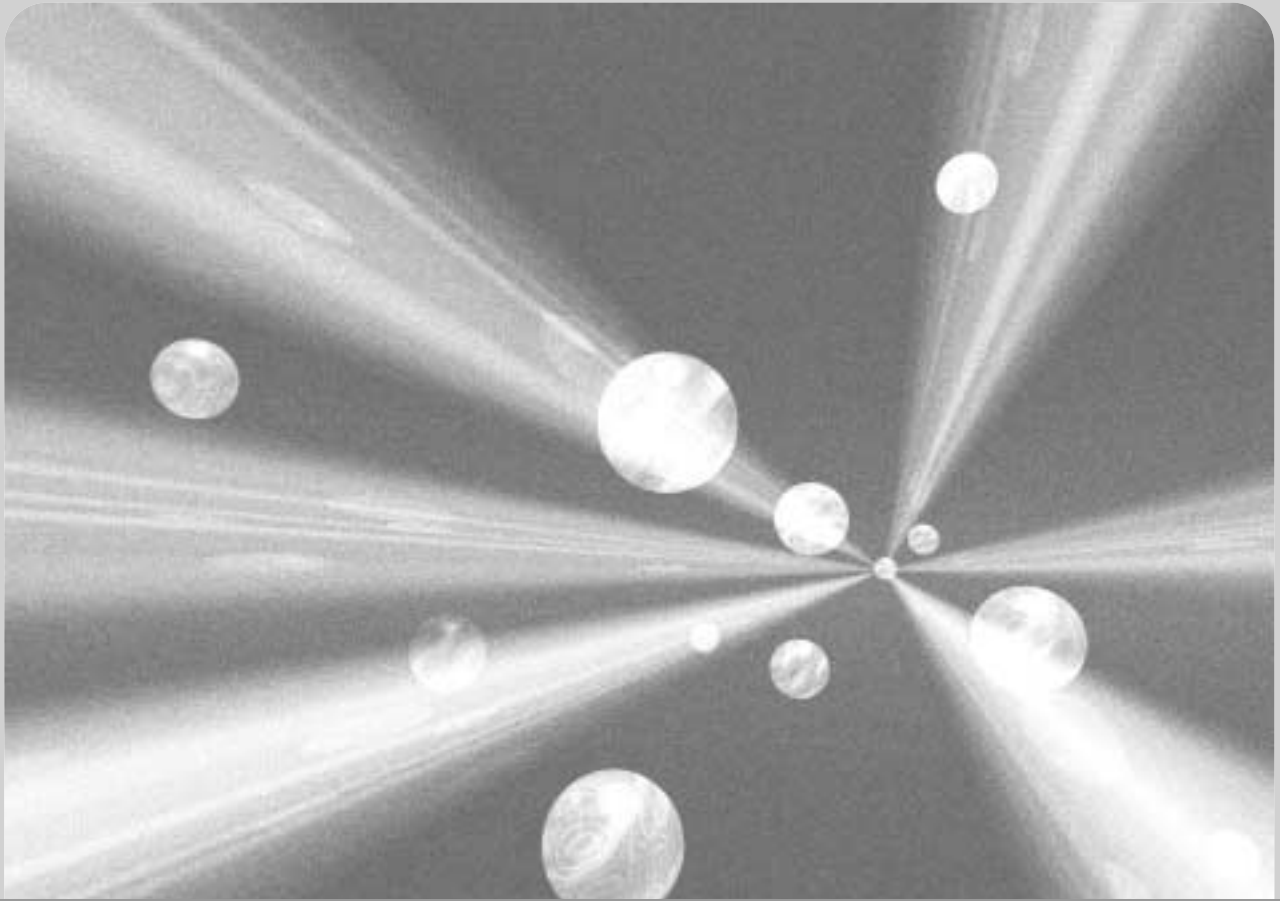
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품질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이 핵심요소로서 강조된다. 그러나 사실 규제영향분석은 매우 계량적인 분야로서 이를 더 내실화·전문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3년 규제전문연구기관으로 한국행정연구원 내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 총 5개팀으로 운영하면서 특히 규제영향분석의 선진사례 및 기법 연구에 주력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연찬회 개최, 한국행정연구원에 규제영향분석 전문가과정 개설,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중앙·지방공무원교육원에 규제개혁 교육과정 신설 추진 등 규제개혁 교육훈련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OECD 및 APEC의 규제개혁 국제회의 참가 및 관련 정보 교류 등을 통한 규제개혁 국제협력도 전년도에 이어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하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3703-3926, twinjin@opc.go.kr)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절 _규제개혁 전략과제의 추진

제2절 _기존규제 일제정비

제3절 _기업·지역 건의과제 처리

제4절 _규제개혁 순응도 제고

제5절 _규제신고센터 운영

제1절 _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추진

1.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 일제정비, 특정과제 선정·추진 등을 통하여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대상이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거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기업이 실제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분야인 공장설립·입지분야, 토지이용규제분야, 수·출입 통관규제분야, 식품안전분야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목표 지향적인 규제개혁방식으로 규제개혁작업에 착수하였다.

전략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피규제자인 경제단체, 전문연구기관, 관계부처 담당자,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략과제 추진 안을 작성하였고, 검토된 전략과제는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2004. 2) 규제개혁위원회가 2003년도에 추진한 전략과제는 아래와 같다.

2003년도 규제개혁 전략과제 목록

연 번	전 략 과 제 명	추진 시기
〈기업활동분야〉 6개 과제		
1	물류·유통분야 규제개선	4/4분기
2	금융회사 영업활동관련 규제개선	4/4분기
3	준조세 정비	4/4분기
4	공장설립·입지관련 규제개선	3/4분기
5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개선	3/4분기
6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 관련 규제개선	3/4분기
〈국민생활분야〉 4개 과제		
7	건축규제의 합리화	4/4분기
8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	4/4분기
9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4/4분기
10	식품안전 규제의 합리화	2004년 6월

*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3703-3926, twinjin@opc.go.kr)

2. 기업활동분야

(1) 물류·유통분야 규제개선방안

① 검토배경

- 동북아 경제권은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역내 교역과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 동북아시아는 EU, NAFTA 등과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자리매김
 - 2000년 동북아시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5,900만TEU로써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28%를 점유

- 중국경제의 급부상은 한국경제에 대해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대두
 - 한국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 사이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 지금까지 우리경제를 견인해 왔던 제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은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는 잠재의식이 상존
- 중국경제의 부상을 기회로 우리나라를 '물류중심지화' 하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
 - 물류의 규제완화, 전문물류기업의 육성, 물류인프라의 확충 등 물류중심 전략을 추진
 - 별도과제로 추진한 수출입통관절차 개선, 외국인투자활성화대책은 제외하고 유통 분야 중 개선필요성이 특히 큰 농수산물거래제도 개선만 세부과제로 포함

② 개선방안

① 화물운송업 구조개선

(i) 규제현황

- 현행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등록기준은 5대 이상으로 이를 충족하기 곤란한 영세사업자의 대다수가 지입제 선택
 - 2002년 말 기준 영업용화물차 338천대(일반화물 196천대), 운송업체 8,086개소로 일반화물자동차의 90% 정도가 지입 차량
 - ※ 지입제는 개별차주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운송업체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그 대가로 일정액(지입료, 월 12~25만원)을 납부하는 형태
 - ※ 화물운송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진입제한근거 규정)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04. 1. 20)

(ii) 문제점

- 운송업체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지입차주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부당한 지입료 납부분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행사제한 등의 폐단이 상존하고, 이로 인한 운송업체의 파업 발생
 - 상당수 운송업체는 지입경영에 안주한 결과 물량확보, 공차 통행률(2001년 50.6%) 저감 등 경영개선 노력 미흡
 - 다단계 주선구조로 인해 지입차주가 받는 실제운임이 크게 낮음

※ ○○철강회사는 1차 운송업체에 20,330원(톤당)의 운임지급, 2차 운송업체는 18,500원을 지급받아 지입차주에게 16,850원을 지급한 사례

(iii) 개선방안

- 일반화물자동차 허가기준 완화
 - 일반화물자동차의 지입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해 허가요건 완화(등록기준 5대 → 허가기준 1대 이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허가의 진입제한 요건도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
 - 개별허가이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입회사와 차주간 분쟁(지입료 정산, 차고지 활용문제 등) 조정기구를 시·군·구에 설치(건교부)
- 개별차주의 취약한 영업 및 관리능력 보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 도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가맹사업자는 화주(또는 운송사·주선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맹점(개별사업자)에 배정
 - 가맹점들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로얄티 지급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표준가맹사업계약서」 보급(건교부, 공정위)
 - 각 화물운송계약단계(주선업체↔운송업체 간, 운송업체↔차주 간)에서 참고할 표준계약서 마련·보급(건교부, 공정위)
 - 우수 영세업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인증제」 시행
-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
 - 화물수송망의 마비 등과 같은 국가경제 위기상황 때 전략물자 등의 정상적 운송을 기하기 위해 화물운송업무개시명령제 도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일반화물자동차 허가기준 완화 : 2004. 12
- 지입회사·차주 간 분쟁조정기구 설치 : 2004. 11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도입 : 2004. 4
- 표준가맹사업계약서, 화물운송표준계약서 보급 : 2004. 6
- 우수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인증제 시행 : 2004. 12
- 화물운송업무개시명령제 도입 : 2004. 1

② 물류산업 성장기반 조성

-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대우
 - 그동안 지속된 규제 중심의 물류정책으로 물류산업은 자생적 발전역량 부족
 - 물류산업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비하여 입지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적용을 받음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물류시설입주 곤란
 -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미적용
 -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미배정 등

(ii) 문제점

- 전문종합물류업체 부재
 - 국내물류산업은 낮은 경제적 진입장벽 등으로 영세사업자 위주의 구조형성
 -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 차량 5대 미만 보유사업자가 97.5%(2001년)에 이르고 물량확보를 위해 운송주선업체나 대형운송업체에 하도급 의존
 - 화주기업은 다양하고 고도화된 물류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 물류기업 부재
 - 대부분의 물류업체는 운송·보관·하역·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복합운송과 종합물류 서비스제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화주기업의 물류업체에 대한 신뢰부족과 자사의 정보공유를 꺼리는 폐쇄적 기업 문화가 복합해서 자가 물류·자회사 물류를 심화시킴
 - 자가(자회사)물류는 물류시설투자, 인력확충 등 고정투자비 확대와 구조적으로 물류비절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 물류아웃소싱 실태조사(2002, 한국무역협회) 결과, 한국의 물류 아웃소싱 비율은 25.7%로 미국과 유럽의 70~80%에 비해 낮은 수준

(i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물류시설의 입지제한 완화 : 2004. 5
- 물류시설종합토지세 분리과세 : 2005. 1
- 물류업무에 외국인산업연수생 배정 : 2004. 6
- 종합물류서비스업 신설 : 2004. 8
- 물류관리사제도 개선 : 2004. 12
- 대학에 물류관련 전공학과 신설 권장 : 2004. 12

③ 항만운영 효율화

(i) 규제 현황

-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간에 물류중심지 선점경쟁이 치열한 상황
 - 항만 등의 배후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부가가치물류기반을 조성
 - 항만자동화, 하역료 인하 등 외국 선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ii) 문제점

- 항만관세자유지역은 중국 상하이 등과 비교시 정부지원이나 규제완화가 미흡한 수준

	중국(상해항)	한국(부산항·광양항)
면적	항만배후부지 240만평	배후부지 개발 중(2013년까지 232만평)
허용업종	가공·조립업·창고업	창고업·단순가공업
임대료 결정	협상에 의한 자율결정	국유재산법에 의해 획일적인 결정
직접세율	15%	27%
법인세감면대상	500만불 이상 투자 외국기업	3천만불 이상 투자 외국기업

- 하역노무인력 공급을 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어 하역기계화 등을 통한 물류비절감 및 하역소요시간 단축곤란
 - 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거 하역노무공급권을 인정받아 일용 하역인력을 공급
 - ※ 항운노조의 인력은 총 29,471명(2002년 말)으로 이 중 항만하역분야 10,799명, 철도 3,120명, 농수산시장 8,078명, 상용분야 등 7,474명

(iii) 개선방안

- 항만관세자유지역의 규제완화
 -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통합,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외 물류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입주허용
 - ※ 현재 관세자유지역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규정
 -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을 중국 상하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완화 (3,000만불 → 500만불)
 - 국유재산인 토지의 임대기간을 연장(3년→최대 50년)하고, 낮은 임대요율 적용

- 향운노조 조합원의 단계적 상용화
 - 컨테이너터미널 등 기계화 부두와 신설부두부터 투입인력을 하역업체의 상용화 추진
 - 향운노조가 주장하는 「전국동시 상용화」는 막대한 퇴직보상금(1조8천억원)이 소요되고, 군소 항만의 경우 상용화의 실익이 적음
 - ※ 영국의 경우 1989년 항만노동자 상용화 보상금으로 국가가 2,753억원(57.2%) 하역회사가 2,060억원(42.8%) 부담
 - 각 항만별로 노·사 공동의 가칭 「항만근로자수급위원회」를 설치·운영
 - 일용항만노동자의 고용 및 배치 등 중요한 사항을 노사공동으로 결정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통합 : 2004. 6
- 관세자유지역의 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 2003. 12
- 관세자유지역 토지임대기간 연장 및 저렴한 임대요율 결정 : 2004. 6
- 향운노조원의 단계적 상용화 : 2004. 6
- 항만근로자수급위원회 설치 : 2004. 12

④ 농수산물 거래제도 개선

(i) 규제현황

- 생산과 출하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팔레트를 이용한 출하, 물류의 기계화 등이 미흡한 실정
 - 가락시장 청과물의 경우 경매단위 10상자 이하가 50%를 넘으며, 차량 1대당 출하주가 30~40명인 경우도 있음

(ii) 문제점

- 수협에서 관리하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거래규모가 수산물 도매시장의 2배 이상이나, 법적으로 도매시장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각종 정부지원이나 관리가 어려움
 - ※ 2002년 기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137만톤)의 70%를 유통
-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원칙 위주의 도매거래제도는 과도한 시간소요 및 불법자 양산
 - 경매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건어류 등)을 경매대상에 포함
 - 실제 50% 이상의 수산물이 서면으로만 경매형식 구비
 - ※ 경매비율 : 한국 가락시장 94%, 일본 오타시장 30%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 도매시장은 농안법 제2조에 의해 농수산물의 단순 수집·분산 기능만을 부여받아, 다원화·복합화되고 있는 유통환경에의 대응력 취약

(iii) 개선방안

- 농수산물 산지기능 활성화
 - 농수산물 출하의 조직화 규모화 및 표준규격화 촉진
 - 주산지 일선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출하를 확대하고 연합마케팅 추진
 - 우수 산지유통조직에 각종 유통정책자금 지원우대
 -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법적 근거 마련(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위판장의 기능·역할, 거래제도, 중도매인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농수산물 도매거래 개선
 - 도매시장 거래방법개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일정품목 등에 대해서는 상장경매 이외의 거래방법(수의매매, 정가매매 등) 확대 허용
 - 도매시장운영 효율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도매시장에 단순 수집·분산 기능 외에 저장·가공·전자상거래 등 종합물류·유통기능 허용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농수산물 출하의 조직화·규모화·표준규격화 : 2004. 12
- 수산물 산지 위판장 법제화 : 2005. 3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 2005. 3
-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 2005. 3

*집필자 : 이태인 서기관(T.3703-3947, goodlti@opc.go.kr)

(2)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규제개선방안

① 검토배경

- 금융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누적부실은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대다수 금융회사가 비슷한 경영전략을 추진하는 등 금융시장 내의 경쟁이 미흡하고 대외경쟁력도 높지 않은 실정
- 금융 감독 당국은 금융권이 위기 시에 충격 흡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아직도 많은 부분에 개입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금융시장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
- 영업활동관련 등록규제(약 190건)와 금융회사의 현장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대상과제 발굴
 - 금융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있는 총 55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에 대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 각 개선과제별로 전문가 토론, 부처협의 등을 거쳐 총 55건 중 2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최근 개정되었거나 시장여건상 조기 폐지가 곤란하여 현행대로 존치

② 개선방안

①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제한

(i) 규제현황

-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고 그 한도 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음

(ii) 문제점

- 유가증권 투자에 총량적 제한뿐 아니라 종류별 제한까지 두는 것은 일부 상호저축은행이 보여준 부정적인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라는 규제의 목적을 넘어선 과잉 규제
 - 기본적으로 금융기업의 자산건전성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법령을 통한 금지로 해결할 문제는 아님
 - 과거의 부정적인 행태를 문제 삼아 금융기업의 정상적인 자산운용 범위에 속할 수도 있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 현실적으로도 종류별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9조 제1항은 규제의 내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운용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

(iii) 개선방안

- 유가증권 투자대상 확대 및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한도만 설정
 - 투자대상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확대하되 동일회사 및 동일 계열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유지 등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체계 유지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 3월 말까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②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제한

(i) 규제현황

- 임직원에 대한 대출제한을 위한 대출금 규모를 산정할 때 임직원이 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시공사가 당해 은행을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은 경우만을 제외

(ii) 문제점

- 임직원 중 주택조합원이 아니고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중도금대출 등을 협약한 금융기관이 임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은행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금리조건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음

(iii) 개선방안

- 임직원이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로서 재직은행이 시공사가 협약한 금융기관이 되더라도 중도금 대출, 이주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또한 일반분양의 경우도 임직원대출 동일인한도 제외대상에 포함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 3월 말까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③ 증권사의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업무

(i) 규제현황

- 증권회사 본·지점은 채권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채권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임직원을 배치하여 소액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ii) 문제점

- 채권영업을 중요시하지 않는 증권회사도 소액채권거래 전담창구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iii) 개선방안

- 개별증권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결정되도록 증권회사 자율에 맡김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 5. 10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 2004. 6. 30일까지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④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

(i) 규제현황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를 설정

(ii) 문제점

-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여는 최소한의 경우로 국한되어야 할 것
 - 외부효과(externality)의 존재,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산업, 불완전 정보(incomplete information)의 만연 등으로 인하여 가격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 예
- 가격상한 설정은 과잉규제
 - 위와 같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상황에 직면하여서도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신용정보업 자체의 특성에서 시장 실패의 요인을 찾기 어렵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주체가 일반적으로 대형금융회사일 것이므로 신용정보업자들과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하여 적절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가격 상한의 설정은 그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과잉규제임

(iii) 개선방안

- 신용조사·신용조회업 : 수수료 등 최고한도 폐지
 - 차별적으로 신용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인(incentive)을 부여하되, 수

수료 책정 내용의 공시 의무화를 통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유도

- 채권추심업 : 수수료 등 최고한도 존치
 - 채권추심업자의 고객이 협상능력이 부족한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인 경우 고액수수료 징수 가능 시 비(非)상거래 채권에 대한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활동이 확산될 우려
-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 6월 말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 2004.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 제출

⑤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i) 규제현황

- 금융기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검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그 요건을 규정

(ii) 문제점

-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상요건에는 미달하여 필요인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음

(iii) 개선방안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외국 법률에 의해 자격을 가진 자도 국내 준법감시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금융통합법 마련 시(2004년 중) 법무부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 검토
 - * 자격요건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증권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수 법률의 개정이 필요

⑥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방법 개선

(i) 규제현황

- 손해보험회사는 비상위험준비금을 1년 간 보유경과보험료의 50%에 달할 때까지 누적 적립(화재, 해상, 보증,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로 구분)
- 비상위험준비금 = 보유보험료 × 예정이익률

(ii) 문제점

- 비상위험준비금은 이상 또는 집적손해 리스크가 존재하여 예정한 가격을 벗어날 가

능성이 큰 경우에 적립하는 준비금제도이나 국내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종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일본은 이상위험이 존재하는 종목에 대해 별도계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이상 위험준비금제도 도입, 운영

- 또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예정이익률에 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가격의 자유화로 동일 종목일지라도 적립금액이 회사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됨

(iii) 개선방안

- 이상위험이 존재하는 보험종목에 대해서 그 특성에 부합하는 비율을 적용하고 회사별로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어 비상위험준비금이 적립되도록 개선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 상반기 중 제도개선안 마련

⑦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에 대한 대출 금지

(i) 규제 현황

- 지분율 2% 이상의 출자자, 동일계열기업, 상호신용금고의 임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한 대출 및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

(ii) 문제점

-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에게는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과 일부 소액 대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대출 행위가 금지되어 타 금융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 타 금융회사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정은 금융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 강화, 상호신용금고의 자율적 내부 통제 장치의 도입 등에 맞추어 완화할 필요

(iii) 개선방안

- 대출제한이 되는 출자자의 지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출자자관계인의 범위를 축소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의 개선 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⑧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제한

(i) 규제내용

- 신탁회사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대출, 국공채,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응모, 인수, 매

입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하도록 제한

(ii) 문제점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Positive System으로 규정함에 따라 스왑(Swap) 등 리스크 헤지를 위한 상품운용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법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동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수익창출 및 위험관리방법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신탁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 또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관련 상품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

(iii) 개선방안

- 장기적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되,
- 단기적으로 신탁업법령 개정시 파생상품거래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자산운용회사에 허용된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확대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신탁업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 추진
 - * 신탁제도 운용대상 확대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나, 2004년 중 신탁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 시 신탁재산 운용대상 확대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시행(2004. 1. 5)으로 은행신탁 중 불특정금전신탁은 자산운용업법을 적용 받게 되어 장외파생상품투자 등이 가능해져 신탁업법령 개정 수요의 상당부분은 기 반영
 - *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

⑨ 정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영수제도 개선

(i) 규제내용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와 직접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정부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영수를 증권발행 후 2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ii) 문제점

- 정부가 체결한 계약도 일반계약과 동일한 계약임에도 보험료영수 등에 대해 2개월 간 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일반계약자와 부당한 차별이며 보험원리에도 위배 되는 것임

(iii) 개선방안

- 일반계약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부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료 영수제도 개선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 3. 말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⑩ 프라이빗뱅킹에서의 수수료부과 문제

(i) 규제내용

- 현재 은행권은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관련 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어 프라이빗뱅킹영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또한 최근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은행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
 - * 프라이빗뱅킹은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상품의 제공, 운용상담, 사업승계, 자산상속 등에 대한 법률 및 세무 컨설팅으로부터 이에 부수되는 여러 절차의 대행까지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자산관리 종합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음

(ii) 문제점

-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음에 따라 프라이빗뱅킹이 재산관리 또는 세무관련 자문제공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 일부 고액 저축자에 대한 이벤트성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위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

(iii) 개선방안

- 금융 산업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에 투자자문업 인가 및 은행 부수 업무 허용 여부를 검토
 - 은행에 투자자문업 허용 여부는 기존 투자자문회사들과의 업역 문제에 대한 협의·조정이 필수적이므로 업계·전문가 등과의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년 말까지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검토

⑪ 신용거래 관련

(i) 규제 현황

- 신용거래제도 중 증권회사의 반대매매 처분 가능기간이 4일로 되어 있음

(ii) 문제점

-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증권회사의 손실 가능성이 있음

(iii) 개선방안

-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 5. 10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 2004. 6. 30일까지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⑫ 법인대리점의 지점설치제한조치 개선

(i) 규제 현황

- 법인대리점에 한하여 지점설치를 허용하며 동일 주소지 내에는 2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ii) 문제점

- 법인대리점의 영업활동지역 및 범위는 대리점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감독당국에서 지점 수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금융기관 대리점의 경우는 은행 등 본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리점영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카슈랑스의 정착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동 규제를 적용함

(iii) 개선방안

- 금융기관 대리점이 아닌 법인대리점의 경우 지점설치를 동일주소지일지라도 2개 이상을 허용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 3. 말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⑬ 보험계리사 자격제도 개선

(i) 규제 현황

- 보험계리사의 자격제도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구분 없이 단일자격제도로 운영되

고 있음

(ii) 문제점

- 보험계리업무는 보험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계리사의 자격시험은 생명보험중심의 과목으로 운영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monoline insurer)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존재

(iii) 개선방안

- 보험계리사의 자격구분을 손해보험계리사, 생명보험계리사, 연금보험계리사 등으로 세분화 추진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년 해외사례 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 수렴
- 2005년 보험업법시행규칙 개정
 - * 손해보험계리 및 연금보험계리 부문의 인력자원 제한 등으로 단기간 내 이들 자격제도의 시행이 곤란

⑭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제한

(i) 규제현황

- 지점과 출장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

(ii) 문제점

- 지점 및 출장소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역 금융 기관이라는 상호저축은행의 본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친 규제
 - 서민을 상대로 소액 수신과 여신을 주로 담당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특성상 고객과의 밀착성과 접근의 용이성이 다른 금융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요구되고 할 수 있음

(iii) 개선방안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
 - 현행 지점설치요건은 유지하되 여신전문출장소를 허용 추진

(iv) 필요 조치사항 추진일정

-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⑮ 신탁부문 약관 등 제정·변경보고

(i) 규제 현황

- 신탁회사가 약관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원장은 건전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ii) 문제점

- 기존 상품과 내용이 동일한 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정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은행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늘어남

(iii) 개선방안

- 신탁상품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위탁자보호를 위해 사전보고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 향후 신탁업법령 개정시 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의 사후보고제로 전환

(iv) 필요조치사항 추진일정

- 2004년 정기국회 전까지 신탁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⑯ 원화유동성비율관련 자산·부채 산출기준

(i) 규제 현황

- 은행의 유동자산·부채 산출시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 약정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3개월 이하만 포함
 - 지준예치금, 신용카드채권은 제외

(ii) 문제점

- 원화유동성비율은 유동자산과 부채간의 만기 미스매치를 줄여 유동성위험을 줄이는데에 목적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
 - 저금리기조 정착에 따라 수신의 단기화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안정적인 대출자산 운용을 위해 대출기간은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은행들이 유동성비율 충족에 어려움이 많음

- 은행들이 동 비율 유지를 위해 회전식 정기예금을 늘리고 금융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시장왜곡을 야기
- 최근 도입되고 있는 30년 만기 대출상품 등 장기 대출상품의 경우 유동성비율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관련 상품의 적극적인 판매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iii) 개선방안

- 현행 유동성자산 및 유동성부채의 포괄범위를 세부항목별로 재검토하여 원화유동성 비율이 은행의 유동성을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
 - 요구불예금의 유동성부채 인정범위 축소
 - 유동화 대상 장기분할상환대출금의 유동성자산 인정
 - 원화유출입을 수반하는 파생상품거래를 원화유동성비율 산출대상에 포함 등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년 3월 말까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㉞ 증권사 대외보고서의 간소화

(i) 규제 현황

- 매분기별로 증권사는 금감위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며, 상장증권사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포함)를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고 있음

(ii) 문제점

- 사업보고서와 영업보고서의 공시사항이 다수 중복되어 상장증권사의 경우 작성부담이 증대

(iii) 개선방안

-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영업보고서의 제출·공시를 사업보고서 공시로 대체
 - 영업보고서에만 있는 항목은 사업보고서에 추가하고 비상장증권사 등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영업보고서를 작성·공시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향후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시 반영

㉟ 지급여력제도의 개선

(i) 규제 현황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급여력비

을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급 여력비율이 100% 이하가 되는 경우 재무건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영개선 적기 시정조치 발동

- 동 비율은 매분기종료 1개월 이내,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

(ii) 문제점

- 지급여력규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로서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최근의 환경변화에 맞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함

(iii) 개선방안

- 보험사의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RBC*를 포함한 다각적인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 Risk Based Capital : 자산운용 리스크를 포함한 회사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지급여력기준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보험회사 부채평가기준 마련(2004년)
- 보험 및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 개발 등 통합리스크 측정시스템 구축(2004년~2005년)
- 실증분석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2006년)

⑱ 예금보험료 부담체계 개선

- 보험회사의 예금보험요율은 현재 0.3%로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음
- 동 수준은 은행(0.1%)의 3배

예금보험 대상기관별 보험요율 현황

부보금융기관	보험요율
은행	0.1%
증권회사	0.2%
보험회사	0.3%
종합금융회사	0.3%
상호신용금고	0.3%
신용협동조합	0.3%

(ii) 문제점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험계약자 등 수익자에게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는 정책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험요율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별 실적을 비교할 때 보험회사의 경우 실적이 양호함에도 가장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음
- 부보대상금융기관의 리스크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보험요율제도 운용

(iii) 개선방안

- 당분간은 현행 예금보험요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차등보험료제도의 도입여건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점검
- 중장기적으로 목표기금제와 연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차등보험료 제도 도입을 추진
 - 2004년 중 예보기금 적립의 적정 목표수준을 관계기관·연구원·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결정
 - 아울러, 목표기금이 적립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차등보험료 제도의 도입시기·방안 등도 협의·결정하되, 비우량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차등화 폭을 최소화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추진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목표기금제와 연계한 차등 보험료제 실시의 구체적인 시기·방안이 결정되면 향후 예보법 및 시행령을 개정

㉔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사실 통보 부담 완화

(i) 규제현황

- 2002. 7. 1 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정보제공의 경우도 명의인 앞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토록 변경됨

(ii) 문제점

- 정보조회 건수의 증가로 취급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은행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정보제공의 경우 2002년도 중 약 20만 건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은 약 2억7천만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조회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처리비용 증가가 예상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정보제공의 경우는 명의인인 공직자 대부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한 금융거래조회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금융실명법에 의한 정보제공사실을 별도 통보함에 따른 실익이 없음

(iii) 개선방안

- 향후 금융실명법 개정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생략토록 반영

(iv)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2004. 1.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어 명의인 통보비용을 공직자윤리위 등 정보요구기관이 부담토록 하여 금융기관 부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통보생략을 위한 법률개정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음
 - 앞으로 공직자의 금융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 필요성과 금융기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

㉔ 내부통제기준 설정(기 조치)

(i) 규제현황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금융기관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감독하고 있음

(ii) 문제점

-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와의 업무분담이 불분명하여 중복 검사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성이 높은 실정

(iii) 개선방안

- 금융감독원에서 2000년 9월 마련한 “은행의 준법감시인제도 운영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적극 활용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되 가급적 법규준수 관련 업무에 중점을 두고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간의 업무중복은 최소화되도록 금융회사 자율로 업무분장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

㉕ 증권투자회사의 사모사채투자 제한(기 조치)

(i) 규제현황

- 사모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 발행회사의 신용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곤란하여 집중투자 시 신용위험에 과다노출 우려 및 우회적 자금지원 수단으로 활용소지가 있으므로 증권투자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을 당해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ii) 문제점

- 사모증권 투자회사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대한 합의에 기초하여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공모펀드가 준수해야 하는 각종 투자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사모사채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iii) 개선방안

- 사모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사모투신편드와 마찬가지로 사모사채 투자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㉓ 상호저축은행의 임원·과점 주주의 연대 책임(기 조치)

(i) 규제 현황

- 임원(감사 제외)과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과하고 퇴임한 임원이나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에게 3년 간 동일한 책임 부과

(ii) 문제점

- 상호신용금고 도입 초기 일부 무책임한 임원과 과점주주의 불법·탈법 행위로부터 예금자와 기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1975년 추가된 본 조항은 다른 금융기업의 임원이나 주주에 비해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한정위헌 판결을 받음

(iii) 개선방안

- 임원·과점주주의 연대책임조항 삭제(상호저축은행법 개정)

㉔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규제(기 조치)

(i) 규제 현황

-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 채권의 5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ii) 문제점

- 기존 매출의 60%를 상회하던 부대업무(현금대출)의 비중을 50%로 낮추도록 법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도한 개입

- 부대업무의 비중 상한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것은 여타 금융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에서 찾을 수 없는 규제
 - 규제 도입 직후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현금대출의 비중을 낮추어 규제에 순응하기보다 주 업무인 할부판매의 비중을 대폭 늘려 현금대출의 비중을 낮추려는 전략을 취하여 오히려 신용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관찰됨
- (iii) 개선방안
-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을 3년간 연장(2004년 말→2007년 말)하고, 현금대출비중 계산시 대환대출채권을 제외

㉕ 신용카드사 적기 시정조치 발동 요건(기 조치)

(i) 규제현황

-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과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의 적자 여부를 적기 시정조치 발동요건으로 규정

(ii) 문제점

- 업종의 특성상 경기에 매우 민감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발동 기준에 연체율이나 당기순이익과 같이 역시 경기에 민감한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
 - 경영과 자산 건전성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진 금융회사의 부실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경기변동으로 일시적인 곤란에 직면한 신용카드사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가능성 상존
 - 연체율이나 당기순이익을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여타 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에는 감독 당국의 재량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나 연체율 기준 위반만으로 실제로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시장에 존재

(iii) 개선방안

- 적기 시정조치 기준 중 연체율 기준 삭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집필자 : 정광현 사무관(T.3703-2158, k8k8@opc.go.kr)

(3) 준조세 정비방안

① 검토배경

- 준조세는 조세이외에 국민이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부담금, 과징금, 사회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 이와 같은 준조세는 결국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각종 준조세의 과감함 정비를 건의

유형별 법정준조세 현황

특별부담금					행정제재금					행정 요금	사회 복지성 부담금	계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분담금	출연금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	법칙금	이행 강제금			
73	12	10	39	54	67	235	44	4	6	83	7	634

* 전경련, '법정준조세의 개선방안' (2001.10)

- ▶ 전경련 조사(2000, 98개사 대상) : 개별기업의 준조세 부담규모는 1사 평균 177억원으로, 세금납부액의 23.7%(매출액의 0.74%)를 차지
 - ▶ 기획예산처 : 2002년 부담금 징수규모(관리대상 102개) : 7조 4,482억원
 -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준조세 정비방안」(2000. 12) 수립·추진 및 「부담금관리기본법」(2001. 12) 제정 등을 통하여 부담금 제도를 대폭 정비
 - 그러나, 80년대 이후 늘어난 부담금 수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재계의 준조세의 정비요구도 지속
 - * 부담금 수 : 14개(1980년)→34개(1990년)→67개(1994년)→102개(2002년)
- ⇒ 기업과 국민부담의 완화를 위해 부담금뿐만 아니라 행정제재금 및 행정요금을 포함한 준조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

② 정비 기본방향

- 각종 준조세 중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상 특별부담금(102개)과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제재금 및 행정요금(총 376건)을 대상으로 부과목적, 징수 실적, 부과

기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한 경우 또는 부과징수 실적이 없어 존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
- 구체적인 부과요건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개선

③ 개선방안

① 부담금 정비(12개)

(i) 정비내용

- 당초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과목적 달성이 가능한 부담금 폐지(6개)
 -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 부실채권 시가인수제 도입으로 부과 필요성 상실
 - 도시공원법상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제16조) : 개발사업 허가 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의무를 부여하여 도시공원 등 시설 설치
 - 수자원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제3항) : 손실보상제도 또는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동일한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수도법」 제53조의 「원인자부담금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과도 중복)
 - 병해충 구제예방비용 분담금(「산림법」 제10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산림병해충 구제예방사업 추진
 - 산업단지 공동부담금(「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7조) :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민간자금화
 - 전기사업자 부담금(「농어촌전화촉진법」 제3조) : 농어촌 전화 가설 시 사업자 부담금(사업비의 50%)을 200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
-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징수실적이 없어 존치 실익이 없는 부담금 폐지(4개)
 - 소하천 원상회복예치금(「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3항) : 1998년 규개위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령 상의 세부부과기준이 폐지된 것으로 법상 부과 근거 폐지
 - 소하천 수익자부담금(「소하천정비법」 제21조) : 소하천 정비로 인해 특별히 이익을 받는 수혜자의 구분 및 수혜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며, 존치실익도 미흡
 - 다목적댐 건설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 수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시 발전단가가 비싼 수력발전사업 여건을 악화하고, 전력시장 개방추세인 현 상황과도 배치

- 보안림 수익자부담금(「산림법」 제64조) :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존치실익도 낮음
- 당초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과금 부과 타당성이 미흡하여 「2000년 준조세 정비방안」에서 정비키로 하였던 부담금 정비(2개)
 - 개발 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 2004. 1. 1일부터 수도권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수도권 이외 지역은 2002. 1. 1일부터 부과중지)
 - 문예진흥기금 모금(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 유효기간(2003. 12. 31) 도래

(ii) 조치계획

- 정비대상 12개 중 11개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시 폐지(2003. 12)
- 나머지 1개 부담금(다목적댐건설부담금)은 2004년 관계법 개정

② 행정제재금 및 행정요금(21개)

(i) 정비내용

- 다른 제재수단과 중복되거나, 타 수단으로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한 과태료 및 과징금 폐지(5건)
 - 초지관리 부실에 대한 시정지시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초지법」 제31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시 관리 소홀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
 - 수자원개발시설 무단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한국수자원공사법」 제5조제3항)
 - 수자원개발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산림법」 제125조제2항)
- 과태료 부과사유가 불합리하거나, 관련 제도개선 등으로 존치 실익이 없는 과태료 및 과징금 폐지(10건)
 - 대규모점포의 영업개시 의무위반 등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제3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문화예술진흥법」 제53조)
 - 월드컵대회 관련 사업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13조)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 철도소운송업 법령에 의한 명령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사업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철도소운송사업법」 제16조3항)
 - 철도소운송업의 부당요금 징수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철도소운송사업법」 제22조)
 - 화차에 화물 승하차시 철도기구 사용에 대한 사용료(「철도법」 제40조제3항)
 -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위탁 관련 과태료(「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1조)
 - 특허발명의 실시보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특허법」 제23조제1항)
 -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보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실용신안법」 제86조제1항)
 - 등록의장의 실시보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장법」 제88조제1항)
 - 부과수준이 과도하거나,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수준 완화 및 부과기준 개선(6건)
 - 승강기 보수업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 대규모점포 등의 시도지사 시정명령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유통산업발전법」 제64조)
 - 노사협의회규정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
 - 항공사고 등을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항공법」 제131조)
 -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
 - 토지형질변경준공 등 토지이동 신청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지적법」 제53조)
- (ii) 조치계획
- 2004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정비, 2004년 하반기 정비 상황 점검

(4) 향후 추진방향

① 부담금 정비

-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환경, 교통 등 분야별로 기업에 대한 부담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방안 강구

- 기존 부담금의 정책목적 달성 여부, 부담금간 중복 부과 여부, 부과요건이나 요율의 투명성 및 형평성, 부과징수 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 부담금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일몰제를 도입

② 행정제재금 및 행정요금 정비

- 규제개혁위원회 주관으로 매년도 「규제개혁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
- 과징금제도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정지 등에 같은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

*집필자 : 정광현 사무관(T.3703-2158, k8k8@opc.go.kr)

(4) 공장설립·입지관련 규제개선방안

① 검토배경

- 공장설립방식은 개별입지방식과 계획입지(산업단지) 방식으로 크게 구분
 - 개별입지는 공장설립 승인 → 부지취득 → 공장건축허가, 계획입지는 입주계약 → 공장건축허가 등의 절차로 구성
 - 개별입지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 설립절차가 복잡하나, 계획입지는 가격이 높은 대신 처리절차 등이 간편
- 개별입지는 최상위 법률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을 적용
 -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
- 특히, 수도권지역의 개별입지는 인구집중방지 및 산업 적정배치 등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이 추가 적용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건축면적 200㎡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공장총량제가 적용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따라 성장관리지역 등 권역별 공장

증설이 제한

- * 수도권 지역 공장입지가 전체 공장입지의 절반(49.1%)을 차지
-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정보 부족, 인·허가를 위한 각종 서류제출 등이 사업자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고,
 - 공장설립 유관 부서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제공이 미흡
- 수도권지역의 경쟁력이 타 지역보다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공장입지가 제한
 - 수도권 공장총량제, 권역별 공장 증설제한 등으로 수도권내의 기업 활동이 제약
 - * 제조업 부가가치(2001, 단위:10억원) 서울(2,944) > 경기(2,828) > 부산(1,708) > 경북(1,630) > 전남(945) > 충남(850) > 전북(440) > 강원(160).
- 변화하는 산업동향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단지 조성규제 등으로 적정규모 단지공급이 제약
 - 탄력적인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이 곤란하여, 효율적인 산업단지 이용이 제한

② 개선방안

① 중소기업 공장설립 규제개선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이 창업을 신청할 경우, 사전 건축허가 신청, 농지용도변경 승인 등 인·허가 의제범위가 일부 누락
 - 중소기업이 창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취득세·등록세 등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요구

(ii) 개선방안

- 공장 설립승인 관련 5개 항목, 공장사용승인 관련 4개 항목에 대한 인·허가 추가 의제처리
 - 중소기업 창업을 승인한 경우, 중소기업 세금감면 신청도 일괄처리 하도록 추가 의제처리

(i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인·허가 및 세금감면신청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률을 금년 중

으로 개정

② 공장설립·입지 정보제공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최종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등 40여 개의 인·허가사항이 검토된 후 가능여부가 결정

(ii) 개선방안

- 사업자가 용이하게 지역별·업종별 공장입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제공

(i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건교부에서 구축중인 토지종합정보망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연계하여 토지별 공장설립 가능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③ 표준공장 공급 활성화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생산업체별로 유사한 형태의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설계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
 - * 통상 건축설계사무소에 평당 3~4만원 정도의 설계료를 지불하고 도면을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건축허가 신청

(ii) 개선방안

- 평수·층수 등 형태별 표준설계도면을 작성·비치하고 사업자가 이를 선택할 때 별도의 설계도면 작성을 면제

(i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건축법에서는, 표준설계도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자부장관과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 설계 도서를 확정·보급

④ 수도권 공장총량제 개선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하여 수도권지역의 공장건축 총 허용면적을

매년 고시하여 제한

- 신·증축, 용도변경이 해당, 복리시설 등 부대시설도 포함
- 공장총량의 탄력적인 운용만 곤란할 뿐, 궁극적으로 개별사업자가 원하는 총량이 배정되는 실정
 - 향후 계획입지 중심으로 부지를 공급할 것이므로(전체 부지의 71%), 개별입지규제인 공장총량제의 정책수단 의미 축소

(ii)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 공장총량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1년 단위의 공장총량설정을 3년 단위로 변경
- 지역균형발전대책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등을 공장총량 적용분야에서 제외 검토
 -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연구소 등 공장 부대시설면적도 공장 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 검토
 - 공장총량이 적용되는 공장의 규모를 현행 200㎡ 이상 공장에서 500㎡ 이상의 공장으로 상향조정 검토

수도권 면적별 공장 분포(2001)

구분	200㎡ 이하	200~500㎡	500~1000㎡	1000~5000㎡	5000㎡ 이상	전체
업체 수	22,650	17,716	8,900	8,757	1,836	59,859
(%)	(37.8%)	(29.6%)	(14.9%)	(14.6%)	(3.1%)	(100%)

(i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공장총량 설정기간을 3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
- 장기적인 공장총량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균형위(수도권관리전문위)에서 2004년 말까지 수도권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제도개선방안 검토

⑤ 수도권 권역별 공장입지 규제개선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장입지를 제한

(ii) 개선방안

-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 공장 증설이 가능토록 증설면적 확대
 -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단업종의 입지규제 완화

(i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증설면적을 25~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택지개발구역 내에서 현행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 외에 대기업공장도 입지 가능토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1년간 연장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⑥ 산업단지 추가지정제도 개선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별 미분양률이 일정수준(5%~10%) 이상일 경우 추가적인 산업단지 지정을 불허
 - 시·도내 일부 시·군에 대규모 미분양단지가 있을 경우 입지수요가 많은 타 시·군까지 신규지정이 곤란
 - *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시의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포항·진량 등 남부지역까지 신규 산업단지 지정불가

(ii) 개선방안

- 지자체를 일정 권역별로 세분하고 이에 따른 미분양률을 적용하도록 산업단지 지정제한제도 개선
 - 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제한 예외 인정

(i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5월 중으로 개정

⑦ 산업단지 최소면적기준 완화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의 규모경제성과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15만㎡ 이상으로 산업단지 공급을 의무화

(ii) 개선방안

- 지식산업화 추세에 맞추어, 산업단지 공급 시의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15만㎡ 이상 → 3만㎡ 이상)
 - 도시첨단단지는 3만㎡ 이상 → 1만㎡ 이상으로 완화
 - * 사업체당 부지면적 추이 : 5,398㎡(1986) → 5,202㎡(1991) → 4,946㎡(2000)

(i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산업입지개발지침(건교부 고시)을 5월 중으로 개정

⑧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절차 완화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산자부장관(관리권자)이 산업단지 입주자격 등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지정권자)과의 협의가 의무화
 - 협의절차의 장기화(2~3개월)로 인해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 미흡

(ii) 개선방안

- 관리권자와 지정권자와의 협의범위를 축소하여, 변화하는 산업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응

(i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년 중으로 개정

*집필자 : 김달원 사무관(T.3703-3931, orion@opc.go.kr)

(5) 수출입 통관 규제개선방안

① 검토배경

- 현재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최종 통관종료 시까지의 총 소요 시간은 9.6일로, 화물도

착에서 수입신고 등의 처리과정에서 많은 시간 지체

-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종 수출입 관련 법상의 수출입요건확인 절차 개선 등 수출입통관분야의 획기적인 개선필요
- 나아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공항만을 통한 인적·물적 이동의 중심(GATE)에 있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

② 개선방안

① 통관절차의 간소화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입항 전 수입신고물품의 하선 지체
 - 신속통관을 위해 입항 전에 수입 신고한 물품이라도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검사장소 미확정으로 하선신고가 신속하게 수리되지 않아 하선 지체
 - 하선신고의 자동수리(신고 즉시 전산으로 신속수리)비율은 60% 수준에 불과 (2002년도 186만 건 중 110만 건만 자동수리)
 - * 자동수리비율 저조 요인 : 적하목록심사 미완료, 반입장소 미확정, 적하목록과 하선신고 내용 불일치 등
- 개장방법 위주의 컨테이너 검사
 - 수작업에 의한 개장방법 위주의 검사로 통관지체 및 물류비용 가중
- 수출입요건의 통관 전 확인대상품목 과다
 - 통관 전에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출입요건 확인 등을 받아야만 하는 품목이 전체의 43%로 과다하여 통관지체 및 불편 가중(대상품목 : 총 11,261개 품목 중 4,810개 품목)
 - 수출입업체는 요건확인기관(식약청 등)을 개별 방문하여 수출입신고서와 유사한 자료를 중복제출
- 특송화물의 간이통관대상 범위 협소
 - 간이통관대상의 인정범위가 목록통관은 US \$60 이하, 간이신고는 US \$600 이하로서 국제수준에 비해 협소하여 기업 불편 가중

(ii) 개선방안

- 하선절차 간소화

- 입항 전 수입신고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하선신고가 자동수리 되도록 개선(수입화물 하선신고 자동수리 시스템의 프로그램 보완)

지동수리비율 제고방안

자동수리 부진 원인	점유율	제고방안
계	40%	
적하목록 심사 중 하선신고서 제출	21%	관련 프로그램 보완
반입장소 미등록(관리대상, 입항전수입신고)	16%	반입장소 등록을 제고
적하목록과 하선신고내용 불일치	3%	적하목록내용의 정확도 제고

- 컨테이너 검사방법 개선
 - 개장검사를 컨테이너검색기 등 첨단장비 위주의 검사로 전환, 2004년까지 광양·평택항 등에 검색기 4대 추가설치 (부산항 3대, 인천항 1대는 기설치)
 - 소요예산 : 총 300억원(1대당 설치비 75억원)
- 수출입요건의 통관 전 확인 최소화
 - 수출입요건 구비사실을 통관 전에 확인 받아야 하는 품목(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을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품목은 확인대상에서 제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
 - 확인대상 품목을 4,810개 → 4,000개 이하로 축소
 - 축소대상 : 화장품·원료의약품·직물류·일반화학물질 등 800여 개 품목
- 특송화물의 간이통관 범위 확대
 - 특송화물의 간이통관 범위를 국제수준으로 확대(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 목록통관대상 범위 : US \$60 이하 → US \$100 이하로 확대,
 - 간이신고대상 범위 : US \$600 이하 → US \$2,000 이하로 확대

② 동북아 물류기지화 기반조성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재래부두의 환적화물 처리 지체
 - 하역부두에서 물품 보관장소로 반입해야 하는 부두 내 하선기간(5일) 및 공항만

내 보세창고 보관기간(1년)의 장기간 허용에 따른 만성적인 화물적체현상으로 환적화물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

- 항만·항공 환적화물의 처리절차 복잡
 - 선박으로 입항 후 항공기에 환적하는 화물에 대해 하선장소를 입항 항만 내로 제한하고, 하선신고와 별도로 보세운송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환적에 불편 가중
- 관세자유지역의 개발 지연 및 활성화 미흡
 - 부산·인천항은 물류업체를 추가 유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인천공항 및 광양항은 배후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개발이 지연
- 종합보세구역의 단일기능 위주 운영
 - 종합보세구역의 창고 등 단일기능 위주 운영으로 다기능 물류중계기지로의 활용 곤란

(ii) 개선방안

- 공·항만의 화물적체요인 제거
 - 부두 내 하선기간 및 공항만 내 물품보관기간을 단축(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 적재에관한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개정)
 - 부두 내 하선기간 : 5일 → 3일로 단축
 - 공·항만 내 보세창고 보관기간 : 1년 → 3개월로 단축
- 환적절차 간소화
 - 항만·항공(Sea & Air) 환적화물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개정)
 - 항만에서 공항으로 환적을 위한 이동시 별도의 보세운송신고절차를 폐지하고, 하선신고서로 보세운송신고를 같음
 - 현행 : 하선 → 보세운송 → 창고도착 → 환적
 - 개선 : 하선 → 창고도착 → 환적
 - 환적화물의 하선장소를 화물을 선적할 공항의 항역 내 보세창고까지 확대
 - * 항공환적화물 1톤 유치 시 US \$50 외화 획득 효과
- 관세자유지역 배후지 개발 및 물류업체 유치 지원
 - 관세자유지역과 배후지 개발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관세자유지역법령 개정)
 -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체에 대해 법인세 세제혜택 기준의 하향조정, 초기투자단계

부터의 세제 혜택 부여 등 세제 지원 확대

- 관세자유지역 내에 창고 이외에 가공 및 조립 등 물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허용(관세자유지역법령 개정)
- 종합보세구역의 다기능 물류중계기지화
 - 단순한 통관장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종합보세구역을 창고, 공장, 전시장 등의 물류중계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다원화(관세법령 개정)
 - 종합보세구역을 시도지사 이외에 민간 기업에서도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활성화(관세법령 개정)

③ 통관세제 절차의 합리화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납세절차 이행에 따른 물류지체
 - 납세확보를 위해 수입신고시 납세신고도 함께 이행토록 함에 따라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물류지체요인으로 작용
 - 수입통관시 매 건별 세액심사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권리사용료·생산지원비용 등 과세가격의 정확한 신고가 곤란
- 관세 환급의 지연으로 기업부담 가중
 - 관세의 환급은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수출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환급지연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 가중

(ii)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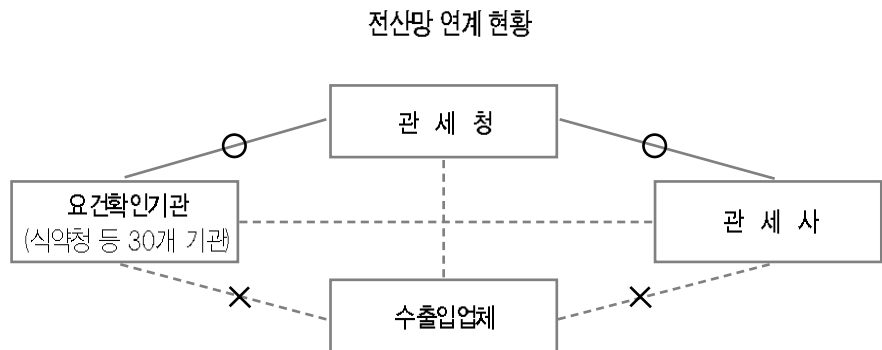
- 물류신속화를 위한 납세제도 개선
 - 통관은 간이한 수입신고로 신속을 도모하고, 세금은 건별 또는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관세법령 개정)
 - 업체에 자율점검기회를 부여하고, 3월내 세액보정시 가산세 면제
 - * 국제관세기구(WCO)교토협약 : 주기적(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제 권고
 - * 미국 : 간이한 수입신고로 신속통관, 1년 내에 납부세액 정산
 - * EU : 일정기간 통관분 일괄 납부제(1주, 월) 시행
- 관세 환급절차 개선
 - 관세 환급은 수출통관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적과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 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 관한고시 개정)

- 현행 : 수출통관→ 선(기)적→ 환급신청→ 환급금지급
- 개선 : 수출통관· 환급신청→ 선(기)적· 환급금지급
- 세관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시 간단하게 환급신청사항을 기재하면 별도의 환급신청을 위한 세관방문 절차 없이 관세 환급시스템에 의거 환급금을 신속 간편하게 지급

④ 관세 행정 시스템의 전자화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관세 행정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 미흡
 - 유관기관간의 전산망 연계가 미흡하여 서류 없는 통관체제 운영 곤란



※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유관기관간의 전산망 연계로 단일통관창구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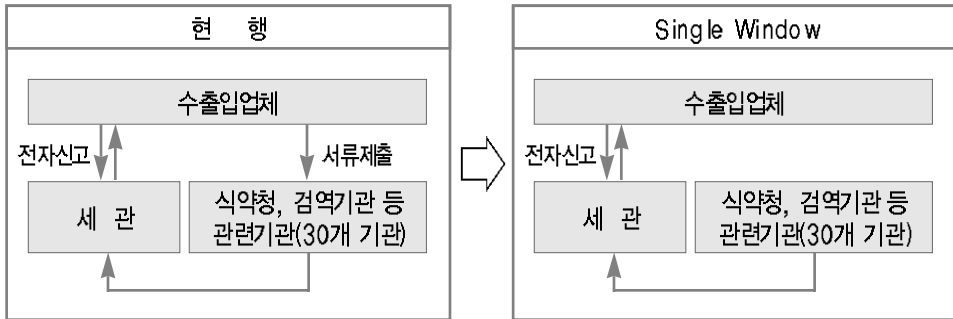
(ii) 개선방안

- 무역관련 기관 간 온라인(On-Line)체제 구축
 - 전산망 연계가 미흡한 무역업체·관세사, 무역업체·유관 기관 간 온라인(On-Line) 공동네트워크 마련 추진(전산네트워크 구축, 전자서식 개발 등 : 관세청)
 - 온라인(On-Line) 통관무역 환경조정을 위한 기본사업계획 마련(2003)
 - 온라인(On-Line) 연계추진(2004~2005)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체제 구축
 -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요건확인기관 등에 제출할 자료를 출입신고단계에서 일괄하여 전자신고(Single Window)할 수 있도록 개선(전자시스템 보완, 전자서식 개발 등 ; 관세청)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기관별 업무처리절차 및 요건확인서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2004~2005)

Single Window 체제



*집필자 : 이순아 사무관(T.3703-3927, leesa@opc.go.kr)

(6)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 관련 규제개선

① 검토배경

-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방,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1998년 이후 외자 유치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부터 외국인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02년의 경우에는 총량 대비 중국의 1/25, 싱가포르의 1/3에 못미치는 수준
- 국가별 경제규모를 감안 GDP 대비 직접투자(FDI) 누적액 비율도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 저조한 실정
 - 한국 13.7%, 중국 32.3%, 싱가포르 103.8%
- 투자교섭의 중요 수단인 인센티브의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고, 조세지원 위주이면서도 지원 대상 기술 및 업종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실제 투자유인효과 미미
 - 고용창출, 지역개발, 세수확대, 기술파급 등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화 된 지원이 가능한 제도 미비

- 지역 간 형평성을 지나치게 고려,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입지유도를 위한 체계적 지원도 부족
 -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 지구지정제도 및 입주자격도 문제
- 우리의 경쟁상대국 대다수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나 이를 위하여 정부가 강력히 개입
 - 외자유치의 전제조건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며 대립적 노사관계도 커다란 걸림돌
- 열악한 교육여건(수준 높은 외국교수의 부족, 높은 학비 등)과 의료여건(외국어 소통 의료인력 부족, 높은 의료비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유인 미흡
 - 영어사용, 도로안내 표지판, 지도, 번지체계,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등 생활환경이 불편

② 개선방안

① 투자 인센티브 제고

(i) 개선방안

-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인정
 -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민자유치법에 의한 외국인의 SOC투자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감면 추진
 - 미화 1천만 불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귀속시설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완료(2003. 12. 30 공포)
- 현금보조금 지원제도(Cash Grant) 도입
 - 세계지원 외에 하이테크 업종 등의 외국인 총투자비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법률안 반영(2003. 12. 31 공포)
 - 실효성 있는 현금보조 제도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 현금지원기준은 외국인총투자비보다는 실질적인 투자금액으로 정함
 - ※ 중국 : 이윤의 14%, 싱가포르 : 사안별 비공개 지원
- 외국인 CEO 등에 단일소득세를 부과
 - 중국·싱가포르 등 경쟁상대국보다 유리한 소득세 공제제도 시행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총급여액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는 방안과 현행과 같이 각종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중 선택권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2003. 12. 31 공포시행)

(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인정 : 기 조치
- 현금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 기 조치
- 외국인 CEO 등에 단일 소득세율 부과 : 기 조치

② 외국인 산업입지 개선

(i) 개선방안

- 수도권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 허용
 -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1년 간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선별적 허용
· 첨단업종의 공장면적 증설확대(25~50%→100%)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규제와 지방발전,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 * 장기적으로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추진
- 지역별로 전략산업과 연계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의 차등화
 - 예) 충북 오송단지(의료단지로 집중 육성할 필요성과 주변여건 성숙)
-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단지 면적제한(66만㎡) 폐지
-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의 경우에만 50~100% 감면되는 것을 지방산업단지(현재 48개)에 대해서도 확대적용
 -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완료(2003. 12. 31 공포시행)

(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수도권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 허용 : 2004. 2
-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적극 유도 : 2004. 6
- 외국인 전용단지 면적제한 폐지 : 2004. 6
- 지방산업단지 내 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 기 조치

③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전환(수동적 → 능동적)

(i) 개선방안

-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산업·기업 선정하고, 업계·지방자치단체와 협의·조정을 통해 전략산업·기업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환경 및 내부 경제 여건 등을 반영, 매년 중장기계획을 수정·보완
- 외투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결정하면 투자상담, 원스톱(One-Stop)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투자이후에도 문제해결을 요청하면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등 A/S 제공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 소속 직원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
 -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완료(2003. 12. 31 공포시행)
- 지자체별로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차등지원

(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중장기 유치계획 수립, 해외투자유치단의 구성·운영,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A/S제도 도입 등은 계속 추진
- 투자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기 조치

④ 추진체제 개선·보강

(i) 개선방안

-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과 투자상담 등에 애로가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창구로 제도화
 -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외국인투자 위축을 일소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을 규제개혁 위원으로 위촉
- 주한 외국인 투자자(Amcham, EUCCK 등)로 구성된 가칭 「외국인 투자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 정기적으로 「규개위」 또는 「외국인 투자지원 자문위원회」에 외국인 투자 관련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 또는 건의과제 제출

(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의 기능 강화 : 2004. 3
- 외국인 투자자의 상시 의사전달체제 구축 : 2004. 6

⑤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i) 개선방안

-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기업결합대상회사가 소규모기업(예 : 자산규모 50억 미만)인 경우 신고요건을 완화
- 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외투기업의 경우 예외조항을 적용,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지배권 보장
 - ※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 TF』의 중점과제와 병행검토
- 신고납부기한(30일) 도과 후 납기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규정된 가산율(20%)을 차등 적용하여 기업의 세부담 완화
 - ※ 지방세법 개정 완료(2003. 12. 31 공포시행)
- 일본·호주와 같이 본사와 국내 외투법인간의 내부거래 장부내역을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1천만원 이상인 외투기업에 한하여 현행 한국은행 총재 신고에서 외국환은행의 장 신고로 간소화

(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기업결합 신고요건 완화 : 2004. 4
- 외투기업 증가 시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제도의 조건부 적용 배제 : 2004. 6
- 과점주주 변경에 따른 취득세 지연납부 시 가산세 부과율 조정 : 기 조치
- 국내 외투기업과 해외본사간의 상계처리절차 간소화 : 기 조치

⑥ 노동 유연성 제고

(i) 개선방안

- 현행 의무 고용토록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비율(3~8%)을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3~5년간 배제토록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부담 및 애로해소
 - ※ 다만, 동일자격의 근로자일 경우 보훈대상자를 우선 고용토록 유도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징계권 행사,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엄격 적용 등 사용자 스스로 노조의 책임을 묻는 관행 확립
-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관행 개선 및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착 등 노사 선진화
- 파업 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직장폐쇄 요건 및 대체근로제한 완화방안 강구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제한(현행 2년)을 연장하는 방안강구

- 조정제도 개편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시스템 구축
-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주의 임금체계 등의 확산 방안을 강구
- 파견 직종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파견 근로제도 개선

(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한시적 배제 : 2004. 12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 관계 제도 확립 : 2004. 12
- 기업단위 노·사 협의회의 활성화 : 2004. 6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2004. 12

⑦ 생활환경 개선

(i) 개선방안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외국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외국인 학교를 내국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외국교육기관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정 등 공론화 추진
- 외국인 또는 외국 거주 5년 이상의 내국인만이 입학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보완
 - 우선 외국 거주기간을 단축(5년→3년)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 각 시·도 소재 1~2개 종합병원에 대해 외국인전용 클리닉 개설 권유
 - 외국인전용 클리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현재 외국계 방송 채널비율을 우선 20%까지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철폐하여 시장 원리에 따른 방송유도
- 주파수 전송방식 개선(예 : FM방식에서 DMB방식으로 전환) 등을 통하여 조속한 방송 실시 추진
 - ※ 제주도의 경우 기존 FM방식으로 2003. 9. 1 개국
- 공중파 방송·아리랑 TV의 생활영어 프로그램 증편 및 EBS의 영어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외국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지문채취제도를 폐지
 - 1년 이상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
 - ※「출입국관리법」 개정완료(2003. 12. 31 공포시행)

(ii) 필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 외국인학교 증설 및 내국인 입학허가 : 2004. 12
- 외국인전용 클리닉 개설 확대 : 2004. 6
- CATV의 외국방송 시청규제 완화 : 2004. 12
- 영어라디오 방송국 조기 설립 추진 : 2004. 12
- 내국인의 생활영어 사용능력 함양 : 2004. 12
-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개선 : 기 조치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 (T.3703-3938, kjyoung@opc.go.kr)

3. 국민생활분야

(1) 건축규제 합리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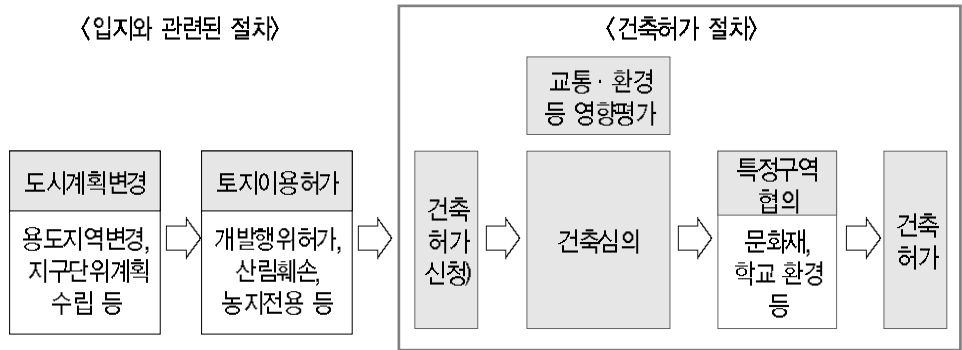
① 검토배경

-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하여 약 80여 개로서, 개별법령상의 이행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심의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저해
 - 건축허가절차 자체는 외국사례 등에 비추어 복잡하지 않으나, 집행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다른 법령과의 체계성 미흡으로 건축허가 자체가 복잡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
 - 건축 관련 심의는 약 10가지에 달하고, 소요기간은 최장 2~3년이 소요

※ 각종 건축 관련 심의 종류

도시계획심의, 수도권심의, 교통영향심의, 환경영향심의, 건축심의(야간경관심의, 굴토심의, 미술장식품심의), 학교환경정화심의, 문화재심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 등

건축 행정절차 관련 주요과정



- 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대량 발생하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2001년에 건축 허가된 146천동 중 26천동 분쟁 발생(약 18%)
- 안전 관련기준은 국제기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여 위험발생요인이 상존하고, 비상시 효율적인 대응체제 부족
- 규제의 실효성 미비로 인해 위법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

전국의 위법건축물 현황

(단위 : 동)

연도	계	1998년 이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발생	756,701	630,887	31,136	25,462	28,475	40,741
정비	596,703	492,269	29,439	21,150	23,826	30,019
잔존	159,998	138,618	1,697	4,312	4,649	10,722

② 개선방안

① 건축허가절차의 개선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일반적으로 토지구입 및 설계도서를 마련 후 토지이용허가를 건축허가와 함께 신청하고 있으나, 부지에 적용되는 입지기준 부적합으로 토지이용허가가 반려되는 경우 사업자는 건축추진 차질 및 설계비 등의 경제적 손실 초래

- 건축공사 인·허가 시 문화재 유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경우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받도록 하고 있음
 - ※ 시·도별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
 - 국가 지정문화재 : 서울시 100m / 광역시 200m / 도 500m
 - 시도 지정문화재 : 서울시 50m / 광역시 200m / 도 500m
 -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허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함(다만, 도시지역 안의 제한보호구역 등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장에게 기 위탁)
 - 그러나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협의요건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법정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이(통보기한만 규정)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원불편 초래
 - ※ 처리 후 통보기한(「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제5조)
 - 국방부장관 접수민원 : 35일
 - 관할부대장등 접수민원 : 10일(자체처리 불가의 경우 25일)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건축계획·구조·피난·안전·소방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성 증대에 효과가 적고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운영기준이 미흡하여 객관성이 부족함
 - 건축위원회가 이익단체 인사 등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운영도 상당수가 비공개로 진행
 - 심의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심의시기도 시·도별로 다름(건축허가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이미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중복 심의하는 사례도 발생
 - 건축법상 복합 민원(14종)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실제로는 각 부서와의 협의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서면협의 시 과도한 조건이 부수됨(예, 도로개설 기부채납 조건 등)
- (ii) 개선방안
-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입지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건축법」 개정필요)

- 사전결정시에는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의제처리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정
-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정하기보다는, 동 범위 내에서 문화재를 유형, 입지여건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 객관적인 심의기준 마련
- 건축 관련 협의처리기한을 신설하고, 건축가능 높이 등 계량적 기준을 도입하여 심의과정의 객관성 제고
 - 협의처리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처리기간 준수방안 검토
- 건축심의 내용을 ‘건축계획’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구성, 심의시기·방법·기준 등의 위원회 운영을 대폭 개선
 - 위원구성 : 전문성이 없는 이익단체인사 등은 원칙적으로 배제
 - 심의방법 : 건축주 참여 및 공개심의 의무화, 심의위원 실명제 등 도입
 - 심의기준 : 심의기준을 정립하고 세부기준은 조례로 제정
 - 심의시기 :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명확화
 - 심의대상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미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개별 건축물 허가 시에 건축심의를 생략 할 수 있게 함
- 복합민원 일괄처리를 위한 협의회의체를 신설·운영하여 일괄설명 및 과도한 법령미 근거 조건 부과 금지
 - 협의회에 해당 건축주(또는 설계자 등)를 참여시켜 사업 설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민원1회 방문제도 정착
 - 회의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관련서류검토,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 협의 및 보완기간 명확화
 - 복합민원협의회에 소방담당자를 참석시킴

② 건축기준의 합리적 조정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안전 및 피난관련 건축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크고,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상존
 - 높이 41m 이상의 건축물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높이 31m이상은 고가차량 부족으로 피난(구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2003. 6 현재

31m 이상 고가차량 : 179대)

-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전람장, 서커스장 등)에 대한 최대 사용기간이 없어, 연장 신고만 하고 거주·집무·작업등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하층에 다중이용시설 설치가 확대되어 지하 4~5층에 무창 층 형태로 충분한 피난 통로 없이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 추세
 - 대수선(건물 주요부의 수선)은 신고사항으로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문가에 의한 설계 및 감리를 시행하지 않고, 대수선의 개념에 경계벽의 수선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구조안전이 소홀
 - 우리나라는 지진구역으로서 연평균 약 50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나 내진설계는 아래의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 지진구역 I의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천㎡ 이상인 위험물저장시설 등
 -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공연장 등
 - 현재 건축물은 22가지의 용도로 분류되고, 용도별로 해당 건축물의 종류(115종)를 규정
 - 건축물의 용도는 구조안전 및 소방·내화기준, 피난설비 등의 건축기준과 시설·입지기준을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하나
 - 과거에 용도변경의 절차 간소화만을 위하여 용도를 22가지로 통합하면서 용도별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혼란을 초래
 -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 중이나 허가권자에 소속된 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많아
 -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지 않고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허가권자(시·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경향
- (ii) 개선방안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의무화 높이를 31m로 강화하고,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최대 사용기간을 제한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별도의 피난통로 확대를 의무화함
 - 세대 간 경계 벽의 신설 등의 경우를 대수선에 포함하고, 건축허가대상 규모의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 내진 기준을 구조계산 대상인 3층 또는 1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적용(단, 축사·

창고·식물관련시설 등 제외)

- 현재 22개의 건축물 용도를 필요건축기준 등을 고려하여 상호연계가 있는 28개의 용도로 세분화 및 조정

건축행정절차 관련 주요과정

현 행		개 선 (안)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람집회시설
판매 영업시설	⇒	종교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판매 영업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공용 시설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변동 없음	⇒	공공용 시설
		방송통신시설
	⇒	기타 18개 용도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방법, 절차, 기구 등의 개선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 인접건물 균열피해 발생 시 공사 중지 등 균열피해 등에 대한 처리방법을 명시
 - 직권조정기능(裁定機能) 부여를 통해 조정활성화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시·군·구 및 시·도 → 시·도 및 건교부로 변경하여, 차 상급기관에서 분쟁조정 처리

③ 건물 관리체계 구축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허가받은 설계 도서를 건축현장에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사의 품질확보, 적법 시공여부,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
 - 실시설계도 또는 시공 상세도 없이 허가와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준공 도서의 미 작성 또는 작성이 형식적
 - 설계도서 작성 및 보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건축물의 현황 파악이 어렵고 방

재 및 안전관리 활용 불가능

- 현행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전화·수도·가스의 공급자에게 설치 또는 공급중지를 요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또는 기타의 행위허가를 금지할 수 있음
 - 그러나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군구 간에 처리실태나 절차가 상이
 - 먼저 시정 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시정명령 없이 고발을 하거나,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만 반복 부과하는 사례가 있음
 - 전기·수도·전화·가스 공급 거절은 위험성이 있어 사실상 미집행

(ii) 개선방안

- 건축시공현장에 설계도서 비치의 의무화하고, 설계변경내용이 포함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전에 제출하며, 설계도서는 행정관서, 설계자(또는 건축사협회) 등이 보관
- 위반건축물 발생시 행정처리 절차를 개선
 -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개선
 - 전기·수도·전화·가스의 공급을 금지하는 것은 생존권차원의 위험소지가 많고,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삭제
 - 이행강제금의 누진부과방안 마련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여 매매 등에 불이익을 유도함으로써 자진시정 유도

*집필자 : 이진원 사무관(T.3703-2160, ljw0516@opc.go.kr)

(2)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① 검토배경

- 1934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국토를 관리
 - 200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정 시 계획관리 방식의 적용을 일부 확대
 -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문제는 곧 지역지구제의 운영에 따른 문제로 귀결
- ※ 토지이용규제의 두 가지 방식
 - 계획관리 방식 : 개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통해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식(유럽식)
 - 지역지구제 방식 : 사전에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한 용도지역·지구 등을 정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방식(한국, 미국, 일본이 채택)
- 지역지구제 관련 현황
 - 2003. 4월 현재 112개 법률에서 총 298 종류의 지역지구를 설정
 -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52종류
 - 111개 개별 법에 의해 지정되는 개별구역이 246종류

용도지역·지구 현황

구 분		면 적	지역·지구	면 적
국 토 계 획 법	용도지역	105,840km ² (해면 5,973km ² 포함) (국토면적 99,774km ² 의 106.1%)	도시지역(16종) 관리지역(3종)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16,137km ² (15.2%) 26,344km ² (24.9%) 63,358km ² (59.9%)
	용도지구	1,862.8km ² (국토면적의 1.9%)	경관지구 등 28종류	-
	용도구역	7,986.7km ² (국토면적의 8.0%)	개발제한구역 등 3종류	-
개별구역		343,366km ² (국토면적의 344%)	246개종 128개 지정현황 파악 가능	-

-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으로 결정·지정된 용도지역·지구에 개별 법에 의한 지역지구가 과다하게 중복 지정 됨
 - 전체 지역지구에 의해 지정된 면적은 전 국토의 약 460%로써 한 필지당 평균 4.6개의 지역지구 지정
 - *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8개의 지역·지구가 중첩
 - 지역지구의 과다지정은 지역지구 종류 수와 비례하는 관리업무 및 조직 증가로

-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구역지정 목적 및 성격은 유사하나 지역지구별 행위 규제내용의 차이로 인해 규제의 형평성 문제 유발
 - 일부 개별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와 무관하게 설정
 - 보존과 개발 등 서로 상반된 목적의 개별구역이 동시에 지정
 - * 예 : 개발제한구역(보전용도)에 온천지구(개발용도)의 지정
 - 지역지구 지정후의 주변여건변화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불합리한 개별구역 존재
- 토지이용계획 없이 지역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50% 이상이고, 지정원칙 및 기준이 없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결여로 난개발 문제 초래
 - 지역지구의 구역경계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나, 약 45개의 지역지구가 구역경계 설정기준이 불명확
 - 약 80개의 개별구역이 행정편의 위주로 지형도면의 고시 없이 지정됨으로써 구역경계가 불분명하여 민원 야기
 - * 지형도면의 고시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에 지역·지구 등 설정내용을 표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
 - * 134개 지역지구에 대한 조사결과, 지형도면의 고시 등 열람, 고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4개에 불과
- 국토계획법은 국토 전반의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중심적인 역할 담당 부족
 -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일부 개별 법에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계획을 초월한 구역지정을 허용
 - 국토계획법에서 산림법 등 개별 법에 특정지역(보전임지 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위임함으로써 통합적, 체계적인 국토관리에 한계
- 보전성격의 개별구역을 지정할 경우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지정권자인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나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 기본적인 절차 없이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 * 예)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군사기밀보호관련 구역 등

② 개선방안

① 지역지구제 운영의 투명화·객관화

(i)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개별구역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고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어떤 구획이 지정되어 있는지 모를 뿐 아니라, 행위규제의 적용경계가 불명확
- 토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지구제 관련부처에 종합적인 지역지구운영계획 수립을 권장할 필요
 - 개별 법에 의해 각종 개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정하던 개별구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개발하도록 하여 국토의 체계적 관리 유도
 -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구역을 계획대상(도시계획)으로 전환할 경우 개별구역의 과다 또는 중복지정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가능
- * 현재 택지개발지역 등 개발관련 개별구역은 36개 법률에 의한 45개에 이르며, 이러한 특별법 위주의 개발 및 정비사업 등이 용도규제중심의 국토관리 기본 틀을 훼손하였고 심지어 도시의 기형적 발전을 초래

(ii) 개선방안

- 기존 및 향후 지정될 개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를 의무화
 - 2004년부터 지형도면고시 작업 추진
- 국토계획법에 의해 각 부처가 개별구역 지정을 건교부와 협의하는 과정 및 규제심사 과정에서 반영
- 다양한 토지이용과 규제현황을 필지별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 추진
 - 동시에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내용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를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행위규제 내용의 DB화 추진
- 일정한 기간 내에 실제 개별구역의 지정이 없거나, 지정 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지역지구 지정근거 또는 지정이 실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실효제 도입
 - 개별구역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지정성과를 평가하여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
- * 국토계획법에 의해 각 부처가 개별구역 지정을 위해 건교부와 협의하는 과정 및 규제심사과정에서 반영
- 개별구역 지정 사례조사 및 개별구역의 행위규제 유형분석 등을 통해 유사한 지정목적이나 행위규제 내용을 가진 지역지구를 통합할 필요

- 245개 개별구역 중 행위규제가 포함된 55개 법률에 의한 95개 개별구역 중 특정 시설 및 환경 보호 등 용도지역·지구의 보안을 위해 지정되어 중첩규제와 직결된 23개 분야, 81개 개별구역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에 의해 개별구역의 지정목적 달성할 수 있는 개별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로 통합·정비방안 검토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로 통합정비가 불가능한 개별구역은 유사한 개별구역끼리 통합·정비방안 검토
 - * 2004년부터 “지역지구운용실태에 대한 세부점검”을 거쳐 “지역지구 통폐합” 본격 추진
- 군사목적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무시한 구역지정을 금지하고, 개별구역의 지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의 사전변경 후에 지정토록 유도
 - 현행 개별법률상 국토계획법을 초월하여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반 규정들을 개선
 - * 2004년부터 추진예정인 지역지구 통폐합 정비시 동시 추진
- 장기적으로는 계획적인 국토관리를 위해서 현행 용도규제중심의 국토관리에서 서구와 같은 계획중심의 국토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집필자 : 이진원 사무관(T.3703-2160, ljw0516@opc.go.kr)

(3)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방안

① 검토배경

- 소득수준 향상 및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관광·스포츠 등 레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효과가 큰 관광·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규제개선과 지원 강화 필요

② 개선방안

① 관광 인프라 확충

- 주 5일제 확산으로 증가되는 가족 숙박형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중 저가형 호텔·펜션(pension)·캠핑 사이트(camping site) 등 숙박시설 확충
 - 중저가 숙박시설 사업화 모델 및 예약 S/W 시스템 개발·보급
 - Ibis, 데이지 인 등 세계적인 중저가(100불미만) 체인호텔의 유치
 - 여관·민박·펜션 등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증제 실시로 건전한 숙박 문화 조성
 - 국립공원 등에 전기·수도시설 등이 설치되고 레저차(RV) 주차가 가능한 캠핑 사이트 설치
- 대규모 관광단지 및 숙박·문화·쇼핑 등 복합문화 관광·레저 단지 조성사업 추진 활성화
 - 수도권 내에서도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지역특화 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레저 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추진 (233개 문화관광특구 신청)
 - 외자유치를 통하여 제주·인천·전남 신안 등에 호텔·테마파크 등 대규모 국제 관광단지 조성 지원
-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발 및 주변지역과 연계 관광 상품 개발
 - 부산 북항·제주에 전용터미널을 건설하고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

②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 인접국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세 영세율 기한(2003년 말)을 연장 및 세제지원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는 경영분석과 여건변화를 고려한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 관광호텔에 대한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요금체계 적용과 고효율·절전 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 * 전압별 요금제 채택에 따라 업종별 전기요금 격차 축소예정이므로 에너지 효율향상 설비 개체에 자금 지원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 관광숙박시설 건설을 위한 지원 확대
 -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중저가 호텔 건설 및 보수 지원
 - * 용자 시 대출금리(1~2%), 상환기간 우대 등
- 관광호텔 등에 외국인 구사능력 등을 갖춘 외국인력 고용 허용 검토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2004. 8)에 관광호텔 분야 고용규모 및 허용기준 등을 포함

③ 관광상품 개발

- 전통문화, 테마관광, 지역특화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의 적극 개발
 - 사찰여행(Temple Stay), DMZ 안보·생태관광, 백두대간 종주 등 산행 패키지(Package) 개발, 설악산-금강산 등 남북한 연계 상품 등 한국적 특수성을 가미한 관광상품 개발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 지역별 특화된 문화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외래 관광객 유치에 위한 노력 강화
 - 중국·일본·유럽·미국·동남아 등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유치 전략 수립 및 마케팅 강화
 - 외국인 여행업자 초청 홍보를 통한 홍보거점 마련 및 한국 관광상품 소개를 위한 이벤트(국제적 규모의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실시
 - 한·중·일 관광교류 협력을 통한 동북아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추진

④ 관광 서비스 산업 활성화

- 관광여행업계의 자율경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여행업종의 다양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 우수 관광 프로그램 개발 여행사 포상 및 단체여행 유치시 사증발급 및 출입국 편의 제고
- 관광종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광통역, 문화유산해설의 고급인력 양성 및 경력 인증제 실시
 - 관광공사에서 관광안내 전문가 과정 운영 및 관광지 등에 배치 활용
- 관광수요 창출이 높은 국제회의 유치노력 강화
 - 컨벤션시설 건설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 유치와 관광을 연계하는 서비

스 및 마케팅 강화

⑤ 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의 건설 확충
 - 실내 테니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일반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 공공체육시설의 개장시간 연장 및 부대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
 - 운동장 부지 10만㎡ 이상 또는 1천 석 이상 관람석을 갖춘 종합운동장에 헬스·수영장·인라인 스케이트장·스포츠용품판매점 등 체육관련 수익시설 설치 허용
 - ※ 도심의 헬스 체육시설과 야외의 대형 체육시설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활용, 국민건강 체육 활동기회 확대
- 요트·조정·카누·빙상·승마·종합체육 시설업 6개 업종을 등록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전환하여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유도
 - 지자체의 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의 균형배치 등을 통해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
- 기 수련 등 전통적인 신체수련활동에 대한 진흥방안 마련

⑥ 골프장·스키장에 대한 규제완화

- 해외 골프관광의 국내 전환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 확대와 관련 규제를 완화
 - 골프장·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 규제를 폐지하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원형보전지(골프장 20%→25%, 스키장 25% 신설)를 조성·확보토록 규제
 - 골프장 건설 확대를 위해 조례로 지방세가 감면되는 골프장에 대하여 특소세를 감면해주고 숙박시설 면적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가족단위 관광수요에 대응
-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통해 지방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시 토지이용 등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 골프장 비교 : 미국 17,000개(인구 14,000명당 1개소), 일본 2,500개(인구 52,000명당 1개소), 한국 225개(인구 21만 명당 1개소), 영국 2,000개(인구 28,000명당 1개소)

⑦ 스포츠 마케팅 등 스포츠 산업 발전 유도

-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 스포츠산업의 대상과 범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운동경기와 이벤트 연계 등 스포츠 마케팅사업 활성화와 마케팅 전문 인력 육성
 - 민·관 합동의 스포츠 이벤트 사업 추진위를 구성·운영하여 스포츠 경기 유치 및 생활체육 발전 도모
 - 지자체 별로 체육시설 관리, 경기유치, 중계권 협상, 라이선스 등 스포츠 마케팅 전문 인력 확보
- 운동장 명칭 사용권(Naming Right) 판매제도 등을 통해 지자체 등 공공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사업과 경기장 운영 활성화 유도
 - 올림픽 주경기장 및 상암 월드컵구장 등 수요가 있는 운동장부터 민간에 명칭 사용권 판매 실시
 - * 미국 델타항공이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주경기장의 구장 명칭권을 구입하여 사용(2011년까지 연간 130만달러)
- 체육용구·기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 체육용구 인증제 실시를 위한 표준규격 개발 및 공인 시험기관 지정 운영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03-3938, kjyoung@opc.go.kr)

제2절 _ 기존규제 일제정비

1.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998년에 발족된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의 기존규제에 대하여 1998년, 1999년 2회에 걸쳐 기존규제의 50%를 감축한 바 있다. 당시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취해졌고, 국제사회에서도 획기적인 정부개혁조치로서 많은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존규제 50%의 정비조치는 규제개혁이 양적으로 한정되어 추진되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 2차 기존규제 일제정비를 끝으로, 기존규제에 대한 전수정비보다 개별 주제별 개혁방안 마련, 신설·강화 규제의 사전억제 작업 등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존규제는 2003년 말 기준으로 2천여 건이 다시 증가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제들을 정비하고자, 부처별로 기존규제를 전수정비토록 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일률적인 50% 감축목표 설정보다는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정비토록 하였고, 정비율이 높은 부처에게는 포상 및 정부업무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 조치를 뒤따르도록 조치하였다.(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2003. 4. 29)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39개 중앙행정기관은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체 7,855건의 규제 중 폐지 172건(2.2%), 개선 487건(6.2%) 등 총 659건 정비로서, 규제정비율은 8.5%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기존규제 정비 50%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로서, 부처 자율적인 규제정비의 한계를 나타냈는데, 그 원인은 기관장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 규제개혁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부처별 기존규제 정비계획

(1) 39개 부처 규제정비계획 총괄표

부처별	정비대상 규제수	정비내용				이월규제
		폐지	개선	존치	기타	
총계	7,855	172	487	6,922	274	7,409
건교부	793	4	44	729	16	773
공정위	161	0	9	152	0	161
과기부	207	0	2	203	2	205
교육부	226	2	27	151	46	178
국방부	14	2	0	12	0	12
금감위	544	4	28	503	9	531
노동부	369	11	27	308	23	335
농림부	501	6	12	482	1	494
문광부	266	15	13	238	0	251
법무부	126	1	1	124	0	125
복지부	783	20	29	734	0	763
부방위	3	0	0	3	0	3
산자부	427	4	18	385	20	403
여성부	37	1	3	33	0	36
외통부	31	1	6	24	0	30

부처별	정비대상 규제수	정비내용				이월규제
		폐 지	개 선	존 치	기 타	
재경부	405	5	26	323	51	349
정통부	256	13	30	213	0	243
통일부	33	0	0	19	14	19
해수부	570	6	25	539	0	564
행자부	344	9	38	297	0	335
환경부	615	0	59	556	0	615
경찰청	240	33	27	180	0	207
관세청	147	8	3	66	70	69
국세청	20	0	2	16	2	18
기상청	14	0	0	13	1	13
농진청	8	1	2	5	0	7
문화재청	75	0	3	72	0	75
방송위	33	0	5	28	0	33
병무청	27	0	1	26	0	27
보훈처	46	0	8	38	0	46
산림청	151	4	4	128	15	132
식약청	138	5	25	108	0	133
조달청	11	0	3	7	1	10
중기청	60	7	0	53	0	53
철도청	28	8	0	20	0	20
청보위	27	2	6	19	0	25
통계청	4	0	0	4	0	4
특허청	42	0	0	39	3	39
해경청	73	0	1	72	0	73

(2)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의 주요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

① 독점규제분야

- 기업결합제도 관련
 - 계열사간 임원 겸임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
 - 기업결합시 피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지주회사제도 관련
 - 회사의 분할 등 공정거래법령 상에서 열거된 유형에 대해서만 지주회사 전환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
 -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부채요건 유예기간을 연장(1년→2년)
 -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을 요건 완화(50%→30%)
 - 손자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 유예기간을 인정(2년)
-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관련
 - 현행 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2003. 6. 3)
- 과징금제도 관련
 - 과징금 부과대상 판정기준, 가중·감경기준 및 과징금 산출근거 등을 외국사례와 최신이론을 반영하여 객관화·투명화
- 법 위반사실의 공포 관련
 - 헌법재판소가 '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수정

② 공정거래분야

- 경품류 제공범위에 대하여 기업의 판촉활동 활성화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여부 검토
- 하도급 대금지급시의 지연이자율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 없이 공정위 고시로 정한 사항을 법률에 범위를 구체화(연 100분의 40 이내)

③ 소비자보호분야

- 전자상거래 상의 소비자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사업자의 통지의무를 개선추진

② 금융감독위원회

① 보험부문

- 보험사업의 개시요건, 임원겸직제한, 자산운용방법 및 비율제한 등 경영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
- 관리기관 해제 인가 등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 폐지

② 비은행부문

- 종금사 거래어음 만기제한, 무담보어음 매출제한 관련 규제 완화 등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차입한도 규제 완화 (※ 법개정 완료, 2003. 10. 30 시행)
-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제한 등에 관한 규제 완화

③ 증권부문

- 증권회사의 주식청약자금대출,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등의 업무 방법에 관한 규정을 자율규제(표준약관)로 위임 등
- 투자신탁(위탁회사)의 사모사채 투자한도 제한 완화
- 전자공시 확대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부담 경감

④ 신탁부문

- 신탁재산 운용대상 확대, 동일인대출한도 산정기준 변경 등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제한 완화

⑤ 기타

- 중복 또는 기 폐지된 규제의 등록 폐지

③ 청소년보호위원회

- 복합유통·제공업 등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하고, 음반판매업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동성애' 규정 삭제
- 외국 간행물 납본의무 폐지
- 청소년의 접속을 제한하지 않는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사이트 광고 금지

- 매체물의 범위에 일반 일간신문을 포함하고, 일정기간 일정회수 이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근거 규정 신설
-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행위별로 세분화시키고 기준액도 하향 조정

④ 재정경제부

① 폐지규제 : 56건

-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폐지
-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소 설립허가 폐지
- 증권거래법상 코스닥위원회의 설치·운영 폐지
- 담배사업법상 특수용담배의 공급 및 표시 규제 폐지
- 국가계약법상 부대입찰제 규제 폐지

② 개선규제 : 21건

- 공인회계사법의 “공인회계사의 등록” 관련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단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 제한” 관련 원칙적으로 규모의 제한을 폐지하되 대형금융기관(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8천억원 이상)만 제한으로 개선
-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상계절차 간소화 및 해외체제·유학비 반출절차 간소화
- 국가계약법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관련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범위를 30억원 미만 공사계약에서 40억원 미만 공사계약으로 변경
 - 지역 의무공동도급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계약에서 고시금액 미만 공사계약으로 변경
 - 원가계산기관의 등록시 등록요건을 마련하여 원가계산 기관 난립에 따른 부실원가계산 문제 해결
- 세무사법의 “세무사의 계쟁권리 양수금지” 관련
 - 기존에 세무사 계쟁권리의 양수를 금지하였던 것을 세무대리인과 위임인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쟁권리의 양수를 허용
 - 직무정지 위주의 중징계처분에 견책을 추가하여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른 다양한

- 처분을 통하여 세무대리질서를 제고
- 관세법의 “내수용 보세공장 업종 지정” 관련
 -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환경보전·국민보건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의 제한으로 충분하므로 삭제
- 소비자보호법상 위해정보 보고기관을 당초 175개 기관에서 57개 기관으로 축소하고 소비자단체 등록요건 구체화(1년 이상의 소비자보호활동실적 제출 등)

⑤ 교육인적자원부

① 지방분권 및 교육 자율화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 초·중등교육법 관련 규제 개선(지방이양 사무)
 - 초·중등학교의 2학기 수업시기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추진
 - 유치원·초·중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 관한 규정을 자치단체 법규로 정하도록 함
- 학교급식법 관련 규제 개선(지방이양 사무)
 - 학교급식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② 자격기본법 개정

-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개선
 - 법률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 폐지
 - 법령 위반시 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 자격정지 근거 폐지
 -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간소화

③ 학원설립 운영제도 관련 규제 개선

- 성인대상 학원에 대한 강사자격기준 폐지 및 미성년자 대상학원에 대한 강사자격기준 완화
- 성인대상 학원설립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 7개 분야 79개 교습과정으로 제한된 학원교습과정을 자율화하고 금지교습 과정만을 정하도록 함
- 학원설립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
- 교습 과목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

④ 고등교육분야 규제개선

- 대학학칙 보고 제도 개선
 - 대학학칙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시정요구권을 법률에 둠
- 대학에 대한 벌칙 규정 개선
 - 대학이 법령에서 위임된 학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대학에 대한 휴업·휴교명령의 조건을 구체화

⑥ 통일부

- 과도하게 세분화된 규제를 주된 분야에 통폐합
 - 방문기간 연장승인 →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 휴대금지품의 금지 → 남북한 왕래 심사
 -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자 승인취소 → 협력사업자 승인 및 취소
 - 협력사업 승인, 협력사업 조정명령 → 협력사업 승인 및 조정명령
 - 사무소 설치 승인, 사무소 폐지 신고 → 사무소 설치 승인 및 폐지 신고
- 남북협력기금 신청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규제 통합
 - 손실보전 약정신청, 손실보조 신청, 채무보증 신청, 금융기관 손실보전신청, 금융기관 용자자금 지원신청 등 9개 규제 → 남북협력기금 신청

⑦ 외교통상부

-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장하여,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데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해외여행에 편의를 증진함
 - 여권재발급 수수료 45,000원에 비하여 유효기간 연장은 4,500원으로 경비 절감)
-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및 등록취소, 사업장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이주알선업 변경 등록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토록 해외이주법 개정

⑧ 법무부

-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개선
 - 현행은 20세 이상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지문을 찍도록 규정
 -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외국인의 체류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외국인 등의 편익을 증진함

⑨ 국방부

- 군납 희망업체에 대한 군납 안전진단 폐지
 - 가공식품류, 의약품류, 화공약품류, 개인장구 및 군 특수복지 등 361개 품목에 대한 군납 안전진단 절차의 폐지로 연간 1,200여 개 업체의 군납참여 희망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계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든 업체가 자유롭게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 군납 참여절차를 대폭 간소화 및 군납업체와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여 부정·부패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 대군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
-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규제 중 “허가증의 분실, 훼손, 도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시 재교부 신청”은 폐지함으로 불필요한 절차 생략으로 행정간소화
 - 업체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 신청은 자유의사이므로 규제를 폐지

⑩ 행정자치부

- 토지이동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과태료(50만원 이하) 부과 폐지
- 제조소 등의 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법인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던 것을 폐지
- 소방시설공사업 등 소방 관련업의 행정처분을 승계자에게 승계토록 조치하던 것을 폐지
- 소방대상물에 대해 현행 법정 소방검사횟수 규정을 폐지하고 민간 자율 소방검사체제로 전환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대상을 화재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
- 유·도선사업자는 승선료, 대선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던 것을 사용자가 매표소 등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토록 개선
- 기부금품 모집시는 행정자치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모집자의 편의와 지방 위임권한의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 허가금액한도를 3천만원 이하에서 10억원 내외로 상향 조정
-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토록 되어 있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
-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비공개대상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의 구체화

11 과학기술부

- 현재 발전용원자로의 방사선비상계획수립 및 조치에 관한 기준(과기부고시)에 방사선방재합동 훈련은 원전부지별로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일원전부지에 건설되는 제5번째의 원자로부터는 별개의 부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훈련을 3년에 2회 실시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3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는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입주승인신청서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단축

12 문화관광부

- 문예진흥기금의 모금 폐지(2003년 말)에 따른 관련 규제 폐지
 - 기금모금 납부 및 납부실적 자료제출 폐지
 - 문예진흥기금 모금의무 위반자 및 관련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
- 영업자가 협회 또는 단체 설립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

도록 함

-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 자격기준의 결격 사유 중 주소 요건을 삭제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외 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면제토록 개선
- 영화필름 등의 제출의무관련, 보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영화의 경우 영화필름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함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 완화, 양성교육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를 과도하게 제한(승부식, 점수식, 혼합식)하여 시장상황 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을 추가
-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시장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농구, 축구외에 장관이 정하는 종목을 추가함
- 등록대상 체육시설업의 일부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전환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실 대관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 확보

⑬ 농림부

-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가 계약생산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낙농가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낙농진흥회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
-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거래품목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 등에 규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도록 하던 것을 규제보다 장려정책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
- 시장·군수는 조사결과 부실초지에 대하여는 그 초지관리자에게 시정토록 지시하던 것을 폐지하고 시·군에서 행정지도로 사후 관리토록 함
- 구제역 방역당시 모돈 및 소종축에 대한 보상기준 및 한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체중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임신우·거세우 등으로 보상기준 현실화
- 지정검역물의 수·출입시 검역시행장 지정 및 변경신청서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를 총 출자액의 1/2을 초과

- 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7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외국인 농업연수제 적용범위를 연수생 대상업종 추가, 연수배정기준의 영농규모 하향조정, 배정한도 확대 등 개선

14 산업자원부

① 무역분야

-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조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 및 경쟁확보
- 수출입조정명령 발동요건의 명확화

② 에너지분야

-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사석유제품의 단속 강화
- 석유위기 시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능력 강화
- LPG연료사용제한 규정 완화(국가유공자, 장애인)

③ 산업분야

- 특정물질의 수급조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조정
-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변경허가, 지위승계신고 등에 제출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전자서식화
- 대규모유통점포 등록업무 지방이양(시·도 → 시·군·구)
- 유통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재정적 지원 확대
- 대규모유통업체와 영업관련 분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권한 부여하고 분쟁대상에 주민생활환경권도 포함
- 유통산업법 관련 과태료 현실화

15 정보통신부

① 규제의 실효성이 적거나 중복되는 규제의 폐지

-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개발투자 등 기간통신사업자 기금출연은 허가조건 출연과 권고출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권고출연금제도를 폐지
- 공사목적물의 소유자가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설계도서를 보관토록 의무화한 것

- 을 자율적으로 보관·운영토록 폐지
- 우편업무 집행중 도로장애로 담장 등을 통행하여 발생한 손실 등의 보상은 민법으로 해결가능 하므로 제척기간을 폐지
- ②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관련
 - 지정시험기관의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취소·업무정지 외의 제재수단이 없어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신설
- ③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일 방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제를 강화
 - 영리목적의 전자우편 등이 표시해야 할 정보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
 -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ISP등 주요 사업자의 조치기준 등을 정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점검
- ④ 절차·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규제운영의 투명성 제고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조사·시험의 시행요건을 규정

16 보건복지부

- ① 보건 의료분야
 - 의료기관 운영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전공의 임용 및 해임 보고의무 규제 폐지
 - 고가의료장비 설치 승인 및 심사대상 품목 지정 규제 등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과 성격이 중복된 규제로 폐지
 - 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권을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장에게 이관
 - 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시 필요로 하는 인력기준중 공통기준인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삭제 개선
 - 약국 재개업시 신고 규제를 삭제하고, 폐업이나 휴업시 휴업기간 명시하여 신고 등으로 개선
 - 화장품 과대광고 금지 등 관련사항을 화장품법으로 관리·개선
 - 불량 의약품 폐기 명령시 업소에서 직접 폐기 가능하도록 개선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에서 마약류 제조를 위한 기계 제조업자를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선
- 식품제조·가공·판매업자의 청량음료 등 용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과 관련하여 정비
- 신생아 이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및 기록보존, 보고 등의 의무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
- 위생수준 서비스 평가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
- 격리병사의 대용 지정 및 제1종 전염병 예방조치, 제1종 전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부 이양하는 등 개선

② 사회복지분야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신청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복지행정 DB로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 폐지
-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에 대해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을 정하던 것을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적정비용을 수납할 수 있도록 개선
- 재해구호의 주체가 민간단체로 바뀜에 따라 민간단체의 재해구호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제를 폐지

③ 사회보장분야

-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법령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구)의료보험법 관련 규제의 폐지

17 환경부

- 인·허가절차 등 국민에 불편을 주는 과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요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14건
- 규제기준·방법을 현재의 기술수준 및 배출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
 - 총질소·총인 배출허용기준의 업종별 차등 적용방안 마련 등 30건
- 법령 미근거 규정의 폐지 또는 상위법령화
 - 고시에 의한 공원 원상회복 예치비용의 부과내역 상위법령화 등 5건

- 법령간 중복 또는 이중규제의 해소
 -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폐수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등 3개 규제
- 기타
 -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방법 개선 등 7개 규제

18 노동부

① 고용정책분야

- 근로자파견사업의 변경허가의무 미준수, 폐지신고 미이행, 파견사업관리대장 및 사용자사업 관리대장 작성·보존 규정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수준을 재검토

② 노동보험분야

- 중복·유사 규제 통합 관리
 - 부정수급, 개산·확정보험료 보고, 고용보험 사무조합 인가내용변경·폐지신고 등
-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완화
 -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주기 완화(14일 이내→다음달 15일)
 - 하수급 승인 요건 완화 등
- 사업주 보험료 납부편의 도모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확대, 보험료 납부시기 연장, 연체료 부과기간 단축, 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인정 기준 완화, 산재보험 사무조합 징수금 납부의무 폐지

③ 능력개발분야

- 직업훈련 실시자의 자율성 확대
 - 직업훈련기준제도 정비
 - 훈련실시자의 교재선택 자율권 확대
- 행정형벌의 행정 질서별화 및 폐지
 - 재해위로금 미지급시 벌금→과태료 전환
 - 재해위로금 미지급시 법인 양벌규정 폐지
- 불필요한 서류제출 정비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우수기능인 선정시 일부서류 제출폐지
- 행정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
 -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확대
- ④ 노사정책분야
 - 현행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및 관련 벌칙조항을 폐지하여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
- ⑤ 근로기준분야
 -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
 - 법정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일수 조정, 유급생리휴가 무급화 등
 - 복지시설자금 융자대부시 융자예정자는 공단으로부터 융자예정자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융채대행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나
 - 융자약정체결 기일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완화
- ⑥ 산업안전분야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수수료 고시제도 폐지
 - 산업법 27개 조항의 행정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승인 폐지 (노출기준에 따라 승인 없이 자율 조정), 유해물질의 표시제도 폐지 등
 -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공표제도 신설, 제조 등 허가대상 확대 등 규제 신설·강화
 - 고시에서 정하던 측정자의 자격을 규칙으로 상향 반영

19 여성부

- 윤락 행위 요보호자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의 교육훈련 의무를 폐지
- 윤락 행위 요보호자 보호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2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피해자 보호의 적정기간 확보를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 개선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휴·폐지 신고 시 구비서류를 감축

㉑ 건설교통부

-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 및 자산운용기준 완화 등 4건
- 건설교통분야 관련 각종 사업자의 자율성·경쟁성 확대를 위한 제한사항 개선
 - 물류정보화전담사업자 지정제도 개선 등 16건
- 각종 인·허가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
 - 경미한 사항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생략 등 17건
- 전자정부·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규제의 내용과 수단 정비
 - 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생략 1건
- 규제내용을 구체화하고 현실과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개선
 - 보고·검사내용 구체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조정 등 4건
- 기 타
 - 삭도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범위 확대 등 6건

㉒ 해양수산부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원양선원 및 어선 사고발생시 사고상황과 사고처리 진전 상황을 공문 및 유선을 통하여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폐지
- 소형선박 소유자는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 관할 지방청에서 총톤수 측정을 받아야 하던 것을 폐지하여 소형선박소유자의 편의 증진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 항만용역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지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기준 중 선박보유기준 완화
 - 선박용역(급수선) : 50톤 → 20톤
 - 선박급유(급유선) : 300톤→100톤
- 기상상황의 악화, 재난의 발생으로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양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양레저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활동 금지조항 완화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방법으로 수리 시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관실 등 위험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용접수리 시 허가제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에서 신고제로 완화

- 선박안전법에 의해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시설에 대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한 선박은 항행할 수 없었으나, 선박검사증서 기재사항 중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변경의 경우 임시검사를 제외함으로써 선박 소유자의 선박운영에 편의 제고
-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시 사업신청 첨부서류 중 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중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토록 완화

㉒ 국세청

- 주류제품별 규격제한 개선
- 주류통신판매제도

㉓ 관세청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분야의 기존 규제에 대하여 규제내용과 수준을 재검토
-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여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개선 또는 존치가 필요한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여 심사

㉔ 조달청

- 유관기관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확인이 가능한 각종 제출서류에 대하여 과감히 폐지 또는 감축하여 국민편의 도모

㉕ 병무청

- 우선징병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26 경찰청

- 도로교통관련 규제 합리화
 - 초보운전자관리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
 -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국내면허 발급제도 개선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
 - 국민편익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개선(범칙금 미납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 1종 대형 및 보통면허로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등
- 자동차운전학원제도 개선(자체 전략과제)
 - 운전면허학원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원배출 운전자의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학원제도를 개선
 - 전문학원 강사 등의 자격시험제도개선 및 자동차운전학원 교육·행정처분제도 개선 추진
- 경비업관련 규제 완화
 -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의무 완화
 - 휴업기간 만료전 영업개시시 신고의무 추가
 - 경비지도사 선임·배치기준 위반 시 처벌을 행정처분에서 과태료로 완화 등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관련 규제 합리화
 - 총포의 정의에 '총포의 부품'을 포함시켜 부품의 밀거래방지
 - 영업허가 취소후 6월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의 허가 제한
 - 화공품을 안정도시험 대상에 포함 등

27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개선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면제 추진
 -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전부면제를 일부면제로 개선 추진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개선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과 관련, 일정한 등록공고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의 허가 및 취소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개선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추진
 -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 또는 경관저해행위의 현상변경 허가대상범위를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로 축소 조정 추진

㉘ 농촌진흥청

- 농약등록시험담당자의 연간시험실시 한도규제가 규제순응도와 시장효율성이 낮고 보건·환경에 영향이 적어 폐지
- 미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과 검토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되도록 개선, 세계적으로 미생물농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저독이면서 인축과 환경에 무해한 농약개발을 지원
- 유해성분으로 인한 인축위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약 수입시는 사용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유해성분에 대한 위해성 여부는 검토하되,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

㉙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함이 필요한 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
- 관련규정 시행당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자는 신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
-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
-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코자하는 대기업자는 신고토록 함
- 기술력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
- 송출기관과 산업연수생 송출계약시 중기협중앙회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함

- 산업연수생의 연수수당 체불 등에 대비하여 연수업체는 지불이행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함

30 산림청

- 농림어업인의 주택, 산림경영관리사를 비롯한 농림어업용 시설 설치를 보전임지전용 허가사항에서 산지전용신고사항으로 변경 개선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자는 복구비를 예치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산지전용기간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지역과 명승지 등의 지역에 대하여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산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국민의 손실보상제도 근거마련 개선

31 특허청

- 규제사무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및 누락규제간 유사·관련성이 있는 규제사무별로 통합 정비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취소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로 통합
 -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로 통합
 -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단속조사와 부정경쟁행위자의 조사거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단속조사 및 과징금 부과로 통합

32 식품의약품안전청

① 식품 안전관리 기준의 합리화 및 절차적 규제 개선

- 식품(주원료·부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검토·개선
 - 안전한 원료·첨가물의 사용은 허용하되, 카스카라사그라다 등 인체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 에 대해서는 검토·금지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기업경영의 자율성 및 제품개발 촉진 등을 위한 규제 개선
 - 지나치게 획일적인 식품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관련 규제 폐지
 - 식품별 제조·가공기준, 식품별 성분규격 및 수산물에 대한 잠정기준 완화 등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고시·규제의 통합 운영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및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지침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기준을 통합하여 운영
- ② 의약품·의료용구 안전관리 관련 절차의 국제화·간소화 등
 -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방법을 국제기준(ICH)으로 표준화
 -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 인정하여 검토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미수제품목을 검토하여 수재
 - 의료용구의 일괄검토제 도입 및 절차 간소화
 - 의료용구 일부품목의 등급을 완화·하향 조정
 -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고시) 확대 등
- ③ 기타 : 유사규제의 재분류 및 조정
 - 명확한 기준 없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재분류 및 통합

33 철도청

- 공사화를 계기로 철도소운송업법 등 관련규제의 전면 정비

34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중 시험업무규정 삭제
- 선장이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실에 보고해야할 사항을 고시로 규정된 법령미근거 규제를 법령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상위법령화
- 여객승선 및 화물적재와 관련 운항관리자의 질서유지와 정원초과 과적여부 확인의무 등이 고시로 규정된 법령미근거 규제를 법령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해양

수산부령으로 상위법령화

35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등록 시 구비서류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기관간에 공동으로 열람·확인가능한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를 폐지
-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로 등록시 구비서류로 무공훈장증 또는 보국훈장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빙서류를 별도로 받지 말고 상훈조회프로그램의 정보를 공동이용하여 등록절차의 간소화

36 방송위원회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진입절차를 허가절차로 일원화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범위를 현행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까지로 완화
- 위성방송사업자의 종교채널 편성의무를 폐지하는 등 채널편성의 자율성을 확대
- 방송광고에 있어 가상광고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방송 및 주문형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의 시간·횟수·방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3703-3926, twinjin@opc.go.kr)

제3절 _ 기업 · 지역 건의과제 처리

1.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 마련

(1) 1/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① 건의개요

-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안전규제가 전체 건의내용 중 79%(11건)에 달함으로써, 기업들은 환경·안전규제를 경제환경에 맞추어 현실화시키는 것을 희망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환경·안전규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사안에 맞추어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도 최소한의 환경·안전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② 건의과제 처리실적

-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고압가스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를 압력용기의 검사주기와 동일하게 4년 이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검사토록 하였고, 고압가스 압력용기의

설계압력 검사기준을 선진국과 동일하게 1.3배로 조정하였다

-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 관련 창고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제조업 물류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조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으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 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

2003년도 1/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연 번	건 의 과 제 명	심의결과
1	고압가스 안전밸브의 조정주기 완화	일부수용
2	고압가스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완화	수 용
3	규정용접부 두께 변경	수 용
4	공사손해보험증 불가항력조항 개선	비수용
5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생산 관련 창고시설의 허용	수 용
6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확대	비수용
7	도로과적 단속기준 개선	비수용
8	환경관리 점검·단속의 합리적 운용	일부수용
9	환경규제 평가제도 도입	일부수용
10	폐수배출시설 신고필증 변경발급 원활화	일부수용
11	철광석, 석회석 등의 해양유입에 대한 규제완화	비수용
12	방유제 내 설치가능 배관의 범위	비수용
13	이송취급시설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비수용
14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적용 대상 개선	수 용
계		수 용 4 일부수용 4 비 수 용 6

(2) 2/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① 건의개요

- 2/4분기에는 7개 분야 총 51건의 과제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였고, 그 중 행정규제 관련 39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비행정규제 12건은 재정경제부가 처리함

-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건의 등 노동분야 건의가 전 분기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입지제한 완화 등 제조업의 입지난으로 인한 건의사항도 다수 제기되었다. 환경·안전분야의 건의사항은 전분기가 마찬가지로 일정부분(44%)을 차지했다. 노동·입지·환경·안전 등의 사항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임을 2/4분기 건의에서도 알 수 있다.

② 건의과제 처리실적

-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설립 최소면적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을 완화토록 조치하였고,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건축면적을 산정할 경우 사무실 및 창고시설면적을 제외토록 개선하였다.
- 또한,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 자체시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TMS 부착사업장에 대한 초과부담금 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 등은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하였다.

2003년도 2/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연 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1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제한을 완화	비수용
2	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	일부수용
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절차 간소화	비수용
4	유통업무설비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수 용
5	대형할인점 관련 자연녹지내 형질변경 제한 완화	비수용
6	대형할인점 출점시 간접규제 완화	일부수용
7	물류센터에 대한 건폐율 조정	비수용
8	자기인증라벨의 부착위치 변경	수 용
9	화물자동차 차량총중량 표기 규정 개선	비수용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단축	비수용
11	공장 신·증설 등의 제한 완화	수 용
12	산업단지 내 용도별 구역규제 완화	수 용
1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완화	수 용

연 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14	정밀안전검사제도 폐지	비수용
15	CNG차량에 대한 과류방지밸브 설치규정 적용 제외	비수용
16	가스용품(진공식히터)의 제품검사 관련 제도 개선	비수용
17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개선	수 용
18	신규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완화	비수용
19	TMS 부착사업장에 대한 초과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수 용
20	굴뚝자동측정자료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선	비수용
2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소각시설 분류체계 개선	비수용
22	폐기물 관할 기관의 일원화	일부수용
23	폐기물 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수 용
24	재활용을 위해 수출하는 폐기물의 보관기일 연장	수 용
25	재활용가능 폐기물중 폐촉매의 재활용업체 범위 확대	수 용
26	지정폐기물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등록시기 개선	일부수용
27	수출품의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 개선	추후검토
28	외국적 선박에 대한 일시적인 내항운항규제의 개선	추후검토
29	예선업 등록 시 자기소유 예선조항 개선	추후검토
30	위험물제조소 소화용수설비 설치의무 완화	수 용
31	이송취급소 시설기준(순찰차등) 완화	일부수용
32	골드카드제도의 확대	수 용
33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에 과중한 업무내용 신설	수 용
34	근골격계 질환 치료종결기간 명시	수 용
35	근골격계 질환 보건상 조치조항 폐지	비수용
36	근골격계 질환 치료기준 세분화	비수용
37	요양자의 정기적 추적관리 제도화	일부수용
38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수 용
39	국민연금사업자 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일부수용
계		수 용 15 일부수용 7 추후검토 3 비 수 용 14

(3) 3/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① 건의개요

- 3/4분기에는 8개 분야 총 39건의 과제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였고, 그 중 행정규제 관련 29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비행정규제 10건은 재정경제부가 처리함
-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출자총액제한 완화 및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완화 등 대기업 관련 건의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정책목표와 맞물려있는 사안이다. 이외에도 노동·환경·안전 분야의 건의사항이 아직도 전체 건의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72%)

② 건의과제 처리실적

-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공장총량 설정단위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조정하였다.
- 또한, 요양 및 요양연기여부 결정기한을 질병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하여 결정토록 하였고, 근로자 재해조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자의적인 재해조사를 방지토록 하였다. 물류업계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활용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연계하여 추후 검토토록 하였다.

2003년도 3/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연 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1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제도 상시화	비수용
2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요건 폐지 또는 완화	일부수용
3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에 대한 거래소시장 퇴출제도 개선	비수용
4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일부수용
5	관세자유지역 내 가공범위제한 완화	수용
6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등의 검사기관 확대	장기검토

연 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7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 연장	수 용
8	외국공인기관의 방폭설비 성능인증 시 국내 재인증 면제	비수용
9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기밀검사의 과학적 실효성 향상	비수용
10	도시가스 사용자 공급관을 가스사용시설로 개정	비수용
11	난방설비 정기검사 주기 개선	비수용
12	전기설비 정기검사 주기 개선	비수용
13	이음새 없는 소화용기 재검사기간 조정	수 용
14	프로판/부타 저장탱크의 유종변경허가 완화	수 용
15	요양 및 요양연기여부 결정기한 연장	수 용
16	보험금여지금 제한의 완화	일부수용
17	재심사청구자 자격범위의 확대	추후검토
18	재해조사의 법규화	수 용
19	자문의사협회의 명칭변경 및 확대	수 용
20	중질유 유조차 형식승인 기준 완화	수 용
21	옥외탱크 방유제내 탱크관련설비의 설치 완화	수 용
22	방유제 내 비 위험물탱크의 설치	수 용
23	물류업계의 외국인 인력활용	추후검토
24	총질소 규제 완화	비수용
25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련 서류 간소화	수 용
26	폐기물 발생 건설현장에서의 분리발주 관련 법체계 정비	일부수용
27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유예기간 부여	비수용
28	방사성동위원소 서면정기검사 수수료 폐지	일부수용
29	택배차량의 도심 내 주정차 허용	비수용
계		수 용 11 일부수용 5 추후검토 2 장기검토 1 비수용 10

(4) 4/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① 건의개요

- 4/4분기에는 4개 분야 총 12건의 과제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였고, 그 중 행정규제 관련 9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비행정규제 3건은 재정경제부가 처리함
- 4/4분기에서는 그간 기업에서 정부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못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첨단업종의 신·증설 허용문제, 출자총액제한문제, 지주회사 부채비율 개선문제, 대체근로 제한문제 등은 국가균형발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사관계 선진화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다.

② 건의과제 처리실적

-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 내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였고, 노동사건 조사시에 불기소처분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대표자 및 참고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생략하도록 개선하였다.

2003년도 4/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연 번	건 의 과 제 명	심의결과
1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 개선	비수용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비수용
3	공장설립 허가면적기준 완화	비수용
4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입지 규제완화	수 용
5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입지 규제완화	장기검토
6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철폐	장기검토
7	노동사건 조사시 대리참석 허용	일부수용
8	산업안전 중복규제 개선	장기검토
9	4대 보험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장기검토
계		수 용 1 일부수용 1 장기검토 4 비수용 3

2. 기업규제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1) 건의개요

- 산업자원부가 지자체, 경제5단체 등과 합동으로 46개팀 130여 명으로 전국 310여 개 기업체를 방문 조사하여 발굴한 건의과제 중, 제도개선과제로서 7개 분야 62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함

(2) 건의내용 처리실적

- 공장부지 및 건축면적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범위를 완화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하였다. 수출입 통관 시의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조선업 등 대규모장치산업에 대한 조정면적 확보의무를 폐지하였다.
- 또한, 담배판매 종합소매점에 대한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수영장 정수시설·전설현장 세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약취 측정방법으로 직접관능법을 측정방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업규제 실태조사 건의과제 처리결과

연 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1	금융기관의 콜센터 업무위탁 활성화	일부수용
2	외국인의 국내 ABS 투자환경 개선	추후검토
3	공장설립승인 후 변경사항 승인절차 간소화	수용
4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의 기존 첨단공장 증설 확대(25%)	수용
5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의 기존 첨단공장 증설 확대(50%)	수용
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수용
7	산업단지 내 용도별 구역규제 완화	수용
8	프로판·부탄 유종변경허가 및 기술검토 완화	수용
9	독성가스 추가 지정시 허용농도의 명확화	수용
10	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 횟수 조정대상품목 확대)	수용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연 번	건 의 과 제 명	심의결과
11	재수입물품 통관 시 수출신고필증 복사본 허용	수 용
12	건조작업 감독을 위해 상주하는 선주 개인물품의 통관규제 완화	비수용
1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절차 간소화	추후검토
14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기준 완화	수 용
15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연접부지의 공장증설규제 완화	비수용
16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생산 관련 창고시설 허용	수 용
17	공장총량제 현실적인 배정 및 제도개선	일부수용
18	수도권 내 연수원 건립규제 완화	추후검토
19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고속도로 운행 시 높이제한 완화	비수용
20	대규모 장치산업은 건물 신축의무 조정면적 확보 예외	수 용
21	방유제 내 설치가능 배관의 범위 확대	비수용
22	소방차 보유대수 기준 완화	비수용
23	소방법상 예방규정 변경절차 간소화	수 용
24	인화성물질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상호 인정	비수용
25	폐유의 재활용처리에 대한 소방법 적용 완화	비수용
26	해외투자업체 산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심사기준 완화	수 용
27	직업훈련촉진법상 직업능력개발과정 위탁교육 대상 확대	비수용
28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철폐	장기검토
29	장애인의 의무고용 완화	일부수용
3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대상 완화	수 용
31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적용대상 개선	수 용
32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완화	비수용
33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 향상계획서의 절차 일원화	일부수용
34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명칭과 정보보호기간의 통일	일부수용
35	담배판매 종합소매점에 대한 청소년고용금지 규제 폐지	수 용
36	산업단지 개발 시 문화재 지표조사 간소화	비수용
37	일반흡소핑사업자의 방송광고시 사전심의등 차별 개선	일부수용
38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규제완화	일부수용
39	제약품 허가 및 생산관련 인·허가절차 간소화	일부수용
40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 간의 거리요건 완화	비수용
41	신조선선박 비치용 화약류 수입 개선	수 용
42	하수종말처리구역 내 자체처리 후 방류수 허용기준 완화	비수용

연 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43	총 질소, 총 인 배출허용기준의 지역별 차등 적용	일부수용
44	오·폐수 병합처리 특례 확대	비수용
45	수영장 정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 및 오수처리시설 유입 허용	수 용
46	건설현장 세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	수 용
47	환경영향조사기간 개선	수 용
48	자진확인서에 의한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차등 폐지	일부수용
49	폐주물사의 매립장 등 허가기준 완화 및 소각장 설치규제 개선	비수용
50	폐기물관리법 배출자 변경신고 완화	수 용
51	자체발생폐기물 재활용 시 별도의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절차 면제	비수용
52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의 지정폐기물 제외	수 용
53	폐수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비수용
54	악취공기회석관능법 삭제 또는 완화	일부수용
55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생활악취시설의 조정	수 용
56	TMS에 의한 측정결과의 적용방법 개선	비수용
57	TMS에 등의 부착시기 연기	일부수용
58	대기오염 측정법령 규제완화	일부수용
59	입자크기가 1mm 이상인 계량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	수 용
60	공유수면매립지 빈지의 국가귀속방법 개선	비수용
61	해양배출가능폐기물의 업종규제 삭제	비수용
62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명확화, 준수사항 현실화	수 용
계		수 용 26 일부수용 13 추후검토 4 비 수 용 19

3. 지역건의과제 개선방안 마련

(1) 건의개요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1차로 “광주·전남지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유치분야 등 4개분야에 21건의 건의과제를 수렴함
- 행정규제 관련 11건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처리하고, 비행정규제 10건은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하여 처리함

(2) 건의내용 처리실적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시·군·구에도 설치하도록 개선하였다.

광주·전남지역 건의과제 처리결과

연 번	건의과제명	심의결과
1	연안이용관리체제의 재정립	수 용
2	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및 해제	일부수용
3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개선	일부수용
4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부과금액 조정	일부수용
5	농어촌대책특별법 제정	수 용
6	관광·휴양·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보안림지정 해제요건 완화	비수용
7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완화	일부수용
8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비수용
9	관리(준농림)지역 공장건설절차 간소화	수 용
10	염색시설 설치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수 용
11	지자체의 골프장 건설 운영관련 규제 완화	장기검토
12	관광지 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일부수용

연 번	건 의 과 제 명	심의결과
1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개선	장기검토
14	관광지 지정절차 간소화	비수용
15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시행	장기검토
16	포괄보조금제 시행	장기검토
17	요트 등 해양레포츠시설 특소세 개선	비수용
18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재정자금지원 시 낙후지역 차등지원	수 용
1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차등 지	수 용
20	시관 내 국고대체 우회도로 보상비부담 개선	수 용
21	양여금 대상사업에 읍·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포함	수 용
계		수 용 8 일부수용 5 장기검토 4 비 수 용 4

* 집필자 : 김달원 사무관(T.3703-3931, orion@opc.go.kr)

제4절 _ 규제개혁 순응도 제고

1. 개요

기존규제 일제 정비, 특정과제 선정·추진 등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업무행태가 변화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피 규제자가 준수하지 못할 규제 기준이 설정되어, 궁극적으로 규제의 순응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이 일반 국민·기업·집행공무원 모두가 규제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어 2002년도에 처음으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규제정책의 입안자들이 실제 규제의 집행정도가 어떠한 지를 파악하게 되어 보다 현실적인 규제정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규제 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폐지하거나 규제대안을 개발하여 규제개혁 순응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는 규제순응도 조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형식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설문지항목 구성·표본집단 선정 등에 일부 문제점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2003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융·건설교통 등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각 부처는 다 빈도 민원제기규제, 존속기한 도래규제 등에 대하여 부처별로 2개 이상 선정하여 실시하도

록 하였다.

실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조사항목·조사대상 집단 등의 유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문조사기관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고, 규제시행의 주·객체인 공무원 집단과 피규제집단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표본집단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피규제집단 및 집행공무원 등의 조사표본수를 적정 수준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사지역도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전국에 걸쳐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조사항목별 응답결과를 토대로 규제의 성격에 따라 목표기대치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항목간 응답결과 등을 상호 비교·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점수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검증 등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였다.

*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3703-3926, twinjin@opc.go.kr)

2. 부처별 조사결과

(1) 재정경제부

① 신용카드업자의 거래조건 주지의무

① 조사대상규제

(i)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6조

(ii) 규제내용

- 신용카드업자는 이자율 등 각종 요율,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에게 알려야 함

*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로 인한 피해 시 회원 및 가맹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짐

** 신용카드 거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와 부당대우 금지 및 가맹점 명의대여 금지 등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①신용카드 관련공무원 13명, ②피규제 집단(신용카드 회사직원) 54명, ③제3차 집단 631명(신용카드 회원 516명, 신용카드 가맹점 115명), 총 698명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기간 : 2003. 9. 17 ~ 9. 18(2일간)
- 조사방법 : 전화 및 면접을 통한 설문지 조사

(ii) 규제인식도

- 행정규제 존재여부 인지도
 - 당해 규제의 존재에 대한 제3차집단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임
 - 피규제집단은 100%가 당해 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은 각각 59.1%, 51.3%가 '모르고 있다' 고 답변
- 행정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도(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中)
 - 당해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은 편임
 - 신용카드 회사직원은 96.3%, 공무원의 경우 92.3%, 제3차 집단의 경우 신용카드 회원이 58.3%, 가맹점의 58.9%가 규제 내용에 대하여 인지
- 행정규제 내용의 명확성
 -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
 - 신용카드 회사직원의 81.4%, 집행공무원의 84.6%가 규제내용이 명확하다고 답변

(iii) 규제인정도

- 행정규제의 필요성
 -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당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 신용카드 회사직원의 94.4%, 집행공무원의 100%, 신용카드 회원의 95.5%, 가맹점의 88.7%가 당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
 - 피규제집단인 신용카드 회사직원의 53.7%(공무원100%)가 당해규제가 반드시 필

요하다고 답변하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행정규제의 수준 및 내용의 적절성
 - 규제수준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직원과 집행공무원 모두 적절한 것으로 평가
 - 신용카드 회사직원 68.5%, 집행공무원의 100%가 적절하다고 답변
- 행정규제의 목적 부합성 및 효과
 - 당해규제가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
 - 집행공무원의 100%, 신용카드회원 81%, 가맹점 7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신용카드 회사직원의 77.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피규제집단도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동의

(iv) 규제준수도

- 행정규제 준수율
 - 행정규제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집단 간의 인식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피규제집단의 94.4%, 공무원의 61.5%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은 각각 19.0%, 36.5%만이 규제가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
 - 일반 국민인 제3차 집단이 규제준수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행정규제 준수 감시가능 여부
 - 현재의 집행력으로 동 규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 집행공무원의 61.5%가 현재 행정력으로 충분한 단속이 어렵다고 답변
- 행정규제 위반 시 벌칙부과의 적절성
 - 동 규제 위반시 부과되는 벌칙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조사집단 간 의견이 상반된 것으로 조사됨
 - 피규제집단과 공무원의 각각 53.7%, 61.5%가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
 -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은 각각 86.0%, 67.8%가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규제순응도 평가

- 당해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피규제집단(카드사)과 제3차 집단(일반 국민)등 조사대상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므로 당해 규제는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인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제3차 집단은 동 규제에 대하여 인지도가 낮고, 피규제집단이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
 - 낮은 인지도가 서면(또는 화면)이라는 규제특성에 기인한 만큼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대책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ii) 제3차 집단의 거래조건 주지의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 카드사가 거래조건 주지의무를 이행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에 의한 주지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명시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 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약관”,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을 변경하도록 유도
 - * 예: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에 의하여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
 -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의 거래조건 주지 의무에 대한 홍보 강화

②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 보고의무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ii) 규제내용

-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5천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미만의 경우에도 의심의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할 수 있음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규제관련 이해관계자 및 3차 집단 총 283명(금융기관 종사자 200명, 관련공무원 53명, 금융관련전문가 30명)

• 조사기간 : 2003. 4. 23 ~ 4. 25(3일간)

• 조사방법 : 전화조사

(ii) 규제인식도

-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의무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피 규제 집단(99.5%), 집행공무원(100.0%), 제3차 집단(100.0%) 모두 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응답이 다수(피규제집단 69.3%, 집행공무원 81.1%, 3차 집단 63.3%)를 차지하여 규제내용 이해도가 매우 높음
- 명확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 다수의 의견이 일치(피 규제 집단 67.5%, 집행공무원 79.3%, 3차 집단 70%)

(iii) 규제인정도

-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단구분을 막론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피규제집단 94%, 집행공무원 100%, 3차 집단 96.7%).
- 규제를 준수하기가 얼마나 적절한 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 이행하기에 ‘적절하다(피규제집단 89.5%, 집행공무원 100%, 3차 집단 86.7%)’고 응답
- ‘혐의거래 보고의무제도’가 범죄예방과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 대부분의 집행공무원(65.5%)과 제3차 집단 응답자들(99.7%)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고 피규제집단(92.5%) 역시 긍정적인 평가

(iv) 규제준수도

- 규제준수 정도는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피규제집단 80.5%, 집행공무원 58.5%, 3차 집단 56.7%)했으나 적지 않은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평가
 -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은 직원들의 혐의거래 판단의 어려움(30.8%)과 혐의거래 규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부족(12.8%)을 꼽았고,
 - 집행공무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인식부족(22.7%), 바쁘고 번거로움을(13.6%), 그리고 제3차 집단은 금융기관과 고객의 보호관계(30%), 직원들의 혐의거래 판단의 어려움(30%) 등을 지적
-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집행에 필요한 인원과 조직을 물어본 결과, ‘현재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응답은 소수(5.7%)에 불과

- 과반수가 '현재의 집행력으로 적당하다' (52.8%)고 대답했고 그 외에는 '현재의 집행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41.5%)고 응답
- 미준수 시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서는 집행공무원(60.4%)과 제3차 집단(63.3%)은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피규제집단은 '현재 수준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48.0%)
-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혐의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국제적 추세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부분(피규제집단 72.5%, 집행공무원 94.3%, 3차 집단 93.3%)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해 혐의거래 보고 기준금액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의 제3차 집단(76.7%)과 집행공무원(86.8%)은 이에 공감하는데 반해 피규제집단은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존재(60.0%)
 - 적절한 보고기준금액(원화)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75.5%), 집행공무원(98.1%), 제3차 집단(100.0%) 모두 기준금액 5,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적당하다는 의견에 대다수가 공감
 - 외화 기준금액 역시 피규제집단(80.0%), 집행공무원(98.1%), 제3차 집단(93.3%)이 기준금액인 10,000불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규제인정도 제고대책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 혐의거래보고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에 배포하여 자발적 보고에 의존하는 현재의 보고관련 시스템을 보완

(ii) 규제준수율 제고대책

- 규제준수 관리·감독의 현실화를 위하여 집행력 보강 및 벌칙수준 강화
 -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부과절차를 마련하여 규제 미준수에 대한 벌칙을 강화
-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의 실효성 제고

-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보고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혐의거래를 적절히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검사

(iii) 규제효과 제고대책

- 혐의거래보고 심사·분석 시스템 강화
 - 혐의거래 심사분석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분석관계기관간 DB 공동활용과 행정기관 자료 제공 온라인(On-Line)화를 추진
 - 데이터마이닝 기법,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등을 통한 효과적인 심사분석 시스템 구축(현재 외부전문가에 용역의뢰 중)
-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불법혐의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예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보완대책이 전제되어야 함

*집필자 : 정광현 사무관(T.3703-2158, k8k8@opc.go.kr)

(2) 금융감독위원회

① 통신판매 시 유의사항 및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 시 준수사항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6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

(ii) 규제내용

- 통신판매종사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교육 및 보안 철저
 - 보험계약 청약내용 등을 음성녹음 등으로 그 증거자료를 확보·유지, 팩시밀리 등으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수취
-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보험가입 권유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한 자 등으로 제한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보험회사 본·지점 110개, 보험담당 공무원 16명, 일반 국민 516명
- 조사기간 : 2003. 6. 24 ~ 7. 23(30일간)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또는 팩스조사

(ii) 규제인식도

- 행정규제 존재 여부 인지도
 - ‘통신판매 시 유의사항 및 보험모집 시 준수사항’ 규제의 존재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피규제집단 61.8%, 일반 국민 12.8%)
 - *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동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닌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인 점에 그 원인
- 행정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도(동 규제의 존재를 인지한 자에 한함)
 - 동 규제가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해도 또한 대체로 낮은 수준(피규제집단 46.7%, 관련공무원 68.8%, 일반 국민 44.6%)
- 행정규제 내용의 명확성
 - 동 규제의 내용이 애매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의견(피규제집단 76.4%, 관련공무원 81.3%)

(iii) 규제인정도

- 행정규제의 필요성
 - 모든 집단이 동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피규제집단 95.5%, 관련 공무원 93.8%, 일반 국민 80.5%)
- 행정규제 준수의 적절성
 - 동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적합한 지에 대해 집단 간의 의견차이가 있음(피규제집단 60.9%, 관련공무원 87.5%)
- 행정규제의 목적 부합성 및 효과
 - 모든 집단이 대체로 동 규제가 보험모집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피규제집단 69.1%, 관련공무원 87.5%, 일반 국민 74.7%)

(iv) 규제준수도

- 행정규제 준수율
 - 동 규제의 준수여부에 대해서 집단 간 평가가 상이. 피규제집단 83.7%, 관련공무

원 43.8%, 일반 국민 27.2%가 규제가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

* 규제 준수율이 낮은 점에 대해 관련공무원은 ‘규제 내용 및 절차가 다른 규제에 비해 다소 복잡한 점과 모집종사자의 영업우선에 따른 규제준수 의지 미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행정규제 준수감시 가능 여부
 - 현재의 집행력으로 동 규정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공무원 (62.6%)은 충분하다는 의견
- 행정규제 위반 시 벌칙부과의 적절성
 - 현재의 벌칙부과 수준에 대해서는 강화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벌칙 강화/유지 : 피규제집단 36.4%/51.8%, 관련공무원 62.5%/31.3%, 일반 국민 66.0%/28.8%)
 - * 동 규제를 위반할 경우 「보험업법」 제134조에 의거 보험회사에 대하여 주의·경고, 영업 정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경고·문책 요구 등의 제재 가능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관련규정 내용을 「보험업법시행령」에 반영

- 2003. 8. 30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시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일반 국민 및 보험모집 관련 종사자의 관련규정 인지도 제고

(ii) 보험회사 임·직원 및 모집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 보험회사로 하여금 통신판매 종사자에 대하여 규제목적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

(iii)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 추진

- 2003. 9. 2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자필서명 보완의무를 완화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iv) 통신판매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점검

-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시 통신판매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시 엄중 제재 및 시정조치

(v) 통신판매보험시장의 영업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규제 내용을 실제 시장상황에 부합되도록 합리화하는 노력 강화

(vi) 부적절한 통신판매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엄벌주의보다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요건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②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 법령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ii) 규제내용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를 설정
 - ▶ 신용조사 : 국내-건당 30만원, 해외-건당 US \$400
 - ▶ 신용조회 : 기본수수료-월 200만원, 조회수수료-건당 3,000원
 - ▶ 채권추심 : 국내 일반-회수금액의 20%, 국내 특수-회수금액의 30%, 해외-회수금액의 30%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109개(신용정보업자 본·지점), 관련공무원 15명, 제3차 집단 30명(전문가)
- 조사기간 : 2003. 6. 24 ~ 7. 23(30일간)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또는 팩스조사

(ii) 규제인식도

- ‘신용정보 이용 시 수수료의 최고한도’에 관한 규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도가 다소 떨어짐
 - 피규제집단(58.7%), 금융전문가(41.3%)은 ‘알고 있다’고 대답
- 동 규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피규제집단 및 집행공무원의 경우 비교적 높은 이해도를 보임
 - 피규제집단(93.8%), 관련공무원(93.3%)은 ‘알고 있다’고 대답
- 동 규제가 애매한 지 여부에 대해서 집단 간에 의견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명확하다는 의견임

- 피규제집단(73.4%), 관련 공무원(93.3%)은 '명확하다'고 대답

(iii) 규제인정도

- 신용정보이용수수료 최고한도 규제에 대하여 대다수 응답자가 당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
 - 피규제집단(78.9%), 관련 공무원(93.3%), 금융전문가(73.3%)
- 동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
 - 피규제집단(73.4%), 관련 공무원(86.7%)은 '적절하다'고 대답
- 모든 집단이 동 규제가 '신용정보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방지를 통해 신용정보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iv) 규제준수도

- 규제준수도에 대해서는 집단 간 평가가 상반됨
 - 피규제집단(88.1%), 관련 공무원(73.3%), 금융전문가(23.3%)는 규제가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
- 현재의 집행력으로 동 규제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60%)를 차지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음
- 현재의 벌칙부과 수준을 강화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임
 - 벌칙 강화/적절 : 피규제집단 33.9%/51.4%, 관련공무원 20.0%/73.3%, 금융전문가 56.7%/30.0%
 - * 동 규제를 위반할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 의거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가능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 (i) 신용정보협회를 통한 업계 자율적인 규제인지도 제고 방안 강구 지도
 - 신용정보협회로 하여금 업계 자율적으로 신용정보 이용수수료의 최고한도 설정에 대한 인지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도
- (ii) 신용정보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 개별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도 현행법규, 규제목적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
- (iii) 쌍방 간에 대등한 교섭력을 지닌 조사 및 조회 등 여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고급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수수료 규제를 폐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 다만, 다수의 소액채무자가 연관되는 채권추심에서 수수료를 상한을 폐지할 경우 폭력행사 등 악성추심의 조장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

③ 예금의 구속행위 금지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은행법」 제52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ii) 규제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실행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의 강요 또는 기 가입예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통한 차주의 자금사용제한 행위 등을 금지
-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의 구속행위
 - 여신 실행 일을 전후하여 예금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
 - 담보권을 설정하여 예금, 공제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50개, 관련공무원 33명, 제3차 집단 150명
- 조사기간 : 2003. 6. 16 ~ 7. 3(18일간)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또는 팩스조사

(ii) 규제인식도

-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실행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의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피규제집단(은행 여신담당)과 제3차 집단(중소기업 자금담당)에서 모두 낮음
 - ⇒ 규제집행자(100%), 피규제집단(34.0%), 제3차 집단(29.5%)
- 규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자들의 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제3차 집단에서만 다소 낮게 나타남
 - ⇒ 규제집행자(100%), 피규제집단(84.0%), 제3차 집단(46.0)

-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이 대체로 잘 알고 있음
 ⇨ 규제집행자(87.8%), 피규제집단(68.0%), 제3차 집단(76.6%)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규제집단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
 ⇨ 규제집행자(87.9%), 피규제집단(62.0%), 제3차 집단(92.7%)
- 규제 수준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피규제집단은 긍정히는 응답이 42.0%에 불과하나, 규제집행자와 제3차 집단의 경우 70% 수준
 ⇨ 적절이 규제집행자(75.7%), 피규제집단(42.0%), 제3차 집단(69.3%)
- 규제집행자는 규제의 목적 부합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피규제집단과 제3차 집단은 긍정답변이 비교적 낮은 편
 ⇨ 규제집행자(81.8%), 피규제집단(50.0%), 제3차 집단(58.6%)

(iv) 규제준수도

- 규제 준수에 대하여 피규제집단과 규제집행자의 경우 각각 100%, 84.9%가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제3차 집단은 약 40%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 제3차 집단이 보는 규제 미준수 사유로는 은행의 이익추구, 대출 시 담보부족, 중소기업의 수용적 자세 등을 주요한 예로 들고 있음
- 규제집행자의 경우 집행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0.6%
- 현재의 벌칙부과 수준에 대해서 조사대상별로 구분한다면 피규제집단은 규제완화, 제3차 집단은 규제강화, 규제집행자는 현행유지의 입장을 제기
 ⇨ 벌칙 강화/유지 응답이 규제집행자(63.6%), 피규제집단(48.0%), 제3차 집단(89.4%)
 * 동 규제를 위반할 경우 「은행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거 은행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경고, 영업의 정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경고·문책요구 등의 제재 가능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관련 이해당사자의 규제인지도 제고

- 구속성예금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 각 은행 앞 업무지도 강화
 - 구속성예금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영업점 업무지도 및 교육 강화 유도

(ii) 규제준수도의 제고

- 구속성예금 수취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및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구속성예금 수취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구속성예금 수취근절을 위한 영업점 지도 및 고객에 대한 홍보, 자체감사 실적 등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iii) 규제 폐지 검토

- 조사 결과와 본 규제의 연혁 및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규제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실정
- 본 규제는 중소기업의 교섭력 열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감독당국의 중점점검규제로 운영되어 왔음에 비추어 낮은 인지도는 규제존치의 필요가 그만큼 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 본 규제는 은행법령상 존치근거(등록서상 근거로 되어 있는 「은행법」 제52조는 약관의 변경보고에 관한 것임)가 없이 단지 감독규정(제88조)에 의해 중소기업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규제의 투명성 부족 및 규제회피행위 적발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규제존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현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적절

*집필자 : 정광현 사무관(T.3703-2158,k8k8@opc.go.kr)

(3) 산업자원부

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 및 관리규제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 법령

- 「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내지제6항, 제20조제1항및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ii) 규제내용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록요건의 제한
 - 자본금 70억, 전문 인력 3인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준수사항(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지등)

② 조사결과

(i) 개요

- 조사기간 : 2003년 4월 11일 ~ 4월 25일
- 조사기관 : (주)마켓비전 컨설팅그룹
- 조사설계

구분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제3차 집단
조사대상	구조조정전문회사	금융감독원	해당사항 없음
조사표본	175	2	
조사방법	방문조사	방문조사	

(ii) 규제인식도

- 피규제집단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국한되어 타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존재여부에 대한 인지도 및 내용의 이해도는 높게 나타남
 - 전문회사의 등록요건에 대한 인지도는 94.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업무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87.6%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업의무 및 납입자본금 용도제한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87.6% 및 83.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iii) 규제인정도

- 전문회사 등록요건에 대한 인정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조사 대상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자본금 요건의 경우, 규제집행자는 100%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본금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겸업사의 경우 89.4%, 상대적으로 영세한 순수사의 경우 83.4%가 필요하다고 응답
 - 또한, 전문 인력 요건의 경우, 규모가 커서 요건충족이 용이한 겸업사의 경우 95.5%가 필요성을 인정하나, 규모가 영세한 순수사의 경우 85.3%만 필요성 인정
 - 겸업사 등록 시 투자실적 유지요건의 경우, 겸업사는 33.3%가 필요성을 인정하

나, 순수사의 경우 69.7%가 필요성을 인정

- 인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수 제한 요건(51.4%)과 겸업사 등록 시 투자실적 유지 요건(55.9%)으로 나타남

(iv) 규제준수도

- ※ 전문회사 관련규제는 피규제집단이 소수이며 조사주체인 산업자원부의 직접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준수도가 아닌 규제 준수 용이도로 조사함
- 규제준수 용이도 6개 항목에서 규제집행자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키기 쉽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규제자의 경우 평균 39.0%가 지키기 쉽다고 답변한 반면 평균 31.1%는 지키기 어렵다고 답변
- ‘납입자본금의 사용제한’, ‘전업의무’ 및 ‘구조조정대상기업 및 자회사 매각규정’은 지키기 어렵다고 답한 비중이 지키기 쉽다고 답한 비중보다 크게 나타남
 - ‘조합출자금 용도제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손실보전 약속 등 부당출자 권유 금지’ 규정은 지키기 쉽다고 답한 비중이 높았음
- 금융회사의 일반적 규정인 특수관계자 거래금지 등은 준수가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만 한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가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전문회사 종사자들이 세금감면 등 제도의 혜택에만 관심이 있고 제도의 취지 및 의무사항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제고방향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관리감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인정도 및 준수용이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들이 규제의 도입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업구조조정시장의 상황 변화 등에 기인
- 따라서 세미나 등을 통한 규제의 구체적 내용 및 도입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장변화에 따라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는 법령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ii) 제고대책

■ 규제 인식도 및 인정도 제고대책

- 규제에 대한 인식도 및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안내책자 및 질의해석편람 제

작·배포

-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편람을 만들어 CRC협회와 등록업체에 배포
- 신규등록업체에 대하여는 등록 시 안내책자 및 편람을 교부하고 필요 시 교육 실시
- 협회가 연 2회 개최하는 정기세미나를 활용하여 인정도가 낮은 분야에 대하여 도입 취지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
- 또한, 신규규제사항 도입 시, 이해당사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도입취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사전홍보로 필요성 및 정당성 인식

■ 규제준수도 제고대책

- 기업구조조정시장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수 및 부실채권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
 - 전문회사가 매입 가능한 부실채권의 범위에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보유의 부실채권도 포함(「산업발전법」 개정안 제14조제1항제5호)
 -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나 자회사를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한 것을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보유허용 기한 연장(「산업발전법」 개정안 제14조의3 제2항)
- ※ 상기 안을 포함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03. 9월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사 중임
- 주가조작 및 주금가장납입 등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인력확충
 - 전업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는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등록을 취소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의 관리·감독은 회계 및 상법 등 관련 경제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동 업무를 전담할 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 특채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를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협회의 위상을 강화

- 협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변경 등

② 가스공급시설 시공 시 감리규제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ii) 규제내용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함(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 ※ 대상시설 :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설비, 가스제조·정제설비, 가스홀더, 가스공급배관 등

② 조사결과

(i) 개요

- 조사기간 : 2003. 4. 11 ~ 4. 25(15일간)
- 조사기관 : (주)마켓비전 컨설팅그룹
- 조사설계

(단위 : 명)

구 분	피규제집단		집행(감리) 주체
조 사 대 상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시공사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감리담당자
조 사 표 본	60	242	8
조 사 방 법	전화, 우편조사	전화, 우편조사	전화, 우편조사

- ※ 현재 시공감리제도는 행정관청의 공사승인(신청) 후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시공사업자가 가스안전공사의 감리를 받고, 가스안전공사는 감리 후 감리보고서 및 시공감리실적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ii) 규제인식도

- 시공감리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시공사업자, 한국가스 안전공사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 분	잘 알고 있음	들어본 적은 있음	모름	계
도시가스사업자(n=60)	98.3	1.7	0.0	100.0
가스시공사업자(n=242)	95.9	3.7	0.4	100.0
가스안전공사(n=8)	100.0	0.0	0.0	100.0
전 체	96.5	3.2	0.3	100.0

(iii) 규제인정도

- 시공감리제도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2%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적 응답 8%)

(단위 : %)

구 분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보통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계
도시가스사업자(n=60)	10.0	36.7	38.3	13.3	1.7	100.0
가스시공사업자(n=242)	38.8	40.1	14.5	6.2	0.4	100.0
가스안전공사(n=8)	100.0	0.0	0.0	0.0	0.0	100.0
전 체	34.8	38.4	18.7	7.4	0.6	100.0

- 현행 시공감리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 응답(51.6%)이 부정적 응답(15.2%)보다 우세
 -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사업자들은 규제내용의 지나친 엄격성(38%) 및 형식성(21%)을 그 사유로 지적

(단위 : %)

구 분	매우 적합	약간 적합	보통	별로 적합 하지 않음	전혀 적합 하지 않음	계
도시가스사업자(n=60)	3.3	28.3	43.3	23.3	1.7	100.0
가스시공사업자(n=242)	16.5	38.8	31.0	12.0	1.2	100.0
가스안전공사(n=8)	75.0	12.5	12.5	0.0	0.0	100.0
전 체	15.5	36.1	32.9	13.9	1.3	100.0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감리항목의 적정성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옴
 - 불필요한 감리항목으로 부대설비에 관한 항목(36.4%) 및 정압기 설치위치 및 기밀시험과 관련된 항목(30%)을 지적

(단위 : %)

감리항목	적정	보통	부적정	모름/무응답	계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설비	37.1	36.5	8.7	17.7	100.0
가스제조설비	38.4	32.3	7.4	21.9	100.0
가스정제설비	32.6	39.0	6.1	22.3	100.0
가스홀더설치	33.5	34.8	6.8	24.8	100.0
배송기 및 압송기	32.2	35.8	6.7	25.2	100.0
제조소의 저장탱크	40.0	30.3	5.1	24.5	100.0
정압기	48.1	31.3	11.6	9.0	100.0
배관의 재료 및 설치방법	49.7	27.7	13.6	9.0	100.0
전체	39.0	33.5	8.3	19.3	100.0

(iv) 규제준수도

- 시공감리는 현장에서 공정별로 가스공급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기준에 따라 100% 준수됨
- 준수가 용이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 의견(24.5%)과 부정적 의견(22.3%)이 비슷하게 나옴
 -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50.7%), 비용이 많이 들어서(17.4%), 감리기준을 잘 알지 못해서(6.3%)라고 응답
 - 준수하기 어려운 감리항목으로 정압기 설치위치 및 기밀시험과 관련된 항목(40.5%) 및 부대설비에 관한 항목(16.4%)을 지적

(단위 : %)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도시가스사업자(n=60)	0.0	21.7	60.0	13.3	5.0	100.0
가스시공사업자(n=242)	3.7	19.4	52.5	22.3	1.7	100.0
가스안전공사(n=8)	50.0	37.5	12.5	0.0	0.0	100.0
전체	4.2	20.3	52.9	20.0	2.3	100.0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제고방향

-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시공사업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모두 현행 시공감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73.2%)
 - 또한, 시공감리제도의 특성상 100%의 규제 준수도를 보임
- 다만,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시공사업자 중 일부는 감리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형식적이며, 기준이 복잡하다고 지적
- 따라서,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또는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규제순응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ii) 제고대책

- 제도개선 관련 실무자 협의회 개최
 - 적합성이 낮은 제도 파악(문제 인지)을 위해 분기별 정기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 등과 제도개선 관련 실무자 협의회 개최
 - 규제 순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리항목 및 지나치게 어렵게 규정된 법령부터 협의하고, 필요 시 법령 개정
- 가스시설 시공자 및 감리원 등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 수렴
 -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시공자의 편의도모와 감리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할 예정
- 가스시설 시공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 강화
 - 가스시설 시공자에 대한 전문교육시 감리방법 및 적용 등에 대해 현장 위주의 실습교육 실시
 -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공정한 감리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 가스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노력 강화
 - 법령에 대한 가스시설 시공자의 이해도모를 위해 『도시가스시공 분야 기술기준 해설서』 및 『가스관계법령해설서』 발간·배포
- 가스시설 시공자에 대한 홍보 강화
 - 산자부 및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가스관련 전문지를 통한 법령개정사항 적극 홍보
 - 시공자단체인 대한설비건설협회 등과 협조, 제도 이해가 부족하기 쉬운 소규모 가스시공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실시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
 - 시공감리와 관련하여 서면, 전화, 인터넷 등 각종 민원 및 질의에 대해 최우선 처리

*집필자 : 이순아 사무관(T.3703-3927, leesa@opc.go.kr)

(4) 공정거래위원회

①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휴지·폐지·영업재개 신고

① 조사대상규제

(i) 근거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ii) 규제내용

- 다단계판매업자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증명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미등록영업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을 휴지·폐지·재개를 허위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88명, 전문가 등 제3자 집단 11명, 집행공무원 15명
- 조사기간 : 2003. 11. 17 ~ 12. 3
- 조사방법 : 우편조사

(ii) 규제인식도

- 규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인지도 및 내용의 이해도는 피 규제자 및 전문가 모두 상당

히 높게 나타났으나, 내용의 명확성 면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 규제 인지도 : 피규제집단(98%), 전문가(100%)
- 규제 이해도 : 피규제집단(96%), 집행공무원(94%), 전문가(100%)
- 규제 명확성 : 피규제집단(71%), 집행공무원(72%)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공무원은 99%, 전문가의 100%가 긍정적이며, 특히 피규제집단도 97%가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규제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집행공무원은 86%, 피규제집단은 75%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iv) 규제준수도

- 규제준수율은 규제의 인정도와 인식도에 비해 낮은 편임
 - 피규제집단은 77%라고 응답한 반면에 집행공무원은 52%, 전문가집단은 54%만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함
- 규제 미준수 사유로는 정부의 홍보미흡과 행정력 부족을 들었음
 - 행정규제 집행력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의 6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집행공무원들은 53%만 긍정적인 답변을 함
 - 규제 위반시 벌칙에 대해서 집행공무원은 26%, 전문가집단은 36%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피규제집단은 16%만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사전홍보 및 방문판매법 교육 강화

- 규제인지도, 이해도,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제고시키기 위하여 관련 규제에 대한 사전홍보 또는 방문판매법 교육을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등을 관련규제 홍보에 적극 활용하며, 공정거래협회, 한국직접판매협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을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ii)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 개정 및 업태 간 공정경쟁 기반 구축

- 규제수준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및 다단계판매업과 타 업계(방문판매, 전화권유 등)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 유지 방안을 검토·추진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신방판(방판으로 신고하고 다단계판매 활동)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 추진
- 신방판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 강구 및 공정경쟁 저해요인을 개선
 - 신방판 업체는 등록의무, 공제조합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청약철회 환불금 보장 등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결여 등 문제
 - 따라서, 신방판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신방판과 다단계판매 업체 간 규제수준의 형평성·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
- (iii) 감시 강화, 자율규제 유도 등 준수율 제고방안을 적극 추진
 - 휴지, 폐지한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휴지·폐지한 업체가 무등록 다단계판매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공제조합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 수행
 -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기업 내에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하는 등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

②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ii) 규제내용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

※ 순응도 조사 경위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2002. 9. 6) 결과,
- 관련단체의 현 실정을 고려 분쟁조정협의회를 1개 기관(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되,
- 향후 2년 내 분쟁조정실적 및 그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규제위에 보고하도록 권고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규제인지도는 5월 말~6월 초 중 실시된 가맹사업거래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가맹점사업자(500개 사업자) 및 가맹본부(100개 사업자)를 상대로 조사
- 규제인지도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맹점 및 가맹본부 각 30개 사업자)
- 규제준수도는 조사 필요성이 없어 생략하고, 분쟁조정 실적 및 효과성·만족도·공정성 등을 조사

• 조사기간 : 2003. 5. 26 ~ 6. 5, 2003. 11. 26 ~ 12. 5

• 조사방법 : 전화면접 및 팩스(FAX) 조사

(ii) 규제인식도

- 5월~6월 중 실시된 전화면접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절반정도인 45.5%가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9.8%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내 용	가맹점		가맹본사	
	응답자수(명)	비율(%)	응답자수(명)	비율(%)
안 다	49	9.8	45	45.0
모른다	451	90.2	55	55.0
계	500	100.0	100	100.0

(iii) 규제인정도

- 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76.7%
- 다만, 분쟁조정절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30.0%, 가맹본부의 46.7%만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며,
- 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가맹점의 30.0%, 가맹본부의 46.7%가 만족스럽다는 의견
 -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됨
 - 강제조정이 아닌 임의조정이어서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점,

-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어 강제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 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심도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 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 중립성에 관하여는 가맹점사업자의 63.4%, 가맹본부의 70.3%가 공정성·중립성이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
 - 반면, 가맹점사업자의 36.6%, 가맹본부의 26.7%는 공정성,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그 원인에 관하여,
 - 가맹점사업자(응답자의 63.6%)는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 가맹본부(응답자의 44.5%)는 사무국 직원 및 위원들의 업무수행 태도를 지적
-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한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43.3%, 가맹본부의 20.0%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그 대안에 관하여는 가맹점사업자의 66.7%, 가맹본부의 91.7%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사업자단체가 아닌 공정위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답변

(iv) 규제준수도

- 본 규제의 경우 규제준수도는 조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략

(v)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실적

- 분쟁조정협의회는 11월말까지 223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189건에 대하여 조정절차 완료(34건은 조정절차 진행 중)
 - 조정절차 완료 건 중 115건은 조정성립, 56건은 조정불성립, 18건은 신청취하 및 조정중지

구 분	조정신청 건수(A)	조정절차종료(B)			조정 진행 중(F)
		조정성립(C)	조정불성립(D)	신청취하 및 조정중지(E)	
사건 수	223	189			34
		115	56	18	
비율(%)	100.0	60.8 (C/B)	29.6 (D/B)	9.5(E/D)	15.2 (F/A)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규제인지도 제고대책

- 규제인지도가 낮은 것은 법령 시행 초기여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교육·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법령교육 및 홍보를 2004년부터는 지방순회교육 실시, “가맹사업자 준수지침”, “가맹계약 체결시의 주의사항”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및 내실화 추진

(ii) 규제인정도 제고대책

- 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하면서도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 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인력확충을 통한 조정절차의 내실화 등 분쟁조정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 다만, 강제조정이 아닌 임의조정인 점과, 조정위원의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조정조서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 부여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분쟁조정협의회를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한 것에 관하여, 분쟁당사자 일방인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고, 그 개선방안으로 사업자단체가 아닌 공정위 산하의 독립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쟁조정에 대하여 공정위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할 뿐 아니라,
 - 조사결과, 공정성·중립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고(2003년 분쟁조정실적 또한 양호), 뚜렷한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행을 유지하되 분쟁조정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을 적극 보완토록 함

*집필자 : 이상래 사무관(T.3703-2172, sang1234@opc.go.kr)

(5) 건설교통부

①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 법령

- 「건축법」 제21조제5항

(ii) 규제 내용

-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
 - **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①피규제 집단(건축주) 102명, ②집행공무원 50명, ③제3차 집단 30명(중앙건축위원회, 관련연구소), 총 182명
- 조사기간 : 2003. 11. 6 ~ 12. 6(30일간)
- 조사방법 : 전화를 통한 설문지조사(Telephone Survey)
 - 규제인지, 규제인정, 규제준수 등 3개 대 분류 하에 10개 평가항목 조사

(ii) 규제 인식도

- 행정규제 존재 여부 인지도
 -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제에 대한 피규제집단과 제3차 집단의 인지도는 높은 편
 - 건설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규제집단의 79.4%, 제3차 집단의 96.7%가 ‘알고 있다’고 답변
- 행정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도(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中)

- 당해 규제의 내용에 대하여 집행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피규제집단, 제3차 집단의 이해도가 저조한 편임
-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제의 내용에 대하여 피규제집단의 경우 35.8%, 집행공무원 76.0%, 제3차 집단 10.3%가 규제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답변
- 행정규제 내용의 명확성
 -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되었음
 - 피규제집단의 77.5%, 집행공무원의 86.0%가 규제내용이 명확하다고 답변
- (iii) 규제인정도
 - 행정규제의 필요성
 -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당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 피규제집단 84.3%, 집행공무원 94.0%, 제3차 집단 90.0%가 당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
 - 행정규제의 수준 적절성
 - 당해 규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집행공무원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규제집단에서는 절반정도만이 적절한 것으로 답변
 - 규제의 수준에 대하여 피규제집단 57.8%, 집행공무원 76.0%가 적절하다고 답변하여 피규제집단은 현실적으로 당해 규제를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규제 내용의 적절성
 - 당해 규제내용의 전문성확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다수임
 - 피규제집단 70.6%, 집행공무원 74.0%, 제3차 집단 83.3%가 당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
 - 당해 규제내용의 부정부패 해소에 대하여는 절반정도가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며,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답변이 낮은 편임
 - 부정부패 해소에 대하여 피규제집단의 57.8%, 집행공무원의 62.0%, 제3차 집단의 40.0%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
 -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피규제집단의 61.7%, 집행공무원의 29.2%, 제3차 집단의 31.6%가 동의하는 것으로 답변
 - 행정규제 목적 부합성 및 효과
 - 당해 규제내용의 목적 부합성 및 효과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집행공무원의 82.0%, 제3차 집단의 90.0%가 행정규제 목적 부합성 및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 피규제집단의 76.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건축주도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iv) 규제준수도

- 행정규제 준수율
 - 행정규제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집단 간의 인식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피규제집단의 92.2%, 집행공무원의 68.0%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제3차 집단은 23.3%만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
 - 제3차 집단이 규제준수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행정규제 준수 감시가능 여부
 - 현재의 집행력으로 동 규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 집행공무원의 28.0%가 현재의 집행력으로 가능, 적당하다는 답변이 38%로서 집행조직원 보강 등 대책 마련 필요
- 행정규제 위반시 벌칙부과의 적절성
 - 동 규제 위반시 부과되는 벌칙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조사집단간 의견이 상반된 것으로 조사됨
 - 피규제집단 36.3%와 집행공무원 46.0%, 제3차 집단의 53.3%가 각각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며
 - 피규제집단 27.5%, 집행공무원 36.0%, 제3차 집단의 43.3%가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피규제집단 35.3%, 집행공무원 16.0%, 제3차 집단 3.3%로서 조사집단 간 의견이 상충됨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규제순응도 평가

-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제 인지도와 관련하여 피규제집단(건축주)과 제3차 집단(중앙건축위원회, 관련연구소)의 인지도는 높은 편임

- 다만, 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집행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피규제집단과 제3차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제의 인정분야에 대하여 필요성 및 목적부합성면에서는 높은 지지를 받아 규제인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규제수준의 적절성 면에서는 까다로운 승인절차 등으로 피규제집단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 전문성확보와 부정부패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음
 - 동 확인업무를 집행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규제집단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반면에 집행공무원과 제3차 집단은 과반수 이상이 부동의함
- 행정규제 준수율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은 준수율이 높다는 평가를 한 반면에 제3차 집단은 낮은 평가를 내렸음
 - 이는 피규제집단(건축주)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규제자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집행공무원과 제3차 집단은 ‘인지’를 기준으로, 피규제 집단은 직접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ii) 개선방안

- 규제인지분야의 이해도 면에서 피규제 집단과 제3차 집단의 이해도가 낮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규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 예: 홈페이지 상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 및 절차에 대한 해설을 게재
- 규제인정분야의 수준 적절성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순응도 제고를 위하여 사용승인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 * 건축법령 개정시 개선안 검토
- 규제준수분야의 규제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집행공무원의 평가를 볼 때 인력증원과 조직보강의 필요성이 제시됨

② 공동주택건설사업주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 법령

- 「주택법」 제46조제2항

(ii) 규제 내용

- 공동주택 건설, 공급하는 자는 시·군·구청장 명의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①피규제 집단(주택건설업자) 105명, ②집행공무원 50명, ③제3차 집단 30명(주택
관리사협회, 안전진단전문기관), 총 185명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기간 : 2003. 11. 6 ~ 12. 6(30일간)
- 조사방법 : 전화를 통한 설문지조사(Telephone Survey)
 - 규제인지, 규제인정, 규제준수 등 3개 대분류 하에 10개 평가항목을 조사
 - 추가문항 :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 협의하여 하자판정기관을 의뢰하는 경
우 민원 분쟁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ii) 규제 인식도

- 행정규제 존재 여부 인지도
 - 당해 규제의 존재에 대한 피규제집단과 제3차 집단의 인지도가 매우 높음
 - 피규제집단은 96.2%, 제3차 집단 93.3%가 규제내용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으로
답변
- 행정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도
 - 당해 규제의 내용에 대한 피규제집단, 공무원과 제3차 집단의 이해도가 역시 매우
높음
 - 피규제집단은 95.0%, 집행공무원의 경우 94%, 제3차 집단 96.4%가 규제내용에
대하여 이해
- 행정규제 내용의 명확성
 -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평가되었음
 - 피규제집단은 67.6%, 집행공무원의 경우 72.0%가 규제내용이 명확하다고 답변

(iii) 규제 인정도

- 행정규제의 필요성
 -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당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
 - 피규제집단의 88.6%, 집행공무원의 94.0%, 제3차 집단 100%가 당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
 - 행정규제의 준수 및 수준의 적절성
 - 규제준수 및 수준이 모두 적절한 것으로 평가
 - 피규제집단은 63.8%, 집행공무원의 경우 60.0%가 준수에 적절하다고 답변
 다만, 피규제집단의 35.2%, 집행공무원의 경우 40.0%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답변
 - 피규제집단의 경우
 - ①너무 긴 설정기간 (26.3) ②너무 비싼 예치금액(15.8) ③하자 기준이 불명확 (10.5)
 - 집행공무원의 경우
 - ①하자기준이 불명확(25.0) ②예치기간을 늘려야 함(25.0) ③비현실적 실행내용(15)
 - 하자보수보증금의 수준
 - 피규제집단은 60.0%가 현재 보증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변
 - 행정규제의 목적 부합성
 - 당해 규제가 입주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피규제집단은 83.8%, 집행공무원의 경우 88.0%, 제3차 집단은 96.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 (iv) 규제준수도
- 행정규제 준수율
 - 행정규제 준수여부에 대하여는 모두 잘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
 - 피규제집단(대다수 업체)의 86.7%, 집행공무원의 72.0%, 제3차 집단 63.3%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변
 - 행정규제 준수 감시가능 여부
 -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동 규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 평가
 - 집행공무원의 20.0%가 현재 행정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어렵

다는 답변이 38.0%에 달함

- 행정규제 위반 시 벌칙부과의 적절성
 - 동 규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조사집단 간 의견이 상반된 것으로 조사됨
 - 피규제집단은 64.8%가 현재 수준이 적당하는 의견임
 - 집행공무원과 제3차 집단의 각각 76.0%, 86.7%가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임
- 행정규제 시행 예정 법령 적절성
 -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 협의하여 하자판정기관을 의뢰하는 경우 민원 분쟁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피규제집단은 53.3%, 집행공무원의 경우 78.0%, 제3차 집단은 70.0%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임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규제순응도 평가

- 규제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명확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 준수율 등에 대하여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고 있으나
 - 다만, 규제의 준수 감시가능으로 집행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 평가
-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또는 제3차 집단간 상반된 답변을 했던
 - 행정규제 준수 및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과
 - 행정규제 위반시 벌칙부과의 적절성은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또는 제3차 집단 간 서로에 처한 입장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임

(ii) 개선방안

- 행정규제의 집행력(집행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함에 있어 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하자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적절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집필자 : 이진원 사무관(T.3703-2160, ljw0516@opc.go.kr)

(6) 국가보훈처

① 대부재산 및 주택우선 분양 규제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7조 및 제68조

(ii) 규제내용

-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직접관리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우선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 금지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180명, 제3차 집단 224명, 집행공무원 72명
- 조사기간 : 2003. 6. 19 ~ 6. 25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및 인터넷 조사

(ii) 규제인식도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가 “대략적으로 앎” 이상은 규제집단 93.1%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피규제집단은 61.4%의 이해도를 보임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인식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피 규제자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iii) 규제인정도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이상 일반인 88.9%, 피규제집단 82.9%으로 높게 나타났고 규제집단 66.7%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인 정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규제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대부 신청 민원과 대부회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됨

(iv) 규제준수도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보통 이상이 피규제집단 81.9%로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일반인은 62.0%로 낮았음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준수도는 대체적으로 잘 준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규제자에 대한 대부규제 및 벌칙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됨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규제목적 적극 홍보에 따른 규제인지도 제고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및 우선 주택분양의 권리변동행위의 근본적 취지를 대부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피규제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규제기간에 대한 홍보 등 홍보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규제 목적을 최대 달성하는데 노력

(ii) 대부업무의 민간위탁

- 규제집단에서 규제인정도가 낮은 이유는 소수의 담당자만으로 규제를 담당하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므로 대부업무 중 출납업무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남은 인력 및 시간은 규제단속 및 정책개발 업무에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화 확보가 필요함

(i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규제집행력 강화

- 대부지원의 규제 준수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자원의 목적 외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 시찰, 명예감시원 조직 등이 필요함

*집필자 : 손진욱 사무관(T.3703-3936, peda21@opc.go.kr)

(7) 노동부

①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보험 적용 확대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5조

(ii) 규제내용

- 2000. 7.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 다만,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제외
- 산재보험관계 신고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법 제12조)
- 보험료 신고·납부 : 임금총액(개산 및 확정)×보험요금
 -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보험료율(개산보험료)」을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자진신고·납부(법 제65조),
 -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전년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보험료율(확정보험료)」을 다시 신고하여 정산(법 제67조)
 - 만약 사업주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공단이 조사 징수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사업주 : 가입사업장 276명(55.0%), 미가입사업장 226명(45.0%)
 - 근로자 : 가입사업장 695명(68.5%), 미가입사업장 320명(31.5%)
 -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5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미가입한 사업장을 6:4(±5%)의 비율로 선정
 - * 가입사업장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전산자료를 통한 비례 적층추출 방법 사용
 - * 미가입사업장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자등록 DB를 통한 조사대상자 명부(List)를 바탕으로 한 무작위추출 방법을 사용
 - 근로복지공단 직원(100명)

-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46개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징수부에서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조사기간 : 2003. 8. 18 ~ 9. 5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및 대인면접법
- (ii) 규제인식도
-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규제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사업주(86.9%) 및 근로자(91.0%) 모두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음
 - 가입사업장의 인지도(사업주 94.6%, 근로자 93.4%)가 미가입사업장의 인지도(사업주 77.4%, 근로자 82.8%) 보다 높았으며,
 - 제조·전기가스 수도업(97.0%), 보건사회 복지업(94.7%)의 인지도가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음식숙박업(78.8%), 금융교육 서비스업(80.2%) 등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산재보험 적용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는 사업주(74.5%) 및 근로자(70.2%) 모두 높은 인식을 하고 있음
 - 근로자(70.2%)보다는 사업주(74.5%), 미가입사업장(64.6%)보다는 가입사업장(81.2%)의 이해도가 높고,
 - 업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89.5%)가 제일 높고, 음식숙박업(53.9%)이 타업종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내용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33.4%(명확 33.0%), 근로자의 31.3%(명확 34.7%)가 불명확하다고 답변(담당직원은 92.0%가 명확하다고 답변)
 - 내용이 불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이 법령에 중첩 또는 모호하게 규정, 내용이 포괄적·추상적 등으로 답변
 - ☞ 규제 인식도는 높으나 규제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
- (iii) 규제인정도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주(63.4%), 근로자(83.1%) 및 담당직원(92.0%) 모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규제내용의 적절성/도움정도에 대해 근로자(79.0%/61.9%)와 담당직원(89.0%/92.0%)은 적절하고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반해,
 - 사업주는 부정적 평가(부적절 36.5%, 도움이 안 됨 50.2%)가 강해 조사대상자 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반면, 보험 사업은 대부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사업주 대상은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예방사업 등임

-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산재발생률, 재해의 업무관련성 불명확,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응답
 - 담당직원은 소득과약의 어려움(90.0%)을 가장 큰 이유로 답변
 - ☞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해와 업무관련성·소득과약 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

(iv) 규제준수도

-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72.9%(조사대상 중 사업주 55%, 근로자 68.5%가 가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 사업주(50.2%) 및 근로자(61.0%)의 상당수가 실제 현장에서 산재보험 적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담당직원은 가입률과 비슷한 62.0%가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
 -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60.6%), 금융교육 서비스업(57.7%)이 타 업종에 비해 규제준수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을 감시·감독하는 행정력에 대하여 담당직원의 81.0%가 현재 행정력 수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 사업주는 13.3%, 근로자는 41.8%가 행정력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담당직원과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벌칙의 정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은 43.05가 현 수준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데 반해, 사업주는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6.3%를 차지하고 있어 대비됨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규제인정도·규제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 규제내용의 명확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 중점 홍보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대중교통수당(지하철, 버스), 홍보물 제작 등 매체 특성에 맞는 홍보활동 강화와 언론의 활용을 통한 영세사업주의 인식제고를 통해
- 산재보험 자진가입 및 보험료 자진 납부 유도
- 산업구조의 변화, 업종의 다각화 등을 고려하여 업종통합·세분화 등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 2002년 58개 업종→2003년 59개 업종 : 2003년 산재보험료율 결정시 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기타의 각종 사업」 중 재해율이 낮은 일부 서비스 업종(컴퓨터이용관련 및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을 별도 분리하여 재해율이 유사한 다른 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율을 받도록 조정
- 고용·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징수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 및 단순화하여 사업주의 보험처리 업무부담 경감 도모
 - 연체료 부과기간 단축(60월→36월), 증가개산보험료제도 폐지, 불가피한 사정 시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 ※ 고용·산재보험 업무수행체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센터(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 근로복지공단(적용·징수업무, 1999. 10. 1 이관)
 - 산재보험 : 적용·징수, 보상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1995. 5. 1일부터 수행 중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 도입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져 현행 자진신고·납부방식에 불편을 겪고 있어
 -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단이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 도입

현 행	개 정 안
· 보험료 : 1년간의 임금총액×보험료율×근로자수 · 납부방법 : 자진신고·납부 - 연초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연 4회 분할납부 가능) - 다음 연도 7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 신고·정산	· 보험료 : 기준임금(월 단위)×보험료율×근로자수×3개월 · 납부방법 : 부과고지 -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고지하고,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 확정보험료 신고·정산 절차 불필요

(ii) 규제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 산재보험 가입, 상실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
 - 4대사회보험 적용 관련 민원서식 공동접수를 통한 사업주 편의 도모
 - 인터넷을 통한 4대 보험 포털서비스 개시(2002. 7)
 - 인터넷 접수 또는 사회보험기관 방문을 통한 산재보험 성립·소멸 등 관련서식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2003. 2)
 -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인터넷, ARS 등 보험료 전자납부제 시행 강화
 - ※ 전자납부실적(2003. 8) : 48,725건, 1,040억원(고용 566, 산재 474)
 - 체납보험료 신용카드 수납제도 홍보 강화
 - ※ 신용카드납부실적(2003. 8) : 44,841건, 5,781억원(고용 2,914, 산재 2,687)
 - 적용누락 사업장 적극 발굴 및 자진신고 유도
 - 4대 사회보험 간 정보연계를 통하여 누락사업장 발굴 가입조치
 - 2개월마다 전화, 이메일(E-mail)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안내
 -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기간(5월, 10월) 운영
 - ※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 미신고시에는 직권성립 및 보험료 인정 부과
 - 행정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
 - 적용·징수실적에 따른 인사·급여 상 인센티브 제도, 단순 업무에 대한 계약직 활용 및 아웃소싱 등
 - 매년 적용대상 대비 적정 수준의 목표(적용목포 관리제)를 설정하여 가입확대 추진
 - 국세청·통계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료 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의 효율화 도모
 - 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보험사무조합의 효율적 활용
 - 인가대상 확대(법인→법인·개인), 지원금 지급체계 조정 등
 - 자료제공에 대한 사용자 면제
 - 공단의 보험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의 관련자료 제공의무 외에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사용료 면제규정 신설
- (iii) 향후 추진계획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04년도 상반기까지 개정조치하고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추진하여 규제순응도 제고

②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확대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최저임금법 제3조

(ii) 규제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됨
 -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최저임금액 수준(2002. 9 ~ 2003. 8 적용 최저임금)
 - 당시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275원(226시간 기준 월환산액 514,150원)
 - 2003. 9월 현재는 시간당 2,510원으로 증액(+235원)
 - ※ 근로자의 임금총액 중 다음의 임금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자
 - 감액적용(10%) : 18세 미만자로서 취업기간 6월 미만인 자
 - 적용제외 : 장애인근로자,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자, 감시·단속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구 분	피규제집단	규제집행 직원
모 집 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표본크기	사업주 및 근로자 각 200명	근로감독관 100명
표본추출 방법	비례적층화추출방법	유의적 추출

- 조사기간 : 2003. 5. 1 ~ 2003. 5. 26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및 대인면접법

(ii) 규제인식도

-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적용확대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하여 사업주(41.5%) 및 근로자(38.0%) 모두 대체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저임금산업인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에서 최저임금 적용확대에 대한 인지도가 13.6% 및 24.6%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지정도는 '잘 알고 있음' 또는 '약간 알고 있음'의 응답비율이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42.0%로 낮은 수준

(iii) 규제인정도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확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근로감독관 91.0%, 사용자 68.0%, 근로자 89.0%로서, 특히 사용자도 최저임금 적용확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 적용확대의 적절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근로감독관 86.0%, 근로자 79.5%, 사용자 63.5%로 나타남
- 최저임금법 적용확대가 영세사업체의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80.5%가 긍정적으로 답변
- 최저임금법 적용확대가 기업경영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부담이 된다는 평가가 59.0%로 부담이 안 된다는 평가 41.0%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iii) 규제준수도

- 최저임금 준수정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61.8%로 부정적인 평가 37.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상별로 상이
 - 근로감독관은 부정적인 응답이 16.0%에 그친 반면, 사용자는 36.5%, 근로자는 50.0%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최저임금 미준수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상의 애로' 29.0%, '정책홍보 미흡' 25.6%, '감시·감독 행정력 부족' 22.2%, '제도의 복잡함' 16.4%로 응답하고 있음
 - 근로감독관은 30.0%가 '감시·감독 행정력 부족' 과 '경영상 애로' 를, 사용자는 40.0%가 '경영상의 애로' 를, 근로자는 31.0%가 '정책홍보 미흡' 을 들고 있어 대상별로 다소간 차이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행정기관의 행정력 적정성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에서 55.0%가 현재 보다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 특히, 근로감독관은 79.0%, 근로자는 69.5%가 행정력의 강화를 요구
- 벌칙 부과 적절성에 대하여, 44.4%가 '현재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7.2%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규제인식도·규제인 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 규제내용의 명확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매체 특성에 맞는 홍보활동 지속 전개
 - 최저임금이 결정·고시되는 시기에 신문광고 게재(일간지 4개 이상)
 -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음
 - 인터넷 구인구직정보제공업체 등과 협조하여 최저임금 정보 게재
 - 최저임금 안내 홍보물을 제작,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행정기관 등 민원실에 배포
- 최저임금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 환기(2004. 9 ~ 10월)
 -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운동 전개
 - 영세취약사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안내문 발송
 - 노사단체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적극 홍보
- 최저임금 취약 대상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장애인, 요식업 등 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
 - 청소년 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외 61개 단체
 - 장애인 단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외 62개 단체
- 방학기간 아르바이트생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관서별로 관내 학교에 최저임금 안내문을 송부, 학생지도에 활용토록 지원
 - ※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2002년 말 기준)
 - ▶ 중·고생의 22.1%가 아르바이트 경험(1회성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사업장 근무 경험자는 13.5%, 연간 49만 명으로 추정)
 - ▶ 사업장 근무 경험자 중 최저임금(성인임금의 90%) 미만 수령자는 5.1%

(ii) 규제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 최저임금 이행 일제 지도 점검 실시 (2004. 10 ~ 11월)

- 청소용역업체, 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 활동 전개

2003년 집중 지도점검활동

- ▶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업체 중 최저임금 위반 의심 업체 136개(장애인공단 조사결과) 지도·점검 실시(2003. 10~12월)
- ▶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빈번한 지하철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 시행중(2003. 12월 중, 총 24개 업체)

- 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업체에서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부처 및 정부출연기관 등과 협조
- 노동부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2003. 12)
- 보다 적극적인 최저임금 이행 지도감독을 위하여 근로감독관 증원 추진

④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 2000. 1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최저임금제를 확대한 결과 인지도 면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8%, 41.5%로 미약한 반면 인지도와 준수도 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집중적인 최저임금제도 홍보와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동 제도가 기업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③ 소규모 기업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① 조사대상규제

(i)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ii) 규제내용

- 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 개요

구분	종 류	대 상	시기 및 주기	목 적	비 고
1	채용 시 건강진단	신규채용 근로자	업무 배치 직전	일반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일반 배치적합성 평가	
2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종사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일반질병 조기발견 및 일반 업무적합성 평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진단으로 같음
		기타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3	배치 전 건강진단	유해업무 신규배치 근로자	유해업무 배치 직전	직업병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유해업무 배치적합성 평가	
4	특수건강진단	유해업무 종사근로자	6월·1년·2년 주기	직업병 조기발견 및 유해업무적합성 평가	
5	수시건강진단	유해업무 종사근로자	직업병 증상·소견 호소 시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등 직업병의 신속한 예방 및 유해업무적합성 긴급 평가	

1. 유해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한 120종의 유해인자(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분진, 소음 등 물리적 인자, 중금속, 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업무
2. 특수건강진단의 주기 :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 수준에 따라 6월, 1년 및 2년 주기로 실시
3. 유해업무 신규채용 근로자는 채용시 건강진단과 배치 전 건강진단을, 유해업무 종사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받아야 함

- 근로자는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그림 1]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및 업무적합성 평가기준

건강관리 구분판정	건강자	직업병 주의 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조치구분	보건교육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상담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지급·교체·착용			
	추적검사 또는 주기단축			
	근무 중 치료			
	근무시간 제한·단축			
			근로금지(병가 포함)	
			일시적 작업전환	영구적 작업전환
		산재요양신청		
적합성 평가기준	현재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능	일정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능	일정기간 현재업무불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불가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표 2〉 제순응도 조사대상 표본개요

(단위 : 개소/명)

구분		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비고	
1	피규제자(사업장)	소계	200	사업장 규모로 5050 할당 후 대도시 중심으로 임의표본추출	5인 미만 사업장은 2002. 1. 1일부터 건강진단 실시 의무 부여
		6~49인	100		
		5인 이하	100		
2	규제수혜자(근로자)	소계	200	사업장 규모로 5050 할당 후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임의표본추출	
		일반업무	100		
		유해업무	100		
3	규제집행자(산업안전감독관)	50	전국 지방노동관서 46개소 당 1명(서울 지역 7개소는 2명) 임의선정		

※ 산업안전감독관 :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감독관 중 보건업무 담당자

- 조사기간 : 2003. 5. 1 ~ 2003. 5. 26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및 대인면접법

(ii) 규제인식도

- 규제 인지도, 규제 이해도 및 규제내용 명확성으로 평가한 “소규모 기업체 건강진단 실시(이하 “건강진단규제”라 함)”에 대한 사업장 및 근로자의 규제인지 수준은 양호
 - 사업장 및 근로자의 80% 이상이 건강진단규제를 알고 있었으며,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각각 14.0% 및 10.0%에 불과,
 - 다만, 건강진단규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27.5% 및 32.5%로 아직 이해강도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사업장 및 감독관의 90% 이상이 건강진단규제 내용의 명확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사업장에 비해 감독관의 평가가 보다 긍정적이었음
- 사업장 및 근로자의 규제인지 수준이 높으면서도 이해강도가 아직 미흡하게 조사된 것은 조사 표본의 50%를 차지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의무 적용기간이 짧았고, 건강진단의 종류가 실시 대상 및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됨(※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2002. 1. 1일부터 적용)

(iii) 규제인정도

- 규제 필요도, 규제 수준·내용의 적절성 및 규제 목적 부합성으로 평가한 건강진단 규제에 대한 사업장, 근로자 및 감독관의 규제인정 수준은 양호
 - 사업장, 근로자 및 감독관의 90% 내외가 건강진단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사업장 및 근로자에 비해 감독관의 평가가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 사업장, 근로자 및 감독관의 90% 이상이 건강진단규제 수준 및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
 - 사업장과 근로자의 70% 이상 및 감독관의 94%가 건강진단규제의 목적부합성이 높다고 평가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에 비해 감독관의 평가가 보다 긍정적이었음
- 사업장 및 근로자가 건강진단 규제인정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면서도, 규제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에 비해 목적 부합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이유는 의학적 집단 선별검사인 근로자건강진단제도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 의학적 집단선별검사(mass screening medical examination) : 질병예방조치를 통한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특정 인구집단(예 : 사업장 근로자, 지역사회 주민, 특정연령 계층 등) 중에서 질병발생 고 위험자를 선별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

※ 근로자건강진단의 특성

구분	근로자건강진단	병·의원의 진단·진료
이론적 배경	집단선별검사	개인확진검사
실시목적	고위험자 선별 및 예방조치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
대상	정상 인구집단	건강이상 증상·소견을 보이는 개인
검사대상	발병빈도가 높고 예방조치가 가능한 질병전체	유사한 증상·소견을 보이는 질병전체
검사항목구성	집단선별검사 부적합 정밀검사항목 배제	질병확진에 필요한 모든 정밀검사항목 포함

(iv) 규제준수도

- 자사 및 타사 사업장의 건강진단 준수정도로 평가한 사업장 및 근로자의 건강진단규제 준수수준은 양호
 - 사업장 및 근로자는 자사 사업장(83.0% 및 77.5%)에 비해 타사 사업장(70.5% 및 70.0%)의 건강진단규제 준수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감독관도 건강진단규제의 준수수준을 사업장 및 근로자와 비슷하게 평가하였으나 준수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감독관이 평가한 현재 수준의 건강진단규제 집행력은 불충분하다는 평가(72.0%)가 충분하다고 평가(10.0%)의 7배 이상으로 미흡
- 건강진단규제 별칙적절성에 대하여 사업장의 60.5% 및 감독관의 52.0%는 적당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완화하여야 한다는 평가(25.5% 및 28.0%)가 강화하여야 한다는 평가(13.0% 및 20.0%)보다 약간 높았음
- 감독관이 건강진단규제 집행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2002년 건강진단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실시 등 한정된 인원에 비해 감독행정대상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v) 기타 제도개선 의견

- 건강진단규제 개선의견을 요약하면,
 - 피 규제자인 사업장은 검사항목 보장 및 형식성 배제 등 건강진단 내실화 및 개별 건강진단체제 도입을,
 - 규제수혜자인 근로자는 사업장은 검사항목 보장 및 형식성 배제 등 건강진단 내실화와 사업주 감독강화를,

- 규제집행자인 감독관은 건강진단 주기개선, 사업주의 비용경감 및 처벌강화를 제시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1)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

- 건강진단실시 홍보·안내 강화
 - 사업장 및 근로자의 건강진단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초 실시하는 건강진단실시 홍보·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 ※ 매년 건강진단안내책자(40쪽 분량)의 10여 만부를 유인·배포하고, 우리부 홈페이지 및 전문지 등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을 홍보·안내하고 있음
- 과태료 전환 등 기타 조치사항
 - 건강진단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이미 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2003. 7. 1일부터 적용)
 - ※ 건강진단 위반 근로자 1인당 20만원(건강진단 실시비용보다 높게 책정)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
 - CLEAN 3D 사업을 통하여 유해·위험작업을 보유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부(2003년도 목표 6,000개소)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비용을 1회에 한하여 무료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 모든 사업장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지원

(2)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 건강진단 품질개선 추진
 - 우리부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내실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05년 적용)을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개선내용은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개별 건강진단체제 도입, 검사항목 보강을 통한 건강진단의 형식성 배제 및 건강진단 주기개선 등이 포함될 것임
- 건강진단 품질개선 주요내용
 - 출장건강진단의 지양 및 내원건강진단의 권장을 통한 개별건강진단체제를 확립하고, 충분한 의사진찰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의 건강진단 1일 실시인원의 120명 이하 제한, 일부 정밀검사의 출장실시금지, 건강진단기관 내 근로자 편의시

- 설(대기실, 탈의실 등) 확충 및 근로자의 기관선택권 보장 등 추진
- 검사항목 보강을 통한 건강진단의 형식성 배제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채용 시 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에 추가, 종전 2차 검사로 실시하던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일부를 1차 검사로 전환하고, 간초음파검사 등을 새롭게 보강
- 건강진단 주기 개선
사무직 종사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주기를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기타 제도개선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유해인자 확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장비기준 강화 등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03-3938, kjyoung@opc.go.kr)

(8) 문화관광부

①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실시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ii) 규제내용

-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은 후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정성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기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기구나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함
-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유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일정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관광부장관에 등록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함
-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 안전성검사를 한 때에는 유기기구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유원시설업자와 당해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를 미 실시하는 경우 1차 위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사업장지 1월, 4차 위반 시 허가취소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118명, 제3차 집단 300명, 집행공무원 93명
- 조사기간 : 2003. 5. 20 ~ 6. 20
- 조사방법 : 우편조사 및 현지면접조사

(ii) 규제인식도

-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실시에 대한 피규제집단인 유원시설업자의 인지도는 99.2%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나 일반이용객의 인지도는 47.0%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반이용객의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 내용이해도 측면에서 유원시설업자의 31.6%, 집행공무원의 63.4%가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내용 명확성 측면에서 유원시설업자와 집행공무원 각각 98.2%, 91.6%로서 대부분이 명확하다고 응답함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 수준 및 내용 적절성, 목적 부합성 등 규제 인정도 측면에서는 유원시설업자(필요성 98.3%, 적절성 94.1%, 부합성 99.2%), 집행공무원(필요성 98.9%, 적절성 93.2%, 부합성 97.8%), 일반이용객(필요성 98.3%, 부합성 93.3%) 등 모든 관련 집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제도의 운용이 필요함

(iv) 규제준수도

- 규제준수율과 준수감시 가능여부도 유원시설업자(준수율 100.0%, 감시 가능여부 100.0%)와 집행공무원(준수율 98.9%, 감시 가능여부 87.1%) 집단 모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동 규제에 대한 높은 준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안전성검사 미 실시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공무원과 일반이용객 두 집단에서 현재의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유원시설업자 20.2%, 집행공무원 49.4%, 일반이용객 53.8%)이 높게 나타나 벌칙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규제 인식 강화

-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인지도 제고
- 사업자단체에서 동 규제의 존재와 이로 인해 유원시설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각 업체, 학교 등에 배포하고, 유원시설업체 내에 안전 점검판 등에 동 규제의 내용을 적절하게 게시하며 사업체단체와 각 업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홍보하도록 함

(ii) 규제성과 제고

- 유원시설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안전관리자의 경우 법적 의무교육을 당해 업체가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에 한정하여 받도록 하던 것을 안전관리자가 업체에 처음 배치된 후 6월 이내에 받도록 교육을 강화함(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 2003. 10. 6)
 - 안전관리자 외에 유원시설업자 및 운행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되 유원시설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iii) 규제집행력 강화

-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 현행 4차위반시 허가취소를 2차 위반 시 허가취소로 개정(2004년도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추진)
 -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총액을 상향조정
 - 현행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500만원을 우선 2천만원으로 증액(과징금 2천만원 증액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개정안을 11월 중 정기국회 제출 예정)하고, 필요시 추후 상향 조정 검토
-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를 통한 검사의 질 향상 도모
 -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복수화하여 안전성검사의 질을 제도적으로 제고(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2003. 8. 6)

- 유기기구 정보화를 통한 안전성검사 단속능력 확대
 - 전 유기기구(1천여 개)의 재원, 사고이력, 안전성검사 내용 등을 수록한 DB를 구축(2004년 5월)하여 이를 유원시설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전성검사기관 및 관할 관청에서 컴퓨터망을 통한 안전성검사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 안전성검사를 위한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
 - 현재는 기계, 전기, 산업안전 분야 위주이나 전자, 유공압, 건축 등 유기기구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유원시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으로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초 실무와 현장경험을 받도록 하고, 관련법 및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함

②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 법령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게임제공업소에서제외하는업소의범위(고시)」

(ii) 규제 내용

-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업소의 범위
 - 영업소 중 노점, 유사 이동 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도·소매 업소는 제외
 - 백화점 등 종합 도·소매점 내부에 다수의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 각 영업장을 별개의 일반영업소로 봄
-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당해 영업소의 시설내부로 하되 실외 또는 실내·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영업소 이용고객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시설에 부속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장소에 한함
- ‘영업시간의 종료 후’ 또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중’에는 일반 영업소가 아닌 곳으로 봄
- 기타 일반영업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

- 인형 뽑기류 등 크레인게임물은 경품제공기능이 있는 게임물로 보지 아니함
- 이 경우 배출되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 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게임제공업의 경품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500개, 제3차 집단 500개, 집행공무원 203개
- 조사기간 : 2003. 4. 23 ~ 5. 15
- 조사방법 : 전화조사, 직접대면조사

(ii) 규제인식도

-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일반영업소)의 범위 등 고시에 대한 인지도는 피규제집단 28.4%, 제3차 집단(학부모)는 10.9%로 낮아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 63.3% 등 모두 공감하고 있고, 목적 부합성의 경우 집행공무원 64.5%로 모두 높게 나타나 규제가 필요하고 규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v) 규제준수도

- 규제 준수율은 피규제집단 53.8%, 집행공무원 46.8%, 학부모 10.6%를 보이고 있고, 규제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재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부모는 47.4%이고 피규제집단은 2.0%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게임물 설치범위에 대한 홍보 강화

- 규제인지도, 규제이해도에 대해서는 규제담당공무원은 비교적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영업소와 학부모의 평가가 낮게 나타난 바, 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협회를 통한 홍보 강화
 - 규제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내용 게시 등을 통하여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도록 강구

(ii) 집행공무원에 대한 규제이해도 제고 대책 수립

- 전반적으로 규제의 인정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다만 집행공무원의 응답이 낮게 평가되어 이를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 집행공무원의 78.3%가 집행력의 부족을 이유로 하고 있음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지속적 협조 요청.

(iii) 단속강화 등 규제집행력 강화

- 규제준수율에 대한 일반영업소와 집행공무원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고시내용의 개정과 단속을 통해 관심 제고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03-3938, kyoung@opc.go.kr)

(9) 여성부

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기간 제한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조

(ii) 규제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일시보호기간은 2월이며,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1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346명, 제3차 집단 71명, 집행공무원 74명
- 조사기간 : 2003. 7. 14 ~ 8. 22
- 조사방법 : 면접조사

(ii) 규제인식도

- 보호시설의 법정보호기간에 대한 인지도 및 내용의 이해도는 조사대상 다섯 집단(피

규제집단 : 보호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원, 1366 상담원, 규제집단 : 공무원, 제3차 집단 : 보호시설입소자) 모두 비교적 높은 것으로 밝혀짐

- 보호기간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는 91.9%, 시설입소자는 49.3%, 공무원은 64.4%, 가정폭력상담원은 71.1%, 1366 상담원은 88%

(iii) 규제인정도

- 보호기간의 필요성과 보호기간제한에 대한 시설설립의 목적부합성은 제3차 집단을 제외한 조사집단(관련공무원, 1366 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원, 시설종사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60% 이상)하고 있으나 보호기간제한의 적절성은 피규제집단(보호시설 종사자·가정폭력 상담원·1366 상담원) 모두 부정적(50% 미만)으로 평가
 - 보호기간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집단(1366 상담원 : 86.1%, 가정폭력 상담원 : 84.2%, 시설종사자 : 82.5%, 공무원 : 79.8%) 모두 75%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
 - 보호기간제한의 적절성은 보호시설 종사자(26.8%), 가정폭력 상담원(34.8%), 1366 상담원(46.7%), 관련 공무원(55.5%)순으로 나타나 보호시설 종사자가 현행 보호기간에 대해 가장 부적절하다고 평가
 - 보호기간제한에 대한 목적부합성은 네 집단 모두 60% 이상 부합한다고 평가하였음(1366 상담원 : 73.2%, 가정폭력 상담원 : 65.9%, 관련 공무원 : 65.8%, 보호시설 종사자 : 63.2%)
- 규제의 인정도 항목 중 보호기간제한의 적절성에 대하여 보호시설 종사자, 공무원, 가정폭력 상담원, 1366상담원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무엇보다 보호시설 종사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iv) 규제준수도

- 규제준수율은 1366 상담원(97.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73.6%), 가정폭력 상담원(60.4%), 관련공무원(50.0%) 모두 높게 평가
 - 특히 피규제집단 중 1366 상담원(97.1%)의 준수도 평가가 가장 높음
- 보호기간제한의 집행력 평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65.5%), 관련 공무원(52.2%)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v) 보호기간 규제에 관한 개방형응답결과

- 현재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평균 6주 정도이며 14.6%가 4주 안에 퇴소하고, 4주

~8주 안에 퇴소하는 경우가 43.8%이며 35.4%가 8주~12주 안에 퇴소하며 12주 이상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약 6.3%인 것으로 나타남

- 약 60%의 입소자는 2개월 미만에 퇴소하지만 나머지 약 40%의 입소자들은 장기 입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모두 현행 보호기간이 특정 피해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보다 장기적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

- 현행 보호기간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보호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경제적, 심리적인 이유로 기간 내에 자립하기가 힘들고, △이혼 등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경우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현행 2~3개월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짧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대다수 의견
- 아울러 피해자가 시설퇴소 후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자립을 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거나 심리·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기에는 3개월이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많은 응답자들이 적정보호기간으로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적정보호기간을 정하되 상황에 따라 시설장에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개인의 특수 상황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아울러 자립이나 사회복귀를 단계를 위한 기간 연장과 사후 관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호기간 연장

- 제1안 : 6개월(3개월 보호,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소자의 평균 보호기간이 약 6주로 나타났으나 경우에 따라 최소한 6개월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들이 있으므로 현행 보호기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 따라서 일차적인 보호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3개월 이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시설장의 재량으로 보호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최대 6개월 거주를 허용하도록 함
- 제2안 : 9개월(3개월 보호, 2회에 한해 3개월씩 연장 가능)

-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장기보호시설이 없는 현 시점에서 자립준비를 위해 보다 장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잠정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거주하도록 허용
- 향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중장기보호시설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면 현행 보호시설은 단기보호를 중심으로 하도록 보호기간이 재조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추진
-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시행령 제33조제③항)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03-3938, kjyoung@opc.go.kr)

(10) 문화재청

① 문화재 지표조사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동법시행령」 제43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2

(ii) 규제내용

- 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는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사업면적이 3만㎡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장이 지표조사 필요성을 판단하여 실시
 -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302명, 제3차 집단 514명, 집행공무원 51명
- 조사기간 : 2003. 7. 10 ~ 7. 11
- 조사방법 : 전화조사

(ii) 규제인식도

-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화’ 규제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피규제집단 57.9%, 제3차 집단의 78.8%가 ‘모르고 있다’ 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지표조사 의무화 규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각 조사대상의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응답자 중 피규제집단(문화재 경험이 없음 : 83.8%)은 10년 미만의 경력자 집단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음
- 내용 이해도 측면에서 피규제집단의 73.3%, 집행공무원은 96.1%가 규제 내용을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집행공무원의 다수(60.8%)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피규제집단의 경우 경력이 길수록 규제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음
- 규제의 명확성에 대해 피규제집단의 경우 명확하지 않다고(60.3%)생각하는 반면 집행공무원은 명확하다고(78.4%) 답변해 피규제집단에 대한 홍보 활동이 필요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집단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규제가 ‘필요하다’ 고 응답해 동제도의 지속적 인 운용이 필요함(피규제집단 85.8%, 집행공무원 96.1%, 제3차 집단 95.6%)
- 규제수준의 적절성 면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 (피규제집단 51.9%, 집행공무원 66.6%)는 견해가 많으나 피규제집단의 ‘적절하지 않다’ (48%)라는 응답이 많아 경제적 측면의 손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화 규제가 각종 건설공사로부터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보존’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목적 부합성 및 효과를 질문한 결과 피규제집단(73.2%), 제3차 집단(86.1%), 집행공무원(94.1%)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iv) 규제준수도

- 규제준수도에서 집행공무원(78.4%)의 규제준수 응답률이 높음에 비해 피규제집단

(47.3%), 제3차 집단(11.7%)은 준수율이 높지 않다고 응답해 집단별로 큰 편차를 보임

- 집행공무원은 '잘 준수하고 있다'에 낙관적(78%) 인식을 보인 반면 제3차집단은 '잘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비관적인(87%) 상반된 응답의 결과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건설업체의 이해와 관심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규제 집행에 필요한 현재의 인원과 조직력의 충분 정도를 질문한 결과 현재의 인원과 조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66.6%)는 응답이 많아 지표조사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별척부과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현재수준 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폐규제집단 35.1%, 집행공무원 19.6%, 제3차 집단 8.8%)이 많지 않아 전체적으로 별척부과수준은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
 - 다만, 집행공무원(33.3%)과 제3차 집단(56.6%)에서는 대부분 현재수준 이상의 별척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하여 대책 강구가 필요함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문화재 지표조사 홍보 강화

-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
 - 문화재 지표조사 홍보자료를 제작·배포(지자체 등 유관기관, 건설업체, 관련 업계)
-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표조사 제도의 이해와 동 규제의 준수에 관한 협조공문 발송

(ii) 문화재 지표조사 교육 프로그램 실시

- 건설공사 관련 종사자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교육
 - 건설교통부, 시·도 및 건설협회 등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지표조사 관련 사항 포함 요청
-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도 공무원(관계관, 관리자, 기술공무원, 자연문화재 등) 교육프로그램에 지표조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

(iii) 문화재 지표조사의 규제집행력 강화

- 문화재보호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수요 증대와 규제업무의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보호업무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지역문화·시민단체와 연계한 감시체제 강화
- 문화재 보존 효과는 높이 평가되었으나 건설업체의 시간적·경제적·손실 예방 효과는 문화재 보존만큼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필요성 및 이해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규제의 준수를 제고와 피규제집단의 불만사항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
 -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처리 신청절차의 간소화(5단계⇒3단계) 및 문화재소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 지표조사 시 보고서상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도자체 처리·검토(향후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 반영 검토)
 - 현재의 벌칙(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3. 7. 1시행) 수준 이상의 적용은 개정내용을 일정기간 적용한 후 부과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추후 검토
 - 구법에는 사전지표조사 미실시시 벌칙을 부과하지 않았음(2003. 7. 1 이전)

(iv) 기타

- 건설공사시 유적이 확인·발견됨으로써 공사중단, 공기지연 등 경제적 손실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적의 분포상황을 도면으로 제작 및 DB구축과 이를 전산화하여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대국민 서비스 제공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03-3938, kjyoung@opc.go.kr)

(11) 청소년보호위원회

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도 규제순응도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 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14조 내지 제18조

(ii) 규제내용

-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는 유해 매체물의 표시·포장의무를 부여하고 표시·포장 훼손을 금지
-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이 되지 않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는 전시·진열 금지는 물론 구분·격리토록 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매체물 취급종사자 : 375명
 - 만화·정기 간행물 출판사(32), 만화방 업주(152), 도서대여업주(81), 비디오 대여업주(80), 인터넷업계 종사자(30)
 - 집행공무원(청소년보호관련 담당 시·도공무원) : 54명
 - 제3차 집단(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관련 집단) : 625명
- 조사기간 : 2003. 4. 16 ~ 4. 18(3일간)
- 조사방법 : 우편조사

(ii) 규제인식도

- 규제의 존재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제의 직접 대상자인 피규제집단(74.1%)과 보호대상인 청소년과 자율적 감시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알고 있다'라는 응답률(71.0%)을 볼 때 규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다만, 일반 국민(청소년 불 포함)의 경우는 규제인지도(45.2%)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규제 이해도는 동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70.6%가 규제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었으나, 규제 미준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가진 집행공무원 중에서 동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6.7%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규제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 일반 국민에게도 좀 더 홍보가 필요하고, 단속공무원에게는 규제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책 필요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단구분을 막론하고 ‘필요하다(93.9%)’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
- 규제수준의 적절성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반반으로 대립되고 있어 규제준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 비디오 대여업소에서 적절하다는 평가(57.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출판사 측에서는 (37.5%)에 지나지 않아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음
 - 규제준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중에서 구분·격리 등 관리의 곤란성(44.0%)이라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동일한 규제내용 적용(42.2%)이라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였음
-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다수(65.6%)를 차지했으며, 조사대상별로는 피규제집단의 긍정적인 비율(56.8%)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결과적으로 규제인정도 측면에서는 규제수준의 적절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iv) 규제준수도

- 규제준수율(경험)에 있어서는 피규제집단중 66.9%가 ‘잘 준수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응답 29.1%를 차지하였음
 -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 경험율에 대한 보완지표로 타 집단의 규제준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 경험율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남
 - 전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70.6%)’는 평가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피규제집단 역시 규제준수 경험율에 비해 규제준수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나 실제 규제준수율이 높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음
- 규제집행력에 대한 조사로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규제 집행에 필요한 현재의 인원과 조직의 충분성 정도를 물어본 결과 과반수가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제약이 많다(53.7%)’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규제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벌칙부과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별로 의견차이가 나타났는데, 피규제집단(45.1%)과 교수(56.0%)들은 ‘현재수준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했으며, 일반 국민은 대부분(72.8%)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최소한 현재의 벌칙수준유

지는 필요함

- 전반적으로 규제 준수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집행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규제인식도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업주들 대상으로는 지도단속과 업종단체 등을 통하여 정확한 규제내용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홍보물과 공문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홍보 병행
 - 상대적으로 규제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을 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연계하여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한 홍보
- 규제내용 교육 강화
 - 자치단체공무원 등 단속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시 규제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내용에 포함하는 등 교육 강화
 - 정확한 법집행과 함께 업주 등에게 정확한 홍보 가능

(ii) 규제인정도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하여야 하는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법제 17조 및 제51조)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경감함으로써 규제인정도 제고

현 행	개정안
구분격리 미 이행시 시정명령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불이행 시 과태료부과)

- 구분·격리방법 완화(동법 시행령 제17조)
 - 만화 등 시리즈물의 경우 관리의 편의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혼합진열가능토록 개정
- 스포츠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과징금부과 신설(법 제49조)
 - 청소년유해성 스포츠신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만화유통업자 등 영세업자에게만 규제한다며 매체 간 규제형평성 차이가 규제 인정도를 낮게 하는 요인임

- 따라서 스포츠신문 등 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해서는 유해표시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매체 간 규제형평성 제고(2004년도)

(iii) 규제준수도

- 매체물 유통관련업주의 자율적 준수노력 촉구
 - 관련 업소들이 대부분 자유업으로서 영세업소임을 감안하여 중간유통 및 제작발행사 등에게 공문발송을 통한 자율적인 법 준수 및 정화노력 촉구
- 집행력한계 보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에의 지속적인 지원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의 유기적인 합동 단속체제를 강화하여 집행력을 보완하고,
 - 현재 청소년 일부 업무의 지방이양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인력 확보 요청
- 경찰 등 단속기관에 지도단속 협조 및 엄정한 법집행

(iv) 향후 추진계획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되면 2004년 상반기 중 동법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 추진예정

④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에 대하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봄
- 특히, 직접 청소년보호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이해도가 16.7%로 매우 낮은 것은 향후 청소년 정책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더구나 관련교수(17.1%), 청소년·시민단체(22.7%)의 이해도 보다 낮은 것은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보위에서는 일선의 담당공무원들이 관련법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숙지할 수 있도록 순회교육, 자치단체별 공무원교육원 교과편성 등 집행공무원의 이해도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03-3938, kjyoung@opc.go.kr)

(12) 과학기술부

①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2항

(ii) 규제내용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방사선 안전관리자 300명
 - 제3차 집단 :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24명
 - 집행공무원 : 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련자 55명
- 조사기간 : 2003. 7. 1 ~ 7. 15
- 조사방법 : 방문 및 전화설문조사

(ii) 규제인지도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관련 규제에 대해 모든 피규제 집단이 규제를 인지(100%)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3차 집단은 43.3%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는 바 남자, 화이트칼라 계층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게 조사됨
 - 규제내용 이해도 측면에서는 대다수의 피규제집단(96.7%)과 집행공무원(96.3%)이 규제의 내용에 대해 ‘대략적인 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
 - 또한 행정규제내용의 명확성에 대하여는 피규제집단의 84.3%와 집행공무원의 87.3%가 ‘명확하다’고 응답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적절성·효과성 등 규제인정도 전 분야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피규제집단(94.7%), 집행공무원(100%), 제3차 집단(95.4%) 모두 '필요하다' 는 의견
- 규제수준의 적절성면에서는 대부분의 피규제집단(79.7%)과 집행공무원(85.5%)이 '적절하다' 고 평가
 - 한편,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집단에서 '세부 규제기준에 따라 너무 엄격한 부분이 있다' 또는 '기관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기준이 필요하다' 는 등의 의견이 제기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관련 규제가 방사선 이용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 는 의견이 지배적(피규제집단 84.7%, 집행공무원 100%, 제3차 집단 91%)으로 규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게 평가

(iv) 규제준수도

- 피규제집단의 과반수 이상이 '잘 준수하고 있다' (53.7%)거나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45%)고 응답하였으며, 타 업체들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잘 지키고 있다' (85%)고 평가하고 집행공무원도 긍정적으로 평가(72.7%)하였으며 제3차 집단의 61.8%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 응답
 - 규제관련 관리·감독의 정도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의 71%가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고 평가하고, 집행공무원 역시 규제관리·감독을 위한 현재의 집행력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 (12.7%) 또는 '적당하다' (60%)는 응답을 보였으며 제3차 집단의 65.4%는 규제에 대한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응답
 - 규제 미준수 시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의 54.7%와 집행공무원의 41.8%가 '현재수준이면 적절하다' 는 의견이나, '완화해야 한다' 는 의견(피규제집단의 37.7%와 집행공무원의 32.7%)도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제3차 집단의 66.7%는 '강화해야 다' 는 의견을 보임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 「현실성·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기준 마련(2004년 상반기) 및 관계법령 개정(2004년 하반기) 추진
 - '세부 규제기준에 따라 너무 엄격한 부분이 있다' 또는 '기관별 특성에 따른 차별

화된 규제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현재의 원자력법령상의 규제기준을 검토·분석하여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실성·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 벌칙 완화 검토(2004년 상반기) 및 관계법령 개정(2004년 하반기) 추진
 - 벌칙부과의 적절성에 대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피규제집단 37.7%, 집행 공무원 32.7%)이 적지 않아 벌칙수준의 하향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데 대하여, 현행 벌칙이 ‘벌금 또는 업무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및 ‘경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및 ‘경고’ 등으로 시행되고 있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부분적으로 완화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 정기검사 지적의 경우 대부분 건강진단과 교육 미실시, 방사능측정기 교정주기 미준수 등 경미한 사항이 많아 이를 계도나 안전관리교육 등으로도 시정이 가능하여 현행 벌칙을 일부 완화하더라도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규제내용 등 홍보 및 관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피규제집단의 높은 규제인지도(100%) 및 규제준수도(피규제집단 98.7%, 집행공무원 72.7%) 응답과는 달리 제3차 집단(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규제인지도(43.3%) 및 규제준수도(36.4%)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정보공개센터 및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등을 통해 방사선 위해방지를 위한 본 규제의 필요성·내용·실태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규제관련 관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집필자 : 이태인 서기관(T.3703-3947, goodlti@opc.go.kr)

(13) 정보통신부

① 개인정보의 오용 및 남용행위 제한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27조 내지 제29조

(ii) 규제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수집목적 달성 시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 기간·별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 207명
- 제3차 집단 : 일반 국민 318명
- 집행공무원 : 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직원 18명

- 조사기간 : 2003. 5. 16

-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ii) 규제인식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행위 제한’ 관련 규제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규제인식도는 69.1%로,
 -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7%,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62.9%로 피규제집단의 규제인지도 및 규제내용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대하여는 피규제집단의 75.8%와 집행공무원의 83.3%가 ‘명확하다’고 응답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대상집단(피규제집단 99%, 집행공무원 100%, 제3차 집단 97.2%)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으며, 규제의 효과(피규제집단 72.5%, 집행공무원 100%, 제3차 집단 75.8%)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현행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의 경우 의견이 양분(적절 48.3%, 부적절 51.7%)

(iv) 규제준수도

- 규제준수도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집단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피규제집단은 '잘 지켜지고 있다' (79.9%)고 응답한 반면, 집행공무원은 44.4% 제3차 집단은 16.7%만이 '잘 지켜지고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집행공무원의 90%는 '의식부족'을 제3차 집단의 38.5%는 '규제미흡'을 들고 있음
- 별척부과 수준의 적절성(피규제집단 46.4%, 집행공무원 72.2%, 제3차 집단 25.2%)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집단에 따라 다르게 응답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2003년 하반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의무 강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자동 개인정보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또는 설치·운영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업체에게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를 강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고시에 정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의무부여
 -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위탁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개인정보 분실·누출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도록 한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ii) 정보통신망법의 추가개정 추진(2004년 상반기)

- 민간분야에서 수집·유통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OECD 8원칙 등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의거하여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추가 개정을 추진
 - ※ OECD 8원칙 : OECD 회원국에게 개인정보보호 입법추진 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회원국이 합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 ① 수집제한의 원칙 ② 정보 정확성의 원칙 ③ 목적 명확화의 원칙
- ④ 이용제한의 원칙 ⑤ 안전성 확보의 원칙 ⑥ 공개의 원칙 ⑦ 개인 참가의 원칙
- ⑧ 책임의 원칙
- 장기적으로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규제하는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2004년 하반기 이후)
- (iii)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세부지침 제정·배포(2003년 하반기)
 - 개인정보보호의 세부규제내용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 시 고려해야 할 세부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고 해지고객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2003년 하반기)
- (iv)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업체의 높은 규제준수를 응답과는 달리 집행공무원 및 일반 국민이 느끼는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업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부과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8조

(ii) 규제내용

-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및 교습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자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제반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 여행업·호텔업·항공운송사업·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205명

- 제3차 집단 : 일반 국민 318명
- 집행공무원 : 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직원 18명
- 조사기간 : 2003. 5. 16
-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

(ii) 규제인지도

-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및 교습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 피규제집단의 34.6%, 제3차 집단의 1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동 규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 지에 대해서도 62%가 ‘말만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해 매우 낮은 규제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어 규제인지도 및 규제내용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대하여는 피규제집단의 72.1%와 집행공무원의 75.9%가 ‘명확하다’고 응답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대상 집단(피규제집단 97.6%, 집행공무원 100%, 제3차 집단 94.7%)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으며, 규제의 효과(피규제집단 57.6%, 집행공무원 88.9%, 제3차 집단 68.9%)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현행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의 경우 의견이 양분(적절 49.8%, 부적절 50.2%)

(iv) 규제준수도

- 규제준수도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집단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피규제집단은 ‘잘 지켜지고 있다’ (76.7%)고 응답한 반면, 집행공무원은 27.8%, 제3차 집단은 22%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집행공무원의 75%는 ‘의식부족’을 제3차 집단의 40.1%는 ‘규제미흡’을 들고 있음
- 별척부과 수준의 적절성(피규제집단 42.4%, 집행공무원 72.2%, 제3차 집단 24.5%)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집단에 따라 다소 다르게 응답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 (i)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2003년 하반기)
 -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및 교습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제5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에 의해 전기(前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의 오용 및 남용행위 제한(규제순응도 조사과제 가.)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사항 적용
- (ii) 「정보통신망법」 추가개정 추진(2004년 상반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자의 범위를 민간분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iii)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세부지침 제정·배포(2003년 하반기)
 - 개인정보보호의 세부규제내용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시 고려해야 할 세부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고,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규제인지도 및 이해도를 제고
- (iv)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업체의 높은 규제준수율 응답과는 달리 집행공무원 및 일반 국민이 느끼는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업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집필자 : 이태인 서기관(T.3703-3947, goodlti@opc.go.kr)

(14) 해양수산부

①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광력기준 설정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52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 「어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광력기준(해양수산부고시)

(ii) 규제 내용

-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설치하는 집어등의 광력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선톤수		광력기준
구톤수	톤수	
10톤 미만	10톤 미만	100kw 이하
10 ~ 25톤 미만	10 ~ 20톤 미만	130kw 이하
25 ~ 70톤 미만	20 ~ 50톤 미만	180kw 이하
70 ~ 100톤 미만	50 ~ 70톤 미만	200kw 이하
100톤 이상	70톤 이상	210kw 이하

• 벌칙 조항

- 근거 : 「해양수산부령」 163호인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대상 :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41호 위반어선의 선주 및 해기사
- 벌칙 : 1차 위반 : 조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20일
2차 위반 : 조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30일
3차 위반 : 조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40일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조사 : 피규제집단 138개, 제3차집단 48명, 집행공무원 53명
- 조사기간 : 2003. 4. 4 ~ 6. 3(60일간)
- 조사방법 : 우편 설문조사, 조사원의 전화조사, 조사원의 현장방문조사

(ii) 규제 인식도

-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에 대한 광력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피규제집단 99.3%, 집행공무원 94.3%, 제3차 집

단 93.7%로 조사되어 규제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다만, 규제내용의 이해도 면에서는 피규제집단이 94.9%로 높은 이해도를 나타낸 반면 전문가 집단은 77.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광력기준에 관한 규제가 피규제집단에 의해 설정된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

(iii) 규제인정도

-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에 대해 광력을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이 공감하고 있는데,
 - 규제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집행공무원의 긍정도가 다소 낮은 수준(66%)이었으며, 피규제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84%)를 나타냈는데 이는 광력기준이 피규제집단이 적절한 수준을 자발적으로 정하여 설정된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

(iv) 규제준수도

- 규제의 준수율에 응답은 집행공무원이 가장 회의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피규제집단에서도 58.7%도 절반을 약간 넘기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우 잘 지키고 있다는 의견이 5.1%에 불과해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규제 미준수의 사유로는 피규제집단은 정부의 지도 및 단속부족으로, 규제집단은 어획량증대 목적 때문, 제3차 집단은 어업인 사이의 경쟁심리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정부단속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올바른 어획방법에 대한 홍보

- “광력이 높을수록 어획량이 높다”라는 일부 어업인의 잘못된 인식의 해소를 위해 홍보강화 필요

(ii) 자율적 감시·감독체제운영으로 경쟁심리 완화

- 채낚기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시 및 규제체제를 갖추어 위법행위 시 어업인들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

(iii) 정부의 지도·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 규제준수도 제고를 위해 어업지도선 및 해경단속선 등 행정력의 보완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 현행 현장단속체제에서 출어 전 집어등 광력시설을 단속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경과 협조하여 단속

- 규제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벌과금)을 마련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와 함께 가중처벌
- (iv) 기타법령 등의 정비사항
 - 어선톤급 기준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② 선박소유자의 폐기물 해양배출방지를 위한 오염방지 설비의 설치의무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해양오염방지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

(ii) 규제내용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함
-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제6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 대상선박은 다음과 같음
 - 총 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11인 이상의 선박
 -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20인 이상의 어선
 -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 30인 이상의 군함과 경찰용선박
-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98개, 제3차 집단 120명, 집행공무원 90명
- 조사기관 : 2003. 4. 4 ~ 6. 3(60일간)
- 조사방법 : 우편설문조사, 조사원의 전화조사, 조사원의 현장방문조사

(ii) 규제 인식도

- 선박소유자가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지를 위해 선박 내에 오염방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당사자 집단(피규제, 규제집단)이 99.5%, 제3차 집단이 47%로 조사되어 당사자집단의 인식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 다만 규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규제내용의 이해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피규제집단은 오염방지설비설치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규제집단은 규정에 대한 전문적 규제·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iii) 규제의 인정도

- 오염방지설비의 설치의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집단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인정도는 피규제집단 95%, 규제집단 97%, 제3차 집단 100%로 인식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 규제내용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피규제집단이 82%, 규제집단 87%, 제3차 집단은 90%로 조사되어 이 규제의 규제수준이 매우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iv) 규제의 준수도

- 선박 내 오염방지설비 설치의무 준수율을 조사해본 결과 피규제집단 92%, 규제집단 77%로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제3차 집단은 준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규제 미준수의 주요원인은 높은 설비·운영비용, 기준의 복잡성, 지도·단속의 부족, 약한 처벌기준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의 약함이 원인인 것으로 평가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규제의 인식도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의 강화

-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홍보사이트 개설, 오염방지설비기준 설치에 대한 안내서 제공, 규제사례집 제공 등

(ii) 지역자율관리기구 및 폐기물해양배출감시기구 운영

- 지역별, 선종별 자율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지역자율관리기구와 폐기물해양 배출감시기구를 연계 운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감시기능을 확충하여

신고제 도입

(iii) 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모범선박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염방지설비 공급업체의 애프터서비스망을 구축 편리하게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iv) 지도·단속 강화

- 지도·단속의 강화, 집행 인력의 전문화 및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벌칙 강화

*집필자 : 이호모 사무관(T.3703-3942, yhomo@opc.go.kr)

(15) 농림부

①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18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내지 25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4조의 3

(ii) 규제내용

-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원산지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 또는 조사토록 함
-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시방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100, 제3차 집단 100, 집행공무원 50
- 조사기간 : 2003. 7. 16 ~ 8. 14
- 조사방법 : 전화조사

(ii) 규제인식도

-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무에 대한 인지도는 피규제집단이 93.0%, 제3차 집단이 97.0%로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구체적인 내용 이해도는 피규제집단이 39.8%로 집행공무원(96.0%), 제3차 집단(48.5%)에 비해 낮고
 - 내용명확성에 대한 인지도도 피규제집단이 67.0%로 집행공무원(100%)에 비해 낮게 조사됨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두 공감(피규제 집단 95.0%, 집행공무원 100%, 제3차 집단 100%)한 반면 규제준수 및 내용 적절성은 피규제집단(71.0%)과 집행공무원(94.0%)이 엇갈린 견해를 보임
 - 규제의 목적 부합성 및 효과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응답(피규제집단 90%, 집행공무원 100%, 제3차 집단 94.0%)을 보였으며, 제3차 집단이 피규제집단보다 높게 조사됨

(iv) 규제준수도

- 피규제집단과 제3차 집단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62.0%와 45.0%였으나, 집행공무원은 94.0%로 응답, 제3차 집단이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제3차 집단의 미준수 사유는 “영리목적 때문(23.6%)”, “믿을 수가 없다(14.5%)”, “유통과정에서 속인다(12.7%)”로 조사됨
 - 규정의 집행력에 대해 “현재의 집행력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집행공무원이 36.0%, 피규제집단이 44.0%로 응답
 - 벌칙부과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이 54.0%, 제3차 집단 77.0%, 집행공무원들은 18.0%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각 집단 간 상반된 견해를 보임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 (i) 원산지 표시 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 원산지 표시 관리에 대한 교육 강화실시
 - 지방자치단체 농산물담당공무원 교육, 세미나 등 행사 시 교육
 -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업체,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 TV 등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 전개(연중실시)
 - 대형 부정유통 등에 대한 적발현장을 동행취재, 추석·설 등 특별단속 결과 등 단속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를 추진
 - 농산물도매시장내의 전광판, 지하철, 버스외면 등에 홍보판 설치
 - 농산물 원산지표시의무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시·구·읍, 농협, 등 민원창구 비치하여 배부
- (ii)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 단속강화
 - 단속대상품목 확대 : 2003년 422품목 → 2004년 472품목 → 2005년 490품목
 -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품목별 기획단속 실시
 - 수입 농축산물 통관정보를 활용하여 추석, 설 등 품목별 취약시기에 집중단속
 - 사법 경찰권을 강화하여 원산지허위표시등 부정유통 근절
 - 사법경찰관리 지명확대 : 2003년 383명 → 2004년 390명 → 2005년 400명
 -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 특별사법경찰관 확대배치
 - 사법경찰관의 정보보고체제 운영강화 및 수집정보 활용극대화
 - 상습위반자나 다소비식품을 허위표시 하는 자는 구속수사 원칙
 - 명예감시원 활용 등 민간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전방위 대응
 - 소비자·생산자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명예감시원을 구성, 위반신고 등 부정유통근절을 위한 민간감시 선도요원으로 활용
 - 명예감시원 확대 : 2003년 2,600명 → 2004년 2,800명
 -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 운영활성화 : 94개소
 - 위반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지급(5~100만원)
 - “원산지단속조기경보시스템” 활용 및 단속기법 개발
 - 쇠고기, 고춧가루 등 취약품목을 대상으로 조시경보 시스템 가동대상 확대 2003년 78개 품목 → 2004년 85개 품목 → 2005년 85개 품목
 - 근적외선분광분석기, 화상처리기 등 과학적 식별품목확대 2003년 75개 품목 → 2004년 80개 품목 → 2005년 85개 품목

② 초지부실관리 시정지시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초지관리법」 제24조, 제31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6조

(ii) 규제내용

- 초지의 부실관리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그 초지관리자에게 시정지시하도록 함
-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75, 집행공무원 25
- 조사기간 : 2003. 7. 16 ~ 8. 14
- 조사방법 : 전화조사

(ii) 규제인식도

- 초지부실관리 시정지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피규제집단이 26.70%로 상당히 낮게 조사됨
 - 피규제집단 중 20.0%만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해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내용명확성에 대하여 피규제집단의 62.6%가, 집행공무원 60.0%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피규제집단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피규제집단은 81.4%, 집행공무원 84.0% 응답하고, 규제 준수 및 내용 적절성은 피규제집단(69.3%)이 높고, 목적 부합성 및 효과는 집행공무원(76.0%)이 높게 나타남

(iv) 규제준수도

- 피규제집단(50.7%), 집행공무원(36.0%) 모두 준수율이 낮고, 미준수 이유가 피규제집단은 “믿을 수 없는 정책(21.6%)”, “지켜지지 않는다(13.5%)”, “현실에 맞지 않거

나 필요성이 없어서(10.8%)”이고, 집행공무원은 “현실에 맞지 않아서(31.3%)”, “정책을 믿을 수 없어서(12.5%)”로 나타남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초지 부실관리 시정 지시제도 개선추진

- 초지 부실관리 시정 지시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준수율이 매우 낮게 조사됨에 따라
 - 초지 부실관리 시정 지시제도는 시장·군수가 “행정 지도”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시정 지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부서 등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 추진

*집필자 : 허수영 사무관(T.3703-2182, hsy1150@opc.go.kr)

(16) 환경부

① 1회용품사용 규제 제도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ii) 규제내용

-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
- 규제대상 사업장
 -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 접시, 용기 등 18개 제품
- 규제방법

-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제작·배포억제 및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 등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200명, 제3차 집단 250명, 집행공무원 50명
- 조사기간 : 2003. 6. 16 ~ 7. 3
- 조사방법 : 전화조사

(ii) 규제인식도

- 1회용품 사용제한제도에 대한 규제이해도 조사결과, 피규제집단과 규제집행자는 96%~100%, 제3차 집단인 일반 국민들은 77.6%가 규제내용을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규제내용의 명확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3개 조사대상 집단 모두 90% 이상이 규제내용이 명확하다고 응답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피 규제자(89%)뿐만 아니라 규제집행자와 제3차 집단에서 90% 이상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
- 또한 규제수준 및 규제내용의 적정성, 규제목적의 부합성 등에 대하여도 3개 집단 모두 80%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

(iv) 규제준수도

-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냐는 질문에 피 규제자들은 86%가 잘 지키고 있다고 한 반면, 일반 국민들은 67.6%가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
 - 이는 자사는 잘 지키고 있는데(86%) 비해 타사는 그렇지 못하다(69.5%)고 응답한 것과 유사함
- 규제집행력을 묻는 질문에 피규제집단은 53.5%가, 규제집행공무원은 86.0%가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 집행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
- 한편, 현재의 규제 벌칙의 적절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피규제집단은 65.0%가 적절하다고 응답한데 비해, 규제집행자는 66.6%가 벌칙이 과도하다는 의견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조정(2003. 7월 조치)

- 영세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과감하게 인하하되 백화점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업소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강화

(ii)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법령 중 하위규범 규정 사항의 적정성 여부 검토(2003년 말)

- 검토대상 하위규범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등
- 검토사항 : 대체용기사용에 대한 예외조항(물이나 국물류 등이 포함된 경우)을 시행규칙으로 상향규정 또는 시행규칙에 고시 위임근거 규정 마련 등

※ 하위규범 규정사항에 대하여 법제화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추진(법제처 협의)

(iii) 신고포상금제도 도입(2004. 1월까지)

-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 지급대상 :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 지급금액 : 위반행위별로 3 ~ 30만원
 - 소요재원 : 지자체 자체예산(과태료 징수금으로 예산편성)

(iv) 기타

- 민간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내용, 신고 포상금제 시행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 동참 유도(계속)
-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규제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규제의 품질제고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규제 이행실태조사 후 2004.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②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환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제5조,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제7조

(ii) 규제내용

-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23개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발 사업별로 23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영향평가를 일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함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저감방안,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61명, 제3차 집단 280명, 집행공무원 25명
- 조사기간 : 2003. 5. 7 ~ 6. 15
- 조사방법 : 전화조사

(ii) 규제인식도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인식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3.985), 특히, 피규제집단(4.883)과 집행공무원(4.959)의 인식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 다만, 제3차 집단의 규제인식도가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대상규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대상이 소수의 특정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iii) 규제인정도

- 규제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정도는 긍정적(3.660)이었으며, 피규제자의 인정도(3.672)가 제3차 집단(3.376)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규제개혁의 발전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임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제도가 고유의 정책목표인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평균이 3.519로서 응답자들이 대체로 목적 부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하에서 평가항목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적절(3.261)하다고 응답

(iv) 규제준수도

- 이해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평가(3.039)를 내리고 있음
 - 특히 집행공무원이 동 제도의 규제집행력을 부정적으로 평가(2.387)하고 있어, 향후 실효성 있는 규제집행수단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i)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시 공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부 및 지방 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결과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제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홍보

(ii)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확정제도 도입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에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사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과 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항목에 대한 일률적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감소

(i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규제집행력 강화

-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조치

③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제도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63조및제64조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제품및물질등」(환경부고시 제2001-36호)

(ii) 규제내용

- 대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지역의 오존오염 저감을 위하여 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37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설치 신고의무 부여 등 규제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여천, 울산·온산 산업단지 일원)
-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인천·경기 일부, 부산, 대구 등)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방지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휘발성 유기화합물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피규제집단 71명, 제3차 집단 201명, 집행공무원 31명
- 조사기간 : 2003. 5. 7 ~ 6. 15
- 조사방법 : 전화조사

(ii) 규제인식도

- 휘발성 유기화합물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3.276)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제3차 집단의 인식도(2.862)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이와 같은 원인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규정된 화학물질의 수는 다양한 반면, 각 업체들이 배출하는 물질은 한정되어 있어, 굳이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또한 세부측정지표인 규제내용의 명확성 부문(2.714)은 전체조사대상 집단에서 공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규제대상지역 및 규제방법 등이 복잡·다양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
 -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대상 지역, 규제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규제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행정기관 등에 배포할 필요가 있음

(iii) 규제인정도

-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제도의 목적과 취지, 존재가치 등에 대한 인정도(3.524)는 조사대상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조사됨
 - 제도의 정책목표인 오존오염의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한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평균 3.232로서 현행 제도의 목적 부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v) 규제준수도

- 규제준수도는 3개 조사차원 중 가장 낮게(3.039) 나타났으며, 특히 공무원(2.387)들이 정부의 규제집행력을 보다 강화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비교적 낮게 평가된 규제의 명확성(2.714)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선 행정기관 등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하고
- 또한 규제 집행력(2.768)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지역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수준 등을 재설정

*집필자 : 김종민 사무관(T.3703-3946, kjmin@opc.go.kr)

(17) 보건복지부

① 단란주점 시설기준 준수 규제순응도 조사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ii) 규제내용

- 영업장 안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설비해야 함
- 주된 객장 안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단란주점 사업자 150명, 집행공무원 50명, 일반 국민 250명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조사기간 : 2003. 6. 16(1일간)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또는 팩스조사

(ii) 규제인식도

- 행정규제 존재 여부 인지도
 -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피규제집단 51.3%, 일반 국민 27.2%)
 - *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동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닌 소수의 이용자, 업자에 한정된 사안이기 때문임
- 행정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도(동 규제의 존재를 인지한 자에 한함)
 - 동 규제가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해도 또한 대체로 낮은 수준(피규제집단 51.3%, 일반 국민 52.9%)
- 행정규제 내용의 명확성
 - 동 규제의 내용이 애매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의견(피규제집단 88.7%, 관련공무원 99%)

(iii) 규제인정도

- 행정규제의 필요성
 - 일반 국민과 피규제집단 및 단속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가 큼(피규제집단 58%, 관련공무원 62%, 일반 국민 92.6%)
- 행정규제 준수의 적절성
 - 동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집단 간의 의견차이가 있음(피규제집단 50%, 일반 국민 88.3%)
- 행정규제의 목적 부합성 및 효과
 - 모든 집단이 대체로 동 규제의 효과에 부정적 의견(피규제집단 45.3%, 관련공무원 40%, 일반 국민 63.2%)

(iv) 규제준수도

- 행정규제 준수율
 - 동 규제의 준수여부에 대해서 집단간 시각차가 큼(피규제집단 85.3%, 관련공무원 32%, 일반 국민 8.8%)
- 행정규제 준수감시 가능여부
 - 관련공무원 다수가(64%)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 행정규제 위반 시 벌칙부과의 적절성

- 현재의 벌칙부과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견해가 다수(벌칙 강화/유지 : 피규제집단 8%/35.3%, 관련공무원 14%/58%)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 (i) 관련기관, 단체에서는 직장교육 등을 통해 교육, 홍보 실시
- (ii) 향후 유사업종에 대해서도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목적효과성이 낮은 규제는 재정비하고 대체방안 강구

② 식품영양종사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규제순응도 조사

① 조사대상 규제

- (i)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6조, 시행령 제54조 별표2,
- (ii) 규제내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등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함

② 조사결과

- (i) 개요
 - 표본집단 :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접객업 사업자 368, 집행공무원 100, 일반 국민 412명
 - 조사기간 : 2003. 9. 22 ~ 27 (6일간)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또는 팩스조사
- (ii) 규제인식도
 - 행정규제 존재 여부 인지도
 -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피규제집단 83.7%, 일반 국민 38.8%)
 - *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동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닌 소수의 이용자, 업자에 한정된 사안이기 때문임
 - 행정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도(동 규제의 존재를 인지한 자에 한함)

제2장 기준규제의 정비

- 동 규제가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수준(피규제집단 80.5%, 일반 국민 41.3%)
- 행정규제 내용의 명확성
 - 동 규제의 내용이 애매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의견(피규제집단 82.3%, 관련공무원 81%)
- (iii) 규제인정도
 - 행정규제의 필요성
 -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피규제집단 92.8%, 관련공무원 91%, 일반 국민 95.7%)
 - 행정규제 준수의 적절성
 - 모든 집단에서 동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렵지 않다는 의견(피규제집단 80%, 일반 국민 79.4%)
 - 행정규제의 목적 부합성 및 효과
 - 모든 집단이 대체로 동 규제의 효과에 긍정적 의견(피규제집단 80%, 관련공무원 81%, 일반 국민 76.3%)
- (iv) 규제준수도
 - 행정규제 준수율
 - 동 규제의 준수여부에 대해서 집단 간 시각차가 큼(피규제집단 97.8%, 관련공무원 83%, 일반 국민 41.5%)
 - 행정규제 준수감시 가능여부
 - 관련공무원 다수가(62%) 현재의 집행력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는 의견
 - 행정규제 위반 시 벌칙부과의 적절성
 - 현재의 벌칙부과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견해가 다수(벌칙 강화/유지 : 피규제집단 19.2%/58.4%, 관련공무원 21%/56%)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 (i)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해소
- (ii) 규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업종별 업무별 현장종사범위 등을 감안하여 검사기간이나 검사항목을 탄력적으로 조정

③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① 조사대상 규제

(i) 근거법령 : 「영육아보육법」 제7조, 제23조, 「시행령」 제14조

(ii) 규제내용

-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다만 공해·위험시설이 있는 경우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함

② 조사결과

(i) 개요

- 표본집단 : 직장보육시설 담당자 209명, 집행공무원 41명, 일반 국민 681명
- 조사기간 : 2003. 9. 16 ~ 10. 21(36일간)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또는 팩스조사

(ii) 규제인식도

- 행정규제 존재 여부 인지도
 -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피규제집단 96.1%, 일반 국민 67.6%)
- 행정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도(동 규제의 존재를 인지한 자에 한함)
 - 동 규제가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수준(피규제집단 84.9%)
- 행정규제 내용의 명확성 : 미조사

(iii) 규제인정도

- 행정규제의 필요성
 - 모든 집단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피규제집단 88.9%, 관련공무원 85.1%, 일반 국민 100%)
- 행정규제 준수의 적절성
 - 모든 집단에서 동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피규제집단 55.2%, 일반 국민 70.5%)
- 행정규제의 목적 부합성 및 효과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 모든 집단이 대체로 동 규제의 효과에 긍정적 의견(피규제집단 92.7%, 관련공무원 86.3%, 일반 국민 95.1%)

(iv) 규제준수도

- 행정규제 준수율
 - 모든 집단이 동 규제의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피규제집단 88.9%, 관련공무원 95.1%, 일반 국민 100%)
- 행정규제 준수감시 가능여부
 - 관련공무원 다수가(68.3%) 현재의 집행력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의견
- 행정규제 위반 시 벌칙부과의 적절성
 - 현재 벌칙은 과도하며 인센티브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벌칙 유지·강화/벌칙완화 또는 인센티브로 전환 : 피규제집단 13.7%/80%, 관련공무원 4.9%/92.7%)

③ 규제순응도 제고대책

- (i) 설치기준을 현실성 있도록 변경
- (ii) 사업주들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확대
- (iii)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유인책 마련

*집필자 : 정병규 서기관(T.3703-2156, jungstern@opc.go.kr)

제5절 _ 규제신고센터 운영

1. 개요

정부는 19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규제개혁추진과정에서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전화신고·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관련 제안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이버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대한상공회의소 등에도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을 비롯한 기업과 단체들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건의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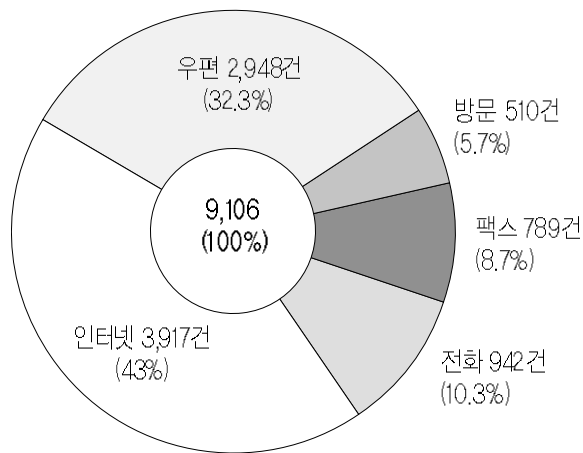
<규제개혁관련 제안사항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방 문 : 규제신고센터(정부중앙청사 503호실)
- 전 화 : 02-722-9797, 02-3703-2178
- F A X : 02-720-2056, 인터넷 : <http://www.rrc.go.kr>

2. 규제개혁 제안사항 처리결과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한 규제개혁 제안은 총 9,106건이며, 제안방법은 인터넷접수가 3,917건(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편(32.3%), 전화(10.3%), 팩스(8.7%), 방문접수(5.7%)순이었으며, 특히 2003년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전체 건수의 72.5%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국민제안 비율이 갈수록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접수방법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제안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택·건축분야 1,243건(13.6%), 운송·물류 분야 884건(9.7%), 경찰·교통분야 582건(6.4%), 보건·위생분야 557건(6.1%)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분 야	건수	분 야	건수	분 야	건수
행정일반	353	재정경제	461	건 설	213
국적·출입국	44	전 매	94	수지원	21
법 무	111	금융·통화	138	보건·위생	557
민 사	30	농지·농정	218	의료·약사	232
형사·교정	5	축 산	35	사회복지	193
지방행정	277	산 림	84	환 경	378
경찰·교통	582	수 산	34	노 동	296
소방·민방위	128	무 역	11	관 광	17
군사·병무	122	상·공업	131	운송·물류	884
국가 보훈	30	공업소유권	49	해운·항만	55
체육·청소년	91	에너지	328	정보통신	117
교육·학술	416	국토·도시개발	237	외무·여권	8
문화·공보	467	주택·건축	1,243	기 타	194
과학·기술	21	토지·지적	193	계	9,106

제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해 보면 건설교통부 2,706건(29.7%), 보건복지부 933건(10.2%), 행정자치부 727건(7.9%), 경찰청 594건(6.5%), 산업자원부 519건(5.7%), 문화관광부 489건(5.4%)순으로 상위 6개부처 소관 제안수가 총 5,968건(65.5%)에 이르러, 건설교통·복지·경찰·지방행정·산업자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제안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관부처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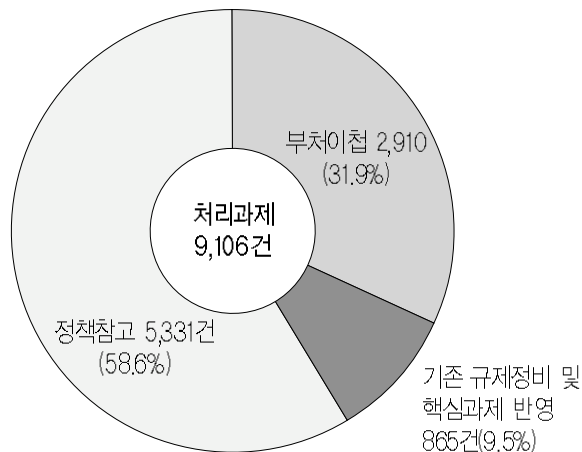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부처·청	접수건수
기획예산위	3	국 방 부	46	조 달 청	19
여 성 부	0	행정자치부	727	통 계 청	1
중소기업특별위	0	교육인적자원부	442	대검찰청	1
국무조정실	30	과학기술부	13	병 무 청	84
국무총리비서실	2	문화관광부	489	경 찰 청	594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분 야	건수	분 야	건수	분 야	건수
국정홍보처	0	농 립 부	249	기 상 청	0
법 제 처	5	산업자원부	519	농촌진흥청	0
국가보훈처	31	정보통신부	124	산 립 청	83
공정거래위	50	보건복지부	933	중소기업청	34
비상기획위	0	환 경 부	389	특 허 청	29
청소년보호위	46	노 동 부	296	식 약 청	37
금융감독위	79	건설교통부	2,706	철 도 청	19
재정경제부	445	해양수산부	85	해양경찰청	4
통 일 부	1	예 산 청	0	문화재청	10
외교통상부	27	국 세 청	88	부처 공통	3
법 무 부	170	관 세 청	42	기 타	150
				계	9,106

9,106건의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기존규제 정비 및 핵심과제 등으로 반영된 건수가 865건(9.5%), 정책참고 5,331건(58.6%), 부처이첩 2,910건(31.9%) 등으로 단순정책참고 및 개별민원성격의 제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규제개혁 제안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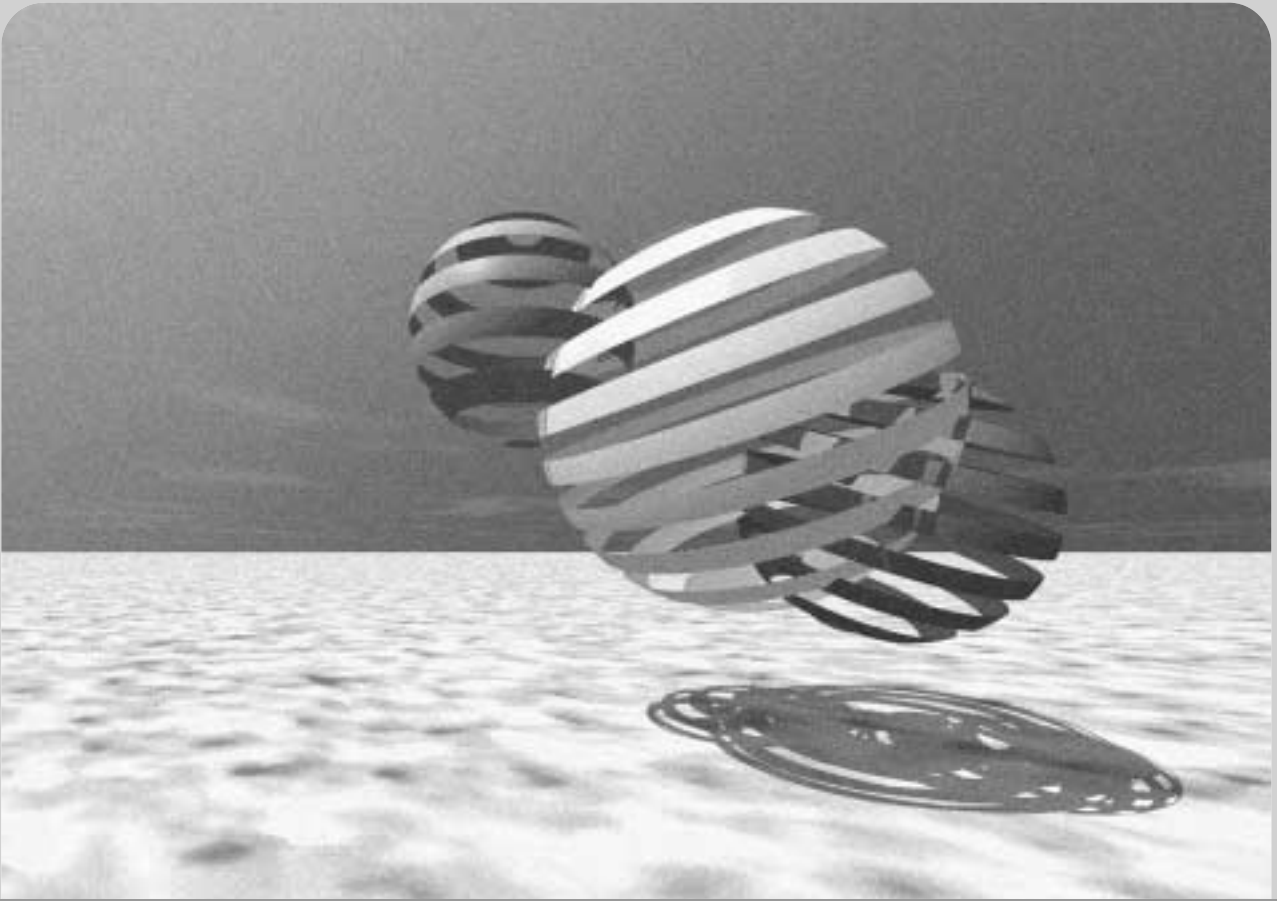
3. 평가 및 향후계획

지난 6년간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9,106건의 제안을 접수·처리함으로써 규제 개혁 추진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안의 내용면에서 볼 때 규제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안보다는 개별적인 민원사항과 개인의 편익에 따른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규제제안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규제신고센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집필자 : 김희산 주사(T.3703-3928, nice@opc.go.kr)



제3장 신설 · 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_개 요

제2절_ 공정거래분야

제3절_ 재경금융분야

제4절_ 산업지원분야

제5절_ 건설교통분야

제6절_ 보건복지분야

제7절_ 일반행정분야

제8절_ 교육분야

제9절_ 문화관광분야

제10절_ 노동분야

제11절_ 외교 · 국방 및 보훈분야

제12절_ 환경분야

제13절_ 해양수산분야

제14절_ 농림분야

제15절_ 과학기술 · 정보통신분야

제1 절 _ 개 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1분과, 경제2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회의를 거쳐 2003년도에 총 947건의 신설·강화규제 심사대상 중 285건(30.1%)을 철회 또는 개선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철회 또는 개선 권고된 대상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규개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조직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어 기업과 국민 더 나아가서 국가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의 자체 사전규제심사의 내실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부처별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부 처	법령수	심사대상 규제수	2003년도 규제심사결과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공정위	7	12	2	3	7
재경부	17	50	3	6	41
금감위	19	89	1	16	72
관세청	1	1		1	
산자부	18	36	2	7	27
중기청	1	1		1	
건교부	35	112	5	56	5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부 처	법령수	심사대상 규제수	2003년도 규제심사결과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복지부	19	93	1	32	60
식약청	19	24	1	10	13
행정부	6	20		10	10
교육부	6	10		4	6
문화부	8	43	7	11	25
청보위	1	8		2	6
문화재청	1	7			7
노동부	18	135		9	126
외교부	1	6		2	4
국방부	1	3		2	1
보훈처	1	1			1
병무청	2	4		1	3
환경부	23	115	6	43	66
해수부	30	78	2	13	63
해경청	1	2			2
농림부	12	42		7	35
산림청	2	17	8	2	7
농진청	1	1			1
과기부	3	13	1	3	9
청통부	8	24		5	19
계	261	947	39 (4.1%)	246 (26.0%)	662 (69.9%)

*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 (T.3703-3926, twinjin@opc.go.kr)

제2절 _ 공정거래분야

1. 공정거래위원회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령 및 고시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10건 등 총 1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3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신설규제 2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권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03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개정안	제205차 경제1분과위 (2003. 4. 30) 제115차 규개위 (2003. 5. 2)	개선권고 1	강화 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②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결의결정공시 에관한규정 개정안	제206차 경제분과위 (2003. 5. 14)	개선권고 1	강화 1
③ 약관의규제에관한법을 개정안	제207차 경제분과위 (2003. 5. 21)	철회권고 2	신설 2
④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을 개정안	제221차 경제분과위 (2003. 9. 24)	원안의결 1	강화 1
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개정안	제221차 경제분과위 (2003. 9. 24) 제125차 규개위 (2003. 10. 2)	원안의결 5	강화 5
⑥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 행위의유형및기준 개정안	제232차 경제분과위 (2003. 12. 31)	개선권고 1	강화 1
⑦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및기준 개정안	제232차 경제분과위 (2003. 12. 31)	원안의결 1	강화 1
계		철회권고 2 개선권고 3 원안의결 7	총 12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강화 1)

- 신문고시 위반사건에 관하여 사업자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우선 적용하여 처리하는 자율규제방식에서, 공정위의 직접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공정경쟁규약을 적용·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환(강화)

※ 공정경쟁규약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문고시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단체가 공정경쟁에 관하여 규약

- ☞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단서를 규정하고, 단서규정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에서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개선권고
- ※ 제11조(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고시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②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결의및공시에관한규정 개정안(강화 1)

-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에 중개 행위를 포함하여 개념 확대(강화)
 -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으로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유가증권·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중개 행위를 포함(‘대규모내부거래’ 정의)
- ☞ 단순중개행위 및 인수행위 등의 구분이 곤란하며, 거래행위 개념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심결례나 유권해석에 의하도록 ‘중개를 포함한다’ 규정은 삭제토록 권고
-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사항 추가(강화)
 - 동일 거래상대방과 같은 날 여러 번의 기업어음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어음에 대한 액면금액을 제외한 모든 조건(발행일, 기간만료일, 이자율 등)이 일치하는 때에는 하나의 거래행위로 보아 기업어음의 액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거래행위별 각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유지의 필요성, 기업체의 처분부담 경감 및 공시회피 목적의 분할거래 등에 대한 합산기준 처분 필요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심결례 또는 유권해석에 의한 시행이 가능하도록 동 규정(안) 삭제권고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편입된 회사의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거래행위가 편입 후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면서 그 내용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 ☞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추상적이고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 계약서 상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 ☞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자동 연장 등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도록 하는 것은 법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

③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신설 2)

- 표준약관 신고의무 신설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마련하는 경우, 당해 약관을 사용하기 전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며,
 -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의 사전신고 규제는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권과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정요청권 및 공정위의 표준약관 제정권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철회 권고
- 표준약관의 불공정한 계약내용 금지 신설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마련하는 경우, 불공정한 약관조항(현행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14조)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
 - ☞ 표준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항 계약내용 금지의 법 목적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법 제6조 내지 제14조)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동 개정안 철회 권고

④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강화 1)

- 불공정 하도급거래 확인을 위한 조사 등 범위 확대(강화)
 - 공정위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규정 준용의 범위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행위’ 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경우’ 로 확대

- ☞ 원 사업자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등을 위한 입법미비사항 보완이 필요하므로 원안 의결

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강화 5)

- 지주회사 자회사의 행위제한(강화)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주회사내 타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공동출자법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손자회사의 경우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
 - ※ 자회사가 동 규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
- ☞ 소유·지배구조의 단순·투명화 및 용이한 산업구조조정 등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회사 간 주식소유 금지, 손자회사 지분을 요건 등이 필요하므로 원안 의결
- 대규모 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시기 조정 등(강화)
 - 대규모 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시, 기업결합 완료 전(주식매매 계약 등)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식인수행위를 금지함(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시, 최초 신고 이후 추가취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토록 함
 -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 등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는 3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현행 유지), 필요시 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강화)함
- ☞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유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결합 후 시정조치하는 경우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완료 전 신고가 필요함. 또한, 주식취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경쟁제한 여지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필요하며, 기업결합 심사에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조정(강화)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5%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10%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 이내)로 강화함
 - ☞ 외국입법 예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공정거래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변경(강화)
 - 공정거래법령 위반행위 사업자 등의 무과실 책임은 공정위 시정조치 확정 후 당해 피해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사업자 등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소구하도록 하여 권리구제가 미흡하였음
 - 이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과 무관하게 공정거래법령 위반행위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또한, 청구관련 법적 관계의 안정성 및 조속한 확정을 위해 피해자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함
 - ☞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다만, 동 법 개정으로 인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고의 고의·과실추정”의 타당성에 대한 법무부, 재계, 법무법인(2개)의 의견을 취합하여 규개위에 보고할 것을 권고
- 부당내부거래 조사 관련 공정위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존속기한을 3년간 추가 연장함(2007. 2. 4일까지 존속)
 - ☞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므로 원안 의결

⑥ 대규모소매점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개정안(강화1)

-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적용대상에 ‘TV 홈쇼핑업’을 추가하여 부당한 반품·감액·지급지연·강요·수령거부 등을 금지함
 - ☞ TV 홈쇼핑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동 고시를 준용하고 있는 현실성을 고려, 고시대상에 포함하여 구체화·명시함이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

- 모델 등 출연료를 판촉비용에 포함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토록 하는 등 판촉비 부담 강요 금지의무를 강화
 - ☞ TV 홈쇼핑업 관련 주요 판촉비용인 모델 등 방송출연료의 부담 강요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판촉비용 부담에 관한 명확한 서면약정으로 납품업체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 의결
- 판매방송 일정·제작, 모델출연, 배송 및 반품처리 등 TV 홈쇼핑업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방송 일로부터 정당한 기간 전에 교부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방송 일정 등 계약사항에 대한 부당한 변경을 금지함
 - 또한, TV 홈쇼핑업을 포함한 모든 대규모 소매점 업체 계약서 내용에 거래가격 및 납품조건을 명시하도록 강화함
 - ☞ TV 홈쇼핑업 서면계약서를 ‘방송 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정당한 기간 이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방송일 전 계약 체결시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송일 전까지 교부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또한, 소 품종을 제한된 시간 동안 판매하는 등 TV 홈쇼핑업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전체 프로그램 재구성’의 경우 등을 정당한 계약변경 사항에 포함하도록 개선권고

⑦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개정안(강화 1)

- TV 홈쇼핑업의 소비자 현상경품류 제공 총액제한을 예상매출액의 5% 이내에서 1% 이내로 강화함
 - ※ 현상경품류 제공 관련 방송업의 범위에서 TV 홈쇼핑업을 제외하고, 백화점·할인점 등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 TV 홈쇼핑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주된 목적과 내용이 상품·용역 등의 판매에 있으므로, 백화점·할인점 등 일반 판매업자와 동일한 경품류 제공 기준을 적용하도록 원안 의결

*집필자 : 이상래 사무관(T.3703-2172, sang1234@opc.go.kr)

제3절 _ 재정금융분야

1. 재정경제부

〈비 금융분야〉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담배사업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비자보호법시행령 등 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6건, 누락 1건, 내용심사 4건 등 총 1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9건은 원안대로 의결(조건부 2건 포함)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정경제부(비금융)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2건임

재정경제 부(비)금융)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담배사업법 개정안	제209차 경제분과위 (2003. 6. 4)	원안의결 4 (조건부 2건)	신설 1 강화 3
②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211차 경제1분과위 (2003. 6. 18)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내용 4
③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회계예규 개정안	제227차 경제1분과위 (2003. 11. 14)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철회권고 2	신설 2 강화 2 누락 1
④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제231차 경제분과위 (2003. 12. 17)	개선권고 1	강화 1
계		철회권고 2 개선권고 3 원안의결 9	총 14건

② 2003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담배사업법 개정안(신설 1, 강화 3)

- 담배 대용품의 제조허가, 수입판매업 등록시 담배 대용품과 금연목적을 위한 제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담배 대용품에 대하여 국내제조뿐만 아니라 수입판매의 경우도 담배사업법을 적용함.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 · 대마) 및 약사법(의약품 · 의약외품)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하여 약사법 등을 적용 받도록 함(신설)
- ☞ 담배 대용품을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70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 담배 대용품과 관련한 강화규제에 대하여는 개정공포후 일정기간 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정 후 최소 6개월 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부칙에 설정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
- 담배판매업의 등록취소 사유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함(강화)

- ☞ 실제로 폐업상태에 있어 실체도 없는 회사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이행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담배소매인의 지정취소 사유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를 추가하고, 다만, 지정기준에의 미달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강화)
 - ☞ 단서규정(지정기준에의 미달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동 규정이 남용되는 경우 기존 지정소매인과 신규 지정신청자간의 규제의 형평성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므로 담배소매인의 세부지정기준이 규정된 재정경제부령에 동 단서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규제심사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
-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매분기마다 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담배성분측정 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그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강화)
 - ☞ 현행규정의 미비점(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담배성분 측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②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4)

- 개발사업 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 상위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한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감안 시 규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개발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를 규정함(내용심사)
 - ☞ 상위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등 타 법령의 규정을 감안 시 규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를 전체 운용채널의 100분의 20으로 제한

함(내용심사)

- ☞ 종합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수 범위에 대하여는 국내 여건과 주변 경쟁국가의 규제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2년간의 규제일몰제를 적용(부칙에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
 -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업종·시설의 기준을 설정함(내용심사)
 - ☞ 상위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목적을 감안 시 규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회계예규 개정안(신설 2, 강화 2, 누락 1)

- 입찰가격의 적정성심사제도를 신설하고, 심사기준을 규정함(신설)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은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시행령)
 -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규정(회계예규)
- 입찰총액 심사기준 : 입찰금액이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 입찰내역 심사기준 : 입찰총액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 : 당해 공종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 공종의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제외되는 입찰
- 무효인 입찰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 입찰총액심사에서 배제된 입찰
- 당해 공종의 평균입찰금액대비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공종의 입찰
 - ☞ 심사기준에서 입찰총액심사 결과 유효한 입찰자 수의 1/2 이상이 낙찰대상에서 제

- 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공종별 입찰금액만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입찰금액이 2개의 그룹으로 양분되는 경우의 문제점 개선)하도록 개선권고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규모를 상향조정함(강화)
 - 현행 : 추정가격 78억원 미만(2004. 1월부터는 50억원 미만) 공사
 - 개정 : 추정가격 고시금액(현행 81억원) 미만 공사
 -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부대입찰제와 함께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이전·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기능보다는 낙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공동수급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을 벌여야 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실제로는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등 역기능을 감안시 규제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난립에 따른 부실원가 계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등록제도를 도입함(신설)
 - ☞ 동 규제는 규제개혁초기에 기존규제의 50% 감축을 위해 재정경제부에서 자체적으로 폐지했던 규제로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법정주의에 의거 상위법률에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하위법령에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지방중소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규모를 확대함(강화)
 - 현행 : 추정가격 30억원(전문공사 등은 3억원) 미만 공사
 - 개정 :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 등은 5억원) 미만 공사
 - ☞ 지역제한경쟁입찰은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의 건설시장 개방으로 그동안 업체수가 대폭증가(199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되어 지역별 경쟁성이 확보되었고, 중소규모공사는 지역업체의 시공 효율성이 높아 공사의 품질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 강행규정이 아닌 발주기관의 선택사항(임의규정)인 점,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산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국가기관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강화(강화)
 - 뇌물제공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 현행 : 1년 이상 2년 이하 및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구분 운영
- 개정 : 1년 이상 2년 이하로 일원화
 - ☞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를 방지하고, 건설시장의 질서를 유지하여 건설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④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함(강화)
 - 소비자단체 등록시의 제출서류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등)”을 추가함
 -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중 소비자보호활동 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등록취소는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의거 운영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소비자단체 협의체에 등록취소 요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금융분야>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등 1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9건, 강화 11건, 내용심사 6건 등 총 3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6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3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정경제부(금융분야)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19건임

재정경제부(금융분야)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제196차 경제1분과위 (2003. 1. 15)	원안의결 2	강화 2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97차 경제분과위 (2003. 1. 29)	원안의결 1	강화 1
③ 증권거래법 개정안	제209차 경제분과위 (2003. 6. 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2
④ 주식회사외의무감사에관한법률 개정안	제209차 경제분과위 (2003. 6. 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제209차 경제분과위 (2003. 6. 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⑥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제215차 경제분과위 (2003. 7. 30)	개선권고 1	내용 1
⑦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	제217차 경제분과위 (2003. 8. 19)	원안의결 5	신설 5
⑧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제223차 경제분과위 (2003. 10. 8)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내용 4
⑨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제225차 경제분과위 (2003. 10. 22)	원안의결 1	강화 1
⑩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설립에관한법 률 제정안	제226차 경제분과위 (2003. 10. 29)	원안의결 11	신설 11
⑪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제227차 경제1분과위(2003. 11. 14) 제228차 경제1분과위(2003. 11. 16)	철회권고 1	강화 1
⑫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	제229차 경제분과위 (2003. 12. 3)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 1
⑬ 특정거래 정보의보고및이용 등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제232차 경제분과위 (2003. 12. 31)	원안의결 2	강화 1
계		철회권고 1 개선권고 3 원안의결 32	총 36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거래실적 대비 수수료를 받거나 평가차익 등에 근거한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증권회사가 자체 운용하고 있는 상품(고유계정)의 매매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투자조언 및 일임재산의 운용을 제한하고 일임재산과 고유계정 간의 거래를 규제(강화)
 - ☞ 빈번한 매매권유나 위험선호적인 투자자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실적에 의한 보수지급과 성과보수를 금지하고, 증권사 자기계정과 일임재산계좌간 거래 제한 등 방화벽을 설치토록 명시한 것은 투자자보호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공모)을 주선하거나 인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증권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함(강화)
 - ☞ 이번 금지행위 신설은 2002년 8월 유가증권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주간기관인 증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규제완화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행위의 각각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투자자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한 규제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현재는 자기계열사 여신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신용카드에 의한 자기계열사 신용공여액을 자기계열사 여신액에 포함시킴(강화)
 - ☞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결제의 결과 발생한 채권액도 신용공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자기계열사 여신공여액 한도 산정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③ 증권거래법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회사경영

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업무집행지사(「상법」 제401조의2) 및 유가증권 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평가, 분석, 사실확인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첨부하는 자를 추가함(신설)

☞ 원안의결

-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강화)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상장·등록법인의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나 임원에 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 대여, 담보제공, 채무이행보증행위를 금지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법인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금전대여 등 이외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주총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강화)

☞ 원안의결

④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등 공개기업의 경우 동일감사인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계속 감사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되, 회계투명성이 담보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함(강화)

☞ 원안의결

- 감사인의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서류의 의무보존기간을 6년으로 함(신설)

☞ 감사인 교체 후 후임감사인이 6년간 계속 감사업무를 담당할 전임감사인의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전임감사인의 초년도 감사조서는 적어도 7년(6년+1년)을 보존케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사조서 보존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요건으로 도입함(신설)

☞ 2003년 1월 재경부가 발표한 공인회계사제도 운영개선 안에 따른 것으로 관련분야

에 관한 기초적 소양을 구비하게 하고 비전공자의 과도한 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축시키려는 취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업무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컨설팅 업무는 금지하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낮은 업무의 경우에도 감사업무와의 방화벽 등을 정한 내부통제절차를 따른 경우에 허용(강화)

☞ 원안의결

⑥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법 제91조제1항에 규정된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외에 특수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 및 신용카드사를 포함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3단계에 걸쳐 약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함
 - 보험판매는 금융기관 점포 내(In-bound)에서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전화·우편·E-mail 발송을 통한 판매는 제한되나,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TV 광고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모집행위는 가능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점포당 2인 이내로 하고 동 모집종사자는 대출 등 불공정 모집소지가 있는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
 -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판매수수료율을 당해 금융기관의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사 및 보험협회는 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여야 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종사자 외의 자에게 보험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함 (내용심사)
- ☞ 안 제40조제3항제3호(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한 보험모집행위)를 삭제하고, 안 제40조제4항 전단(점포별 모집인원의 2인 이내 제한)에 대해 2006년 3월 말까지 규제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도록 개선 권고

⑦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신설 5)

- 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신설)
 - ☞ 원안의결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신설)
 - ☞ 원안의결
- 공사 또는 금융기관은 채권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해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저당채권 등의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신설)
 - ☞ 원안의결
- 출연대상금융기관은 출연대상 대출금에 대해 연율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연하며 기타 출연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신설)
 - ☞ 원안의결
- 공사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신설)
 - ☞ 원안의결

⑧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4)

- 동일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던 지역조합간의 합병을 인접한 시·군·구에 속한 조합 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는 동일 시·군·구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여 공동유대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타 시·군·구의 읍·면·동을 금감위의 승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 원안의결
-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종료 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임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음(내용심사)
 - ☞ 원안의결

- 전문이사는 금융기관에서의 경력자(10년) 및 국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서 이와 동등자격자로 인정되는 자로 한정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을 예탁금·적금, 공제금, 그밖에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의 수입금으로 하고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함
 - 기금관리위원회는 중앙회의 검사·감독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단위조합이사장 2인, 중앙회 전문이사 1인, 공무원 3인 및 금감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함
 -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보험료)은 매년 예탁금 등의 잔액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요율(0.5%를 상한으로 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금 적립액이 대위변제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 분의 범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위조합의 추가출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하되, 기금의 사용처는 보험금 지급, 합병 등 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으로 함
 - 예탁금 등의 대위변제시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 및 보증채무와 당해 조합의 부실관련책임자의 예금에 대해서는 변제를 보류할 수 있음(내용심사)

- ☞ 안 제19조의12제3항(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제19조의1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변제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기금의 적립액과 대위변제할 금액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으로 하여금 추가로 출연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을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⑨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대상에 일반은행 이외에 3개 특수은행(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주택자금대출금도 포함(강화)
- ☞ 기업은행 및 농·수협중앙회를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미비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⑩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설립에관한법을 제정안(신설 11)

- 거래소의 정관에는 시장의 구분, 규정의 제·개정,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신설)
 - ☞ 원안의결
- 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선물거래를 하지 못함(신설)
 - ☞ 원안의결
- 사외이사가 이사회(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장이 제7조제2항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부장관은 1월 이내에 재선임을 요구할 수 있음(신설)
 - ☞ 원안의결
- 금치산자, 파산 후 미복권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사장 및 시장감시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거래소의 건전 경영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함(신설)
 - ☞ 원안의결
- 거래소의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습득한 비밀의 누설, 자기계산으로 하는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 증권선물관련기관과의 이해관계를 금지함(신설)
 - ☞ 원안의결
- 거래소의 임원이 증권선물관련법령 및 그 처분에 위반한 경우 금감위는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신설)
 - ☞ 원안의결
- 거래소는 유가증권·선물시장에서 이상거래 혐의 시 동종목·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거나,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또는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감리할 수 있음(신설)
 - ☞ 원안의결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보유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의결권을 제한함. 한도초과 시 금감위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초과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신설)

☞ 원안의결

-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회사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신설)

☞ 원안의결

- 거래소의 유사명칭 사용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신설)

☞ 원안의결

- 상장·등록법인 및 그 주요주주 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신설)

☞ 원안의결

⑩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현행 주택자금대출금에서 가계대출금 중 주택담보대출금의 일부(50%)까지 확대(강화)

☞ 자금용도가 주택구입 등인 대출금에 대해 출연의무를 부과한 법령에 비추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한 출연의무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 권고

☞ 재심사 요청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철회 권고

⑪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1)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영위기준을 관리자산 기준으로 통일하고 준수기한을 2007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함. 규제기준을 변경하여 대환대출로 전환된 채권은 현금대출채권에서 제외하고, 직불카드 이용액은 신용판매채권에 포함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채권 중 계열사에 대한 채권은 신용판매채권에서 제외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거나 금융관련법령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가 있는 외국법인은 신용카드업자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강화)

☞ 원안의결

⑫ 특정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원화협의거래 보고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강화)
- ☞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면서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

*집필자 : 정광현 사무관(T.3703-2158, k8k8@opc.go.kr)

2. 금융감독위원회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

- 2003년도에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 1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9건, 강화 19건, 내용심사 51건 등 총 8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9건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1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7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금융감독위원회의 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19건임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제96차 경제분과위 (2003. 1. 15)	원안의결 1	강화1
②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제96차 경제분과위 (2003. 1. 1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③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	제98차 경제분과위 (2003. 2. 26)	원안의결 1	강화1
④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제200차 경제분과위 (2003. 3. 12)	원안의결 1	강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⑤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개정안	제200차 경제분과위 (2003. 3. 12)	원안의결 2	내용 2
⑥ 증권거래법 개정안	제209차 경제1분과위 (2003. 6. 4)	개선권고 1	강화 1
⑦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제213차 경제1분과위 (2003. 7. 9)	원안의결 1	강화 1
⑧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215차 경제1분과위 (2003. 7. 30)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⑨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제215차 경제1분과위 (2003. 7. 30)	원안의결 9 개선권고 5	신설 5 강화 2 내용 8
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	제217차 경제1분과위 (2003. 8. 19)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⑪ 신탁업감독규정및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제219차 경제분과위 (2003. 9. 3)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⑫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제220차 경제1분과위 (2003. 9. 17)	원안의결 24 개선권고 3	강화 3 내용 24
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제229차 경제 분과위 (2003. 12. 3)	원안의결 1	내용 1
⑭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제223차 경제 분과위 (2003. 10. 8)	원안의결 9 개선권고 2	신설 2 강화 1 내용 8
⑮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설립에관한법률 제정안	제226차 경제 분과위 (2003. 10. 29)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⑯ 은행업감독규정및종합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제229차 경제 분과위 (2003. 12. 3)	원안의결 1	강화 1
⑰ 여신전문금융업시행령 개정안	제229차 경제 분과위 (2003. 12. 3)	원안의결 1	강화 1
⑱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제230차 경제1분과위 (2003. 12. 10)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㉑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제231차 경제분과위 (2003. 12. 17)	원안의결 10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2 내용 8
계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6 원안의결 72	총 89건

㉒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상장·등록법인은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을 공시사항으로 하고 그 공시방법은 시가배당률로 함(강화)
 - ☞ 투자자보호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대로 의결

②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2)

-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적기시정조치기준으로 추가함(강화)
 - ☞ 원안의결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금액 중 미사용분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카드사의 요주의 카드자산, 가계대출 및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에 대해서 과거 평균손실율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함(강화)
 - ☞ 현금서비스 미사용금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0.5%로 하고(2003년 4월부터 시행), 최근 6개월 간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회원의 한도는 충당금 적립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③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강화 1)

- 시·도지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대부업자 중 대부잔액 기준을 월평균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시 수수료는 검사여비 상당액을 부과(내용심사)

☞ 원안의결

④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1)

- 정상 및 요주의 분류자산 중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을 0.5%, 2%에서 각각 0.75%, 5%로 상향조정함(강화)

☞ 조건부 수용. 인상안을 수용하되 금융권 전체의 대손충당금 적립제도의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3년 6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⑤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개정안(내용심사 2)

- 신규 도입되는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의 전매가능성 기준을 사채권에 준하도록 하고, 발행과 관련한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도 각각 담보부 및 무보증사채의 경우와 같게 함(내용심사)

☞ 신종유가증권인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전매가능성 판단기준,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신고서 첨부서류)을 유사한 금융상품인 사채권에 준하여 정한 것은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상장법인 등이 현금배당을 결정한 경우 이를 주요 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감사보고서의 공시시점을 앞당김(내용심사)

☞ 원안의결

⑥ 증권거래법 개정안(강화 1)

- 기업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반기 및 분기보고서 포함)에 중요한 허위의 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 여부 등을 대표이사과 재무담

당이사(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직접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함(강화)

☞ '중요사항의 허위기재'를 '허위기재'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⑦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1)

- 경영지도비율 적용대상항목에 “연체채권비율”을 추가하고 동 비율을 100분의 1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함(강화)
- ☞ 원안의결. 다만 2004년 8월 말까지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과 관련한 경영지도비율(규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적기시정조치(규정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4호)의 운용실태를 종합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함

⑧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신설 3)

-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신설)
- ☞ 원안의결
-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 및 자산의 적정성, 유동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신설)
-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그 범위도 자본 및 자산의 적정성과 유동성에 대한 사항 등 주로 경영지도비율을 중심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화폐발행업자의 재무상태가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고 경영정상화가 지체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신설)
- ☞ 안 제44조제3항 중 “---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를 “---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을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으며”로 변경하도록 개선권고

⑨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신설 5, 강화 2, 내용심사 8)

- 보험업의 허가요건 중 인력 및 물적시설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상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추가함. 보험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생명보험·연금(퇴직)보험 200억원, 상해보험 100억원 등 보험종목별 최소 자본금을 설정함. 자본금이 일반보험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되는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이 되는 회사로 정의함.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을 30억원으로 하되 기존 외국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함(강화)
 - ☞ 보험업의 허가요건 중 '임원'에 대한 요건, 재무건전성기준관련 요건, 인력 및 물적시설 요건의 국내 계속 유지 요건 등을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소유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경영실태평가 결과 금감위가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자회사 소유에 필요한 자금이 금감위가 정한 차입에 의해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신설)
 - ☞ 동 요건을 삭제하도록 철회 권고
- 법 제136조제2항 및 제3항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및 보험회사의 업무수탁자에게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행령 개정안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자회사 및 업무수탁자로 함(내용심사)
 - ☞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업무중 보험수리, 손해사정,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의 3가지를 제외한 사옥관리, 경영컨설팅, 상담,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 사회복지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및 업무수탁회사는 조사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는 손해보험계약 범위는 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15개의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의한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및 자동차종합보험임. 보장대상은 제3자가 입은 신체손해로 제한하고 개별 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보법 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함. 다만,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80%만 보장(최고한도 1억원) 함(내용심사)
 - ☞ 원안의결

-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을 기존의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함. 보험회사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자료 제공 요청권, 인력 및 시설지원 등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함. 다만, 동 지원과 관련하여 그 시행시기를 2년 후부터 적용할 것을 부칙에 규정(강화)
 - ☞ 개정안 제96조제5항 중 “책임준비금 등의 규모를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부칙 제6조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도록 개선 권고
- 금감위는 기존 보험사를 인수하려는 지배주주에 대해 신설시 요건(임원결격요건,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경제질서 저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 결정함(신설)
 - ☞ 원안의결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에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및 보험금 신탁업무를 포함하고 부수업무에 보험계리업무 등 현행 금감위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업무 외에 자동차관련 부가서비스, 재공제 업무 등을 추가함. 겸영·부수업무의 업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수입보험료의 1000분의 1 초과 시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내용심사)
 - ☞ 전체 수입보험료가 적은 소형 보험사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매출액이 수입보험료의 0.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개선 권고
- 보험회사의 임원자격요건을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제401조의2)에 적용함(내용심사)
 - ☞ 원안의결
-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교차모집)하는 경우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별로 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함. 교차모집시 소속 또는 교차대상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제한을 명시함(신설)
 - ☞ 원안의결
-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함. 보험모집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 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내용심사)
 - ☞ 원안의결
- 이사회 전원동의가 필요한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보유 주식

취득의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하고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등 내역을 매 분기마다 공시함(내용심사)

☞ 안 제57조제1항의 전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 이후에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를 삽입하도록 개선 권고

-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과 무배당보험계약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배당보험계약지분 또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배당보험계약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음(신설)

☞ 원안의결

- 보험회사의 금감위 보고사항(법 제130조) 중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는 때”라 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100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를 말함(신설)

☞ 원안의결

- 금감위는 조사관련 통계자료와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할 수 있음(내용심사)

☞ 원안의결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 보유기관에 보험요율산출에 필요한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 제공목적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신설 2)

-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는 업무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공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자, 주택신보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다만, 업무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탁된 업무범위, 기금출연 금융기관은 그 출연사항에 한함. 건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에 대하여 위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신설)

☞ 건교부장관이 공사업무 수탁자 및 출연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보고서의 징수 및

서류 검사를 요청할 필요성은 없으므로 안 제60조제4항의 대상기관을 공사로 한정하도록 개선 권고

-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신설)
☞ 원안의결

⑩ 신탁업감독규정 및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2, 강화 1)

- 신탁회사(또는 위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또는 자사주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자사주 취득 후 1월 이내에 동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또는 자사주 처분 후 1월 이내에 동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신설 2)

☞ 이 규제는 자사주를 직접 취득·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신고서 기재사항, 매매가능시장, 매매주문방법 등)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었던 자사주 신탁(은행)과 자사주 펀드(투신)를 이용한 취득·처분 시에도 유사한 규제를 두어 형평성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규제가 신설된 것으로 직접취득의 경우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며, 자사주 신탁을 통한 취득·처분을 실질적으로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원안대로 의결

- 신탁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기업어음을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하여 발행·중개·매수하는 조건, 위약금 지급 조건등의 별도약정이 부수된 기업어음을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취득하는 행위를 신탁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함(강화)

☞ 원안의결

⑫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3, 내용심사 24)

- 보험업의 허가요건 중 인력 및 물적시설에 대한 세부요건과 동 인력 및 물적시설의 변경에 필요한 금감위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신수단의 모집비율 기준과 전문인력 및 통신시스템 구비요건을 정함(내용심사)

☞ 안 제2-6조 별표2의 제1호(인력)중 가목(임원)은 삭제하고 안 제2-10조제1항에 최초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모집비율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판정기준을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

- 법인대리점은 동일 주소지에 2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인수·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예외인정(내용심사)

☞ 원안의결

-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증권회사 등이 출연·출자한 법인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한 보험 모집을 할 우려가 있는 자로 보아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는 바, 그 기준을 출연·출자금액의 합이 출연·출자총액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자인 경우로 한정(내용심사)

☞ 원안의결

- 인터넷에 의한 모집방법 및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점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모집종사자가 취급할 수 없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은행업법령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정함.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당해연도 1개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익년 1월 말까지 감독원장에 보고토록 하고, 판매비중을 합산하여 제한(49%)하는 특수관계 보험회사의 범위에 당해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등을 추가함.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협회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함(내용심사)

- ☞ 판매비중 산정기간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각 사업연도기준으로 변경하고 금지행위 위임근거에 법 제100조제4항 및 시행령 제40조제8항을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

-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동 계리사의 등록일, 등록번호 등을 금감위에 제출토록 하고 금감위는 선임계리사의 선임보고서 영 제95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함.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을 1인 이상을, 1조원 이상인 회사는 2인 이상을, 5조원 이상인 회사는 3인 이상을 두어야 함.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보험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하는 자가 금감위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내용심사)
 - ☞ 원안의결
- 보험회사가 부수업무 신규 영위시 그 목적, 업무방법서 및 추정 재무제표를, 폐지 시 그 사유 및 업무실적 등을 1월 내에 금감위에 사후 보고토록 하고 경영·부수업무를 보험업과 구분계리 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따르되, 손익배분기준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내용심사)
 - ☞ 구분계리 대상업무(안 제2-12조제1항)를 영 제16조에서 제17조의 업무로 변경하도록 개선 권고
-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각 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등을 반영하도록 함(내용심사)
 - ☞ 원안의결
- 종래 시행세칙에 있던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관련 조항을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상향 이관하여 규정함(내용심사 2)
 - ☞ 원안의결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계약 체결시 계약의 범위 및 계약기간(최저 1년 이상), 겸업대리점 계약체결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을 규정함.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계약해지요건, 계약해지절차, 계약해지 신고기간을 명시함. 공동인수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한 다른 보험회사와도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함(내용심사)
 - ☞ 원안의결(다만, 모집행위에 대한 중대한 예외규정이므로 추후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종래 시행세칙에 있던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겸직제한 조항을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상향 이관하여 규정함(내용심사)
 - ☞ 원안의결
- 종래 시행세칙에 있던 대리점 시설 등에 관한 조항을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상향 이관하여 규정함(내용심사)
 - ☞ 원안의결
- 보험안내자료에 특정 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등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작성하는 보험안내자료도 일반 보험대리점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아 사용하도록 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보험서비스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강화)

☞ 원안의결

- 취득가능한 서화·골동품의 기준을 사회통념상 영업장 비치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한도를 최고 6천만원 이내에서 자금목적별(일반자금, 주택자금, 사고금 정리)로 정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거래가 금지되거나 이사회의를 거쳐야 되는 최저 단일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약정의 약정금액(같은 날에 행하여진 약정에 대하여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은 신용공여 형태별 조건 등과, 각 거래상대방별 거래내역을 모두 공시하여야 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금감위의 예외승인 사유로 채권회수, 출자전환, CB의 권리행사 등 3가지를 정하고, 예외를 인정받은 자산이 1년이상 경과 후에도 처분이 곤란할 경우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한도초과 자산은 추가취득이 금지됨(내용심사)

☞ 원안의결

- 자회사 소유시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업종 중, SOC투융자, 증권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3가지에 대해 금감위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자회사의 지분 변동시 변동된 내용을 7일 이내에 보고토록 정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종래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관한 조항을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상향 이관하여 규정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보험회사가 보험영업 및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있어 따라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리스크 관련 세부자료를 보험회사에 요

구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채권은 손실을 회피하거나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으며, 기업어음은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발행하도록 제한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보험회사의 정기공시사항으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외에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자산 등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등을 추가하고 보험회사의 수시 공시사항으로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에 관한 사항 외에 당해 보험회사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강화)

☞ 원안의결

-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항목에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을 포함하고,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로 보장내용 및 보험료, 예정이율 등을 비교·공시하고, 보험협회 외에 자가 보험협회의 공시내용과 다른 것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강화)

☞ 원안의결

- 기초서류의 변경 내용이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제출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 후 분기별로 제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보험회사가 신고 또는 제출하는 절차와 금감원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록·관리사항으로 시행령상의 제공대상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외에 제공방법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부실손해보험회사 파산 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를 위하여 개별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연간출연금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내용심사 1)

-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등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보험상품 판매관련 임·직원 준수사항, 업무분장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보험분쟁 발생의 경우 보험회사와 은행간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와의 계약종료 등의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⑭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8)

- 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허용하되, 대출 등의 총액은 매년도 신규대출 등의 3분의 1이내에서 금감위가 한도를 정함(신설)

☞ 단서(다만, 이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을 신용예탁금회계의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금감위가 한도를 정하고, 동일인대출한도, 동일차주 대출한도 및 거액여신한도를 설정함. 중앙회는 중앙회 임·직원, 조합의 임원 및 간부직원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음(신설)

☞ 안 제2항제2호 중 괄호부분(다만, 대출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 한도를 직전 사업년도 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으로 함. 다만, 금감위는 자산총액의 1%에 대하여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음. 채권회수가 확실한 대출(당해 조합에 대한 예탁금·적금 및 공제료 담보 대출, 정부·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대출, 국공채담보대출 등)은 한도에서 제외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현재 50% 이상)을 금감위가 필요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준비금 운용수익을 관리비용→이자지급→중앙회 결손금 보전의 순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자지급 및 결손금보전 방법은 금감위가 정함(강화)

☞ 안 제17조제4항제3호(중앙회 결손금보전)의 존속기한을 4년으로 하도록 개선 권고

- 조합은 여유자금을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은 법 상 유가증권(국공채) 외에 우량회사채, 채권형 수익증권(유사한 뮤추얼펀드 포함)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형 수익증권에의 투자한도는 자기자본 범위 내로 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자산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중앙회장은 최근 3년간 금감위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이익금 과대계상 등 분식회계의 사실이 있는 조합 등에 대하여 감사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내용심사)

☞ 원안의결

- 전문이사는 금융기관에서의 경력자(10년) 및 국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서 이와 동등자격자로 인정되는 자로 한정(내용심사)

☞ 원안의결

- 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관련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임·직원 준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금감위는 법령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내용심사)

☞ 원안의결

- 준법감시인은 리스크 관리 및 감사업무 외에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없음(내용심사)

☞ 원안의결

-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 없는 중앙회의 자금차입 및 출자기준을 설정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중앙회의 자금운용방식으로 법상 허용된 범위(조합대출, 유가증권매입, 금융기관예치) 외에 자체예금자보호기금에의 출연 등을 추가하고, 유가증권 매입종류 및 한도를 새로이 정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재무건전성기준에 미달하여 금감위가 조합의 경영관리에 착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함. 다만, 금감위는 조합의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관리 유예 가능(내용심사)

☞ 원안의결

⑮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2)

- 시장감시위원회는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위원장이 제7조제2항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금감위원장은 1월 이내에 재선임을 요구할 수 있음. 거래소의 이상매매 심리·회원 감리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감시규정으로 정하되, 제·개정 시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신설)
- ☞ 안 제10조제4항(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수정하도록 개선 권고
- 거래소는 유가증권·선물시장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회원)의 관리목적 상 회원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의 제·개정 시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함(금감위는 재경부장관과 미리 협의)(신설)
- ☞ 원안의결

⑯ 은행업감독규정 및 종합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 1)

-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외화자산/외화부채) 지도비율을 현행 80%에서 8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 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외화자금/외화대출) 지도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조정(강화)
- ☞ 원안의결. 다만, 2004년 말까지 외화유동성관리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⑰ 여신전문금융업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신용카드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방식(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강화)
- ☞ 원안의결

⑱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2, 강화1)

-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최저 기준: 8%) 및 원화유동성비율(최저기준: 100%)을 설정함(신설)
 - ☞ 원안의결
- 부동산신탁회사의 원화유동성비율 지도기준 위반사실을 공시사항에 추가함(강화)
 - ☞ 원안의결
-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기본 발동요건으로 하여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의 단계별 조치기준을 마련함(신설)
 - ☞ 원안의결

⑲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 1, 강화2, 내용심사8)

- 동일인대출한도 중 자산 1%기준에 대해서는 농협 및 수협은 5억원, 신협 및 산림조합은 2억원으로 기관별 차등화된 금액최고한도를 두고, 이미 취급된 동일인대출금이 결손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현행 3년(만기일이 3년 초과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의 만기도래 시로 유예기간을 단축함(내용심사)
 - ☞ 원안의결
- 중앙회장의 재무상태개선 요청을 재무상태개선권고 및 재무상태개선요구로 구분하고, 그 최소 요건도 권고는 순자본비율 2% 미만, 종합실태평가결과 종합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로, 요구는 순자본비율 마이너스 3% 미만, 종합실태평가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로 강화함(강화)
 - ☞ 원안의결
-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금감원장이 직접 경영관리 실시(내용심사)
 - ☞ 원안의결. 다만, 2004년 말까지 경영관리기준 운용방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신용예탁금회계의 대출한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한

도(자산총액의 1/3)까지 허용하되 시행 첫해인 2004년도에 한해 3분의 1의 50%로 제한함. 개인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 적용시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50%내에서 취급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은 20억 원 범위 내에서 동 한도에서 제외함. 신용예탁금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채권형 수익증권의 비중은 전체의 20%, 기타 수익증권과 주식의 비중은 전체의 10% 이내로 함(내용심사)

☞ 원안의결

- 신탁중앙회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 유지하여야 함. 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부문에 출자금을 계리하지 않고 이익금도 내부유보하지 않아 사실상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자본적정성지표를 즉시 도입하는 대신 위험가중자산 대비 적립금을 2006년 말까지 1%, 2008년 말까지 2% 이상을 유지토록 의무화함(강화)

☞ 원안의결

- 감독원장은 신탁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함. 신탁중앙회에 대한 단계별 경영개선조치의 내용, 유예, 이행절차 등을 규정함(신설)

☞ 신탁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권고(안 제20조의4) 조치권자를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변경하도록 개선 권고

-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와 자산총액의 10%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와 자산총액의 15% 중 큰 금액으로 함. 금감원장이 정하는 후순위차입(순자본비율계산시 자본에 포함되는 후순위차입금)과 중앙회에금자보호기금에서의 차입은 차입한도 계산시 제외(내용심사)

☞ 원안의결

- 조합이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회사채 및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BBB- 이상의 평가를 받은 회사채로 제한하고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발행한 어음의 매입을 허용(내용심사)

☞ 원안의결

-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운용방법을 신탁법·시행령상 신탁중앙회에 적용되는 운용방법과 동일하게 중복 규정(내용심사)

☞ 원안의결. 다만, 법령 미근거 규제이므로 향후 시행령 개정 시 보완하도록 함

- 중앙회장은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의 5%(1억원 이상)를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는 조합에 대하여 감사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내용심사)
 - ☞ 원안의결
- 조합 등이 보험업관련법규에 맞춰 경미사항 개정시 신고하는 공제규정은 20일 이내에 감독원장의 수리거부통지가 없는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내용심사)
 - ☞ 원안의결

*집필자 : 정광현 사무관(T.3703-2158, k8k8@opc.go.kr)

3. 관세청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의 신설규제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관세청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① 여행자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개정안	제204차 경제분과위 (2003. 4. 23)	개선권고 1	신설 1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개정안(신설 1)

- 관세법(제243조제1항, 제241조제3항)에서 위임된 여행자휴대품의 반송제한 대상물품의 범위 및 반송기간·반송방법 제한내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신설)
 - 반송제한 대상물품의 범위
 - 농축수산물 보따리상·상용품 과다반입자·빈번 출입국자로 지정되어 특별관리 중에 있는 자가 반입하여 유치되는 물품으로 한정(견본 및 원·부자재, 기계 및 장비의 수리용품 등 기업체물품은 대상에서 제외)
 - * 단, 반송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후 최초 유치되는 물품은 반송제한 대상물품에서 제외
 - 반송기간 제한
 - 유치일로부터 1개월 간 반송을 불허
 - * 단, 살아있는 동·식물 및 변질 등으로 보관하기 곤란한 농림축수산물·식품 등은 반송기간 제한대상에서 제외
 - 반송절차 및 방법 제한
 - 반송절차를 정식반송신고로 제한(유치서에 의한 간이반송 불허)
 -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 상용물품·해외취득가격 10만원(면세통관범위 품목 당 5kg·10종 이내, 총량 50kg이내)초과 상용농축수산물에 대하여는 반송방법을 B/L반송으로 제한)
 - * B/L반송 :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 Bill of Lading(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 Air Way Bill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반송을 책임지는 것
- ☞ 반송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적기반송이 어려워 유치물품의 부패·변질로 인한 제반문제의 발생우려가 높은 품목(동·식물,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에 대하여는 반송방법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금번 신설규제에 대하여는 부칙에 존속기한을 2년으로 설정(규제일몰제적용)하도록 개선권고

*집필자 : 정광현 사무관(T.3703-2158, k8k8@opc.go.kr)

제4절 _ 산업자원분야

1. 산업자원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산업발전법, 대외무역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등 1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0건, 강화 17건, 내용심사 7건, 존속기한연장 1건, 기존규제심사 1건 등 총 3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6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7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2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산업자원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9건임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에너지사용의제한또는금지에관한조정·명령 공고안	제99차 경제분과위 (2003. 3. 5)	원안의결 1	강화 1
② 전력계통신뢰도·전기품질유지기준(고시) 제정안	제201차 경제분과위 (2003. 3. 26)	원안의결 1	내용 1
③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운용에관한규정(고시) 개정안	제204차 경제분과위 (2003. 4. 23)	원안의결 1	강화 1
④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05차 경제분과위 (2003. 4. 30)	개선권고 1	강화 1
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제207차 경제1분과위 (2003. 5. 21)	원안의결 2	강화 2
⑥ 대외무역법 개정안	제207차 경제1분과위 (2003. 5. 21)	원안의결 1	신설 1
⑦ 승강기검사기준(고시) 개정안	제207차 경제1분과위 (2003. 5. 21) 제117차 규개위 (2003. 5. 30)	원안의결 1	강화 1
⑧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을 개정안	제207차 경제1분과위 (2003. 5. 21)	원안의결 2	강화 2
⑨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을시행령 개정안	제211차 경제분과위 (2003. 6. 18)	원안의결 1	강화 1
⑩ 산업발전법 개정안	제214차 경제분과위 (2003. 7. 16)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2 존속기한연장 1
⑪ 가스시설의 안전거리기준	제214차 경제분과위 (2003. 7. 16)	개선권고 1	내용 1
⑫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18차 경제분과위 (2003. 8. 29)	개선권고 2	내용 2
⑬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제220차 경제분과위 (2003. 9. 17)	개선권고 1	강화 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⑭ 석유사업법 개정안	제229차 경제분과위 (2003. 12. 3) 제128차 규개위 (2003. 12. 5)	철회권고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9	신설 7 강화 4 누락 1
⑮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운영에관한규정 (고시) 개정안	제231차 경제 분과위 (2003. 12. 17)	원안의결 1	강화 1
⑯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 촉진법시 행령 개정안	제231차 경제 분과위 (2003. 12. 17)	개선권고 1	내용 1
⑰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31차 경제 분과위 (2003. 12. 17)	원안의결 1	신설 1
⑱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제232차 경제분과위 (2003. 12. 31)	원안의결 1	내용 1
계		철회권고 2 개선권고 7 원안의결 27	총 36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에너지사용의제한또는금지에관한조정·명령공고 개정안(강화 1)

- 석유위기 발생시에 적용할 에너지사용 및 공급제한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국제유가의 상황변동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함(상황종료 시 해제)(강화)
 - 영업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명사용 제한
 - 장식용 조명에 대한 전기사용 제한
 - 주유소 및 휴게소 옥외조명사용제한
 - 백화점 등의 옥외광고물은 영업시간 외 전기사용을 제한
 - 편의점 및 상점의 실내조도 제한
 - 도로 과다조명구간 가로등 소등 실시
 - 골프장, 스키장 심야전기사용 제한

- 골프장, 스키장의 외부조명 전기 사용을 금지
 - 옥외골프연습장의 전기 사용을 22:00까지로 제한
 - 영화관, 찜질방 등의 에너지사용시간 제한
 - 영화관은 24:00부터 08:00까지 영화상영에 필요한 전기 사용을 금지
 - 대중목욕탕 및 찜질방에서의 전기·에너지사용은 1일 20시간으로 제한 또는 주 1일 사용제한
 - 승강기운행 금지
 - 승강기는 3층 이하 운영을 금지하고 4층 이상은 격층으로 운영
 -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10인 이하의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승합차)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끝자리번호와 날짜의 끝자리가 같은 날에 06:00부터 22:00까지 운영을 제한
 - 놀이공원·위락시설 등 에너지다소비처 에너지공급 제한
 - 각종 놀이공원·위락시설 등의 에너지다소비처에 대한 에너지공급을 억제
 - 지역난방 제한공급
 - 기온이 상승하여 난방부하가 내려가는 12:00~16:00에 지역난방의 공급을 간헐적으로 중단
 - 전력 제한송전
 - 발전용 유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예비전력이 100만kW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송전 실시
 - 1순위 : 일반주택, 저층 아파트, 서비스업, 소규모상가, 비중요행정관서 등
 - 2순위 : 고층아파트, 상업·업무용, 경공업공단 등
 - 3순위 : 대형빌딩, 병원, 대학, 산업체 등
 - 추가대상:중앙 및 지방 행정관서, 전철, 상수도, 기상대, 관광호텔, 금융기관 등
- ☞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의 지속적인 고조로 인한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성향 등을 감안시 비상시의 에너지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② 신뢰도·전기품질유지기준고시 개정안(내용심사 1)

- 전기사업법(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 별표3)에서 위임된 전기품질유지 및 전력계통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내용심사)
 - 수용가 공급전력의 전압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에서 유지하여야 할 전압 목표치를 규정
 - 특정소비자의 비선형 부하에서 생성된 전류가 전력계통 내로 유입되어 타 수용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조파, 플리커 등에 대한 전기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부과
 - 송전선 또는 발전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기준을 마련
 -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기가 효율적인 계통운영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야 할 출력변동가능치, 출력변동률, 무효전력 공급 성능 등의 허용범위를 지정
 - 수시로 변동하는 부하에 맞추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사업자의 자동발전 제어 및 조속기 운영에 관한 설비유지의무와 운전협조 의무를 부과
- ☞ 동 고시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충분한 심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기준이 마련되었고, 향후 경쟁시장에서는 발전·송전·배전·판매회사로 분할되어 각 부문별로 치열한 경쟁 및 부문 간 불균형 투자 등으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시 규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③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고시) 개정안(강화1)

- 에너지효율등급대상품목의 추가 및 적용범위를 확대함(강화)
 - 김치냉장고를 에너지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및 효율등급표시의무 품목에 추가
 - 전기밥솥을 에너지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품목에 추가
 - 콤팩트형광램프를 형광램프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에너지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및 효율등급표시를 의무화
 - 업체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 2004. 10. 1일부터 시행
- ☞ 대상품목은 보급이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전체적으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점을 감안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업체의 의견과 기술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관련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소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④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시공·관리기준을 강화함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에 중·저압배관, 압축기, 펌프 등을 추가하고, 제조소·정압기(지)등의 건축물 및 제어설비·통신설비에 대해 내진 성능을 확보토록 함
 -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블록화하고, 원격차단장치를 설치토록 함
 - 지진감지장치 설치대상을 정압기지에서 제조소·밸브기지까지 확대
- ☞ 최근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동 규제가 지진뿐만 아니라 다른 가스사고 발생시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시 안전성 제고를 위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지진감지장치 설치대상 확대는 현행 규정에 의거 이미 가스공사의 정압기지(전국 66개소)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점과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도시가스의 주요배관망, 기상청의 지진감지장치 운용수량(총 75개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설치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강화 2)

- 에너지 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등의 사유발생시 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정·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강화)
 - ☞ 에너지의 수요관리를 위해 규제존속기한 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ESCO 사업수행 중 중대한 과실, 의무 불이행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된 ESCO에 대하여 일정기간(2년) 동안 재등록을 금지(강화)
 - ☞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⑥ 대외무역법 개정안(신설 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대외무역법상 제5조제4호에 의한 UN 안전보장이사회 통제품목 및 제23조에 의한 전략물자를 허위로 수출허가받거나,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신설)
 - ☞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⑦ 승강기검사기준(고시) 개정안(강화 1)

- 승강기의 안전장치 작동불능시 “상승방향의 카의 과속과 의도하지 않은 카의 움직임에 대한 보호”를 위한 보조안전장치 (개문발차방지장치 등 3종)에 대한 설치의무대상을 현재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포함)에서 15층 이하의 모든 건축물까지로 확대함(강화)
 - 대상안전장치
 - : 상승방향 과속 방지장치, 개문발차 방지장치, 제어반의 도어스위치 단락 시 승강기자동운행정지 기능
 - 확대범위 및 적용시기
 - : 15층 이하의 신규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
 - : 노후·수리불능 등으로 교체되는 승강기, 기존건축물에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시행 일로부터 6월 경과 이후에 체결하는 공사계약 분부터 적용)
- ☞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⑧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강화 2)

-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당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 등에 대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 범위 내”로 상향조정함(강화)
 - ☞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강화)

- ☞ 무역위원회의 증거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강화 1)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득한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강화)
 -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 공장설립승인제도를 부동산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⑩ 산업발전법 개정안(신설 1, 강화 2, 존속기한연장 1)

-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투자·인수, 인수기업의 정상화·매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중 동 법에 규정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존속기한 연장)
 - ☞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전문회사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감안시 규제존속기한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도록 의무화함(신설)
 - ☞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해 자산운영 및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업무집행조합원인 전문회사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본인(특수관계인 포함)과 조합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함(강화)
 - 단, 보수지급의 경우 및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불가피하여 조합원지분의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를 있는 경우는 예외
- ☞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등록요건에 시설보유 요건을 추가함(강화)
 - 등록요건 : ①상법상 주식회사, ②자본금 70억 이상, ③전문인력 3인 이상, ④임원이 금치산자 등이 아닐 것, ⑤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일정요건의 투자실적이 있을 것
- ☞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⑪ 가스시설의안전거리기준 기존규제 심사(내용심사1)

-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 기준(내용심사)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설비별로 규정한 거리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 ☞ 국제기준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기준이 설정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재량권(단서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기준(내용심사)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 ☞ 국제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정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50m) 기준”을 폐지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량위임 범위를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기준의 2배 범위 이내”로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 산업자원부는 2003. 9월 말까지 안전거리관련 규정을 개정완료하고, 그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하도록 권고

⑫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2)

- 고압가스공급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기·실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함(내용심사)

- 진단대상

- 도시지역에 설치된 고압배관으로서, 최초의 시공감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본관 및 공급관

- 진단시기

- 최초의 시공감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매 4년이 경과한 연도

- 실시기준

- 가스누출여부,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여부 등 세부 진단항목을 규정

☞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단순·명료하게 수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도록 개선 권고. 정밀진단실시기준(별표8의2) 중 <비고>의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가스사고에 대한 손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대상 시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내용심사)

-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공자 :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를 추가

☞ “부대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동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는 보일러로 한정(시행일 전에 설치된 보일러의 시행일 이후 부대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보험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⑬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 환원

- 이라크전쟁시 유가원충을 위해 인하(리터당 14원→ 4원)하였던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국제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종전대로 환원

- 다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유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일단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리터당 14원)기준보다 리터당 4원 인하한 리터당 1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환원

☞ 이라크 전에 따른 고유가의 원충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하한 것을 국제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다시 환원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원유도입선 다변화 촉진을 위한 석유수입 부과금 감면함
 - 원유의 과도한 중동의존도 축소를 위해 미주, 아프리카, 유럽지역 또는 독립국가 연합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원유에 대해 중동대비 수송비차액을 석유수입 부과금에서 차감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함.
 - ☞ 석유위기시의 대응능력은 자주개발을·비축수준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시 동 여건의 변화의 적기 반영을 위해 5년간의 규제 일몰제를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 석유수입 부과금의 납부시기 변경
 - 석유수입 부과금의 지속적인 체납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시기를 현행 통관 후 납부에서 통관 전 납부로 환원
 - 다만, 부과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업체 또는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신용담보업체에 대해서는 사후납부(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까지)가 가능토록 함
 - 부과금 납부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함.
 - ☞ 담보제공 또는 신용담보업체의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현행규정과 같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을 유지토록 하고, 부과금의 납부를 통관의 전제조건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⑭ 석유사업법 개정안(신설 7, 강화 4, 누락 1)

-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사용·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 위반 시 제조 등의 중지, 제조장·판매소의 폐쇄·철거·봉인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자도 처벌
 - 유사석유제품의 정의를 명확화
- 현재 일부는 법에, 일부는 시행령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에 일원화
 -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 금지행위 및 처벌대상에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 대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총 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금을 부과하고, 실소비자가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경

우에는 환급함(강화)

- ☞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선의의 사용자에게 부과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수입업자 포함)로부터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과금을 징수함(신설)
 - ☞ 적절한 석유수급관리를 위해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다만, 규제대상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석탄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것으로서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개체 없이 제2호의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권고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신설)
 - ☞ 석유사업자의 사업개시·휴업·폐업 등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정처분으로 많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등록취소·사업정지의 요건 및 과징금 기준을 강화함(강화)
 - 석유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거나 1년 이상 석유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정지요건에 다음사항을 추가
 -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연체한 때
 - 품질보정행위규정을 위반한 때
 - 유사석유제품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을 위반한 때
 - 과징금 한도액 변경(2억원→20억원)
 - 사업정지처분에 같은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의 금액을 현실화
 - ☞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규제준수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강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석유위기 및 석유유통질서 문란 행위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명령대상 및 내용을 추가함(강화)
 - 명령대상 추가
 - 석유비축대행업자

- 송유관 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 석유화학제품 제조·판매업자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실소비자
- 명령내용 추가
 - 유사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과 수급통제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실소비자·판매자의 등록 또는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원료 등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기준의 완화 또는 적용배제
- ☞ 석유위기 및 석유유통질서 문란 행위발생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함(강화)
 - ☞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연료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제조·판매기준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함(신설)
 - ☞ 연료첨가제에 대한 환경측면의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고, 연료첨가제의 품질·성능 등은 소비자가 판단·사용할 사안이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인정 전에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소비자의 보호 및 환경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포함) 및 판매업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및 과징금 부과요건 규정함(신설)
 - ☞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고, 석유대체연료사업자에게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신설)
 - ☞ 소비자의 보호 및 환경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신설)
 - * 석유는 내수판매량 60일 범위 내의 비축의무 부과
- ☞ 향후 석유대체연료의 시장비중이 상승하게 되면, 그 공급감축 내지 중단은 국가적인 에너지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점을 감안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⑩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고시) 개정안(강화 1)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함(강화)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에 2개 품목(전기냉동고, 전기진공청소기)을 추가
 - 전기세탁기의 효율기준을 현행 1등급 기준을 10%, 최저효율기준을 30% 상향 조정
- ☞ 해당품목의 보급률 및 국가 전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⑪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대체에너지 이용의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내용심사>
 - 이용의무 대상기관
 - 대체에너지 이용의무대상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추가함(한국마사회, 대한지적공사, 금융감독원 등)
 - 이용의무대상 건축물의 범위
 -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이상
 - 용도 : 공공용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
 - * 다만,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
 - 설비의 투자 의무 기준
 - 건축공사비의 5% 이상
 - 대체에너지설비의 종류·설치기준 등은 고시로 규정
 - * 연간 에너지사용량 중 대체에너지 비중 2~6% 수준, 대체에너지 신규시장 창출

출 2,000억원 목표

-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

- 건축허가 신청 전에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검토확인
- 설치 후에는 설비설치 확인서를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공사완료 시에 제출토록 함

☞ 규제기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대체에너지설비의 투자 의무기준에서 “건축공사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수정하고, 건물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산정방법 등은 산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확인시 “의무이용기관의 장에게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공사완료시에 발급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행정목적 상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⑰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마련(신설)

- 자격취소 기준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심사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인증심사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1년 이내의 업무정지 기준

- 인증심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규격 표시품의 품질불량이 발생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KS인증의 신뢰확보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⑱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1)

-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 사유」의 세부기준을 규정함(내용심사)
 - 사업시행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3개월 이상 불가능한 경우
 - 조합, 단체 등과 같은 사업시행자가 해체된 상태에서 사업승계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자와 사업참여자간의 분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6개월 이상 어려운 경우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 ⇒ 법률에서 위임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지를 감안 시 규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집필자 : 이순아 사무관(T.3703-3927, leesa@op.c.go.kr)

2. 중소기업청

① 2003년도 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고시)에 대해 기존규제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고시)	제207차 경제분과위 (2003. 5. 2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② 2003년도 세부심사내용

①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고시) 기존규제 심사(내용심사)

- 신설조합(당해 년도에 설립된 조합)의 물품을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 추천대상에서 제외함(별표2 제16호)(내용심사)
- ☞ 신설조합(당해 년도에 설립된 조합)의 물품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 추천이 가능하도록 동 규제(제8조별표2의 제16호)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집필자 : 이순아 사무관(T.3703-3927, leesa@opc.go.kr)

제5절 _ 건설교통분야

1. 건설교통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철도안전법, 건축물의 분양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등 33개의 법령에 대하여 신설 31건, 강화 59건, 내용심사 22건 등 총 11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2건 중 5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5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5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건설교통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29건임

건설교통부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96차 경제분과위 (2003. 1. 1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억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②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제96차 경제분과위 (2003. 1. 15) 제11차 규개위 (2003. 2. 7)	개선권고 2	강화 2
③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제197차 경제분과위 (2003. 1. 29)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강화 4 신설 2
④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197차 경제1분과 (2003. 1. 29)	개선권고 3 원안의결 1	내용 3 강화 1
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202차 경제분과위 (2003. 4. 2) 제13차 규개위 (2003. 4. 4)	원안의결 1	강화 1
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제204차 경제분과위 (2003. 4. 23)	개선권고 6 원안의결 2	내용 8
⑦ 임대주택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제204차 경제분과위 (2003. 4. 23)	개선권고 3	강화 2 신설 1
⑧ 항공법 개정안	제205차 경제분과위 (2003. 4. 3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6	내용 4 강화 3
⑨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05차 경제분과위 (2003. 4. 3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⑩ 도시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206차 경제분과위 (2003. 5. 14)	개선권고 1	강화 1
⑪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206차 경제분과위 (2003. 5. 14) 제117차 규개위 (2003. 5. 30)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내용 2 강화 2
⑫ 골재채취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207차 경제1분과위 (2003. 5. 21)	개선권고 3	내용 2 강화 1
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제208차 경제분과위 (2003. 5. 27)	원안의결 1	강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제77차 규제위 (2003. 5. 30)		
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	제210차 경제1분과위 (2003. 6. 11) 제118차 규제위 (2003. 6. 1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강화 3
⑮ 주차장법 개정안	제216차 경제분과위 (2003. 8. 13)	개선권고 3 원안의결 1	강화 3 신설 2
⑯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제216차 경제분과위 (2003. 8. 13)	원안의결 1	강화 1
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안	제219차 경제분과위 (2003. 9. 3) 제122차 규제위 (2003. 9. 5)	원안의결 4	신설 1
⑰ 하천법 개정안	제220차 경제분과 (2003. 9. 17)	원안의결 2	강화 2
⑲ 측량법 개정안	제220차 경제분과위 (2003. 9. 17)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1 신설 2
⑳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221차 경제분과위 (2003. 9. 24)	원안의결 1	신설 1
㉑ 항공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제221차 경제분과위 (2003. 9. 2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내용 1 강화 1
㉒ 주택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제221차 경제분과위 (2003. 9. 24)	철회권고 1 개선권고 6	내용 2 강화 5
㉓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제222차 경제분과위 (2003. 10. 1)	개선권고 1	강화 1
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22차 경제분과위 (2003. 10. 1)	원안의결 1	강화 1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억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시행령 개정안	제223차 경제1분과위 (2003. 10. 8)	원안의결 1	강화1
㉕ 도로법 개정안	제224차 경제1분과위 (2003. 10. 1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강화3
㉖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제224차 경제1분과위 (2003. 10. 15) 제126 규개위 (2003. 10. 17)	개선권고 1	강화1
㉗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제224차 경제1분과위 (2003. 10. 15) 제126차 규개위 (2003. 10. 17)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	강화3 신설 2
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225차 경제1분과 (2003. 10. 2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강화2 신설 2
㉙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제228차 경제1분과위 (2003.11. 26) 제128차 규개위(2003. 12. 5)	철회권고 2 개선권고 5	강화6 신설1
㉚ 철도안전법 제정안	제229차 경제1분과위 (2003. 12. 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7	신설 9
㉛ 도시공원법 개정안	제230차 경제분과위 (2003. 12. 10)	개선권고 3	신설 3
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제230차 경제분과위 (2003. 12. 10)	원안의결 1	내용 1
㉝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제231차 경제분과위 (2003. 12. 17)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강화3
㉞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을 제정안	제231차 경제 분과위(2003. 12. 17) 128회 규개위(2003. 12. 19)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신설 3
계		철회권고 5 개선권고 56 원안의결 51	총 112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중대한 부실이 발생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우수 건설업자 및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강화)
 - ☞ 취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긴급점검” 등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사전통보 없이 공사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점검 3일 전까지 점검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한 법 취지에 맞도록 “부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로 긴급점검의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②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강화 2)

- 공동주택의 바닥은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가 되도록 하거나,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도록 함(강화)
 - ☞ 표준바닥구조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실시공시의 책임 문제와 기준간의 일관성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성능기준으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 생활여건 및 기술수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 간의 규제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110cm 이상 → 120cm 이상)와 내부계단 등에 설치하는 난간의 간살 간격(15cm 이하 → 10cm 이하)을 조정함(강화)
 -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노인정의 최소설치면적을 노인복지법의 규정대로 조정함(15㎡ → 20㎡)
 - ☞ 노인복지법 상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노인정 최소설치 “면적”을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③ 건축법시행령 개정안(강화 4, 신설 2)

-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세대수 및 가구 수 증가를 위한 경계벽의 신·증설 및 변경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전 신고하도록 함(강화)
 - ☞ 임의적인 가구·세대 증가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미관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과 관계없이 시가지에서 건축물의 위치 및 환경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m의 범위 안에서 이격하도록 시장·군수 등이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실제 규제가 필요한 도시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의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
- 학원 및 독서실 등이 3층 이상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함(기존 400㎡ 이상)(강화)
 - ☞ 좁은 공간에 다수의 청소년 등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학원 및 독서실과 소방법령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함(강화)
 -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신설)
 - ☞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신설)
 - ☞ 수도법상의 규제와 중복될 소지가 있고, 관련 지침의 명확화로 규제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므로 철회권고

④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3, 강화 1)

- 적재물배상보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내용심사)
 - ☞ 유사입법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등)에 맞추어 보험가입자 계약 해지·금지 등의 관련조문을 정리하도록 개선권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제한함(내용심사)

- ☞ 설기계로도 등록이 가능한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등록방법에 따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 배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기준을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kg 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내용심사)
 - ☞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 금지’를 추가하되, 영업 중에 이용 가능한 주차장 또는 차고지에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강화)
 - ☞ 영업 중이 아닌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주차장,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권고

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건설용지에서 건축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유치원용지에 학원·종교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해 용지에는 원칙적으로 이들 시설의 설치를 제한함(강화)
 - ☞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의 주거환경 보호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8)

-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 대상의 기준이 되는 노후·불량 주택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내용심사)
 - ☞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되 정비사업은 계획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시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원안의결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내용심사)
 - ☞ 기준 설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구역의 지정요건을 정함(내용심사)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함
 - ☞ 소규모의 연립주택을 인근의 대지와 함께 재건축하는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인접

대지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에도 적절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의뢰기관을 복수화하고, 상위법률에서 시·도지사는 사업시기 조정 등을 위한 평가만을 할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조정 권한은 삭제하고 사업시행시기 조정사유를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절차, 토지등 소유자 동의기준, 운영방법, 필요경비 납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함(내용심사)
 - 추진위원회 승인절차 : 정비구역지정 후 시장·군수의 승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첨부
 - 추진위 업무 중 토지등 소유자 동의기준 :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 추진위의 운영 : 주요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요내용을 서면 통보
 -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는 필요경비를 납부하도록 함
 - ☞ 정비구역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므로 '정비구역지정 후' 설립토록 한 규정을 수정하고, 추진위원회 업무에 대한 동의요건을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 또는 추진위구성에 참여한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 정도로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 조합의 설립운동과 관련한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등 세부내용을 정함(내용심사)
 - ☞ 조합정관에서 정할 사항 중 '정비기반시설부담, 지적 및 건축물바닥면적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업초기에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중요사항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주택 관련 사항'은 시·도별로 실정이 다르므로 재개발로 한정하고 재건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대표회의 비용과 관련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도록 개선권고
- 사업시행인가 후 시장·군수의 인가대신 신고만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사업시행자가 공개할 자료내용 등을 정함(내용심사)

- ☞ 공개·공람 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전문관리업자가 매년 운영 실적과 기술인력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내용심사)
- ☞ 정비전문관리업자 등록시의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영업실적과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고의무’는 정비자문업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⑦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신설 1)

- 임대주택조합의 가입조건과 운영기준 등을 정함(신설)
 -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되 미성년자와 상법상 영리회사·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제외
 - 조합설립인가 후부터는 구성원의 신규가입 제한
 -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 등을 조합규약에서 미리 정하도록 함
 -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 투자조합성적인 임대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제한 규정은 필요성이 적으므로 삭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신규가입 제한규정은 삭제하며, 조합규약에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요구’ 등을 추가하고, 회계감사 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허가 받은 날’ 과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날’ 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개선권고
-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으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 한하여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임차인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전대하게 함(강화)
 - ☞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더라도 수도권 이전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등 규제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공공택지지구 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만이 임차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강화)
 - * 부칙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 ☞ 규제강화 내용에는 동의하나, 부칙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동 규칙을 직접 개정하도록 권고

⑧ 항공법 개정안(내용심사 4, 강화 3)

- 항공기정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 기준의 인력·설비 및 검사체계 등(정비조직 승인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내용심사)
 - ☞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중요한 항공기 장비품(기술표준품)을 설계·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강화)
 - ☞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항공기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정음료 섭취를 금지하도록 함(강화)
 - ☞ 항공안전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국내에서 제작·생산되는 항공운행 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국가의 성능적합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항공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당해 항공기 소음부담금의 2배 이내의 특별소음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내용심사)
 - ☞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은 공항의 안전 운영체계에 대하여 운영증명을 받도록 함(내용심사)
 - 공항운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항안전 운영기준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작성·제출
 - ☞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항공기의 운항현장 등에서 안전감독 수행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항공기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할 경우 등에 있어 정부감독관이 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종사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항정지 시 사후통보 등의 절차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지명령 위반 시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도록 개선권고

⑨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를 설치하도록 함(강화)
 - ☞ 일반화물자동차(총 중량 7.5톤 이상 의무화), 외국사레(3.5톤 이상 의무화)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적용이 배제됨을 부칙으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신고시에 제출하는 하자 보증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금액을 상향조정함(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강화)
 - ☞ 건설기계의 가격 변화(1997년보다 약 5배 수준 인상) 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⑩ 도시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개발구역내의 행위제한 대상을 구체화함(내용심사)
 - ☞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한 '간이공작물'을 시행규칙에서 열거하였으나 유사한 간이공작물(예, 오징어건조장)의 출현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6.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⑪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내용심사2, 강화 2)

- 건설업등록기준 중 일부 업종의 기술인력, 자본금 기준을 상향조정함(강화)

- 일반건설업	
· 토건업, 산업설비업 :	10 → 12인, 10 → 12억원
· 토목, 조경업 :	5 → 6인, 5 → 7억원
· 건축업 :	4 → 5인, 3 → 5억원
- 전문건설업(15개) :	2 → 3인, 1 → 2억원
* 기존 등록업종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유예기간 부여	

☞ 자본금기준 강화는 그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건설업의 기술인력 강화는 경력임원 폐지와 함께 추진되어, 업계에 추가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의하나,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 강화는 부실업체 퇴출효과보다 업계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크므로 재검토하도록 권고

* 대상업체 전체 23,724개 중 강화되는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등은 5,482개 (약 23.1%)에 그침(전문건설협회자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를 ‘국가 등의 발주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10억원 이상인 공사’ 등으로 확대함(강화)

*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 일이 2004. 1.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

☞ 일용 근로자에 대한 복지실현과 건설인력의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전문건설업의 업종 수를 29개에서 25개로 조정함(내용심사)

- 미장방수 + 조적 → 미장·방수·조적

- 창호 + 철물 + 온실설치 → 금속구조물·창호

-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 → 지붕판금·건축물조립

☞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내용심사)

- 위원회 위원 수 상향조정 : 17 → 17~21명

· 조합원인 운영위원 : 7 → 7~9명

· 전문가 운영위원 : 6 → 6~8명

- 조합원이 아닌 운영위원수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전문가 운영위원 선임방법 변경 : 운영위원회 추천 폐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위촉

☞ 운영위원회가 전문가 운영위원을 2배수로 추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개선권고

⑫ 골재채취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2, 강화1)

- 골재채취업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구체화하고, 골재채취업의 등록신청시 등록관청은 한국골재협회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강화)
 - ☞ 허가의 기본전제가 되는 ‘적정여부 확인’의 행정권한을 특정 협회에서 행사하게 하는 것은 법적근거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골재채취수급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골재자원의 실지조사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절차를 정함(내용심사)
 - 인접구역에서 2인 이상이 골재채취할 경우 우선허가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
 - ①반출로를 확보한 자, ②민원해결에 적극적이고 채취실적이 많은 자, ③환경 관계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한 자 등
 - 시장등 허가관청은 골재채취 허가신청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청 또는 협회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게 함
 - 등록·허가관청에 대한 통보사항을 ‘등록, 등록사항변경, 양도, 골재채취 허가, 골재선별세척·신고사항’까지 확대하고, 이를 골재협회에게도 통보하도록 함
 - ☞ 실지조사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률에 맞지 않으므로 협회에 대한 위탁은 삭제하고,
 - 민원해결의 적극성 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보기가 어렵고, 단순히 실적이 많다는 것이 우선순위를 인정하여야 할 사유로 부족하므로 ②호는 삭제하며,
 - 특정 협회에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과도하게 위탁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협회에 대한 확인업무 위탁은 삭제하며,
 - 등록 및 허가취소 이외의 사항을 다른 관청에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적으며, 협회로 통보하여야할 목적도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철회하도록 개선권고
- 공제사업 허가신청절차를 정하고, ‘자금융자, 이행보증·하자보증·복구비 예비보증 등에 공제, 회원의 골재채취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의 구매알선’ 등 공제사업의 범위를 정함(내용심사)
 - ☞ ‘각종 시설·장비의 구매알선 등’은 공제사업이 아닌 협회의 일반사업으로 할 사항이므로 공제사업의 범위에서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강화 1)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전매를 금지함(강화)
 - ☞ 현재의 주택분양 시장에 나타난 과열현상을 감안할 때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강화 3)

- 주택호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강화)
 - ☞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되어 동의하나, 규제시행 1년 후 주상복합아파트의 정책방향 및 기능 정립과 함께, 300세대 기준의 적정성,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증여할 수 없도록 함(강화)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종전 규정에 의한 유예 적용
 - ☞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종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자까지 경과조치를 확대하고 일반아파트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도록 권고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할 때에는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함(강화)
 - ☞ 최근 재건축시장의 과열을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시행 1년 후, 시장 및 제도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투기적 수요 차단이라는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대안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

⑮ 주차장법 개정안(강화 3, 신설 2)

- 주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구역에 대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시설 확보율이 미흡한 구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주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게 한 것은 주민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사항을 주민의견수렴이나, 지구 지정 등의 절차가 미비하여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주차관리지구 지정과 같이 주차관리 지구내의 조치사항 등도 사전에 계획으로 수립되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차지구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도 지정하였을 때와 같이 ‘고시’하도록 개선권고
- 노외주차장 설치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통보하게 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강화)
 - ☞ 노외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는 민영 노외주차장의 폐지를 관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 현행 법률규정과 모순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치가 안전상의 문제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사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하여 안전도인증을 철회할 수 있게 함(강화)
 - ☞ ‘사용상 불편’ 등을 철회사유로 한 것은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한 인증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 시장 등이 재심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을 점검기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안전도인증기관에서 철회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기계식 주차장치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보수설비를 갖추도록 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 결격사유 규정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 ☞ 원안 의결하나, 향후 시행령 개정 시 불필요한 진입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최소화하고, 승강기설치공사업자, 승강기보수업자로 등록된 경우 당연히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제를 도

입합(강화)

- ☞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행을 강제할 의무확보수단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⑩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강화 1)

- 단독·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강화)
 - ① 단독주택 130㎡~200㎡까지 1대, 이후 130㎡ 추가마다 1대 → 50~150㎡당 1대, 이후 100㎡ 추가마다 1대
 - ② 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
 - 다세대·다가구 : 시설면적 130㎡~200㎡까지 1대, 이후 130㎡ 추가마다 1대
 - 공동주택 : 시설면적 120㎡당 1대
 - 오피스텔 : 시설면적 150㎡당 1대
-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 적용

- ☞ 선진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안(신설 4)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예정지역 등(예정지역+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을 해당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신행정수도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예정지역 등의 지정 등 신행정수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난개발 및 보상목적의 건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행정수도 건설예정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주변지역 안에서는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준하여 행위를 규제함(신설)
 - ☞ 예정지역 안에서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와 주변지역에서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행정수도 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상액 산정시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의 적용은 2008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함(신설)
- ☞ 공시지가 기준일을 소급한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 소지가 있으나, 특정지역(행정수도 건설예정지역)에 한하며 핵심 국책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⑱ 하천법 개정안(강화2)

- 하천관리청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하천의 폭(계획하폭) 이내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현재, 하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구역을 지정·고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하천구역 안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급속한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대집행조치가 가능하도록 함(강화)
- ☞ 홍수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 일반적인 대집행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안의결

⑲ 측량법 개정안(강화1, 신설2)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地殼, 地貌 또는 地物 변경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유발시킨 자(원인행위자)가 당해 측량성과를 수정하여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신설)
 - 원인행위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직접 측량성과 수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을 국립지리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량성과 수정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행위자가 부담
- ☞ 기본측량은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국가사무라는 점에서 그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기본측량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므로 철회권고
- 측량기능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기술용역업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신설)

- ☞ 기능사가 명의 또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측량협회 설립요건을 구체화함(강화)
 - 발기요건 : 측량기술자 300인 이상과 측량업자 1/10 이상의 동의
 - 창립요건 : 측량기술자 500인 이상과 측량업자 1/5 이상의 동의
- ☞ 타 법령에 의한 협회 설립 요건과 현재의 자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협회 설립요건이 과도하므로 설립요건을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측량업자 1/10이상 정도로 완화할 것을 개선권고
- 공공측량성과심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수뢰 등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

⑳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신설 1)

-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착수 및 완료하여야 할 최대시한을 정함
 - 착수시한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완료시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 후 3년 이내
-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한을 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㉑ 항공법 개정안(내용심사 1, 강화 1)

- 공항운영증명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2004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국제 점검에 대비하여 공항운영증명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자격증명대상 및 안전성 입증대상, 보험가입대상과 범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함(강화)
 - ☞ 엔진을 이용하는 '패러플레인'과 탑승인원이 다수인 '유인자유기구'도 보험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 또한, 보험가입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아 시행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입금액

- 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1항에 의한 금액 이상)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교관자격 등 최소한의 운영기준과 실기훈련에 필요한 비행장치 및 제반시설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②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2, 강화 5)

- 주택조합·고용자·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추진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함(강화)
 - ☞ 등록사업자의 선관주의의무는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표준조합규약’ 또는 ‘표준공사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등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함(강화)
 - 기술자 : 3인 → 4인 이상, 주택건설실적 : 100세대 이상 → 최근 3년간 100세대 이상
 - ☞ 기술인력 기준강화는 주택 시공품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소규모 정상적인 업체에게 추가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업특성 및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적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 정도로 연장하도록 개선 권고
-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상에서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만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현재,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 바 있어 (2003. 6. 30) 다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회 권고
- 100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전기시설 등 간선시설을 시설별 설치의무자(지자체·한전 등)가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내용심사)
 - ☞ 전기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설치 범위를 단지경계선까지의 가공선으로 한정하도록 개선 권고
- 사업주체가 주택보증(주)에게 주택 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를 확대함(강화)
 - 최초로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로서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등

- ☞ 최초로 분양보증을 받는다고 해서 위험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약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분양보증 자체가 현재, 임의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의 재산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증권(또는 보증서)에 가입하도록 함(강화)
 - ☞ 주택관리사보 배치 여부 등은 입주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의무배치 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을 규정함(내용심사)
 - 주택단지 : 주택단지 내 각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소유자 각 2/3이상의 동의
 - 개별 동 : 각 소유자 4/5 이상 동의
 - “증축은 1회에 한하여 인정” 되도록 함
- ☞ 증축회수까지 1회에 한정하는 것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㉓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강화1)

- 사용승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와 함께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 ☞ 건축물 사용 전에 신청하도록 한 것은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있고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명확화라는 건축물대장제도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삭제하고, 제출해야 할 측량성과도의 종류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화물자동차의 화물칸 바닥면적 기준을 강화함(1㎡ 이상 → 2㎡ 이상)(강화)
 - 이미 생산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5. 12. 31 까지 적용을 유예함
- ☞ 자동차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실상의 승용차를 화물차로 등록하는 사례를 막을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강화 1)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설치하는 축사·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동물사육장에 대해서는 1가구 당 1개만 설치하도록 제한함(강화)
 -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2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받은 농업용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허가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중복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 ☞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㉖ 도로법 개정안(강화 3)

- 도로점용허가시 원상회복 의무이행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도록 함(강화)
 - ☞ 다른 공공용지에 비해 점용건수가 월등히 많고, 점용기간이 장기간인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편익보다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치금제도 도입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도 ‘입체적 도로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함(지하부분에 대한 강제수용이 가능)(강화)
 - ☞ 현행 규정에서는 도로부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협의’ 성립을 수용·사용의 조건으로 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운전자가 과적차량의 바퀴 등을 조작하여 정확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일명 ‘축조작’)가 의심되는 경우에 공무원의 차량동승요구를 불응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㉗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강화 1)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사업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상속·저당으로 인한 양수 제외)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취득을 제한함(강화)
 - 생업상의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 직장·지역 조합주택과의 형평성 유지와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하여 '이혼으로 인한 양수'에 대하여도 전매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개선권고

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안(강화 3, 신설 2)

-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등록을 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함(신설)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할 수 없게 제한
-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허용 목적에 비추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표시와 내국인 대상 영업 제한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제주도 안에서 신규 또는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차고지)'를 확보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신설)
 -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적용대상 지역과 차고지의 범위, 요건, 확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로 정함
 - * 공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등록후 차고지를 변경·멸실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무이행 확보방안(차고지확보명령, 운행제한 또는 과태료 상향조정 등)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
-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시에 허가량 조정 및 제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정비, 폐쇄, 원상복구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허가량 조정 등은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고, 지하수관련 규제는 현행 지하수법 등으로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위하여 도 조례가 정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지하수 인공함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함(강화)
 - 도지사는 이상가뭄이나 과도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단계별로 취할 수 있도록 함

- ☞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만 의무화되어 있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비상 시 조치내용이 불명확하므로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신고대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은 도조례로 정함(강화)
- ☞ 무분별한 소규모 건축행위에 의한 경관저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 의결

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강화 2, 신설 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도록 함(강화)
 -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음
 - ☞ 갱신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규제수단이 과도하므로 등록사항의 정기적인 신고로 대체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취소·정지처분을 하도록 개선권고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이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령 및 화물운송서비스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강화)
 - ☞ 화물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 기존운전자와 신규운전자간의 형평성, 자격시험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의 복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화물운송이 국가물류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화물자동차운송가맹(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운송시설 등 등록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신설)

- ☞ 운송사업자에 대한 물량확보와 정보 등을 지원하고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가맹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③0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강화 6, 신설 1)

-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중개업자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하게 함(강화)
- ☞ 중개보조원에 대한 업무제한 규제는 업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중개보조원의 신고의무 신설은 관리측면에서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철회권고
- 중개업자 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사원·임원)에 대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게 함(강화)
 - 중개업자는 이동중개업소(땃다방 : 천막 그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적인 중개시설물)를 둘 수 없게 함
 - 중개업자는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
- ☞ 휴업 등의 신고의무 강화는 중개업자 대다수의 불편을 초래하고, 규제 실효성이 적으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하게 함(신설)
- ☞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지대상을 매매계약에 한정하고(임대차 등 과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면제),
 - 통지된 자료는 과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 중개업자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또는 거래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신문·사설정보망 등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함(강화)
- ☞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권고
- 부동산중개업자·부동산중개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강화)

-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간판 또는 신문 등의 광고물에 등록번호·대표자의 성명 및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임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 ☞ 중개업자 간판 등에 성명, 등록번호 등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보아므로 사무소의 명칭에만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임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선권고
-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중개업자 등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연 1회 받도록 의무화(강화)
- ☞ 사전교육 강화 및 연수교육 의무화는 피교육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며 실효성도 적으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고, 공제계약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함(강화)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규정, 공제료,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회계기준 등에 관하여 조정·개선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 공제료, 회계기준, 책임준비금의 최소적립비율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 공제규정과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개선명령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③ 철도안전법 제정안(신설 9)

- 철도운영자 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신설)
 -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 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 철도운영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시행하고 있는 철도안전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안전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철도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열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기관사면허를받도록함(신설)
 -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적성검사, 신체검사, 면허시험, 교육훈련, 수습승무원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등에 있어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게 함
- ☞ 음주시 등의 운전취급 금지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에 대하여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근거를 두도록 개선권고
-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기관사면허 취득 등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 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한 자에 대한 벌금 부과
 - 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을 불성실하게 한 때” 등에 있어서 취소 또는 정지
- ☞ 면허취득 등과 무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불성실하게 한 때”는 취소사유로는 지나치게 막연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철도기관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신설)
 - ☞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 하도록 하고, 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신설)
 - ☞ 철도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차량 제작을 발주하는 자는 제작검사를 하도록 하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 등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함(신설)
 - ☞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술 또는 마약류를 먹거나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취급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신설)
 - 철도운영자 등은 그 소속 운전취급자가 술 또는 마약류를 먹거나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취급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 철도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수송 및

-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신설)
- ☞ 철도사고 발생시에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외결

③ 도시공원법 개정안(신설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신설)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주거환경정비 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 사업 개발계획 등
- ☞ 대상사업 중 '생활환경정비 사업개발계획'은 대규모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별도의 공원 등을 확보할 필요가 적으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개편하고,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함(신설)
 - 도시공원구역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공공용시설·여가활용시설, 취락지구 내 주택·근린시설 신축,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토석의 채취 등 허용
 - 도시공원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함
- ☞ 구역의 신규지정에 따른 종전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인 기 사업착수자의 '신고의무' 근거는 권리제한적 내용을 포함하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 도시공원, 도시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신설)
 -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구역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구역에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함
- ☞ 배설물, 애완동물에 대한 범위와 규제내용을 구체화하고, 규제투명성 확보를 위하

여 공원관리청은 금지장소 및 행위를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개선권고

③③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총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5% 이상 설치하도록 함(내용심사)
 - ☞ 현재의 경차보급율(4.7%)에 비추어 규제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의결

③④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강화 3)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를 35세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강화)
 - ☞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투기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강화)
 - ☞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보장하고, 자원낭비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본주택의 배치·구조·존치기간 및 유지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함(강화)
 - *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 ☞ 규제목적도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존치기간” 부분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③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정안(신설 3)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시기에 도달한 후,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하게

함(신설)

- 현재 분양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제외
-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시까지 건축할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말소
-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에 의하여 피분양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하고,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피분양자를 선정하게 함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피분양자를 기록한 명부를 비치하고 분양계약시 피분양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열람하도록 함
- ☞ 설계변경에 대한 피분양자 전원동의를 안전·기술상의 문제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과도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열거”하기보다는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를 하위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 피분양자 명부 비치는 실효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노출,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분양사업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를 분양사업자로 봄)가 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함(신설)
 - 분양사업자는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도록 함
 - ☞ 신탁회사를 분양회사로 보는 단서규정은 특별한 실익이나 사유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 분양시기에 대하여 주택사업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분양요건과 유사한 기준(골조공사의 2/3이 완료된 후 분양)을 적용하고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를 ‘자본금 및 건설실적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분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하도록 함
 -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건축물 분양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억제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사무를 지자체에게 위임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 이 규제를 폐지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인결

*집필자 : 이진원 사무관(T.3703-2160, ljw0516@opc.go.kr)

제6절 _ 보건복지분야

1. 보건복지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마약관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의수련및 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등 1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5건, 강화 78건 등 총 9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3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6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15건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마약관리에관한법을 개정안(강화 2)	제181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 1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②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0)	제83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2. 12)	개선권고 3, 원안의결 8	신설 1 강화 10
③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 안(강화 2)	제83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2. 1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④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제83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2. 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6)	제84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2. 19)	개선권고 5, 원안의결 1	강화 6
⑥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9)	제186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3. 12)	개선권고 5,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9
⑦ 의료기관회계기준 제정안(신설 3)	제189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4. 16)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신설 3
⑧ 정신보건법 개정안(강화 4)	제190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4. 30)	원안의결 4	강화 4
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제92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5. 14)	원안의결 1	강화 1
⑩ 결핵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3)	제93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5. 2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3
⑪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9)	제93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5. 21)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6	강화 9
⑫ 안마사에관한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제95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6. 18)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5)	제201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8. 28)	개선권고 8, 원안의결 17	강화 25
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강화 1)	제205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0. 1)	개선권고 1	강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⑮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제20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0. 29)	개선권고 1	강화1
⑯ 응급의료비비수금대불청구심사기준 제정 안(신설 3)	제20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0. 29)	원안의결 3	신설 3
⑰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 제정안 (신설 3)	제208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1. 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3
⑱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개 정안(강화 1)	제212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2. 17)	원안의결 1	강화1
⑲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강화 1)	제212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2. 17)	개선권고 1	강화1
계		철회권고 1 개선권고 32 원안의결 60	총 93건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마약관리에관한법을 개정안(강화 2)

- 치료보호기간 연장(강화)
 - ☞ 마약중독자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간 연장(6월→1년)에는 동의하되,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내실화방안 마련 및 추진을 권고(조건부 동의)
- 치료보호자의 사후관리 의무화(강화)
 - ☞ 사후관리 횟수·기간을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주소지 관할 치료보호기간에서 실시하여 재활 및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가 가능토록 개선권고
 - ☞ 자의입원자의 경우, 사후관리 및 벌칙강화 시 자의입원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방안 강구
 - ☞ 사후관리 의무위반 및 불응자에 대한 벌금형 부과는 과도한 입법규제의 소지가 있

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질서별로 개선

- ☞ 형식적 사후관리 방지 및 객관적이고 명확한 시행을 위해 사후관리기준을 마련 등 개선권고

② 식품위생법시행령·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0)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신설)
 - 최초 수입·개발·생산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
- ☞ 원안의결
- 영업의 허가·신고 및 품목제조보고의무(강화)
 - ☞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과 중복하여 등록(양곡관리)·신고 및 관리되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절차·요건·기준 등을 일원화하도록 법령정비
 - ☞ 기타식품판매업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대상을 30㎡(10평) 이상으로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은 일선행정 여건상 실효성 없는 규제로서 자의적·선별적 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며,
 - ☞ 신고대상기준 면적을 30㎡로 산정한 근거의 타당성이 불분명하므로, 소규모 식품판매업 현황·관리실태 및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대상 면적기준 재검토
 - ☞ 허가영업의 영업장 면적변경 허가는 현행 규정(영업자 성명 및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시 신고) 정도에 따라 신고사항으로 개선권고
 - ☞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사용량 제한기준을 정한 식품첨가물에 한하여 성분배합비율을 보고토록 개선하여 식품 안전관리와 식품개발·경영 자율성 확보
- 식품위생교육(강화)
 - ☞ 업종별 보수교육·위생교육은 교육대상자의 부담 및 불편, 교육의 형식화로 인한 실효성 미흡, 단체가입·회비징수의 수단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규정을 정비해 오고 있는 사항이므로 식품위생교육도 교육대상자를 늘려 매년 정례화하기 보다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개선권고)
 - ☞ 다만, 시·도지사의 경우 지역사정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지역 내 식품위생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것은 필요함

- 자기품질검사의 의무(강화)
 -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변질되기 쉬운 도시락류 및 아이스크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강화(현행 6월마다 1회 → 개선 1월마다 1회)
 - ☞ 원안의결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정지업무 처분기준(강화)
 - ☞ 원안의결
-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제도(강화)
 - 서류검사 실시조건인 동일사 동일식품에 대한 요건 강화(식품 등 원료명·배합비율, 기구 등 바탕색 조건추가 및 3년의 인정기간 설정)
 - 농·임·수산물에 대한 서류검사는 폐지하고 관능검사로 전환
 - 정밀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사항에 대해서도 3년마다 주기적 정밀검사 실시
 - ☞ 원안의결
- 영업장 등의 준수사항(강화)
 - ☞ “허위과대광고 판매자에 대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공급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식품판매업자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제조업자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규제이며
 - ☞ 제조업자가 판매자와 결탁하여 과대광고를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를 방지하기가 곤란하며 실효성도 미흡하므로 개선권고
-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강화)
 -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기초로 판매금지, 위탁급식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규정 신설
 - 허위 수입신고 처분 강화(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 2월)
 - ☞ 원안의결
-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강화) : 원안의결
 - 식품 등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1일 부과금액)을 2배씩 조정·강화
 - ☞ 원안의결
- 과태료 처분(강화) : 원안의결
 - ☞ 품목제조보고의무 불이행(100만원 → 200만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부정명칭 사용 시 과태료 처분(300만원 신설)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내용심사)(강화) : 원안의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 영업자·종업원 교육훈련, 지정취소기준 및 출입·검사 면제 등 신설
- ☞ 원안의결

③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강화2)

-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기준(강화) : 원안의결
 - 수련병원의 전문과목(26개) 중 9개 과목에 대한 ·전속전문의 수 기준을 각각 1인 을 증가, 단일 전문과목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에 산업의학과를 추가하고, 전공 의 수련을 위한 전속전문의 수, 시설기준 등을 규정
- ☞ 원안의결
- 전문의 자격인정 조건(강화)
 - ☞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중인 외국 전문의에 대해 1차시험(필기)준비가 가능토록 시 행시기를 1년 유예함(개선권고)

④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추가(강화) : 원안의결
 - 장기이식 대기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지정 받도록 규정
- ☞ 원안의결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기준(신설) : 원안의결
 - 뇌사자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장기 이식 검사실 등 시설 및 뇌사자 관리 전담의사(1인이상) 확보
- ☞ 원안의결

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6)

- 공중위생업의 개설신고 및 변경·지위승계 신고(강화)

- ☞ 공중위생업 개설신고시 신고서, 영업시설·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원본 제출 및 신고증 교부·확인(1월이내)(원안의결)
- ☞ 3회 이상 영업종류 변경신고 위반을 이유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행정처분 기준완화 필요(개선권고)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양도·양수 증빙서류 사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기타사유 해당별 지위승계 증빙서류 제출, 다만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을 시설기준 위반보다 경미하도록 개선 필요(개선권고)
- 공중위생영업 시설·설비기준(강화)
 - ☞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용역업에 대해서 시설·설비기준을 규모·분야별로 달리 규정할 필요(개선권고)
-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강화) : 개선권고
 - 공통사항으로 영업신고증 비치, 요금표 게시(세탁·위생관리 용역업 제외)토록 규정
 - ☞ 위생관리 용역업 영업신고증 비치의무·행정처분 철회와 자의적 행정처분의 가능성이 있는 세탁업자 위생관리기준(라목) 개선권고
 - * 라목 : “세탁업자는 업소의 위생적인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 위생교육(강화)
 - ☞ 일률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법령위반자, 복지부장관이 보건위생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상자·교육기관 지정 고시)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공중위생업자 교육을 실시토록 개선
- 행정처분기준(강화)
 -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 비치의무 위반 행정처분 신설과 개선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강화
 - ☞ 위생관리 용역업 출입·검사 기록부 비치의무 제외 및 행정처분 삭제토록 개선권고
-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강화)
 - 영업정지 1월 기준(30일), 매출액 기준(처분 전년도 총매출액) 등 과징금 부과기준과 1일 과징금 부과금액을 연간매출액 등급별로 3만원~33만원으로 규정
 - ☞ 원안의결

⑥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9)

- 의료기관 평가 및 결과 공표(신설)
 - ☞ 수시평가 대상범위를 정기평가(종합병원, 300명상 이상 병원)와 동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시평가 실시 요건을 구체화, 평가절차·공표의 포괄위임(복지부장관) 및 시행규칙에 기본사항 규정의 필요 등에 관하여는 법제처 심사 시 검토·반영(개선권고)
-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중환자실 설치)(강화)
 - 중환자실 설치의무(허가병상의 5%) 대상을 300명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강화
 - ☞ 중환자실 설치 및 시설·인력 확보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시행 1년 후 시행결과 및 규제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대상기관 확대 검토·추진(2004. 3월말 규제위 보고)(개선권고)
- 병원감염 예방조치(강화) : 개선권고
 - 300명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검토·추진(2004. 3월 말 규제위 보고), 감염대책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강화
 - 감염관리실 설치 및 인력기준(의료인 정원규정 관련)의 법적 근거 명확화
 - ☞ 의료기관장의 보고사항 구체화 및 보고주기를 반기별 보고(개정안) →년 1회 보고로 개선권고
- 의료보수표 신고(강화) : 원안의결
 - (의원급)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첨부서류에 의료기관보수표를 추가하되, 의료기관 의료보수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보완 추진(원안의결)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등 표시제한(강화)
 - ☞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 병행표기시 그 위치를 의료기관명칭 바로 밑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삭제하며, 현실여건에 맞도록 규정·지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개선권고)
-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내용심사)(강화) : 개선권고
 - ☞ 의료기관 인터넷홈페이지의 협회 등 자체 인증제도 및 인터넷 의료광고·건강상담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선 대책 강구·추진(개선권고)
 - ☞ 일간신문의 의료광고 횟수를 (현행) 월 1회 →월 2회로 확대토록 2003년 중 의료법

령 개정 권고

⑦ 의료기관회계기준 제정안(신설 3)

- 적용범위(신설)
 - ☞ 2003년도에 300명상 이상 종합병원, 시행 1년 후 200명상 이상 종합병원, 시행 2년 후 100명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규정에 명시)(개선권고)
- 재무제표(신설) : 개선권고
 -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개정시 의료소비자, 병원협회 및 회계전문가 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규정에 명시)(개선권고)
 - ☞ 재무제표 작성 등 세부기준 마련시 관계부처 협의 및 기 시행중인 대학병원 회계처리준칙 등을 반영하여 시행 편의성 도모
- 결산보고(신설)
 - ☞ 다른 법령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병원도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되, 양 기관에 제출되는 보고서가 각각 별도로 작성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운영(원안의결)

⑧ 정신보건법 개정안(강화 4)

-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기준(강화)
 - 정신보건전문요원 결격사유에 형법 제235조(허위진단서 등 작성·행사 미수범)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
 - ☞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기수범 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여 타법과 형평성 유지
 - ☞ 원안의결
-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강화)
 - 정신의료기관의 허가취소·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사유에 시설·장비기준 미달 시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부과기준(2천만원 이내), 사유 및 과징금 사용용도 등 부과기준 신설

- ☞ 부과기준을 의료법과 동일한 5천만원 이하로 조정, '기타 특별한 사유' 삭제 또는 구체화, '복지부장관 인정하는 사업'을 법령화 등 개선 필요

☞ 조건부 동의

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직장가입 대상 범위 확대(강화)

- ☞ 임의적용사업장 및 월 80시간이상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보장 등으로 사회 보장기능 강화 필요

- ☞ 다만,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임의적용 방지 등을 위해 직장가입 제외 대상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추진과정에서의 혼란방지 및 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03~2005년도 중 년차별 적용대상 등 단계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사전공포 후 추진(규제위 보고)하는 방안으로 보완 권고(조건부 동의)

※ 단계적 시행방안(예) : 15개 업종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3년간 연차적 시행

⑩ 결핵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강화) : 원안의결

- 신생아 결핵예방 의무접종 시기를 출생 후 1년 이내 → 1월 이내로 강화

☞ 원안의결

• 신생아이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신설)

- 출생 후 1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접종공고에 의한 의무 예방접종 실시

☞ 원안의결

•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작성 보존과 보고(강화)

- 시·군·구청장 이외의 예방접종 실시자에 대한 보고 강화(매분기 보고 → 매월 보고)

☞ 원안의결

• 취업제한 및 입원명령(강화)

-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및 종사자를 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 정지·금지업무에 추가
- ☞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전염위험이 특별히 높지 않은 동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적 취업제한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종사자규정은 삭제(개선권고)
- ※ 다만, 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정지·금지와 관련,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종사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악용의 방지를 위하여 '전염성 결핵환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

⑪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9)

-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텍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강화) : 원안의결
 - ☞ 원안의결
-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류에 의사의 진단서 추가(강화) : 철회권고
 - ☞ 마약류취급승인 신청자의 결격사유는 동 법령 및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이미 확인되므로 철회권고
- 향정신성의약품의 저장·보관시설 기준 신설(강화) : 개선권고
 - ☞ 위험성에 따른 잠금장치 보관 필요성의 경중을 기준, 그에 따라 위반시 처분을 차등 적용, 특히,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은 비교적 적은 위험성 및 높은 조제빈도 등을 감안하여 1차 위반시 경고처분으로 완화(개선권고)
- 마약류 제조업자·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도난경보장치 등 도난·불법유통 방지방안 강구(강화) : 원안의결
 - ☞ 원안의결
- 마약류취급자의 교육(강화)
 - ☞ 도난·분실업소에 대한 교육강화·추가교육 대상 확대 필요, 다만, 추가교육 횟수는 현행대로 연 1회 이내 실시하되, 인터넷 활용 등 교육 내실화 방안을 추진(개선권고)
- 마약류 원료가 되는 물질의 수출입승인 대상(1군 15개 물질) 및 절차 규정(강화)
 - ☞ 원안의결

⑫ 안마사에관한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안마시술소의 부대시설 설치제한(강화) : 원안의결
 - 부대시설(욕실과 발한실)은 안마실 외부에만 설치 가능, 단,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안마실 내 5m²이하의 욕조 없는 샤워시설 설치 가능
 - ☞ 원안의결
 - 안마원의 시설기준(신설)
 - 시설규모 115m² 이내, 시설내부 홀 전면개방 및 별도 밀폐 안마실 설치금지(이동 간이 칸막이는 가능)(원안의결)
 - ☞ 설치금지 부대시설 중 최소한의 위생시설인 '욕조 없는 샤워시설'은 설치 허용토록 개선권고
 - ☞ 동일 건축물 내 두 개 이상의 안마원 설치금지 규정(안)은 기득권 보호 및 신규 진입제한 방지와 건전한 안마문화 육성이 가능하도록 삭제(개선권고)
 - ☞ 퇴폐영업 방지 및 안마시술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시설이 있는 건축물 내 안마원 개설을 금지토록 개선(개선권고)
-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사항(강화) : 원안의결
 - ☞ 원안의결

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5)

-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종 및 시설기준(강화)
 - 제조업(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수입업, 판매업(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영업의 세부종류 및 범위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함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의 영업자 범위 명확화, 위탁생산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적용업소 한정 규정은 시설준비 등을 고려 2년간 유예, 제조시설의 의약품·일반식품·첨가물 제조이용 삭제, 수입업의 반품 등 별도 창고시설 구비 규정 삭제, 판매업의 진열대·판매대 시설기준 개선을 권고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 등(강화) : 개선권고
 - 시설배치도, 교육필 증, 수질검사성적서 첨부 영업허가의 신청,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의 폐업신고
- ☞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 중 신고대상 영업소 시설을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강화) : 개선권고

- 제조방법설명서, 원료·성분명 및 함량, 기준·규격검사성적서 품목제조 신고, 제품명, 재료 함량, 유통기간 연장 품목제조 변경신고
- ☞ 과다섭취에 의한 인체 위해 우려 있는 성분 함량 및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사용량 제한기준을 정한 첨가물의 사용량 등 변경신고 대상기준 합리화토록 개선권고
-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강화)
 - ☞ 영업장의 위생적 관리, 영업관련 서류의 보관의무(2년간) 등 건강기능식품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 ☞ 식품제조 위탁시 위탁자의 수탁자 관리감독의무 삭제, 제조업·수입업자의 위해 정보 보고의무 발생기준 객관화(예시 “위해 사실을 확인한 때”)토록 개선권고
- 제조업자의 품질관리인 의무고용 및 선임·해임신고(강화) : 개선권고
 -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영업소별 1인 이상 품질관리인 고용의무, 품질관리인의 선임·해임 신고
 - ☞ 업체부담 능력, 가동현황을 고려하여 휴업 중 영업소 제외 등 고용의무 개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그밖에 자격 있는 자”를 복지부 고시로 명확화 개선권고
-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등의 교육의무(강화)
 - 건강 위해 우려시 영업자·종업원, 법령위반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신규 영업자 사전교육(4~12시간), 품질관리인 정기교육(연 6시간 이상)
 - ☞ 신규영업자 사전 교육 시간을 제조업·수입업(8시간), 판매업(4시간) 개선권고
-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금지(강화)
 - 질병치료, 의약품 오인 등, 사실과 다른 과장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 혼동 표시·광고,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광고 등 금지
 - ☞ 원안의결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강화)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 및 변경신고, 교육훈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등
 - ☞ 지정취소기준 중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를 “2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으로 개선권고
-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 등(강화) : 개선권고
 - 시정명령, 영업허가 취소·영업소의 폐쇄처분·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

- ☞ 과징금에 대한 2이상의 행정처분기간 각각 병과 삭제, 방문판매원 등의 개인적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자 행정처분규정 보완, 개별기준 제13호 행정처분을 제조업과 판매업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강화 1)

-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강화)
 - ☞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하여 ‘경고’ 처분으로 완화토록 개선권고

⑮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약사·한약사 약제급여비 허위청구 자격정지(강화) : 개선권고
 - 허위청구 대상 법령을 현행 국민건강보험관계 법령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급여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으로 명확화
 -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차 15일, 2차 1월, 3차 3월, 4차 6월에서 월평균허위청구금액·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시정~10월로 개정
 - 월 평균 허위청구금액 기준을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보건의료원·보건소 등과 동일하게 개선(4만원 미만~50만원 이상)권고
- ☞ 동일 기간 중 2개이상 보험법령(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급여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위반 시,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1/2을 각각 더하여 처분. 다만, 처분절차 종료 전 동일 보험법령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위반 회수마다 처분기준의 1/2을 각각 더하여 처분하도록 개선권고

⑯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청구심사기준 제정안(신설 3)

- 대불금 청구심사 세부기준, 청구금 대상 및 산정(원안의결)
- 미수금 대불 청구 절차(원안의결)
- 대불금 지급, 이의신청 및 과오지급 환수(원안의결)

⑰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 제정안(신설 3)

- 교육생 등록·변동 및 수료보고(신설)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등록·변동·수료상황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명부를 작성하여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 변동보고 삭제토록 개선권고

⑱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개정안(강화 1)

- 건강보험료 인상(강화)
 - 보험료를 현행수준보다 6.75% 인상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되, 12. 19일 규개위 본 회의에 상정될 관련안건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심의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여건이 변화되면 이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요율을 조정, 또한 안전심의 시 건강보험 재정상황, 향후전망,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증가재원의 사용계획 등을 연계보고
- ☞ 원안의결

⑲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강화 1)

- 급여의 범위조정(강화)
 - 초음파, MRI 등 4개 항목은 국민에 대한 약속대로 내년부터 부분적인 형태로라도 보험급여 실시,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전망, 보험요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재원 사용계획 등을 본회의에 보고
- ☞ 48개 항목의 비급여 전환문제는 1년간 충분한 자료검토 후 재결정토록 개선권고

*집필자 : 정병규 서기관(T.3703-2156, jungstern@nate.com)

2. 식품의약품안전청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식품의기준 및 규격,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관한 규정,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 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등 1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9건, 강화 15건 등 총 2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4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0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건에 대하여는 조건부 동의, 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9건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식품의기준및규격 개정안	제182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 29) 제200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8. 13)	원안의결 2	강화 1
②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 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 개정안	제188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4. 2)	원안의결 2	강화 2
③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개정안	제188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4.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④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 규정 개정안	제189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4. 16)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강화 2
⑤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제190차 행정사회분과 (2003. 4. 30)	원안의결 1	강화 1
⑥ 의약품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제190차 행정사회분과 (2003. 4. 30)	원안의결 2	강화 2
⑦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안	192차 행정사회분과 (2003. 5. 14)	원안의결 1	강화 1
⑧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개정안	제201차 행정사회분과 (2003. 8. 28)	원안의결 1	강화 1
⑨ 자기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 제정안	제205차 행정사회분과 (2003. 10. 1)	개선권고 1	신설 1
⑩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회기준 제정안	제205차 행정사회분과 (2003. 10. 1)	개선권고 1	신설 1
⑪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개정안	제205차 행정사회분과 (2003. 10. 1)	개선권고 1	신설 1
⑫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개정안	제205차 행정사회분과 (2003. 10. 1)	개선권고 1	신설 1
⑬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제정안	제206차 행정사회분과 (2003. 10. 15)	개선권고 1	신설 1
⑭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 개정안	제206차 행정사회분과 (2003. 10. 15)	개선권고 1	신설 1
⑮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 제정안	제206차 행정사회분과 (2003. 10. 15)	개선권고 1	신설 1
⑯ 의약품의용도로만 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 규정 제정안	제206차 행정사회분과 (2003. 10. 15)	원안의결 1	신설 1
⑰ 식품위생법검사기관지정기준 개정안	제208차 행정사회분과 (2003. 11. 5)	개선권고 1	강화 1
⑱ 의약품제조시설식품제조·가공시설이 용기준 제정안	제208차 행정사회분과 (2003. 11. 5)	조건부동의 1	신설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㉑ 식품첨가물의한시기준·규격인정기준 개정안	제210차 행정사회분과 (2003. 11. 26)	원안의결 1	강화 1
계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0 원안의결 13	총 24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식품의기준및규격 개정안(강화 1)(2003.1.29, 2003.8.13)

- 과잉섭취로 인한 독성이 우려되는 비타민 A와 D에 대해서 영양소 기준치의 100%이하로 함량 상한선 설정(강화)
 - ☞ 비타민 과잉섭취에 의한 부작용 및 의약품과의 혼란방지 등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2단계 지식정보화과제 추진사항(2002. 12. 6 본회의 보고)으로 원안대로 의결

②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 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개정안(강화 2)

- 제조방법 관련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추가
 - 생약추출·분획시 사용용매 제한 및 유기용매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 ☞ 인체위해의 우려가 있는 유기용매가 최종제품에 잔류하는 경우에만 심사 자료 제출토록 개선(그밖의 경우는 자체시험서 등으로 대체)권고
 - 동물유래 성분 함유·사용 시 기원동물 및 사용부위 등 기재
 - ☞ 원안동의
 - 수입 및 소분 의약품의 기재사항 강화
 - ☞ 원제소분 의약품등으로 용어 명료화 및 기재범위·작성요령 등을 지침 등으로 명확화하여 운용할 것으로 원안동의
- 적용대상 한정 의약품의 효능 및 유아·소아에 대한 구체적 용법 기재

- ☞ 현행규정에 관련 내용 기반영(철회권고)
- 복합제 효능·효과 기재 제한
 - 각 유효성분별 효능·효과의 나열표기 금지 및 주성분의 효능·효과만 기재
 - ☞ 용기·포장의 기재와 관련한 약사법시행규칙 제73조 등을 고려하여 문안조정(개선권고)

③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개정안(강화 2)

- 생약·한약제제·천연물 신약의 임상시험 예수를 3개 지정기관 각 30예수(총90예수)이상으로 하되, 의약품 특성 및 적응질환에 따라 증감(강화)
 - ☞ 임상시험 예수(총 90예수) 규정에 동의하나, 한약등 임상시험 기관 지정 현황(2개 기관)을 감안하여 규정 보완(지정기관이 3개 기관 이상으로 확대될 때까지는 복수로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 규정)함과 아울러 평이한 용어로 할 것을 개선권고

④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 개정안(강화 2)

- BSE 관련 EU 지역산 특정위험물질 등을 화장품 배합금지원료로 지정하여 화장품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강화)
 - ☞ 광우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우려가 있는 조직 및 이를 함유하는 성분을 화장품의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나,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 통상마찰의 소지등이 우려되므로 일반명칭으로 변경하도록 개선권고
- 눈 화장용 제품류 및 어린이용 제품류에 대해 미생물 오염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함(강화)
 - ☞ 현재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시험 기준 및 적용대상이 각국마다 달라 국제표준화가 진행중이며, 또한 현재까지 미생물에 의한 화장품 피해사례가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눈화장용 및 어린이용 화장품의 미생물시험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미생물시험 비용, 물류 비용 등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미생물시험 의무화는 당분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먼저 유럽·미국 등 외국처럼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등 관련협회의 자율규제를 통해 미생물시험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자율규제 과정에서 안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국제표준이 정해질 때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규제는 철회 권고

⑤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강화 1)

- 절편화된 녹용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 신설 및 위·변조 녹용절편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 규격의 순도시험항에 순록의 혼입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분석법 도입
 - ☞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의결

⑥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강화 2)

- 의료용구 품목의 등급사항조정(강화) : 원안동의
- 의료용구 품목의 추가지정(강화) : 원안동의
 - ※ 단, 의료용구의 지정 및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제 위 보고

⑦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안(강화 1)

-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그 함유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영양성분 표시대상을 과자류, 면류, 레토르트식품으로 확대
 - ☞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동의

⑧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개정안(강화 1)

-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초산(Acetic acid), 염화암모늄(Ammonium chloride)등 유효성분 123종과 보조성분의 기준규격 신설
 - ☞ 살균 소독제 성분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동의

⑨ 자기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 개정안(신설 1)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제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작성방법 및 검토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및 별표2)
 - ☞ 제출자료의 범위, 보관방법 등의 기준은 식품첨가물중 천연첨가물과 기구 및 용기·포장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원안동의

⑩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개정안(신설 1)

-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해서 심의
 -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통하여 영업자의 보다 정확한 제품 홍보 및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여 품목제조 또는 수입 신고시 확인 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
 - 심의방법 및 절차 : 신청 및 심의
- 기능성 표시내용 또는 광고내용의 확인 및 심의를 위하여 품목제조신고증(수입신고필증) 사본 또는 제품설명서를 제출
- 심의의 지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의 처리기한(10일)을 설정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1월 이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법령 및 심의기준에 부적합한 심의에 대한 식약청장의 재심의 권고를 규정하여 표시·광고심의의 공정성·적합성을 제고
- 심의결과 내용의 단순 수정 또는 매체·제작사의 변경시에는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영업의 자율성 및 편의증진을 도모
-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결과 심의기관명 등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필요
 - ☞ 개선권고 : 광고 세부표시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문구의 크기, 위치,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매체 특성에 맞추어 정하도록 개

선하고 심의기준에 적합한 세부적·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식약청 홈페이지 게재·공표하여 운영하되, 정형화되는 기준은 고시 및 상위법령에 규정토록 개선권고

⑪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 개선권고(신설 1)

- 기능성 정보(안 제6조 제7호 나목(5)) 개선
 - 특정식품의 과다소비 조장 또는 좋은 식습관 비난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기능성표시 금지 규정은 포괄적이므로, 구체화 또는 삭제
- 원재료명 및 함량(안 제6조 제9조) 개선
 - 가목. 원재료 표시사항 중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거나 해당기능을 하지 않는 원재료”의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나목. 복합원재료의 원재료명 표시 예외규정에 “복합원재료 명칭에서 그 원재료가 분명할 경우 해당 원재료명”을 추가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안 제6조 제11조 나목) 개선
 - 나목. “건강기능식품은 ~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선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표시(안 제6조제11호 차목) 개선
 - GMP적용업소 의무표시 규정은 법(제22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자율 규제(표시할 수 있다)로 개선
- 경과조치(안 부칙 제2항) 개선
 - 적합한 표시 및 기존 제품의 교체 등 준비에 충분하도록 경과조치 기간을 1년(시행일 : 2004. 8. 27) 이상으로 개선

⑫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개정안 (신설 1)

- 적용범위(안 제3조)에서 “자율적용 업소” 제외(제3호 삭제)
- 제조관리기준서(안 제11조) 공조시설통도의 “제균” 삭제(필요시 특수작업장 시설기준으로 반영)
- 운영조직의 구성 규정(안 제14조) 개선

- GMP 총괄책임자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령」의 “품질관리인”에 해당함을 명시
- 제조유형·방법 및 업소규모·조직 등을 고려하여 ‘GMP총괄책임자’가 품질관리책임자 또는 제조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 판매영업자·종업원 위생교육 규정(안제15조제2항)을 “정보제공·안내”로 개선
- 평가비용·업무부담 등을 고려, 자체 실시상황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선(반기별 1회 이상→년 1회 이상)
- 관계법령 이외 모든 기록물에 대한 3년 이상 보관의무를 2년 이상 보관으로 기록관리 규정(안 제26조) 개선

⑬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개정안(신설 1)

- 건강기능식품의 공통기준 및 규격 : 원안동의
 - 정제품·캡슐제품·환제품·과립제품의 제조기준 및 규격
- 건강기능식품별 기준 및 규격 : 원안동의
 - 영양보충용제품의 정의
 - 영양소 섭취가 목적인 제품으로 정의
 - 부원료 사용기준(2004. 9. 31 시행)
 - 영양보충용제품 원료의 구비요건 : 원안동의
 -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구비 요건
 - 영양보충용제품의 비타민·무기질 1일 섭취량당 함량기준(2004. 9. 31 시행)
 - ☞ 최소함량기준 동의 다만, 최대함량기준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재검토(재심사)하라는 개선권고
- 영양보충용제품 중 아미노산 함량기준
 - ☞ 시행 2~3년 내 성인평균체중, 적정 권장량 등을 연구조사하여 반영, 현실적합성 제고에서 원안동의
- 영양보충용제품의 영양소의 규격 : 원안동의
 - 표시량에 대한 허용오차 기준
- 인삼(홍삼)제품의 기준 및 규격 : 원안동의
- 에이코사펜탄엔사(EPA) 및 도코사헥사엔사(DHA) 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
 - 12% 중 각각 6% 이상 함량(기준)

- 유산균 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 : 원안동의
 - 형태 및 원료 유산균·비피더스균 수 강화
- 베타카로틴 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 : 원안동의
 - 1일 섭취량 당 함량 4.2mg 이하

⑭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대상 범위 및 인정기준
 - 대상 : 공전에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성분)
 - 인정기준 : 법령 및 기준·규격 적합 등
 - ☞ 법령 및 기준·규격 적합 등
- 심사절차, 처리기간 및 자료보완
 - 제출자료 2부, 수록 CD 및 검사시료(5개)
 - 검사기관 검사(30일), 위원회 심의 등 (90일)
 - 자료보완(30일 이내) 및 반려 등
 - ☞ 원안동의
-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분
 - 제품섭취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근거
 - 제품기원, 개발경위, 사용현황 등 자료
 -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 자료
 - 원료의 명칭, 기준·규격, 함량, 배합사유 등
 -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
 - 제품의 기준·규격 및 설정에 관한 자료
 - 보존기준·유통기간에 관한 자료
 -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확인자료
 - ☞ - 사용원료 배합사유 규정 삭제 또는 자율규제로 개선
 - 의약품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해당 확인 규정 명확화
 - 확인사실 및 해당 한약서 등의 명칭 기재
 - 관련 처방명은 필요시 자율적으로 기재

⑮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 개정안(신설 1)

- 심사대상 범위 및 인정기준
 - 대상 : 공전에 고시되지 아니한 기능성 원료·성분
 - 인정기준 : 법령 적합, 건강증진, 과학적 입증 등
 - ☞ 원안동의
- 심사절차, 처리기간 및 자료 보완
 - 제출자료 2부, 수록 CD 및 검토시료
 - 위원회 심의 등 처리기간 120일
 - 자료보완(30일 이내) 및 보완, 반려 등
 - ☞ 원안동의
-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 제출자료의 범위
 - 제출자료의 요건
 - 총괄요약본, 기원·사용현황, 제조방법 등 요건
 - 안전성에 관한 자료의 요건
 - 기능성, 섭취량, 주의사항 및 의약품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확인 등에 관한 자료의 요건
 - ☞ 의약품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확인규정 명확화 개선권고
 - 확인사실 및 해당 한약서 등의 명칭 기재
 - 필요시 관련 처방명을 자율적으로 기재

⑯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 개정안(신설 1)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 97종
- 의약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 기성한약서·한약조제지침서 수재 품목과 원료·량이 동일한 것(3가지 이하 원료 품목은 제외)
- 의약품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 기성한약서·한약조제지침서 수재 품목과 원료가 동일한 것(3가지 이하 원료

품목은 제외)

☞ 원안동의

⑰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개정안(강화 1)

- 검사시설 면적기준 및 구획 의무(강화)
 - 위생검사기관 : 시험실·전처리실·기기분석실·관능검사실 등 검사시설이 400m² 이상이며, 구획되어야 함
 - 자가품질검사 위탁기관 : 시험실·전처리실·기기분석실 등 검사시설이 250m² 이상이며, 구획되어야 함
- 검사설비 기준(강화)
 - 위생검사기관 : 59종 → 68종(방사능측정기 등 추가)
 - 자가품질검사 위탁기관 : 44종 → 47종(겔벨유지계 등 추가)
- 검사원의 수 및 자격기준(강화)
 - 검사원의 수 : (위생검사) 6명 이상 → 8명 이상
(자가품질)이화학·미생물분야 각 2명 이상 → 4명 이상
 - 검사원중 경력자 기준
 - 위생검사 : 연구기관의 검사업무경력자 3명 이상
→ 공공검사기관의 검사업무경력자 5명 이상
 - 자가품질 : 연구기관의 검사업무경력자 2명 이상
→ 공공검사기관의 검사업무경력자 2명 이상
- ☞ 검사업무 경력인정 대상기관 범위를 “연구기관”에서 “공공검사기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서 검사·검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는 불인정되므로 진입 제한이 발생하므로 검사업무 경력인정 대상기관 범위를 “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개선권고
-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은 검사시설, 검사설비 및 인력기준을 확보하여 지정 신청한 기관에 대해 검사능력을 측정·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능력, 공익성, 신뢰성 및 재정 건전성” 등을 심의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기준중 공익성, 재정건전성 등은 검사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⑱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 개정안(신설 1)

- 지정기준, 지정 절차(신청 및 지정) 및 사후관리(신설)
 - ☞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식품과 의약품 상호간에 전이의 우려가 없어야 하므로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시 전이위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일정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한후 동 고시 시행 2년 후 시행성과 및 문제점, 법체계 등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한다는 조건부 동의

⑲ 식품첨가물의한시기준·규격인정기준 개정안(강화 1)

- 식품첨가물의 한시적기준·규격인정기준(강화) : 원안동의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을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대상 범위에 포함(안 제3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조 기반영)
 - 제출자료의 범위
 - 제품명, 성분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기준 및 규격, 포장단위, 보관방법 등
 - 인정검토기준
 - 일반사항, 성분 및 배합비율,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사고시 조치요령, 살균소독력, 보관방법 등
 - ☞ 원안동의

*집필자 : 정병규 서기관(T.3703-2156, jungstern@nate.com)

제7절 _ 일반행정분야

1. 행정자치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지적법·지적법시행령·시행규칙,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소방용기기·기구 성능시험기관지정고시, 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배치기준고시 등 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3건, 강화7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2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1건 중 10건은 원안의결, 10건은 개선권고, 그리고 1건은 규제제외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9건임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정안	제94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5. 28)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②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제199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7. 16) 제21차 규개위 (2003. 7. 2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강화 3
③ 지적법 개정안	제201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8. 28) 제122차 규개위 (2003. 9. 5)	원안의결 4 개선권고 3 규제제외 1	신설 8
④ 지적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211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2.1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4	신설 4 내용 1
⑤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기관지정고시 제정안	제82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 29)	원안의결 1	신설 1
⑥ 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배치기준고시 제정안	제200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8. 13)	원안의결 1	신설 1
계		개선권고 10 원안의결 10 규제제외 1	총 21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정안(신설 3)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인은 이에 따를 의무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등에게 안전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위험성 등에 대해

의견을 받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안전관리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고,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신설청장에게도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권 부여
 - ☞ 종합적인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대상물에 대하여 신설청에서도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및 대비·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재난 예·경보 발령 시 전기통신시설 우선사용 및 신속 방송 요청
 - ☞ 재난 예·경보 등 발령을 위하여 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을 요청하거나 방송국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요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함. 다만, 재난은 해당 시·군·구에 국한된 경우도 있지만 광역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이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신설청장 및 시·도지사에게도 동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

②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강화 3)

- 불법 입간판·현수막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절차의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불법 입간판·현수막 등은 반복·상습여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 불법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반복·상습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만 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옥외광고업의 경우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증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 한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치산자 등 등록 결격사유를 정함
 - ☞ 등록제로의 전환은 동의하나, 시행령에 등록요건 규정 시 광고 규모 등에 따라 등록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변경등록의 경우 휴·폐업은 중요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신고로 같음하도록 개선권고

-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 등록취소요건을 규정
 - ☞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등록업소를 적정 관리하고 동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 법령의 예와 같이 등록취소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에 동의함. 다만, 안 제14조제5호(기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삭제 권고

③ 지적법 개정안(신설 8)

- 행자부장관은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업자별 측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지적측량업의 독점적 규제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지적측량의 정확성이 확보되는 좌표지역에서의 지적측량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국민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함. 다만, 지적측량업무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개인·법인 기타 단체 등이 지적측량에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등을 지적공사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지적공사의 사업에서 삭제 권고
- 지적측량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행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 “지적측량업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은 국민의 선택의 기회 확대와 지적측량 기술자격취득자의 직업의 선택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안 제41조의2제1항은 등록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등록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타법의 예와 같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라는 규정이 필요하고, 안 제41조의2제2항의 지적측량업등록증 교부 규정은 동조 제3항의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어 동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41조의3 지적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중 제5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정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유사한 업무인 측량법과 같이 ‘2년’으로 개선 권고

- 지적측량업을 영위할 수 없는 때에는 행자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신고
 - ☞ 실제로 파산하거나 폐업한 지적측량업자의 측량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동의함. 그러나, 동조항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적측량을 영위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행자부장관은 위법·부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기준 미달, 손해배상보험 가입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 부적격한 자격자가 지적측량을 하거나 적절한 지적측량업자라도 부실한 측량을 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동의
- 행자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함
 - ☞ 지적측량은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지적측량 수행자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 및 보고의무 규제신설은 필요하므로 동의
-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청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 지적측량은 공공성과 함께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지적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동의
-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함
 - ☞ 심사결과 규제분류에서 제외토록 함
- 대한지적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함
 - ☞ 대한지적공사가 아닌 지적측량업자가 대한지적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측량신청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동의

④ 지적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신설 4, 내용심사1)

- 지적법에 의거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만 할 수 있는 지적측량업과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을 모두 할 수 있는 지적측량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등록기준을 기술자격취득자의 수와 장비확보 규모로 구분하여 정함

- ☞ 지적측량업의 규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규모별 업무범위와 이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장비기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등록증 분실, 대표자 변경 등 변경신고의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을 신규등록과 동일하게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3일로 개선토록 권고
-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측량의 잘못으로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직업인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 지적측량은 공공성과 함께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지적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적법시행령안 제57조의2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으로는 “지적수행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개선권고
- 지적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지적법에 규정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거부하는 등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1월 내지 6월의 영업정지기간을 정함
 - ☞ 지적측량업자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여 측량의뢰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그 영업정지기간도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나, 「지적법시행규칙개정안」 별표7 “영업정지 처분기준” 중 제4호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때”는 법령 미근거 규제일 뿐만 아니라 제7호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현행 지적기술자의 징계기준을 지적측량업자의 처벌기준에 맞도록 세분화함
 - ☞ 지적기술자의 징계양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징계양정도 국가기술자격법과 비교해볼 때 과도한 규제는 아니

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지적측량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측량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폐업신고의무 확보수단을 강구하되 의무 불이행 시 법률당사자가 아닌 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권고

⑤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기관지정고시 제정안(신설 1)

- 소방법상 한국소방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임의검사제도인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을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도 성능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정함
 -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 성능시험기관 지정절차, 심사, 변경, 업무감독 등의 세부절차를 정함
- ☞ 소방용기계·기구는 일반제품과 달리 비상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성능확인이 필요한 만큼 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시험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의 시험시설기준 및 독립된 전담조직을 확보토록 하는 규제신설에 동의

⑥ 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배치기준고시 제정안(신설 1)

-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일반공사 감리대상 또는 상주공사 감리대상 공사현장에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춘 감리원을 분야별로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단, 2개 분야를 기술능력을 겸하여 갖춘 경우는 1인 이상)
- ☞ 지금까지 소방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배치기준이 없어서 1인의 감리원이 많게는 30~40개 공사현장을 감리하는 경우도 있어 소방안전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적정한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책임감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동의

*집필자 : 손 방 사무관(T.3703-3935, sonbang@opc.go.kr)

제8절 _ 교육분야

1. 교육인적자원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4건, 총 1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건 중 조건부 동의 1건, 개선권고 4건, 그리고 5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6건임

교육인적 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95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6. 1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제19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7. 2.)	원안의결 1 조건부 동의 1	강화 2
③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제19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7. 2.)	개선권고 1	강화1
④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을 개정안	제98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7. 9.)	원안의결 1	신설1
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등에관한법을 시행령 개정안	제98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7. 9.)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신설 3
⑥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제209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1. 19.)	원안의결 1	강화1
계		개선권고 4 원안의결 6	총 10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신설 2)

-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요구(신설)
 - ☞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은 최소한의 서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7조에도 시정명령 및 계약해지가 규정되어 있는 바, 대부계약 해지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른 모집시기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 불가토록 하고, 동일모집시기의 수시모집 대학 중 두 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도록 하며, 수시모집 합격자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명시(강화)
 -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음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학생의 다양한 대학선택기회를 제한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수시모집 합격자의 다음 모집시기 지원 허용시 소신에 따라 수험생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시모집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동 제도를 합격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밖에도 우수학생의 다수기회 선점에 따른 다른 학생의 진학기회 감소, 대학의 등록율 저조에 따른 결원발생, 추천서 작성 등 교사의 진학지도 애로 등 여러 문제가 있고, 대학입시 관련 자료 제출도 이중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지원자의 등록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등”에서 “전문대학의 장이 정하는 동일계열(간호·보건계열은 관련 국가면허소지자) 졸업자 등”으로 변경(강화)
 - ☞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를 졸업한 산업체 근로자가 급속한 기술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전공분야의 계속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등록자격을 동일계열 졸업자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전공심화과정의 등록기준 강화로 계속교육과정에서 제외되는 자를 위해 전공과 다른 분야의 지식 습득을 위한 특별과정 등을 설치하여 타전공자를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보고하는 조건으로 동의

③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개정안(강화 1)

-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시 교육청의 승인대상을 현행 건축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학교시설에서 50㎡ 이하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로 확대(강화)
 - ☞ 초·중등 학생은 낮은 안전의식 및 화재 등 비상시 행동요령이 미숙하므로 사전에

학교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50㎡ 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물에 대한 사전승인을 통한 시설의 안전 확보는 필요하다고 봄. 다만, “축조”의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바, 본문에서 삭제토록 개선권고

④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1)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있어 부정행위자 및 응시원서 허위 기재자 등에 대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부정행위 및 허위기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시험응시자격을 정지(신설)
 - ☞ 독학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정지 등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응시자격 정지기간도 부정행위 및 허위기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신설 3)

- 계약학과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원(전체입학정원의 3%), 선발방법(특별전형), 납부금(전체운영경비의 50% 초과징수금지), 운영기간(학위취득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등을 규정함(신설)
 - ☞ 계약학과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원, 납부금, 교육방법 등 학과운영에 있어 현행 고등교육관련 법령상의 규제보다 완화하는 수준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만, 학생선발방법을 특별전형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체 등의 학생선발 권한만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일반·특별전형 구분 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산학협력단의 등기사항으로 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공고의 방법, 단장의 성명과 주소, 해산사유 등을 열거하고, 등기첨부서류로 학칙의 사본, 산학협력단 정관, 단장의 취임 승낙서 등을 규정(신설)
 - ☞ 설립등기 사항 및 등기 시 첨부서류가 타법과 비교하여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 산학협력단장이 회계를 관리하고 지출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하도록 하며,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 기준 정함(신설)
- ☞ 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으로 자금흐름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이체만 허용하고 있으나,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이 용이한 수표를 통한 지출도 허용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을 적용받는 바, 동규칙 42조와 같이 산학협력단의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50일로 하도록 개선권고

⑥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강화 1)

- 학원의 신규 등록 및 장소 변경 시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제출 의무화(강화)
- ☞ 학원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및 변경 등록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제출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

* 집필자 : 손진욱 사무관(T.3703-3936, peda21@opc.go.kr)

제9절 _ 문화관광분야

1. 문화관광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관광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저작권법시행령·시행규칙 등 1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3건, 강화 20건, 내용심사 10건 등 총 4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3건 중 7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2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문화관광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7건임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82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 29)	개선권고 1 원안의결 6	내용 7
①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8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3. 26) 제13차 규개위 (2003. 4. 4)	철회권고 1 개선권고 3 원안의결 10	신설 2 강화 11 내용 1
②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89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4. 16) 제15차 규개위 (2003. 10. 14)	철회권고 2	신설 2
③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안	제92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5. 1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2
④ 저작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195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6. 11)	원안의결 2	강화 2
⑤ 관광진흥법 개정안	제203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9. 19) 제123차 규개위 (2003. 10. 14)	철회권고 4 개선권고 4 원안의결 3	신설 5 강화 5 내용 1
⑥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제206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9. 19)	원안의결 1	내용 1
⑦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제206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0. 15)	개선권고 1	신설 1
⑧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20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0. 29)	개선권고 1	신설 1
계		철회권고 7 개선권고 11 원안의결 25	총 43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7)

- 출판및인쇄진흥법상의 간행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 법에서 규정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이외에 출판사와 ISBN 또는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식별자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 간행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간행물을 제작한 주체 즉 출판사와 간행물의 유통과정에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표준에 의한 식별자가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출판및인쇄진흥법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에서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내용심사)
 - ☞ 간행물 기록사항에 ISBN, ISSN이 추가됨에 따라 표시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이나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한 출판사나 저자가 발행한 간행물은 사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유해간행물로 결정될 경우 문광부장관의 배포중지·제한 또는 내용삭제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내용심사)
 - ☞ 일반 외국간행물을 심의 없이 신속하게 수입토록 하여 국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되 사후에 유해간행물로 판명될 경우에는 사후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유해 외국간행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내용심사)
 - ☞ 수입된 외국간행물이 유해한 간행물로 판명되어 법률이 규정하는 배포중지·제한·삭제가 필요할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출판및인쇄진흥법상의 간행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법에서 규정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이외에 출판사와 ISBN 또는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식별자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 간행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간행물을 제작한 주체 즉 출판사와 간행물의 유통과정에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표준에 의한 식별자가 필요하므로 원안 동의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의 세부기준 규정(내용심사)
 - ☞ 간행물의 유해성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법령에 객관적이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인 심의를 방지할 필요가 인정되어 원안의결
- 간행물의 정가표시 위치 및 정가판매 예외의 경우를 나열하여 규정(내용심사)
 - ☞ 도서정가제가 출판및인쇄진흥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 출판및인쇄진흥법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규정(내용심사)
 - ☞ 과태료 부과기준 중 도서정가제를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판매한 자’에게 ‘도서 1권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처벌수준이 과도하고 단속 시 할인판매된 도서권수의 파악이 어렵다는 규제집행력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정가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판매한 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선권고

②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1, 내용심사 1)

-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의 건축연면적에 관계없는 객실 수·형태의 변경을 등록사항으로 추가하고, 상호의 변경, 부대시설 종류의 변경을 변경등록 사항으로 추가(강화)
 - ☞ 관광진흥법 상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사항 규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2002. 1. 26 관광진흥법 개정) 기존의 변경등록사항 중 대부분이 누락되어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재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사업체의 상호 및 부대시설 종류의 변경사항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현황파악 및 관리를 효율화하고 관광업계 유사상호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기타 유원시설업의 개념을 기존의 안전성검사대상 기구가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으로 하던 것을 호텔업자가 당해 호텔 시설 내에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변경하고, 업자의 준수사항에 청소년 출입금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사행행위 금지, 경품제공 한도 등을 추가(강화)
 - ☞ 관광호텔의 적자문제를 사행성이 높은 게임장 설치를 통해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규정으로도 호텔에 설치된 게임장은 일반 게임

장에 비하여 일정부분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확대해 주는 것은 일반 게임장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은 현행 호텔시설이용권에 비해 훨씬 현금성이 높아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특히, 동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약 160개 종합·일반 유원시설(에버랜드 등)에도 관광호텔과 같은 수준의 게임장이 설치·운영될 수 있어 전국이·도박장화·한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소지가 대단히 크며 아울러 동 사안은 지난 2001년 상반기 국회 문광위의 음비게임법 개정안 논의 시 형평성과 사행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 부결된 것으로 이를 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도입할 경우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여 허용코자 한다는 비난마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철회권고

- 기존의 재검사 대상인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기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기구,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 외에 3개월 이상 운영을 정지한 유기기구를 재검사 대상에 추가(강화)
 - ☞ 유원시설업은 계절성 산업으로 겨울철에는 장기간 휴업하고 유기기구를 방치하는 업체들이 많아 해당 유기기구가 부식되거나 기계 연결 부분이 느슨해지는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
- 기존에 안전관리자 및 기구 운영자가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시 1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 유원시설업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유원시설업체에 배치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받도록 변경(강화)
 - ☞ 2002. 10. 27.부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유원시설업체에 의무적으로 상시 배치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이들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갖도록 하고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며 안전관리자가 교체되는 경우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문화관광부장관이 유원기구의 안전성검사 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등록된 기관(단체)에게 안전성검사를 위탁하도록 하며, △안정성 검사기관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 △안전성검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현저히 해태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내용심사)

- ☞ 최초 허가시 또는 변경허가시 및 안전성 검사대상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문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기타 허가 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검사기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모든 검사를 검사기관으로 등록한 단체는 어느 기관이든 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당초 규제개혁의 취지에 따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고 또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등록단체의 검사능력 등을 보아가며 등록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3년의 일몰제를 적용, 경과를 보아 추후 재심사토록 개선권고하고, 안전성 검사의 등록요건으로 등록신청 이전 2년 범위 내에 안전성 검사와 유사한 실적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한 실적·의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운영과정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사실상 등록하지 못하도록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한 실적의 의미를 시행규칙상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향후 지침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토록 개선권고
- 3층 이하 및 30실 이하 객실 등 일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펜션시설을 관광편의시설업종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관광펜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신설)
 - ☞ 펜션업을 활성화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편의시설업종으로 도입하여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지정된 관광펜션 이외의 업소에 대하여 관련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지정된 업체와 비지정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제공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시설기준에 건물연면적을 200㎡ 이상, 무대면적은 30㎡이상으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고 홀면적은 60㎡에서 70㎡ 이상(무대면적 제외)으로 확대(강화)
 -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내국인 대상 유흥음식점에는 없는 과도한 면적기준을 시설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을 결여한 규제라 판단되므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 중 건물연면적 기준(200㎡ 이상)을 삭제하고 무대면적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토록 개선권고
- 휴양콘도사업자는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자와 그 임원 및 직원이 배제된 20인 이상

의 대표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원의 객실 이용권 보장을 위해 객실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표기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회원증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사전확인 후 발급하도록 함(강화)

- ☞ 회원의 객실 이용권 보장 등을 위해 대표기구를 구성, 사전 협의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대표기구와의 사전협의 및 회원증 확인 발급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경우 상기 회원의 객실이용권 보장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므로 동 규제에 대해서는 시행 1년 후 회원, 업체 및 대표기구 등에 대해 규제순응도를 조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토록 하여 원안대로 의결
- 호텔 등급심사 대상을 호텔업 전체로 확대하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호텔은 등급표지를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특1등급의 등급표지인 기존 무궁화 5개에 대형 무궁화 1개를 추가 부착하고, 3등급 호텔의 등급평정기준을 6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하여 하한선을 둠(강화)
 -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전달 및 혼란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기존의 카지노업 변경허가 사항에 카지노업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변경허가대상으로 추가(강화)
 - ☞ 현행 규정상 영업소의 위치 변경(건물 내 이동)이 변경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건물 간 이동)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행정심판 등 법적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변경(강화)
 - 영업휴장 시간 연장, 배팅한도액 하향조정, 출입일수 제한, 카지노 자금대여 금지 등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영업준칙 강화
 - 영업휴장 시간이 일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06:00~08:00)에서 1일 4시간(06:00~10:00)으로 연장·확대
 -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고, 다만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이하 범위 내에서는 30만원 이하로 정함
 - 회원용 영업장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1회 1천만원 이하로 함
 - 퇴장요구 규정을 출입금지 규정으로 강화

- 매 해당 월에 15일 이상 회원용 영업장 출입 금지
- ☞ 매일 4시간씩 휴장토록 한 원안을 일요일은 예외를 두어 전일 개장토록 변경하고 회원용 영업장의 경우 외국인 게임자의 국내 유치 및 국외원정 게임자의 국내흡수, 외화유출 방지 등을 위해 영업과 관련된 사항을 강원랜드 운영내규로 규정하고 문 광부 승인을 받도록 개선권고
- ※ 시행 후 1년 후 본 영업준칙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토 록 함
- 관광지 등 조성계획 수립 내용으로 현행 관광시설계획서·관광지 등 관리계획서 외 에 투자계획서(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를 포함(강화)
- ☞ 관광지 등 조성계획은 관광지 등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무분 별한 난개발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발생하는 각종 문제 및 민 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방안 등 투자계획이 포함된 현실성 있는 계획 수 립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여행사에서 기획여행에 대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행업 등록현황·기획여행 명·여행일정·여행경비, 서비스내용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임의규정 을 소비자 권익보호 및 여행시장질서 건전화 등을 위해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다 만 내용이 동일한 사항은 공통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일부 여행업체의 경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없이 일단 광고·고객을 모집한 후 사후에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부당·불법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여행시장질 서 건전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하여 종전 광고표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등) 자격시 험 전부면제기준 강화(강화)
- ☞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의 면제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정자격에 대한 전부면제를 두어 종사원의 자질하락 및 시험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험면제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③ 출판된간행물의유통질서에관한고시 제정안(신설 2)

- 온·오프라인 서점의 도서판매 시 누적점수제(마일리지), 사은품, 할인권, 기타 고객

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이 거래가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함(신설)

- ☞ 도서관매업자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며 소비자 피해 및 시장경쟁원리 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회권고
- 출판된 간행물의 판매사업자가 배송료를 부담할 수 있는 한도를 거래가액 4만원 이상으로 규정(신설)
 - ☞ 배송서비스는 온라인 서점의 정상적인 상행위의 일부이므로 서비스의 한도 및 범위는 개별 서점의 비용절감 노력 및 영업전략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철회권고

④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안(신설 2, 강화2)

- 유통 등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분류심의 신청 시에 영등위로부터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 받도록 함(신설)
 - ☞ 현재 비디오물 유통과 관련한 정당한 저작권 관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정당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심의를 받고 비디오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한·미 간 통상 마찰 및 적법한 유통업자의 재산손실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동일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였다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토록 함(신설)
 -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를 동일한 영업자에게 한정하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재영업을 하는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본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같은 장소에서' 재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비디오방·게임방 등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록청에서 폐업사실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토록 되어 있으나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제재가 없으므로 대부분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입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영업폐쇄 및 등록취소 요건에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등록업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업종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강화)
- ☞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

⑤ 저작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 도서관 등에서 복제·전송 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도서관 등이 보상금을 지정단체에 일괄 지급하는 방법 채택하고,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 및 보상금수령·분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의 지정요건 및 업무규정 승인대상,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복제·전송 횟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토록 함(강화)
- ☞ 보상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저작권법 개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이용 승인신청 대상 저작물에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고,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경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일정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강화)
- ☞ 기술발전으로 인한 저작권 개념 확대를 법령에 반영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⑥ 관광진흥법 개정안(신설 5, 강화 5, 내용심사 1)

- 관광호텔 내에 기계장치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는 영상물 기기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전자게임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전자게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함(신설)

- ☞ 관광호텔 내에 100% 성인용 게임물이 설치되는 관광전자게임업이 신설되는 경우 관광호텔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방안일 뿐, 관광호텔 외부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일반 게임장과의 형평성 문제, 사행성 조장 문제, 기존의 정부정책과의 비일치 문제 등 업종 신설로 인한 폐해가 예상되어 이를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 관광전자게임기구는 문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의기관에서 실시하는 심의를 받도록 규정(신설)
- ☞ 관광호텔 내에 100% 성인용 게임물이 설치되는 관광전자게임업이 신설되는 경우 관광호텔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방안일 뿐, 관광호텔 외부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일반게임장과의 형평성 문제, 사행성 조장 문제, 기존의 정부정책과의 비일치 문제 등 업종 신설로 인한 폐해가 예상되어 이를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 관광전자게임기의 심의 합격품 사용, 관광전자게임기를 이용한 도박 등 사행행위 금지, 심의합격필증의 매매 또는 증여 금지, 고시한 경품의 종류 및 방법외 제공 금지, 18세 미만의 자 출입 금지, 심의를 받은 관광전자게임기의 변형 이용 금지, 18세 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시 등 지나친 도박, 사행성 등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준수사항 규정(신설)
- ☞ 관광호텔 내에 100% 성인용 게임물이 설치되는 관광전자게임업이 신설되는 경우 관광호텔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방안일 뿐, 관광호텔 외부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일반 게임장과의 형평성 문제, 사행성 조장 문제, 기존의 정부정책과의 비일치 문제 등 업종 신설로 인한 폐해가 예상되어 이를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 관광전자게임기구의 심의수수료를 규정하고 관광전자게임업 미등록 영업 및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신설)
- ☞ 관광호텔 내에 100% 성인용 게임물이 설치되는 관광전자게임업이 신설되는 경우 관광호텔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방안일 뿐, 관광호텔 외부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일반 게임장과의 형평성 문제, 사행성 조장 문제, 기존의 정부정책과의 비일치 문제 등 업종 신설로 인한 폐해가 예상되어 이를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 관광지·관광단지를 지정한 후 2년 이내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때에는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강화)
- ☞ 현행 관광단지의 경우 조성계획에 대한 취소·개선명령으로도 난개발 방지 및 개

발의 효율성 제고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자동실효 규정을 배제토록 하고 관광지에 대해서만 실효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권고

-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미화 5억불 이상이며, 투자자 및 투자자금이 범죄 등 불법행위와 연계되지 아니하였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 카지노업을 허가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카지노업 운영시기를 결정토록 함(강화)
 - ☞ 카지노업 허가시 미화 5억불 이상 투자자에게 1개의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토록 하고, 카지노업의 조건부허가가 다양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허가의 조건이나 운영시기를 구체적인 범위나 한계 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을 문광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업시기는 문화관광부령에 정하도록 개선권고
-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강화)
 - ☞ 카지노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의 투명성이므로 정확한 매출액의 관리와 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카지노사업자가 60일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강화)
 - ☞ 위반 시 부과되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토록 개선권고
-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 및 종합휴양업 등)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강화)
 -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는 당초의 사업계획승인을 무의미하게 하고, 행정청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에 대한 지도·지원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유원시설업의 허가시 자금조달능력이 증명되고, 일정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가 설치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선 허가, 후 설치’가 가능토록 함(내용심사)
 - ☞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써 허가관청에서 이를 판단하여 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요인으로 판단되어 허가조건에 삭제토록 개선권고

- 관광진흥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강화)
 - ☞ 과징금 부과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⑦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내용심사 1)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가 무효된 경우 투표권 구매금액의 반환청구 기간을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기간동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됨(내용심사)
 -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⑧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신설 1)

-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청소년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신설)
 - ☞ 청소년증을 양도·대여 또는 유사명칭 및 표시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인정되나 과태료 수준을 5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토록 개선 권고

⑨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사립 문고설립을 신고한 자가 문고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문고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고설립 변경 및 폐쇄신고를 하도록 함(신설)
 - ☞ 사설문고에 대한 지원관리를 위해 변경 및 폐쇄신고 하도록 하는 규제의 신설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체계상 상위법에 신고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이 필요한 바 이를 보완토록 개선 권고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03-3938, kjyoung@opc.go.kr)

2. 청소년보호위원회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5건 등 총 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함
- 규제심사대상 8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6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3건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청소년보호법	제198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7. 9)	원안의결 6 개선권고 2	신설 3 강화 5
	제120차 규개위 (2003. 7. 11)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신설 3, 강화 5)

- 청소년유해업소의 정의 중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기준에 “음성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영업”을 추가 규정함(강화)
- ☞ 화상대화방·유리방 등에서는 청소년이 퇴폐적인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전화방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전화방을 화상대화방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전화방 영업과 비슷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

- 또는 비디오감상실이 포함된 복합유통·재공업”에게도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토
록 원안대로 의결
-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있을 경우 유통이 금지될 수 있는 매체물의 범위는 “정기간행
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행물”에서 확대(강화)
 - ☞ 특수일간신문으로 등록된 스포츠신문 등이 청소년유해 여부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일간신문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체물
의 범위에 일반일간신문을 포함하되 과도한 면을 고려하여, 일반일간신문에서는
체육·연예·오락 등에 관한 사항을 보도·논평하거나 여론 등을 전파하는 신문
으로 한정하고, 특수일간신문은 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토록 개선
권고 함
 - 정기간행물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속발행횟수 6회
중 2회 이상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
토록 규정함(강화)
 - ☞ 스포츠신문 등 유통기간이 짧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되더
라도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는 반면, 만화, 비디오에 대하여는 엄격한 유해매체물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게시판, 커뮤니티, P2P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음
란물을 접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매체물 담당자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규
정함(신설)
 - ☞ 매체물 청소년담당자는 자율정화계획수립, 이용자 불만처리, 청소년보호위원회
가 요청하는 사항을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경우에도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처벌토록 개선권
고함
 - 청소년유해사이트 매체물 광고는 청소년의 접속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통신망
에는 게시하거나 접속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강화)

- ☞ 배너광고 등은 주로 스포츠신문사이트, 개인이 운영하는 일부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중에도 음란성 접촉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일이 사이트를 지정하지 않고 특별한 제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올린 청소년유해사이트 광고는 금지토록 원안대로 의결
- 청소년유해업소는 친권자를 동반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 및 출입금지토록 함(강화)
- ☞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등에서는 청소년 유해요소가 발생되고 있으나, 청소년의 친권자인 것처럼 업주 및 종업원을 속여 청소년이 출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 청소년을 고용 또는 유해행위를 하게 하는 조건으로 금전지급, 부당채무 인수행위, 청소년에게 빚을 지게 하는 행위는 업주가 청소년이 미이행시 향후 반환청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법상 규정 이외에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규정하여 대상행위가 무효인 행위로 규정함(신설)
- ☞ 티켓다방 또는 일부 유흥업소 업주가 청소년 등 종업원을 고용시 소개비 또는 선불금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소년을 계속적으로 고용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므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 가출 등 청소년의 이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행위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강화)
- ☞ 외부에 다류 배달시 관행상 당해 배달 청소년에게 성적 농담 또는 가벼운 신체 접촉 등 청소년의 성매수,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03-3938, kjyoung@opc.go.kr)

3. 문화재청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1건, 내용심사 4건 등 총 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문화재청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2건임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청소년보호법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94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5. 28)	원안의결 7	신설 2 강화 1 내용 4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4)

-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단체에 문화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토록 하는 의무 부과(내용심사)
 - ☞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문화재 수리공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신설)
 - ☞ 문화재 시공의 품질향상을 위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

로 의결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 범위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동지·알을 채취하거나 표식을 하여 서식·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내용심사)
 - ☞ 지금까지 포괄적 규정에 따라 규제해 오던 것을 명시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강화)
 - ☞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지원관리 등을 위해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기술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신설)
 - ☞ 자격시험의 공정성확보 및 자격자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문화재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수리업자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내용심사)
 - ☞ 문화재의 원형보존,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리현장 업무수행 시 수리업자·수리기능자 업무수행 범위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수리업자의 준수사항(업무처리기준) 위반, 등록업종 외의 수리행위, 성명 및 상호의 대여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용된 처분기간을 조정(내용심사)
 - ☞ 수리기술자·기능자·수리업자의 적절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03-3938, kjyoung@opc.go.kr)

제10절 _ 노동분야

1. 노동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근로자직업훈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등 2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7건, 강화 88건, 내용심사 10건 등 총 13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5건 중 9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2건에 대하여는 조건부 동의, 12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노동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37건임

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및기능사필기시험면제등에관한규정(예규) 개정안	제82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 29)	원안의결 2	강화 2
②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고시) 개정안	제82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 29)	원안의결 2	신설 2
③ 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운영지원규정(고시) 개정안	제183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2. 12)	원안의결 1	내용 1
④ 사업내차격검정사업지원규정(예규) 개정안	제184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2. 19)	원안의결 2	내용 2
⑤ 산업재해보상보 함법시행령 개정안	제185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2. 26)	원안의결 4	신설 2 내용 2
⑥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제8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3. 26)	원안의결 54	신설 26 강화 28
⑦ 산업재해보상보 함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91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4. 30)	원안의결 4	강화 4
⑧ 산업안전법시행령 개정안	제92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5. 14) 제16차 규개위 (2003. 5. 16)	원안의결 7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6
⑨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	제95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6. 11, 5. 2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⑩ 건설근로자 의고용개선등에관 한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95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6. 1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1 내용 1
⑪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96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6. 18)	원안의결 10 개선권고 2	강화 10 내용 2
⑫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제96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6. 18) 제119차 규개위 (2003. 6. 25)	원안의결 15 개선권고 1	강화 16
⑬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제9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7. 2)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3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억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⑭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	제98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7. 9, 7. 2)	개선권고 1	강화 1
⑮ 근로자직업훈련법 개정안	제204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9. 24)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⑯ 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05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0. 1)	원안의결 4	강화 2 내용 2
⑰ 2004년도고용보험법적용제외간설업의총 공사금액 개정안	제211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2. 10)	원안의결 1	강화 1
⑱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11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2. 10)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조건부 동의 2	신설 1 강화 7
계		개선권고 9 원안의결 126	총 135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능사필기시험면제등에관한규정(예규) 개정안(강화 2)

- 산업 기사 필기시험의 면제교육 훈련과정 지정에 있어 전체 훈련시간 중 이론시간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조정하고, 지정신청서 제출기한을 상반기는 1월 말까지로 하반기는 8월 말까지로 규정함(강화)
 - ☞ 국가공인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을 강화하고, 지정신청서의 제출시기를 면제과정의 고시시기와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현재 2~10년으로 다양하게 보존토록 되어 있는 보존서류 기간을 3년으로 단일화하고, 지방노동관서장의 교육훈련기관의 지도감독 방법을 단순화 함(강화)
 - ☞ 필기시험 면제기간 2년을 고려하여 보존문서 비치기간을 3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도감독을 불시점검 방법에서 분기별 지도감독으로 효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②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고시) 개정안(신설 2)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 용자 시 신청서류를 용자별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토록 하고, 용자를 신청한 후에는 용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토록 규정함(신설)
 - ☞ 현재 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율이 20%정도로 미흡하여 여성의 고용촉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청서류를 최소화하고 용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용자를 취소토록 원안대로 의결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금에 대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지원 받은 자의 채권확보 방안을 규정함은 물론 허위 부정한 방법 등 취소사유에 대하여도 규정함(신설)
 - ☞ 지원금 제출서류를 노동부 고시로 상향규정하고 지원금의 본래의 목적인 사업성의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산처분 기간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지원금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취소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③ 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운영지원규정(고시) 개정안(내용심사 1)

- 지원대상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당해연도 운영계획·상담원 자격요건 해당증명서·상담실 면적증명 사본 등으로 하고, 상담일지의 작성·비치, 상담실 위치를 표시하며, 상담원은 연 1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 고용평등 사업에 적정한 상담서비스 적정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절차를 규정하고, 상담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상담일지 작성 및 위치 공지·상담원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④ 사업내자격검정사업지원규정(예규) 개정안(내용심사 2)

-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내자격에 대하여 노동부에 인정신청 시는 「자체사업내검정실시규정」에 따라 최소 2회 이상 시행하여 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규정에 의하여 사내자격인정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추가토록 함(내용심사)
 - ☞ 사내자격에 대한 사업주의 무분별한 인정신청을 방지하여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사업 내 검정사업의 내용을 운영목적, 자격의 검정방법, 응시자격 등을 포함하여 검정방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 또한, 인정사업 내 검정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 검정실적을 확인토록 하고, 사내자격에 대한 취소기준을 명확히 규정함(내용심사)
 - ☞ 인정사업자적이 사후에도 운영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하여 관리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신설 2, 내용심사2)

-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동안 적용제외 되었던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와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확대 적용함(내용심사)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동안 적용제외 되었던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와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확대 적용함(내용심사)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동안 적용제외 되었던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와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자에 대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 발생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함(내용심사)
 - ☞ 보험급여 지급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산식상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보험지급의 형평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1~9급)을 요양 종료일부터 1년 이상 고용하거나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 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신설)
 - ☞ 1~9급 산재장해인의 직장복귀율이 31.4%에 그치고 있어 중증산재장해인의 직업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사항으로 대통령령에 명시함(신설)
 - ☞ 노동부 예규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위규정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⑥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신설 26, 강화 28)

- 작업장의 출입문,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추락 등의 위험방지, 리프트 자체검사주기,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원심기 운전의 정지, 사출성형기의 방호덮개 설치, 자동차정비용 간이리프트에 의한 위험방지, 크레인 등의 전용탑승설비로부터의 추락위험방지, 인양자석부착 크레인 밑으로 근로자 출입금지, 크레인 등의 조립 등의 작업시의 안전조치, 건설물과 크레인 사이의 통로 등에 의한 접촉위험방지, 리프트 팻트 청소시의 안전조치, 고리걸이용 로프 등의 견고한 표식사용, 지하작업장 등에서의 화재·폭발위험방지, 전기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기계·기구 조작시의 안전조치,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관리, 단로기 등의 개·폐,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추가,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거푸집 등바리 등의 안전조치, 발파작업의 안전기준, 작업중지 및 피난, 용접작업시의 안전조치,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등에 대하여 규정을 정함(강화)
 - ☞ 기계, 공법 및 신기술의 개발로 재해의 위험이 다양화되고, 이들 산업기계·설비의 노후화와 가스·유해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산업전반에 유해·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합한 안전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방법을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제시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보전하고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정련기에 의한 위험방지, 식품분쇄기의 덮개, 농업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크레인 운전작업 시의 안전조치, 화물자동차의 승강설비 및 보호구, 발화성물질 중 금속성물질의 물과의 접촉금지, 위험물 누출방지를 위한 방유제 설치, 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 정전대비 비상전력 공급, 활선작업 요령의 작성,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열차통행 중 작업제한, 운행도중 점검 및 정기점검·수리, 궤도상의 보수·점검작업 및 입환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난간 및 방책설치, 자재의 붕괴·낙하방지, 접촉방지 및 유도신호, 제한속도의 지정, 제동장치의 구비, 입환작업 시의 신호, 작업장 등의 시설정비, 교량에서의 추락방지, 터널 내 침목교환작업, 악천후 시의 작업중지, 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기준을 새로이 정하여 규정함(신설)
 - ☞ 철도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철도안전작업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여 마련하고 운영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연 중독으로 인한 철결핍 빈혈·연선·상습변비, 크롬중독으로 인한 간장장해,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에 의한 간장장해”는 제외하여 규정(강화)
 -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유해물질과 질병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보다는 과거 동물실험 등을 통해 일반적인 개연성에 따라 규정해 오던 것을 연구결과에 따라 업무상질병을 바로 잡은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산재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 중지함(강화)
 - ☞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보험료를 재원으로 적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지원금’이므로 이를 체납한 사업주에 대해서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에 맞지 않다고 보아 지급 중지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공인노무사, 관련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관련 자격증소지자, 4년 이상 경력자로 규정함(강화)
 - ☞ 재심사업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조사연구원을 두고 있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강화)
 - ☞ 동 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방법,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⑧ 산업안전법시행령 개정안(신설 2, 강화 6)

- 광산보안법, 원자력법, 항공법,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 중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법 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강화)
 - ☞ 광산보안법, 원자력법, 항공법, 선박안전법에는 이러한 물질들로부터 근로자의 건

강보호를 위한 유사규정이 없음으로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법 적용으로 광산보안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 ☞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적용규정 란에 법 제3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5인 미만이면서 4천만원 이상인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으로는 법 제30조의 적용대상이 명백함에도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양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제30조가 적용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보건관리자의 직무범위 중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작업관리를 추가” 하여 직무범위를 12종에서 13종으로 규정함(강화)
 - ☞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주 의무(법 제24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자 직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실질적인 예방관리업무 소홀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노동부장관 실시 검정대상 보호구 중 ‘방열복’을 ‘보호복’으로 변경 규정함(강화)
 - ☞ DMF 등 유기화합물의 피부흡수에 의한 독성간염 등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학용보호복을 검정대상 보호구에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에서 벤지딘과 그염 등 3종을 삭제하고,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3종을 추가 규정함(강화)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벤지딘과 그 염,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3종은 삭제하고,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등 3종을 금지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은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어 원안대로 의결
-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를 받도록 규정함(신설)
 - ☞ 종전부터 지정측정기관에 대해 정도관리를 받도록 해 오던 사항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노동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고 제조 또는 사용해야 하는 유해물질을 당초 8종에서 14종으로 확대규정함(강화)

- ☞ 추가로 허가금지 되는 유해물질 7종은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회에서 발암물질로 제한하고 있어 허가대상 물질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안전공단에 시설개선에 대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등 사유를 노동부 장관이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무자격자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로 확대 규정함(강화)
 -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산업재해발생 공표대상 사업장 범위를 1.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규정함(신설)
 - ☞ 同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제도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공표범위 중 제2호와 제3호에 대해서는 노동안과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대로 규정하고 제1호와 제4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함
 - ☞ 제1호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사업장(56,000여 개소)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한국노총의 주장과 같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기업 중 상위 1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90%이상 해당되어 공표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규모별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10%로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 ☞ 제4호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율(0.77%)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내에 2회 이상 산업재해발생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함

⑨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령자(55세 이상)의무고용비율을 업무의 특성

을 고려하여 제조업 2/100,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6/100, 기타업종 3/100으로 구분하여 변경 규정함(강화)

- ☞ 업무특성상 고령자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고용률이 기준고용률(3%)에 미달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비율을 낮추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들이 쉽게 고용되고 있어 기준 고용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에 대해서는 고용비율을 6%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 고용율을 업종별로 차등화 하기 위한 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

※ 일본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대비 6%이상 의무 고용토록 규정

-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인력 등을 규정하고,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인재은행 폐지·휴업 시 휴업 또는 폐지신고서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함(신설)
- ☞ 종전에 예규로 운영되고 있던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재은행에 대한 국고지원(기관당 월 658천원) 및 형식적 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므로 원안대로 의결

⑩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3, 내용심사 1)

-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범위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로 규정함, 단 2004. 1월부터는 10억원 이상으로 함(내용심사)
-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해서도 퇴직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이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원안대로 의결
- 하수급인이 원수급인 대신 의무가입공사 가입 사업주가 되기 위한 승인기준을 정하고 의무가입공사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가입사업주로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규정함(강화)
- ☞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 퇴직공제 임의가입 사업주의 가입요건으로 당해 사업주가 건설관계법령에 의한 공사업자로서 퇴직공제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으로 규정함(강화)
 -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
 - ☞ 동법 시행령 안 제4조의4 제2호에서는 “퇴직공제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임의가입 요건을 명문화하였으나 이는 공제회에서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좀더 구체화 또는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함
- 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공제증지 첩부상황을 기록한 증지첩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공제회에 월 1회 이상 통보하여야 규정함(신설)
 -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상향규정화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퇴직공제회 지침에서는 보관의무만 규정) 그러나 증지첩부 상황을 사업주가 월 1회 이상 공제회에 통보하거나 증지첩부 관리대장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택적으로 할 경우 대다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관리대장 보관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태여 월 1회 이상 통보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 개선권고 함(안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 중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규정함(강화)
 - ☞ 만 60세 도달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 시 연령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⑩ 산업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0, 내용심사 2)

- 법 제10조의2에 의해 사업주는 업무에 의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 산업재해를 기록·보존토록 함으로서 노사 모두가 스스로 재해발생 원인 및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기록된 정보를 기초로 효과적인 예방활동으로 동종

재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

- 총칙, 안전보건관리조직·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보칙 등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 당초 예규로 정한 사항을 상향 규정하여 동법 제20조제3항에 위임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재해예방전문기술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공사금액 기준으로 “2억 이상 120억 원 미만”으로 확대(강화)
 - ☞ 재해예방지도를 의무화 할 경우 월 15만원이 소요됨에도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영세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축소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확대에 원안대로 의결
 - 인접청을 추가지정 대상 축소
 - ☞ 추가청제도는 본청에 소수의 인력을 두고 사실상 독립된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축소하고 지정기관수가 부족한 전기 및 통신분야만 인정함
 - 인력·장비의 기준조정
 - ☞ 지도기관의 인력은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중요하므로 공사완료 시까지 지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를 2년 이상인 자로 개선 권고 함
 - 지도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강화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강화하여 규정함
 - ☞ 지도기관의 종사자의 교육시간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와 동일한 분야이므로 보수교육시간(24시간)도 강화하고
 - ☞ 지도기관의 부실지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도사업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하여 실효성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 합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에 대한 재검정신청자는 검정기관이 당해 제조·수입업체에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 성능검정을 신청토록 하고, 합격의 유효기간, 수거검정, 검정의 신청제한, 수거·파기명령, 검사대상 기계·기구 등의 규정을 정함(강화)
 - ☞ 재검정은 검정기관이 임의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정함으로써 최초성능 검정합격 당

- 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량품 억제 측면이 있고
- ☞ 제품의 제조·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검정유효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안전성능을 확인함
- ☞ 불량품 제조자·수입자에게 그 제품에 대한 불량 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검정신청기간을 제한하여 제품 수준의 향상을 유도함
- ☞ 사용자가 불량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중에 유통중인 불량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수거·파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인 재해예방효과를 거둠
- ☞ 리프트의 사고는 승강로의 높이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므로 18m 이하의 승강로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
- 보호구 검정대상에 대하여 검정대상, 검정물품,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기관 등록 시 제출서류 추가 및 지원신청 서류 등을 규정함(강화)
 - ☞ 보호구 검정대상의 절차, 제품의 안정성,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업체, 지원의 요청 내용 및 비용을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위한 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를 확대하고, 자체검사원 자격기준을 정함(강화)
 - ☞ 로울기·호이스트 등 자체검사대상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제한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대하여 규정함(강화)
 - ☞ 석면은 먼지상태로 흡입시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종 피종, 석면폐 등으로 발병되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작업환경 측정·평가 대상, 측정자의 자격기준, 측정횟수, 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함(강화)
 - ☞ 작업환경 측정·평가 대상은 연구용역을 통하여 유해성이 강하고 많이 사용하는 물질을 측정대상으로 정하고, 측정횟수는 노출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강화 또는 규제완화를 하고, 우수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측정기관을 평가·공표하여 양질의 측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 ☞ 측정자의 자격기준은 측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하되 관련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토록 개선권고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확인면제 기준을 축소하여 조정함

(강화)

-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제출대상공사의 규모를 일원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발생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재발생율보다 높은 사업장”에서 “산재발생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재발생율보다 높은 사업장” 조정함(강화)
- ☞ 최근 3년 간 재해발생 현황의 분석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재해감소 정책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장소 또는 사내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규정함(강화)
- ☞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도 함께 위반사항을 알고 서로 개선에 참여하는 등 관련내용을 공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조정하고, 대행요원의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강화)
- ☞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충분히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장비를 조정하고, 형식적인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퇴출하고, 우수한 대행기관은 업무를 성실히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강화)

⑫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강화 16)

- 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다이옥신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화장실 등의 설치, 금지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허가대상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농약사용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생물학적인장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의한 예방기준 마련(강화)
- ☞ 2002. 12. 30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보건상의 조

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생물학적 인자 등에 의한 직업병이 발생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안대로 의결

-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으로 매 3년 이내 유해요인조사 및 질병자 발생 시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정부의 예방프로그램 시행·시행명령, 질환징후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 근로자 주지, 중량물 인양작업의 특별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강화)

☞ 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체는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 근로자의 10%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당초안보다 완화하고, 노사간에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작성·시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개선권고함. 단, 기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권고함. 인양중량 제한은 외국의 입법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25kg, 15kg의 객관적 기준도 없고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가 있어 이를 명문화하기보다는 사용자와 근로자로 하여금 무리한 중량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 개선권고함

⑬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신설 1, 강화 3)

- 사업주 또는 업종별단체, 근로자단체가 기술자격이 산업현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제도 운영에의 참여 등 협조의무 규정함(신설)

☞ 사업주·업종별단체·근로자단체 등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행하는 자를 대변하는 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술자격종목의 검정내용이 현장의 직무능력 요구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맞는 기술자격종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현장성 및 활용성 증대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기술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제한(①기술자격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고 동일 자격종목에 응시하는 자, ② 기술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동일 자격종목에 응시하는 자, ③ 당해검정의 중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함으로써 자격증대여,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의 행위 배제하도록

록 규정함(강화)

- ☞ 자격취소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예의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제2호의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응시제한과 관련하여 산업인력공단의 주장과 같이 제2호는 반대 해석상 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응시하여 마치 동일분야의 동일자격을 하나 더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비취침으로써 1인당 2개 이상의 동일자격 보유를 허용하는 듯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1인당 동일종목에 복수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불법대여문제, 자격 취소처분 시 다른 자격을 사용하는 문제 등 발생

- ☞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2호를 개선하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동일한 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개선권고함.

*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자격정지처분기간중의 응시제한 근거마련, △반대해석에 따른 오해의 불식 및 △복수자격증 보유에 따른 문제점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술자격검정과목의 면제대상자 중 현행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동일직무분야 및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 변경 규정함(강화)

- ☞ 현행법에서는 기술자격취득자가 타 기술자격종목 응시시 등급만 같으면 중복과목 전부 면제되었음. 이로 인해 타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도 등급만 동일하면 다른 분야 기술자격종목 취득이 용이하여 기술자격 취득자의 해당분야 직무능력의 질적 저하가 초래됨. 이는 중복과목 면제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목명이 동일하다고 해도 직무분야가 다를 경우 세부 중점항목이 다르게 되어 면제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있음

- ☞ 따라서 기술자격취득자가 동일 직무분야·등급의 다른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만 중복과목을 면제하여 자격제도의 선발 기능을 강화, 자격취득자의 해당분야 직무능력 제고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기술자격 정지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를 우대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정지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우선채용, 승진·전보·보수 등에 있어서의 우대를 제한함으로써 정지처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강화)

- ☞ 정지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우선채용, 승진·전보·보수 등에 있어서의 우대 등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를 제한함으로써 정지처분제도의 입법취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⑭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강화 1)

- 국가기술자격명칭을 신설 및 변경하고, 신설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국가이외의 자가 검정을 시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종목을 설정함(강화)
- ☞ 국가기술자격 신설종목 17개중 역무관리사와 철도화물운송관리사 2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15종목에 대하여는 신설이 필요하므로 개선권고 함. 이중 ‘화훼장식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는 공인민간자격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틀 마련 후 민간이양을 조건으로 동의함. 단, 최초자격취득 3년 후에는 그 추진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역무관리사와 철도화물운송관리사 제도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용도 현행 철도, 지하철, 경전철 기관의 직원들이 당연히 습득해야 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오히려 새로운 진입규제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종목신설을 부동의하고 응시자격도 철회함

⑮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신설 1, 강화 4)

- 근로자 직업훈련 위탁훈련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또는 부정행위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제한기한도 현행 3년에서 최대5년으로 하였으며, 훈련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수강 및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강화)
-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부실훈련에 의한 예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나 직업훈련의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 훈련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원안대로 의결
-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토록 하고,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수강제한 및 비용의 지원을 제한토록 함(강화)

- ☞ 직업훈련의 급속한 부정·부실훈련 방지와 고의적인 부정은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훈련일수의 80%를 출석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훈련기관과 공모하는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 지정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훈련실시 규모에서 훈련실시 능력으로 변경하고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함(신설)
- ☞ 훈련시설의 지정요건 중 훈련규모는 국가가 지원하는 훈련규모 감소시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지정요건을 상실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변동사항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의 설립허가에 목적사업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립허가 취소사유도 규정함(강화)
- ☞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목적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부실 직업능력개발 훈련원에 대하여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재해위로금의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조정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강화)
- ☞ 동 사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행정벌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⑩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2)

- 고용보험에 적용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 18시간) 미만에서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강화)
- ☞ 시간제근로자중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제고(144천만명 혜택)하고, 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건설업상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후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하는 하수급인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 시 고용보

협하수급인신고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강화)

- ☞ 건설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와 피보험자 신고주체가 달라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특히 동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 인정받지 못한 하수급인은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에 대한 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봄
- ☞ 아울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하수급인 사업주를 파악하여 일용근로자 등 피보험자 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수차에 거쳐 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수급인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 따라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주를 미리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적극적인 제도안내 등을 통한 효율적인 피보험자 관리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로 원안대로 의결
- 실업인정 시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의 범위를 1월 80시간 이상에서 1월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으로 불인정하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로의 범위를 적용 확대되는 시간제 근로자의 범위에 맞추어 1월간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1월 60시간으로 조정하여 동법에서 규정한 구직급여감액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활용함은 물론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소득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하고, 근로 제공이 1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액의 금품을 수령할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 제도 취지에 반하는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이 경우 실업인정 시 자영업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 “6월 이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토록 한 것은 자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 ☞ 자영업은 장기간 단계적 준비절차(사업구상, 훈련, 시장조사, 사무실 임대 등)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준비절차가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경

우에 한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의 형식적인 재취업활동을 방지하고 실업인정과 조기재취업수당의 연계를 강화하여 조기취업 유도하는 제도 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⑰ 2004년도고용보험법적용제외건설업의총공사금액 개정안(강화 1)

- 고용보험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건설업의총공사금액을 결정·고시토록 함(강화)
- ☞ 2004. 1월부터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확대로 현행 건설업 적용제외규정에서 정한 총 공사금액 3억 4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를 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개인시공 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산출근거인 공사금액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⑱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7)

- 고용보험법에서 적용제외근로자로 분류되었던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외국인근로자중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축소함(강화)
- ☞ 2004. 1월부터 일용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므로 선원에 대하여도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보험이 강제적용 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원안대로 의결
- 중소기업청과 노동부에서 각각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일원화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향후 불이익을 고려하여 2년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강화)
- ☞ 우선대상 지원기준을 고용보험법에서는 상시고용인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자산총액·매출액·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제도 취지에 맞도록 이를 일원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일 근무제 법정시행시기 전(6개월)에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단축 후 근로자수가 단축 전 근

로자수를 초과하도록 그 기준을 규정함(신설)

- ☞ 2005. 7.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주 5일 근무제를 조기 정착 하고 근로시간단축으로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원안대로 의결
-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고령자다수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준을 업종별 기준고용율을 초과한 기업으로 변경하고,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강화)
- ☞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다만, 동 제도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등 혼란스러운 용어로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함
- 장기구직자와 중·장년의 구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제외자를 1년 미만에서 1년 이하로 조정함(강화)
- ☞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구직신청한 장기구직자와 40세 이상 중·장년을 채용하면서 이들 채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1년 계약만 체결하고 장려금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계속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원안대로 의결
-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산후유급휴가기간을 제외함(강화)
- ☞ 육아휴직장려금은 실제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하는 사업주의 노무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산후휴가기간에 대해서까지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원안 동의함
- 근로자 수당지원금의 총지급 제한한도를 1인당 1년 당 100만원 한도에서 근무기간 내내 총 300만원으로 한정하여 지원토록 함(강화)
- ☞ 근로자 1인당 직업능력 개발비를 평생 3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추구할 수 있을 지라도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는 그리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봄. 더구나 근로자가 구조조정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때에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함에도 직업능력개발비용 상한선으로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소요재정을 감안하여 5년 주기로 상한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선권고 함
-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산정의 기준, 지급제한 등 고용보험사무조합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개선함(강화)

- ☞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이 피보험자 관리실적과 무관한 사업장의 규모·위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개선하고, 피보험자 관리가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사무 조합 활용을 높이도록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다만, 향후 제정될 “고용보험 및산업 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된다고 봄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03-3938, kjyoung@opc.go.kr)

제1절_ 외교·국방 및 보훈분야

1. 외교통상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해 신설 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중 4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건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받았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외교통상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6건임

외교통상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	제193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5. 21)	원안의결 4건 개선권고 2건	신설 6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신설 6)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적용범위를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및 선박에 적용토록 함(신설)
 - ☞ 남극조약 제7조 제5항은 각 당사국에게 자국민·자국 선박 및 자국에서 조직되거나 출발한 남극활동에 대한 사전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과 함께 일정 외국인 및 외국선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관련 외국 입법례에서도 자국민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인·선박 등에 대해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관련사항을 정함(신설)
 - 남극활동의 허가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제1호 내지 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법 위반자인 경우에도 남극활동에 관심 있는 자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법률의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동법 및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남극활동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폐기물관리계획서 및 비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토록 함
 - ☞ 해당사항은 남극환경보호의정서상의 의무사항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며, 다수국가가 남극활동 내지는 남극지역 출입을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계장관과의 협의 후 외교통상부장

관으로 하여금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긴급한 남극활동을 한 자는 긴급한 남극활동이 종료된 즉시 남극활동감시원 및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 남극환경보호의정서 각 부속서는 긴급한 남극활동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바, 각 조항은 이러한 긴급한 남극활동이 남극조약협약당사국과 위원회에 대해 통지될 것과 90일 이내에 설명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이행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긴급한 남극활동을 한 경우 남극활동감시원 및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토록 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남극활동으로 인해 남극환경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 상기의 경우 허가취소 및 정지는 남극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의무사항인 동시에 남극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남극활동 허가 신청자는 환경영향평가서(예비, 기초,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시 수정·보완해야 함(신설)
- ☞ 법률 제정안은 남극활동 허가 신청자가 예비환경영향평가 또는 초기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초과하는 통보를 받거나 평가서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포괄적 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중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남극활동 허가 신청자가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초과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기준인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바, 시행령에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남극 환경보호 의무사항을 정함(신설)
 -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유해간 간섭 및 비토착 동식물의 남극지역 반입 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의정서 제2부속서 제3조(토착 동식물군 보호) 및 제4조(비토착 종·기생충 및 질병의 반입) 등에서 남극동식물보호에 관한 의무 및 허가서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 발급한 허가서의 수와 성질에 관하여 남극조약협약 당사국 및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남극활동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며,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의정서 제3부속서 제8조2항은 폐기물관리계획서에 제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가)항은 폐기물 관리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제9조는 폐기물 처리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각 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은 남극지역의 해양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동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의정서 제4부속서 제2조는 남극활동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하여 남극지역의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9조는 남극활동에 참여하는 선박이 방제장비를 갖추고 있도록 하는 바, 이에 대한 관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활동 및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에 대하여 허가기간·장소·대상인원 및 필요한 조건 등을 명시한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고, 남극활동수행자는 동 구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허가서 사본을 휴대해야 함

☞ 의정서 제5부속서는 허가서 없는 남극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서 발급에 기간, 장소, 대상 등 조건을 명시한 허가서를 발급할 것과 허가서 사본을 휴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 남극활동자는 활동종료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활동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매년 다음해 4월말까지 보고해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필요시 보고를 명할 수 있음(신설)

☞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의정서는 남극활동의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정보교환·보고와 관련하여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조약 및 의정서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남극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에게 제 사항을 보고토록 하는 것이 남극조약체제의 목

적달성에 필수적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관련 조문 : 남극조약 제7조제5항, 의정서 제 17조, 의정서 제1부속서 제6조, 제2부속서 제6조, 제3부속서 제9조, 제5부속서 제10조

- 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허가내용 위반, 보고의무 불이행, 남극환경 보호의무의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며 남극활동자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신설)
-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각종 보고서 제출, 관리인 임명, 조사 수락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집필자 : 손진욱 사무관(T.3703-3936, peda21@opc.go.kr)

2. 국방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사관학교설치법·단기사관학교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누락규제)를 하여 1건은 원안의결, 2건은 개선권고를 함

국방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사관학교설치법·단기사관학교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	제197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7. 2)	원안의결 1건, 개선권고 2건	누락 3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사관학교설치법·단기사관학교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누락규제 3건)

- 사관학교, 단기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 제한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법률로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현재 관계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입학자격 제한 규정을 법률로 통합(법 체계 정비)
 - 사관학교 입학자격(사관학교설치법개정안 제3조)
 - ①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 ②장교 등 임용 결격사유 미 해당 ③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④신체기준에 적합
- ☞ 양성평등정책 및 다양한 경로의 장교육성 차원에서 단기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도 성별구분 없이 미혼자로 개선토록 권고. 다만 시행 시기는 전체적인 장교인력 육성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하므로 시행령에 위임

* 집필자 : 손진욱 사무관(T.3703-3936, peda21@opc.go.kr)

3. 국가보훈처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기금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재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같은 내용은 병합심사하여 강화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보훈처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유 공자예우에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고엽제후 유익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 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병합심사	제98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7. 9) 제120차 규개위 (2003. 7. 11)	원안의결 1	강화 1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강화 1)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병합심사

- 종전에는 사립학교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취업보호 실시기관으로 간주하였으나, 사립 학교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국가기관에서 분리하여 일반기업체와 같은 범위에 포함 하여 취업을 실시하고자 함(강화)
- ☞ 사립학교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국가기관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일 반 기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알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 집필자 : 손진욱 사무관(T.3703-3936, peda21@opc.go.kr)

4. 병무청

① 2003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대하여 4건을 심사하여 1건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고,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병무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병역법 개정안	제191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5. 7)	원안의결 1건 개선권고 1건	신설 1 강화 1
②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제211차 행정사회분과위 (2003. 12. 10)	원안의결 2건	강화 2

② 2003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병역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정업체장 직계비속에 대해 당해 업체의 전문 연구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을 제한(신설)
 - ☞ 지정업체장이 직계비속을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경영수업이나 형식적으로 근무시키는 등 제도악용 소지가 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공업분야의 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종전 종업원 수 5인 이상인 업체에서 30인 이상인 업체로 기준을 강화함
 - ☞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고, 공업분야의 지정업체(전 지정업체의 97.5% 차지)의 선정기준이 건설분야 등 타 분야

의 선정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완화되어 있어 분야간 형평성을 저해하여 선정기준 강화를 원안대로 의결

② 병역법시행령 개정안(강화 2)

- 지정업체나 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형이 확정되면 즉시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함(강화)
 - ☞ 최근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지정업체에서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 형의 처벌이 있더라도 종사 중인 복무자가 있을 경우 지정업체 선정 취소를 할 수 없는 현행규정을 악용하여 위·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병역자원의 산업체 지원제도의 도입취지 및 엄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는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위반자 처벌기준(강화)
 - ☞ 복무규정 위반시 연장종사를 시키는 기준에 복무위반 기간이 장기간(3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되어있어 제재로서의 처분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상습적 위반사태가 반복됨에 따라 복무위반자의 발생 억제는 물론 지정업체 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활성화 및 성실복무의무 이행 위해 다소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집필자 : 손진욱 사무관(T.3703-3936, peda21@opc.go.kr)

제12절 _ 환경분야

1. 환경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안 등 23개 법령에 대해 신설 33건, 강화 71건, 내용심사 11건 등 11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5건 중 6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4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66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5건은 분과위 심사 후 부처에서 안전을 철회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환경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30건임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및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제157차 경제2분과위 (2003. 2. 28)	개선권고 2	강화 2
②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제157차 경제2분과위(2003. 2. 28)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신설 3 내용 1
③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제158차 경제2분과위 (2003. 3. 14)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 5
④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제60차 경제2분과위 (2003. 3. 28)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강화 3
⑤ 습지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제61차 경제2분과위 (2003. 5. 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1 내용 1
⑥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제163차 경제2분과위 (2003. 5. 2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3
⑦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제163차 경제2분과위 (2003. 5.23)	개선권고 1	강화1
⑧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164차 경제2분과위 (2003. 5. 30)	원안의결 5 개선권고 2	강화 5 내용 2
⑨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165차 경제2분과위 (2003 .6. 4)	원안의결 10 개선권고 8	강화 15 내용 3
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관련 -대체 도시락용기 가격동향보고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제166차 경제2분과위(2003. 6. 13) 제167차 경제2분과위(2003. 6. 19) 제170차 경제2분과위(2003. 7. 25) 제171차 경제2분과위(2003. 8. 5)	개선권고 1 개선권고 1	내용 2
⑪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70차 경제2분과위 (2003. 7. 25)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화 4
⑫ 제조·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 화학물질고시 개정안	제172차 경제2분과위 (2003.8.14)	원안의결 1	강화1
⑬ 오산화비소에대한관리기준고시 제정안	제172차 경제2분과위 (2003. 8. 14)	원안의결1	신설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⑭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및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제172차 경제2분과위 (2003. 8. 14)	원안의결 2 개선권고 3	강화 5
⑮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73차 경제2분과위 (2003. 8. 22)	원안의결 6 개선권고 3	강화 9
⑯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제175차 경제2분과위 (2003. 9. 5)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2
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안	제175차 경제2분과위 (2003. 9. 5) 제23차 규개위 (2003. 9. 19)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신설 6
⑱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안	제175차 경제2분과위 (2003. 9. 5) 제177차 경제2분과위 (2003. 9. 19) 제23차 규개위 (2003. 9. 19)	원안의결 7 개선권고 3 철회권고 3	신설 13
⑲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179차 경제2분과위 (2003. 10. 10)	원안의결 3	강화 3
⑳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80차 경제2분과위 (2003. 10. 17)	원안의결 2	강화 2
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185차 경제2분과위 (2003. 12. 5)	원안의결 8 개선권고 6 철회권고 1	신설 4 강화 11
㉒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제187차 경제2분과위 (2003. 12. 19)	원안의결 1 개선권고 3 철회권고 1	강화 3 내용 2
㉓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 제·개정안	제187차 경제2분과위 (2003. 12. 19)	개선권고 1	강화 1
계		철회권고 6 개선권고 43 원안의결 66	총 115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및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 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강화 2)

- 제조자 등의 포장방법, 재질기준 등을 규제함에 있어서, 단위제품보다 완화된 포장 공간비율을 적용하는 종합제품에서 1개 제품에 판매목적 이외의 샘플, 부속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제외함(강화)
 - ☞ 동 단서규정은 판매목적 이외의 제품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권고
 - 계란·베추리알·기타 식품을 포장할 때 PVC 재질 사용을 금지
 - ☞ PVC 재질 포장재의 사용규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부피가 큰 포장폐기물에 한해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PVC는 재활용 자체가 어렵고 매립·소각시 다이옥신, 중금속 등 환경 위해 물질이 배출되므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리필(refill)제품에 대한 재사용 용기 권장비율 확대
 - ☞ 소비자의 호응이 좋고 업계의 참여도가 높은 제품의 리필용기 사용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유용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줄이기 방법을 재질대체와 사용량 감량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가전제품 완충용 포장재 등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을 종래의 대형가전 제품에서 소형·경량제품으로 변경하여 연차별로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 이외의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함(강화)
 - ☞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회수·처리 및 재활용을 제외한 재질대체와 사용량 감량만을 “줄이기”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포장재를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사용량 감량에 해당하고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라는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줄이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개선권고
 - ☞ 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은 입법예고과정에서 부처협의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대상 범위를 당초보다 축소 조정하였고, 제품보호·안정성 등의 문제로 재질 대체가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를 검토·승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②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신설 4, 내용심사 1)

- 소음발생기계를 제작·수입하는 자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소음의 발생정도를 표시하는 소음도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 부착대상 소음발생기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신설)
 - ☞ 기존의 소음도 표지 부착권고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소음발생기계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음도 검사기관에서 소음도 검사를 받고 소음도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 ☞ 건설사업자에게 제품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소음발생기계로 인한 민원 및 환경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고, 저소음기계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 ☞ 다만, 동 규제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건설기계 제조자 및 건설사업자, 집행공무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 규제의 인지 및 준수, 효과성 등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경제2분과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함
- 소음발생기계 중 고소음으로 인하여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설기계를 특정소음발생기계로 지정하고, 동 기계에 대해서는 소음허용기준을 정하여, 이의 제조·수입자는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음도 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 받은 기계에 대한 소음도 검사 및 인증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작차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신설)
 - ☞ 현재 환경부에서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소음발생기계 지정대상을 주로 건설기계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미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장소음규제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새로운 소음기준을 설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의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인증제를 도입한 사례도 선진국 중 유럽에만 한정되고 있고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건설기계 제조기업의 도태 등이 우려되므로 동 인증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연구용역을 통한 면밀한 재

검토가 필요

⇒ 차기 분과위에서 재심의

⇒ 제158차 분과위시(3. 14) 환경부에서 규제심사 철회

- 소음도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소음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음발생기계 및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는 제작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소음도 표지제는 저소음기계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정되나 소음도 표지 미부착에 대한 제재로 제작 및 판매금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과도한 규제이고, 동법 개정안 제58조에 미부착에 대한 별도의 별칙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철회권고
- 소음도 검사기관의 자격 및 소음도 검사 시 검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신설)
 - ☞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소음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소음도 검사기관의 자격 및 운영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필요한 조치에 “저소음 발생기계의 사용”을 추가(내용심사)
 - ☞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조치내용에 이용 가능한 저소음기계가 있는 경우 이의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③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안(신설 5)

-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질과 크기 등을 조정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오염진행상황평가,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명령 등 세부사항을 추가(신설)
 - ☞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완화하고, 건교부에서 관할하는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명령의 세부사항

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시설과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신설)
 -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신설로 규제대상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주기를 완화하는 것은 측정의무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타당한 조치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작성을 지하수관련 조사기관 및 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관리자가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함(신설)
 - ☞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목표수질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 측정 중에서 오염되지 않은 곳의 수질측정치로 정하는 기존 수질배출허용기준 개선명령에 비해 정화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화명령을 하는 수질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 지하수의 수질검사 항목을 15개에서 20개로 추가하고, 주기 검사주기는 완화함(신설)
 - ☞ 지하수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오염물질을 수질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수질검사주기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지하수정화업 등록 및 등록변경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자산평가액보고서, 인력보유현황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신설)
 - ☞ 지하수정화업 등록 및 등록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법인등기부 등본, 자산평가보고서는 자본이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

④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골프장에서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프장의 관리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비영리골프장에 대하여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강화)

- ☞ 현재 비영리골프장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체육시설로서 관리되고 있는 군부대골프장이 금번 개정규제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조항을 설정하여 군부대골프장도 규제대상에 포함됨을 분명히 할 것을 권고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강화)
 - ☞ 공공수역으로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 수질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준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명령이행보고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계속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종전에는 1, 2차는 개선명령, 3차는 조업정지 10일, 4차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강화하여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20일, 4차는 조업정지 30일로 변경함(강화)
 -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관리자의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행정처분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업정지 기간을 과다하게 부과하기보다는 종전 규정대로 하되 2차 개선명령을 5일간의 조업정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

⑤ 습지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내용심사 1)

- 습지주변 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등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행위승인 신청서에 다음 구비서류를 추가(강화)
 -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 ☞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는 이미 행위승인 신청서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서류를 징수하지 않고 기존의 신청서 양식을 개선하여 활용할 것을 개선권고
 - ※ ‘규칙안 제8조의 2’의 경우도 동일하게 개선
-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습지와 습지보전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근거 신설(습

지보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이용료 금액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내용심사)

- ☞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이용료 징수근거 신설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이용료의 산정·징수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용료 징수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⑥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강화 3)

- 특별대책지역 내 설치제한시설을 고체 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1천톤 이상인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에 한함)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로 변경(강화)
 - ☞ 같은 발열량을 얻기 위해 각각의 연료(천연가스, 등유, 무연탄)를 연소시킬 경우 발생하는 총 오염물질의 양이 연료별로 상당한 괴리가 있으므로 규제기준을 직접 대상물질인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사업장 구분기준을 연료사용량에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변경(강화)
 - ☞ 사업장 구분기준을 고체연료환산사용량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각 사업장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고철 또는 곡물 하역업을 “고철·곡물·사료·분체상 물질 하역·보관업”으로 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 “사료·곡물·고철” 운송업을 추가하여 비산먼지 규제대상범위를 확대(강화)
 -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유독 운송업에 대해서는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 등”으로 운송품목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대상이 임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규제대상범위 확대와 아울러 운송품목 기재방식을 열거식으로 변경(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운송업)하고, 분체상 물질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광석으로 구체화하며 또한 규제대상업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6개월 정도 유예하는 것을 개선권고

⑦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강화 1)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대상 추가 등(강화)
 - ☞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7,500m²(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m²)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상의 호소수질보전구역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호소수질보전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 시행할 것을 개선권고

⑧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강화5, 내용심사2)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지역도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대상범위에 추가(강화)
 - ☞ 생활오수에 대한 적정처리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요청한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은 적정한 수질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역주민의 협의(동의)가 전제된 것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건물을 건축연면적 50% 이상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새로이 설치되는 건물의 경우” 등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범위에 추가(강화)
 - ☞ 수질관리차원에서 건물의 대규모 증축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소규모로 주택 등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치대상을 축소하도록 개선권고
-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설치·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고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기간을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개선기간을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 재활용시설 개선명령 제도 신설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개선기간 및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퇴비저장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강화)
 - ☞ 생산된 축분 퇴비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저장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설치허가 시 저장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 서류의 제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축산분뇨의 분리·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설치를 명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 법에서 위임한 축산분뇨의 분리·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선명령 이행기간 및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는 크기별로 1개(1m³ 이하에서 1개, 1m³ 초과~5m³ 미만 중 1개, 5m³ 초과~30m³ 미만 중 1개, 30m³ 이상에서 1개, 실제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은 서면검사)만 검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및 설계유입 BOD농도별로 상이한 경우에도 모두 실제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재질검사 대상 항목에 ‘본체의 제조방법별 재질’을 추가함(강화)
 - ☞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형태와 규격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개정사항 중 “형태, 규격”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규격”으로 개념을 통일하여 운영할 것을 개선권고
- 법률에서 신설된 처벌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기준이 되는 처리용량을 세분화하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해당 시설의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강화)
 - ☞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처리용량과 처리대상인원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설에는 불합리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시설의 규모 및 사용인원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⑨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5, 내용심사3)

- 오수처리시설을 등록된 제품으로 설치·변경 신고 시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 설계 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유량 조정조를 6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에서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함(1일 처리용량 100m³ 이상에 대해서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강화)
 - ☞ 원칙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된 제품으로 설치·변경 신고 시에는 설계도서 제출 의무가 없어 준공 확인 시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량조정조를 12시간 유량 저류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며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내부의 시간조절이 가능하므로 10시간 이상 저류규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등록된 단독정화조로 설치·변경 신고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판매할 때 교부하는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함(강화)
 - ☞ 원칙적으로 단독정화조 설치 및 변경 신고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된 제품으로 설치·변경 신고시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 준공 확인시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신청시 설계·시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제작 의뢰하는 제품에 대하여 재질검사기관의 재질검사성적서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을 추가로 제출토록 함(강화)
 - ☞ 제작의뢰품에 대한 재질검증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미리 재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공사과정을 현장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진조작 등이 가능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현장검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권고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규정에 고장난 설비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기준 신설(강화)
 - ☞ 고장난 설비 등을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전기설비가 되어있는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와 고장난 설비를 방치하는 행위를 구분

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분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등이 비정상운동을 신고한 이후 등록된 제품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설명서만 제출하던 것을,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함(강화)
 - ☞ 원칙적으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역에 관한 설계 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된 제품으로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의 상호·등록번호·처리공법 및 호칭에 대한 설명서만 제출하여 설계도면이 없어 실제로 개선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오수처리시설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구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공 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사용개시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운영기구 설치신고를 하도록 변경(강화)
 - ☞ 현행법에서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구설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자를 지정하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대표자 지정기한(운영기구설치 포함)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 적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또는 사용개시한 날로부터 50일 이내로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재활용 신고대상 범위를 1일 1톤 이상에서 1일 400kg 이상으로 변경하고,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시 퇴비저장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퇴비저장설치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강화)
 - ☞ 축산폐수의 재활용 신고기준인 축산폐수처리량과 축산업자의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고 축산폐수 적정처리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재활용 신고시 생산된 퇴비의 최종 처분 시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한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는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은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며 확인결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

을 경우에는 재차 개선명령을 하도록 함(강화)

- ☞ 재활용시설 개선명령 제도 신설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이행보고서 서식과 이행상태 확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시 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
-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중 다른 처리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사육하는 가축의 축종 및 사육두수의 변경 등으로 축산폐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사육하는 가축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변경함(강화)
 - ☞ 허가받은 사항 중 허가의 근본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허가(신고)를 받도록 하여 적정한 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변경 등을 변경허가(신고)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변경허가 사항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와 변경신고 사항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중 다른 처리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의 구별이 모호하고, 용어의 개념이 불분명하므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 시 축사의 구조가 축분과 액체폐수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일 경우는 분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함(내용심사)
 - ☞ 축산분뇨의 분리·저장시설의 적절한 설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설치기준이 필요하고, 설치기준의 내용은 분리·저장시설로써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하였으므로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퇴비저장시설은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퇴비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을 추가로 규정함(강화)
 - ☞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퇴비는 판매·시비 등 최종 처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퇴비저장시설이 없어 퇴비를 축사주변 및 농경지에 야적하여 놓을 경우 우기시 비점오염화 및 침출수 유출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적정한 보관시

설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생산된 액비를 초지 또는 농경지 중 일부면적에 과도하게 살포하여 비점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전체 면적에 고르게 살포하도록 하고,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처분내역에 관한 사항을 관리일지에 기재하고 3년 간 보관하도록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까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생산된 액비·퇴비의 관리기준을 추가로 보완함(강화)
 - ☞ 액비의 施肥방법, 퇴비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퇴비화방법 또는 액비화 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퇴비와 액비의 생산·처리 등의 관리일지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규제로 판단되나, 축산폐수의 생산·처분내역에 대한 관리일지는 정기지도 점검주기와 일치시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축산농가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것을 개선권고
- 법에서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사업계획 검토제도’ 도입에 따라 분뇨 등 관련영업 사업계획서 서식과 제출기관을 정함(내용심사)
 - ☞ 법에서 위임한 대로 사업계획서 서식 및 제출기관 등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경우 두께기준을 강화하고, 시운전 기간 중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 부여(강화)
 - ☞ 제조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등록제품과 동일한 품질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작 의뢰한 제품도 정확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전요령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육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시운전기간 이후의 기술자문과 구분하기 위하여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권고
- 성능검사 신청시 수질분석결과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시료채취 신청 전까지 성능검사용으로 설치된 제품의 실제 수질분석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단독정화조의 성능검사 기간을 5일에서 5주로 확대하고 검사주기를 일 1회에서 주 1회로 조정하며, 폴리에틸렌(PE)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재질검사 방법을 마련(강화)

- ☞ 단독정화조의 성능검사 기간을 5일에서 5주로 확대하고 검사주기를 일 1회에서 주 1회로 조정하는 것은 좀더 정확한 측정값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폴리에틸렌(PE)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재질검사 방법을 도입한 것은 오수처리시설 재질에 폴리에틸렌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실제 실시하는 성능검사과정에서 8회(단독정화조는 5회)에 걸친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므로 시운전기간의 실험데이터는 적합 여부에 대한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한 참고자료의 성격이므로 제출의무를 부여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
- 폴리에틸렌(PE) 제품에 대한 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자체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제조업자가 자신의 등록제품으로 자체 시공하는 경우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제조업자가 설계·시공업자의 제작의뢰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를 제한함(강화)
 - ☞ 제조업자가 자신의 등록제품으로 자체 시공하는 경우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조업자가 설계·시공업자의 제작의뢰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를 등록된 제품의 처리용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제품품질 유지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폴리에틸렌 재질의 오수처리시설 제품의 경우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오수처리시설 제품에 비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제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체검사 주기 및 횟수를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 오수처리시설 등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처리용량 5m³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도 두께기준을 적용하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경우 내부 칸막이, 맨홀부에 대한 두께기준을 강화하며 품질표시내용에 사용가능지역(수변구역, 기타지역), 설계 유입 BOD 농도, 제조일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추가하도록 하며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함(강화)
 - ☞ 처리용량 5m³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도 두께기준을 적용하고 내부 칸막이·맨홀부에 대한 두께기준을 마련하고, 각형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두께 적용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흡한 점 보완과 재질검사 시 검사된 제품과 다르게 생산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제품의 품질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품질표시내용을 보장하는 것은 건축주 및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설계·시공업자의 불법 제조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는 영업정지 6월, 2차는 등록취소로 새로 규정(강화)
- ☞ 설계·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불법제조·판매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형평성 있는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관련(내용심사 2)

(i) 제166차 경제2분과위원회(2003. 6. 13) : 대체 도시락용기 가격동향보고

- 보고배경
 - 2002. 12. 12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회 용품의 범위 및 사용억제'에 대한 개정안을 수정의결
 - 시행시기가 촉박하고 또한 규제가 강화되는 조항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간 시행을 유예(2003. 7. 1 시행)
 - 의결부대조건 : 환경부는 유예기간 만료 1개월 전(2003. 5. 31)까지 펄프몰드 등 대체재질 도시락 용기의 가격동향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경제2분과위원회는 환경부의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유예기간의 종료 여부 등을 결정(연지05090-34호, 2002. 12. 17)
- 회의결과
 - 차기 분과위에서 관련업체(한솔도시락, 에코스텍) 대표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계속 논의하기로 함

(ii) 제167차 경제2분과위원회(2003. 6. 19) : 대체 도시락용기 가격동향보고

- 회의결과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2 비고2의 단서조항 삭제권고
-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동안의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에 대한 대체용기의 가격과 품질 동향에 대한 환경부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품질 면에서는 약간의 개선이 있었으나, 가격 면에서는 합성수지 용기의 최고 1.5배 수준(참조:주1)으로 제154차 규제개

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의 의결부대조건(유예기간종결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비고2의 단서조항(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의 삭제를 권고함

※ 주1 : 시장의 실거래 가격이 아닌 대량판매가 가능한 경우의 납품가격임

- 또한 경제2분과위원회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에 대한 사용억제가 환경부의 정책방향이라는 점도 인정하나, 직접적인 행위규제(사용금지)보다는 경제적 정책수단을 병행하여 자발적으로 합성수지 용기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음
-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2003. 7.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생산자 책임재활용품목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 다양하고 값싼 대체용기의 개발을 촉진·장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예: 용자금, 보조금 등 지원)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함

(iii) 제170차 경제2분과위원회(2003. 7. 25)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 보고배경

- 2003. 6. 19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는 대체용기 가격이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가격대비 최고 1.5배로 위원회의 의결부대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음식점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조항의 삭제를 권고

• 회의결과

- 환경부에서 자료를 보완하는 대로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사

(iv) 제171차 경제2분과위원회(2003. 8. 5)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 회의결과

- 제167차 경제2분과위에서 의결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비고2의 단서조항 삭제권고를 정책추진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철회하되, 대체용기 사용에 대한 예외조항(국물 등 수분함유 내용물이 포함된 경우)

을 법제처와 협의하여 동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거나 동 시행규칙에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고시로 명문화할 것을 개선권고 함

- 또한, 환경부는 6개월 이내에 컵라면 등 유사 합성수지용기의 사용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합성수지 폐기물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2004년 3월까지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규제이행실태를 조사한 후 동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개선권고 함

⑪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이 첨가제 명목으로 제조·유통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첨가제의 최대 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설정하고, 0.55ℓ (휘발유용) 또는 2ℓ (경유용) 이하의 용기에 담아 제조하도록 하며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경우 첨가제 정의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강화)
 - ☞ 첨가제의 최대 첨가한도 설정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소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이 첨가제 명목으로 불법 제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다만, 용기크기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규제 시행이후 1년 이내에 첨가제 제조업체 및 사용자,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인지 및 준수, 효과성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보고
- 정밀검사 미 이행자에 대하여 정밀검사기간 만료 후 90일 경과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정밀검사 비대상지역에서 대상지역으로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며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일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검사방법 준수, 검사장비 관리, 기술인력의 안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장비능력에 가스누출 감지기를 추가(강화)
 -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에 대한 규제강화는 환경 위해 방지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안전 및 보호장구 구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에관한규칙에 규정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도록 권고
-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업무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당해 시설 및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보고·검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기관을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정밀검사기관의 부실·부정검사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강화)
- ☞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검사기관이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⑫ 제조·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화학물질고시 개정안(강화 1)

- “수산화트리알킬주석류”의 선박 방오(防汚)도료용으로서의 제조·수입·사용금지대상에 외향선 및 원양어선을 추가하고 오산화비소의 사용범위를 “공산품제조 첨가용”에서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으로 구체화(강화)
- ☞ 수산화트리알킬주석류 및 오산화비소는 국제적으로 자연환경 및 인간에게 미치는 위해성이 인정된 물질로서 그 사용범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⑬ 오산화비소에대한관리기준고시 제정안(신설 1)

- 오산화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관리기준 마련(신설)
 - 외부유출방지를 위하여 방부처리시설 주위에 방류벽 설치, 비침투성 바닥 및 지붕설치 등 취급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
 - 오산화비소 노출우려 작업수행 시 보호장갑 착용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오산화비소 누출·유출 시 대응방법, 작업장 실정에 맞는 응급 조치요령에 관한 사항
 - 오산화비소방부제를 취급하는 자의 인체건강보호를 위한 취급 시 유의사항 주지 의무에 관한 사항

- ☞ 오산화비소는 액상으로 사용되어 외부 노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발암성·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이 강하여 누출·유출사고 발생 시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고, 사용업체 대부분 소량을 취급 ‘유독물 관리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이 큰 오산화비소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유독물의 효과적인 관리는 물론 인체 및 환경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⑭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및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개정안(강화 5)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1) 도로 건설시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신설구간길이의 합/4km)와 (확장구간길이의 합/10km)의 합이 1 이상인 것, 2) 임도중 노선 총 길이가 8km 이상인 것과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설치되는 것, 3)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4) 동일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사업면적/대상사업의 최소면적)과 (해당사업면적/대상사업의 최소면적)의 합이 1 이상인 것, 5)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역 내에서 최소 대상사업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현저하여 시·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통지한 사업을 포함함(강화)
-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역 내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중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현저하여 시·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사업을 평가대상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평가대상사업을 정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행 법 규정상 개발사업 면적이 최소 협의대상 면적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조례로 시·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기 규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조」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

으로 개정안·15㎡ 이상의 복합단지”를 “20㎡ 이상의 복합단지로 개선권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1)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등 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출내역을 추가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 양식의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함(강화)
 - ☞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서초안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토록 하고 영향평가서 초안에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내용과 그 반영여부 및 미반영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출내역을 평가서 초안에 포함하여 평가서의 부실 작성을 방지토록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된 평가서초안 제도의 취지(법 제6조,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를 권고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추가 오염저감방안 등을 마련하여 협의기관장(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사업에 1) 공정·공법의 변경으로 오염물질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 토지이용계획이 15% 이상 변경되는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 → 환경·재해영향평가분야도 포함)를 추가함(강화)
 -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업으로 오염물질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평가협의 완료 후 토지이용계획이 15%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협의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2003. 1. 1일부터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총 질소와 총 인을 추가토록 하였으나(2000. 12. 30) 부담금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질환경보전법의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고, 총 질소와 총 인에 대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을 변경(2003. 1. 1일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가 통보된 사업부터 적용 → 2003. 1. 1일부터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가 통보된 사업도 적용)함(강화)
 - ☞ 총 질소·총 인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초과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을 2003. 1. 1일부터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가 통보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시행령 공포 이후 협의결과가 통보된 사업부터 부과할 것을 개선권고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공사완료 시까지 또는 공사 완료 후 5년까지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조사기간을 공사완료 시까지,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공사 완료 후 5년까지로 세분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조사기간을 조정함(강화)
 - ☞ 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환경영향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을 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신중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⑮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9)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관련, 영흥도 지역(인천광역시 소재)은 청정연료 의무 사용지역이나 이를 완화하여 영흥화력발전소의 사용연료선택권을 확대하는 대신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행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강화)
 - ☞ 영흥 화력발전소의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건설 중인 1·2호기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3·4호기에 대해 유연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 1·2호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3·4호기의 유연탄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1·2호기뿐 아니라 3·4호기의 배출허용기준도 정하는 동시에,
 - 1·2호기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점도 후속기(3호기)가 최초 가동되는 시점(2008년 예정)부터 적용할 것을 개선권고
- 법률에서 위임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강화)
 -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비산먼지발생 신고 대상사업에 레미콘제조업, 건축폐기물처리업,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함)을 추가하고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강화)
 - 공사장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은 3.0m 이상 방진벽 설치
 - 연간 2만톤 이상 선박 건조 조선소는 비산먼지 저감계획 수립·시행
 - 건물 내부공사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내화피복작업, 돌출면 고르기 및 철구조물의 야외도장 시 방진막 등 설치
 - 건물해체 작업시 방진막을 설치하고 작업 시 살수 등 비산먼지발생 최소화
 - ☞ 비산먼지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레미콘제조업은 이미 규제대상인 콘크리트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
- 법률 개정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변경신고의 대상·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을 억제(강화)
 - 변경신고의 대상을 ①사업장의 명칭 변경 ②대표자 변경 ③배출시설의 합계 또는 누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④배출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 변경신고 시기를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③ ④인 경우 변경 전에 하도록 변경신고의 절차를 규정
 - ☞ 법 위임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환경 위해성이 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오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06. 1월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을 강화(강화)
 - 휘발유: 황 함량(130ppm→50ppm), 증기압(70kPa→65kPa) 등의 품질기준 강화
 - 경유: 황 함량기준을 강화(430ppm→30ppm)하고, 다고리방향족·윤활성 기준을 신설
 - ☞ 전문기관(KEI 등)의 용역 및 관련업체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국내 대기질 여건 및

선진국의 추세 등을 반영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자동차 사용에 따른 오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고, 또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신청 구비서류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항목을 추가하고 인증시험 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작동여부를 시험토록 함(강화)

- 휘발유·가스·경유자동차: 2006년부터 HC, CO, PM 등에 대해 현행기준보다 13~80% 강화

- 건설기계: 2004년부터 오염기여율이 높고 등록대수가 많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등 6종) 제작차 인증

- ☞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전문기관(KIMM)의 용역 및 자동차제작사와의 협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토대로 현재 선진국에 비해 3~5년 뒤져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OBD(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화는 선진국의 경우 90년대 중반부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도 수출용자동차에 대해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내 판매자동차에 대해 OBD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중·대형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구조변경(휘발유 → LPG) 및 차령연장(택시 : 4년 → 1년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무부하(정지상태)에서 부하(주행상태)로 전환(강화)

- ☞ 구조변경 및 차령연장 임시검사를 하는 경우, 부하검사방법에 의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중·대형 자동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근거를 소형자동차의 매연 부적합율과 유사하게 만드는데 두는 것은 적발을 위한 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근거로 산정할 것을 권고

→ 환경부 동의 및 수정제안

(현행) 40~80% → (개정안) 30~50% → (수정안) 30~50%

※ 중·대형 자동차의 매연 배출량 비교시험 재 실시 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재조정

- 법률에서 위임된 환경관리인 교육에 대하여 최초 교육시기를 임명 후 1년 이내로 정함(강화)

- ☞ 신규 환경관리인에 대한 최초 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한 것은 환경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행정처분 기준 설정(강화)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가 공정 또는 연료를 변경하고도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1차 : 경고 또는 조업정지, 2차 : 허가 취소 또는 폐쇄)
 -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처분 기준 신설(1차 : 경고 , 2차 : 허가 취소 또는 폐쇄)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개선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종전에는 1차 및 2차 계속 개선명령 조치만을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2차부터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에 따라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경고 신설
-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른 차등 처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⑩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신설 1, 강화2)

- 폐수 무방류 시설의 정의, 설치·운영기준 근거, 허가 취소 및 폐쇄, 폐수 무방류 시설 가동개시 신고 시 확인 등의 내용을 신설(신설)
- ☞ 폐수 무방류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기준 등을 신설하여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적·경제적인 면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배출시설 제한지역에 폐수 무방류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
- 현재 허가 대상시설 중 수계 관리에 민감한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강화하여 폐수배출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사전적으로 예방(강화)
- ☞ 허가대상 시설 중 수계관리에 민감한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의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사전 전문가 검토 및 조건부허가제도 도입)은 입지제한지역에 입지 할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일반배출시설에 대해서 까지 허가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의 각종 입지제한규제, 총량규제, 배출허용기준 등의 중층적 규제가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배출시설업체가 승인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허가를 받아 시설을 운용 중인 업체도 조건부허가로 변경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므로 삭제를 권고

- 현재 산업폐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조사(2002. 11~2003. 10)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동 규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질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수질환경보전법 개정(2004년) 시 경제2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상정

- 유류·유독물·지정폐기물·농약 등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송중인 유해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면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까지 확대(강화)
 - ☞ 낙동강·금강·영산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의 수변구역에 대하여도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위법령에서 통행제한 도로지정 시 우회도로 등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노선 및 구간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

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정안(신설 6)

- 기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는 야생조수에 대해서만 보호구역을 지정토록 하였으나 제정법에서는 양서류, 파충류 및 멸종위기·보호 야생식물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포획 채취로 인해 많은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기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는 야생조수(조류, 포유류)에 대해서만 포획을 금지하고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제정안에서는 양서류, 파충류에 대해서도 포획을 금지하고 수출입을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신설)
 - ☞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및 수출입 허가대상을 조수에서 양서류, 파충류로 확대하는 것은 양서류, 파충류의 무분별한 포획과 국외반출방지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

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서류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보고 및 검사는 야생동식물의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 인허가 사항의 이행유무 등 관리감독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기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는 불법 포획한 조수 등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규제대상범위를 양서·파충류를 추가하여 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하고, 취득행위에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불법 포획 야생동물의 취득·양여 등의 금지대상을 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멸종 위기종 등 밀렵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종으로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한정하여 처벌하도록 권고. 또한,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인줄 모르고 먹는 경우 등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할 것을 개선권고

-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한 자에 대하여 밀렵·밀거래 이익의 5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함(신설)

☞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한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밀렵·밀거래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밀렵·밀거래 이익의 5~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거래이익보다는 거래가격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범위 역시 5~10배는 과도하므로 2~5배로 하향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들어간 자, 공무원의 출입 검사업무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해 10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신설)

☞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을 근간으

로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 중 벌칙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 집행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안(신설 13)

-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차년도 배출량에서 삭감토록 하며, 사업장의 배출총량 확인을 위해 측정기기(TMS:Telemetry System)의 부착과 측정결과의 기록·보고를 의무화(신설)
 - ☞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은 현재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점, 농도 규제만으로는 환경오염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다만, 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 및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제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신설)
 - ☞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총량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총량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총량 초과부과금에서 감액할 것을 개선 권고
- 정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자에 대해 저공해 자동차의 연간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보유 자동차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토록 함(신설)
 - ☞ 민간 사업자에게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제를 권고하고 저공해자동차 공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제를 권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초과하는 경유자동차(특정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현행 매연기준 25~40%)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토록 함(신설)

- ☞ 노후 자동차는 운행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노후자동차는 신차에 비해 NO_x, PM10 등을 2~7배 배출)을 감안할 때,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하는 자는 당해 장치 또는 부품이 보증기간 동안 오염물질 저감효율이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인증을 받도록 함(신설)
 - ☞ 특정 자동차에 부착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의 보호는 물론, 오염물질 저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미이행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특정자동차 소유자 등이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저공해 자동차 구매의무 미이행자 등에 대해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부당결부(不當結付)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규위반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있으므로, 등록 거부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 권고
-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악화가 예상되거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유사조항이 기 규정되어 있고, 필요시 동 규정을 활용하면 되므로 삭제를 권고
- 수도권내에서 공급·판매·사용되는 환경친화형 도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판매 등에 대한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함(신설)
 - ☞ VOC(휘발성유기화합물)는 오존을 유발할 뿐 아니라,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이 큰 물질로서, 수도권에 공급·판매·사용되는 환경친화형 도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VOC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수도권지역에서 주유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유기에 VOC 회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신설)
 - ☞ 수도권지역의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VOC는 전체 배출량의 일부(3%)에 불과한데 반

- 해, 회수장치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510~1,200억)될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동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수도권지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함(신설)
 - ☞ 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형 폐기물 소각시설은 총량관리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의 중복 규제를 받으므로 동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환경부령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운영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설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이행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기능 수행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배출권 이전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특정자동차 정밀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친환경도료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대상에 먹는 물 분야의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부속기기,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를 추가함(강화)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에 탁도 및 자동측정장비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수돗물 중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안전제거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수질측정 결과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먹는 물 분야의 탁도 및 잔류염소자동측정기가 새로이 정도검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보유기준을 정하고 검사대행자 자격기준과 관련, 대기분야의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의 시설 및 장비기준 중 배출가스유량측정기의 정도검사설비를 추가함(강화)
 - ☞ 개정법률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13조제1항에 따라 탁도,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기가 새로이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필요하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인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에 포함되는 배출가스유량측정기의 신뢰성확보방안의 필요성이 제기(2002년 국정감사)됨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측정대업행자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신설(강화)
 - ☞ 법 집행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다만, 행정처분대상범위를 법제처와 협의하여 구체화할 것을 개선권고

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 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에 포함하여 동 지역내의 공사장·확성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며,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중 공사장의 소음·진동기준치를 각각 5dB 강화하되 관련업계에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5년 후부터 실시토록 함(강화)
 - 소음규제기준(dB) : 55-75 이하 → 50-70 이하
 - 진동규제기준(dB) : 60-70 이하 → 55-65 이하
- ☞ 산업단지 내의 주거 및 상업 지역을 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있

고, 현행 규제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정당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를 추가함(강화)
 - ☞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대표자 변경 및 배출시설 폐쇄의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조항을 준용하여 설정되는 것으로 행정처분 등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음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신설4, 강화 11)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신규화학물질 등의 규제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자진확인을 한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에는 관계기관(관세청)에 판매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구매자나 제공받고자하는 자에게 자진확인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며, 외국인 중 화학물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고자하는 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제4항에서 “화학물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고자하는 외국인” 규정은 제1항 “화학물질의 제조자, 수입자(위탁받은 자 포함)”가 반드시 내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로 외국인을 구분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고 향후 법해석 및 적용상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제4항을 삭제토록 권고하며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유해성심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질이 면제대상(대통령령으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 중 신규화학물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규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결과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내용을 제공하도록 함(강화)
 - ☞ 제2항 “화학물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고자 하는 외국인” 규정은 제1항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내국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므로 별도로 외국인을 구별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고, 향후 법 해석 및 적용 상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제2항을 삭제토록 권고하며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

-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 중에서 취급제한 유독물을 지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유해성 평가 결과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큰 물질 및 국제 협약에 의하여 제조·수입·사용이 제한되는 물질 등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도록 하고 취급제한 유독물을 제조·수입·사용하는 경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제한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시 허가를 받도록 하며 취급제한에서 제외되는 물질(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제조·수입·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제외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함(강화)
- ☞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중에서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여 그 제조·수입·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 중 제1호의 유해성 평가, 제2호의 국제기구 등에서 판명, 제3호 국제협약 등에 규정 등은 객관적이고 명확하나 제4호 “심각한 위해 우려의 경우”에 취급제한물질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객관성·명확성이 낮은 규제이며, 유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인정하는 제1호와 비교 시 상충되어 삭제토록 개선권고
- 일정 수량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된 시설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무등록 시설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그 유독물의 제조, 보관·저장 등을 정지하거나 당해 취급시설의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독물의 보관·저장, 운반 등 취급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신설)
- ☞ 유독물 제조의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유독물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동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유독물의 유해성을 감안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동법 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제30조제1항및제2항에서 유독물 제조자에 대해서는 지정수량에 관계없이 등록된 시설을 사용하도록 개선권고하며, 무등록 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위해 유독물의 보관·저장, 운반 등 취급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연간 2천톤 이상의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자에게 자체방재계획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재계획을 제출하고, 사고대비물질 중에서 사고 시 피해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대통령령이 지정)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주민대응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자체방재계획 및 주민대응계획을 제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자체방재계획 및 주민대응계획이 사고예방과 인근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자체방재계획과 주민대응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금번심사에서 철회토록 권고하고 환경부는 제기된 문제점 등을 참고로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동법률을 재개정토록 권고하며 제2조 7호(사고대비물질의 정의) 및 제43조(사고대비물질 지정 등)는 원안대로 의결
- 유해성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된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유해성심사 제도의 이행을 담보하고 불법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위해 예방을 위해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독성시험 수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험기관은 지정 받은 시험항목, 시험항목별 소요 일수 및 시험비용 등을 공고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강화)
 - ☞ 제15조 제3항의 지정된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경우 권고사항으로 규정함이 합리적이므로 철회를 권고
- 제조·수입·사용허가를 받거나 취급제한에서 제외됨을 확인 받은 취급제한물질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하여 허가 또는 확인 받은 내역을 제공하도록 함(신설)
 - ☞ 취급제한물질의 불법 용도로의 사용, 부적정 관리로 인한 사고 등 방지를 위해 취급제한물질을 실제 취급하는 자에 대해 해당 물질의 허용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기존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수출신고제도는 폐지하되, 취급제한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강화)

- ☞ 취급제한물질에 대하여는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 확인, 수출통보서 및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등 관련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출절차를 신고에서 승인으로 강화하는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정기·수시검사 대상시설을 기존의 가스상유독물 제조·저장·운반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로 확대하고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안전상의 문제 또는 환경으로의 누출이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는 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안전진단을 명 받은 안전취급시설 설치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며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강화)
- ☞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취급시설 설치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바 건축물의 소유자와 취급시설 설치자가 다른 경우(임대차 관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협조 의무를 강제하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은 동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의하여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경매·매각 등에 의하여 취급시설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강화)
- ☞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의 각종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수·합병 등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진확인을 한 자, 유해성심사를 면제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 등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유독물영업, 관찰물질 제조·수입 등에 대한 연간실적보고의 근거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이동(강화)
- ☞ 사업장에 출입하여 법령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관리·감독기능 수행 및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한 의 필수 불가결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의 자진확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관찰물질의 신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강화)
 - ☞ 화학물질 자진확인제도의 전면도입, 유독물 및 관찰물질 영업신고제도 완화 등으로 화학물질 유통실태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관련서류를 5년간 보존토록 하는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강화)
 - ☞ 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타 환경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자진확인내용 통지, 유해성심사 결과 제공 등 신설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강화)
 - ☞ 유해물질의 부적정 관리 또는 불법 유통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유해물질 취급에는 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하는 바, 대기·수질환경보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의 과태료 부과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㉒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강화 3, 내용심사 2)

-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은 아니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범위에 포함하고 일련의 공사·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와 작업을 분류하여 규정 (내용심사)
 - ☞ 안 제2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3호의 반복에 불과하므로 삭제권고하고 일련의 공사·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 및 건설공사 등 사업장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다만, 제4호·일련의 작업·을·제5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 공사 및 작업·으로 수정토록 권고
- 단순한 기계적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전의

- 폐기물 종류로 분류하고 소각대상 폐기물과 매립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소각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소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각·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은 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화 (내용심사)
- ☞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변경의 합리성이 인정되나 동 규제 변경사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의 기술사항이 복잡하여 안 제6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을 “다만, 기계적 처리시설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그 성상이 중간처리이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이전의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 ☞ “소각이 어렵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상황은 일선행정기관의 폐기물 담당부서의 인력 및 업무량 등과 형식적 요식행위와 인정여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등을 감안 시 현실적으로 적절한 규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규제변경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철회토록 권고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추진을 위해, 지정폐기물 연간 2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대상을 사업장일반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으로 확대 (강화)
 - ☞ 현재 시행중인 지정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감량효과와 지정 폐기물외의 폐기물에 대한 감량화제도 확대의 필요성도 인정하더라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3년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확대 및 존속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칙 별표3 2호 나목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2006. 12. 31까지)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선권고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수집·운반·처리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공동운영기구의 가입 사업자에 대해서도 배출사업장에서의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 처리담당자 교육대상에 포함(강화)
 - ☞ 세탁소, 카센터 등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대책마련을 통해 유해폐기물을 하수구 등에 불법처리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유일한 해결책이 반드시 공동운영기구 가입자에 대한 교육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동운영기구 구성·운영 주체가 대부분 세

탁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나 당해 협회 지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회가 회원사에
게 폐기물적법처리 안내 또는 공동운영기구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운영기구에 가
입한 사업장에 대한 자율 교육 실시 등 다른 규제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철회
토록 권고

- 보증보험 갱신 등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시킴에 따라 이를 삭
제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보증기간을 보험기간에 60일
을 가산한 기간으로 함(강화)

☞ 규제강화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㉓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고시 제·개정안(강화 1)

-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의 상수원 및 취수시설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의 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
한 지역의 범위를 확대(강화)

☞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시설과 관련하여 폐수배출시설 중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은
입지제한 예외시설에 추가할 것을 권고

*집필자 : 김종민 사무관(T.3703-3946, kjmin@opc.go.kr)

제13절 _ 해양수산분야

1. 해양수산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 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 기르는 어업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32개 법령 및 하위규정에 대한 신설 19건, 강화 34건, 내용심사 25건 등 총 7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8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1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6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해양수산부의 2003년 총 신설규제는 19건임

해양수산부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56차 경제2분과위 (2003. 2. 5)	원안의결 2	강화1 내용1
② 총허용어획량적용대상어업의종류등의 지정에관한고시 개정안	제156차 경제2분과위 (2003. 2. 5)	원안의결 1	강화1
③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57차 경제2분과위 (2003. 2. 28)	원안의결 2	강화1 내용1
④ 선박의구획기준(고시) 개정안	제157차 경제2분과위 (2003. 2. 28)	원안의결 1	강화1
⑤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고시) 제정안	제61차 경제2분과위 (2003. 5. 2)	원안의결 1	내용1
⑥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61차 경제2분과위 (2003. 5. 2)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신설 1 내용 6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제162차 경제2분과위 (2003. 5. 9) 제16차 규개위 (2003. 5. 16)	원안의결 11	신설 8 강화 2 내용 1
⑧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개정안	제163차 경제2분과위 (2003. 5. 23)	원안의결 1	강화1
⑨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63차 경제2분과위 (2003. 5. 23)	원안의결 2	강화1 내용1
⑩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 고시 개정안	제163차 경제2분과위 (2003. 5. 23)	원안의결 1	강화1
⑪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	제164차 경제2분과위 (2003. 5. 30)	개선권고 1	강화1
⑫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제165차 경제2분과위 (2003. 6. 4)	원안의결 1	강화1
⑬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제166차 경제2분과위 (2003. 6. 13)	원안의결 6 개선권고 3	강화 9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억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⑭ 잠수선검사기준(고시) 개정안	제168차 경제2분과위 (2003. 7. 14)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1
⑮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 과절차에관한규칙 개정안	제172차 경제2분과위 (2003. 8. 14)	개선권고 1	강화1
⑯ 여객선운항관리규칙 개정안	제173차 경제2분과위 (2003. 8. 22)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⑰ 연안유조선의적정선복량유지를위한선박투 입제한고시 제정안	제173차 경제2분과위 (2003. 8. 22)	원안의결 1	강화1
⑱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177차 경제2분과위 (2003. 9. 19)	원안의결 1	신설 1
⑲ 수산업협동조합의구 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 령 제정안	제177차 경제2분과위 (2003. 9. 19)	원안의결 3	신설 1 내용 2
⑳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고시) 제정안	제178차 경제2분과위 (2003. 9. 26)	원안의결 1	신설 1
㉑ 수산업법 개정안	제179차 경제2분과위 (2003. 10. 10)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㉒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 험법시행령및시행 규칙 제정안	제179차 경제2분과위 (2003. 10. 10)	원안의결 12	신설 3 내용 9
㉓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80차 경제2분과위 (2003. 10. 17)	개선권고 1	강화1
㉔ 위험물선박운송기준(고시) 개정안	제180차 경제2분과위 (2003. 10. 17)	원안의결 1	강화1
㉕ 항만공사법시행령 제정안	제181차 경제2분과위 (2003. 10. 24)	원안의결 2	신설 1 내용 1
㉖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에대한고시 제정안	제182차 경제2분과위 (2003. 10. 31)	개선권고 1	내용 1
㉗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요율에관한고시 제정안	제182차 경제2분과위 (2003. 10. 31)	원안의결 1	내용 1
㉘ 선박설비기준(고시) 개정안	제184차 경제2분과위 (2003. 11. 21)	원안의결 1	강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제184차 경제2분과위 (2003. 11. 21)	원안의결 2	신설1 강화1
㉩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제186차 경제2분과위 (2003. 12. 12)	개선권고 4	신설1 강화3
계		철회권고 2 개선권고 13 원안의결 63	총 78건

㉨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1)

- 이중선체구조 의무화 적용대상 유조선의 범위를 “2만톤 이상 원유운반선과 3만톤 이상 석유제품운반선”으로 확대 등(강화)
 - ☞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에 의한 해양 유류오염 발생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73/78)”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시행규칙에 형식승인대상 해양오염방지설비로 정하지 않고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고시에서만 정한 설비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규칙에서 1개의 설비로 지정되어 있으나, 고시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한 경우는 이를 시행규칙의 동일 설비내의 품목”으로 반영(내용심사)
 -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고시)”을 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성능시험기준을 정하고 일부설비는 품목을 세분화함으로써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였기에 시행규칙에 누락된 형식승인 대상 품목과 세분화된 품목을 반영하여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② 총허용어획량적용대상어업의종류등의지정에관한고시 개정안(강화 1)

- 동고시 제2조(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등)의 규정에 근거한 별표 “총 허용 어획량적용 대상 어업의 종류 및 대상어종별 총 허용 어획량” 중
 - 고등어, 정어리 등 기 지정된 대상어종별 총 허용어획량을 조정하고
 -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에 꽃게를 추가(강화)
- ☞ 자원남획 등에 따른 어족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54조의2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전체 어획량 검토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종별 총 어획량을 조정하고 꽃게를 총 허용 어획량 적용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③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1)

- 100톤 미만 선박으로 영위하는 내항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중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현재 제출이 면제되어 있는 “사용할 선박의 국적증서” 등 서류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추가(강화)
- ☞ 영세사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법규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서류는 추가하려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해운법 제26조의2(사업등록의 특례)의 규정에 의거 내·외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사업구역의 변경가능일수를 정함(내용심사)
 - 신고서 기재사항 : 사용할 선박, 운송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기간, 운송구간
 - 사업구역변경가능일수 : 각 선박별 연간 180일 이내, 다만, 내·외항간 선박의 수급 불균형으로 불가피할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가능
- ☞ 사업구역 일시 변경신고서에 기재할 서류의 내용은 내·외항간의 사업구역 변경에 따라 세금, 항만사용료 등 납부 및 징수체계의 변경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그 변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 선박별 연간사업구역 변경일수를 18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내·외항 화물운송사업

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한 해운법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④ 선박구획기준(고시) 개정안(강화 1)

- 로로여객선의 구획 및 손상복원성 요건과 침수확산 방지 및 수밀요건을 강화하고, 화물선의 구획 및 손상복원성 요건을 도입하며, 현존 로로여객선 산적화물선의 손상복원성 요건을 도입(강화)
 -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1974)”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고시가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업자의 부담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⑤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제정안(내용심사 1)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적용대상 : 넙치 및 뱀장어를 양식하는 육상어류 양식장
 -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시설은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해수면을 조성한 육상양식어업이나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으로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HACCP 세부관리기준을 이행하도록 함
- ☞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제정하고, 강제성이 없는 규제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⑥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제정안(신설 1, 내용심사 6)

- 기존의 수산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수산자원 조성금에 관한 내용을 이법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는 한편, 부과대상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하고, 부과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 시 수산업법에 규정하고 있던 일부규정을 이법으로 이관 받아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수산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내용을 이관 받고, 법에서 위임한 일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목록을 정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신고서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중 수산질병관리사가 개설하는 수산질병관리원의 처치실과 조제실을 통합하여 처방실로 하도록 하며, 소독장비·약제기구 등 기본적인 기구와 장비만을 갖추도록 개선권고하고, 나머지 내용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지도와 명령의 내용을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행위에 대하여 위법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업무정지기간동안 수산생물진료업 신고필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함(내용심사)
 - ☞ 국가에서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특정인에게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은 양식산업의 발전은 물론 공익실현의 목적도 있으므로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의 징수금액기준을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과태료납부의 고지, 징수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내용심사)
 - ☞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부과의 세부집행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유사 업종인 동물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 집행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는 “정신질환자 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교부신청하도록 하고, 면허 등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과 사진을 첨부하여 갱신 신고를 하도록 함(내용심사)
 -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 여 면허시험 합격자가 신규면허증 교부신청 시와 면허증 갱신신청 시 첨부할 서류 등을 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수산질병관리사자격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를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와 “이 법 시행당시 수산생명의학과와 동일한 커리큘럼의 수산질병관련 학과를 입학하였거나 졸업한 자”로 함(내용심사)
 - ☞ 현재는 수산생명의학과만 존치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생명의학과와 동일한 커리큘럼의 수산질병관련학과를 입학한자와 졸업한자를 응시대상으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수산질병관리사에게 수산생물 질병검사와 검안 등을 의뢰하는 경우 검사결과서 또는 검안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추진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신설)
 - ☞ 국가에서 공(公)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일정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공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업무추진상황을 관할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신설 8, 강화 2, 내용심사 1)

- 상임이사제 도입의무 및 조합의 자체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강화)
 - ① 조합은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필요 시 상임이사 외 1인의 이사(사외)를 둘 수 있도록 함,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달조합(사업규모 300억 원 이하)경우는 예외로 함
 - ② 부실조합의 상임이사 선출 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의무화 함
 - ③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임원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 ☞ ①의 단서조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미달조합(사업규모 300억 미만)”을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조합”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나머지 조항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조합장과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현재와 같이 4년으로 하되,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며, 조합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함(신설)
 - ☞ 상임이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재신임 여부 결정권한을 강화하고, 조합

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조합의 사유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및 부실예방을 위한 각종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부실제거 및 예방을 위해 수협에도 타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적기시정 조치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당해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직무대행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 경영개선 명령의 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전 결정,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적기시정조치 불이행시의 행정처분은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손해배상청구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의무(신설)

- 관리기관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자료를 당해 조합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함

☞ 관리기관(중앙회)이 조합을 대리하여 부실조합의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추궁을 위해서는 관련조합과 관리기관 등의 필요자료의 성실한 제공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관리기관은 조합에 대하여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당해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이 그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리하여 관리기관이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

는데 필요한 조치로 조합부실화의 사전예방은 물론, 부실조합의 구조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책임보험가입의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합이 관리기관의 보험가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약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보고나 진술을 할 경우 당해 조합의 임직원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부실조합에 대해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함(신설)
 - ☞ 조합회계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회계감사제도 개선차원에서 조합의 외부감사 수감의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조합의 업무 등이 법령, 행정처분 등에 위반되어 해당조합(중앙회 포함)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내용심사)
 - ☞ 행정권의 남용에 의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4인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원 원장, 조합감사위원장이 위촉하는 각 1인을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 1인은 위원장이 제정한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
 - 조합장과 조합원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함(강화)
 - ☞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엄격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위원 5명 중 3명은 개정안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2명은 이사회에서 추천한자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선권고 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조합에 부과되는 각종권고, 자료의 보관·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규

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예금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내용으로 해당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규정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 조합설립 인가기준 및 절차를 최소한 대통령령에 규정

⑧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개정안(강화1)

- 압력용기 또는 집합형 압력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압력용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하는 위험물 운송용기에 압력용기 및 집합형 압력용기를 포함
 - 해양오염물질 또는 소량의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수납물질에 따른 부표찰 부착의무 추가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기준 추가
- ☞ 2004. 1. 1일부터 국제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시행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과 기준규정 중 일부 누락된 내용을 국내규정에 수용하는데 따른 규제의 강화로, 강화되는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적선이 외국의 항구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위험물의 안전하고 적절한 운송·취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⑨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1, 강화1)

-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상악화 시 선박의 종류별 출항통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의3 관련 별표 2, 선박출항 통제기준)(내용심사)
 - ☞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출항통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사업장 및 선박에 발급하는 안전관리 적합증서 및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에 있어 기준시점을 증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에서 3월로 변경(강화)

- ☞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려는 것으로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⑩ 수출수산물 · 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고시 개정안(강화 1)

-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국가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수출품목 399개 중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의 약정에서 정한 수산물 323개 품목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함(강화)
- ☞ 2002. 12월 한·베트남 간 수산물품질관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고 동 약정에서 양국 상호간에 수출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양국 정부에 의한 검사를 받고,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수출대상 품목을 검사대상 품목으로 지정·고시하려는 것으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⑪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강화 1)

- 수산업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과징금부과대상에 누락된 어획물 운반업에 대하여도 위반시 행정처분에 같음할 수 있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기준을 정함(강화)
-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불법어업행위의 사전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한, 과징금부과대상에 어획물 운반업이 누락되어 초래될 수 있는 행정처분(어업정지)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과 불이익들을 해소하려는 것도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과징금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일부어종은 절상하고 일부어종을 절사하는 등 과징금 인상의 산출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⑫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강화 1)

-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인상(강화)

- 5천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

· 300만 SDR(51억원) ⇒ 451만 SDR(77억원)

- 5천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 300만 SDR + 초과톤당 420 SDR ⇒ 451만 SDR + 초과톤당 631 SDR

- 최대 한도액 5,970만 SDR(1,000억원) ⇒ 8,977만 SDR(1,500억원)

- ☞ 「200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의정서」의 개정에 따라 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상향조정내용을 국내법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⑬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강화 9)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은 금지하고, 왕돌암 주변해역에서의 2중 자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강화)

- ☞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동 해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울릉도 및 독도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왕돌암 주변해역에 이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는 선박이 몰려 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왕돌암 주변해역에서 이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시·군)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그물의 규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일부업종에 대하여도 어업별, 어구별로 그물코의 규격을 추가로 제한하고, 중형·대형기선저인망 및 대형트롤 어구의 세망(細網)사용을 제한(강화)

- ☞ 어업 간 형평성 유지와 연안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어망의 그물코 규격을 제한하거나 세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어업의 면허·허가·신고된 어업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제작·판매·소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되도록 함(강화)

- ☞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으로 제작·판매·소

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동내용을 삭제하여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외국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출용어구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동 보호령에 위반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 연안선망·근해선망 및 근해자망어업의 어구에 대해서도 세망의 사용기간을 제한(강화)
 - ☞ 동일한 수역에서 멸치, 젓새우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낭장망·주목망·해선망·연간안간망·연간자망어업 등은 지역별로 주요서식 어자원의 산란기 등에 세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연안선망·근해선망 및 근해자망어업의 어구에 대하여는 어구사용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아 업종 간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유사업종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어린고기 남획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금지(강화)
 - 포획·채취금지기간 신설
 - 참게 : 8. 1 ~ 11. 30(강원도에 한함)
 - 열목어 : 3. 1 ~ 4. 30
 - 포획금지 체장 상향조정
 - 산천어 : 18cm → 20cm
 - 명태 : 10cm → 15cm
 - 포획금지체장(중) 신설
 - 참게 4cm, 넙치·대구 21cm, 문어 300g
 - 재첩포획금지 체장의 계속 존치(규제존속기간 삭제)
 - ☞ 산란기 어미고기의 보호를 위하여 참게 및 열목어의 포획채취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어린 고기의 포획으로 인한 자원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천어 및 명태의 포획금지 체장 상향조정 및 참게, 넙치, 대구, 문어 등의 포획금지 체장을 신설하며, 규제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재첩은 규제존속기간을 폐지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김양식장 등에 사용하는 약품 등의 제조·공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강화)
 - ☞ 수산업법상 산처리제의 제조·공급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게 되므로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철회하도록 권고

- 근해안강망어업 및 근해트롤어업 등 10개 어업에 대하여는 허가정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기존 정수가 설정된 10개 어업에 대하여는 현재의 수산자원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수를 조정하고, 정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3개 어업에 대하여는 정수를 신설함(강화)

☞ 정부에서 1999년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확보 및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세력의 유지를 위하여 어업허가 정수의 조정 및 신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외국과 체결한 어업협정 등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수역 내에서 양식의 제한 또는 금지와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그 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강화)

☞ 외국과 체결한 어업협정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수역 내에서의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총 허용 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어획물과 그 제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매매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한함(강화)

☞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시험을 거쳐 2001년부터 9개 어종에 대하여 총 허용어획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어획물과 그 제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정확한 어획량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동 제도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므로 총 허용어획량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매장소의 지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매매·교환장소의 지정에 따른 어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장소에 매매해야 할 대상을 “선상에서 어획된 어획물을 사용한 냉동·염장·자숙·단순가공품”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⑭ 잠수선검사기준(고시) 개정안(강화 1)

- 국제해사기구(IMO)산하 해사안전위원회(MSC)의 “여객잠수선의 설계·건조 및 운항에 대한 지침”과 “미국선급규칙” 등을 참고로 하여 국내 잠수선검사기준(고시)을

개선·보완(강화)

- 잠수선의 선체재질과 규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 생명유지장치 중 산소공급장치의 산소저장 용량기준 강화 등

☞ 현행 잠수선 검사기준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신형 잠수선의 기술수준에 비해 뒤떨어져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⑮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개정안(강화 1)

-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에 대하여도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어선과 동일하게 어업허가 제한기간 동안 어선을 계류 조치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강화)
- ☞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선박계류조치에 불응시 가중처분조항은 수산업법 제41조제6항 및 어선법 제19조제2항과 상충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일부 조항 개선 권고

⑯ 여객선운항관리규칙 개정안(강화 2)

-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여객선사의 자율적 안전관리요소를 추가(강화)
- ☞ “현행 운항관리자제도”에 “선박안전관리체계”의 요소를 도입하여 내항여객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운항관리규정의 타당성 심의 및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해양경찰서장의 지도감독 근거규정을 신설(강화)
- ☞ 신설하려는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법에 위임조항이 없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상위법에 위임근거를 마련한 후 위임을 받아 동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철회하도록 권고

⑰ 연안유조선의 적정선복량유지를 위한 선박투입제한고시 제정안(강화 1)

- 연안유조선의 적정선복량유지를 위하여 대상선박의 크기 및 종류, 항로 및 구역, 제한기간, 적용대상, 적용특례 등 선박투입제한에 대한 고시를 제정(강화)
 - ☞ 연안유조선시장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연안 유조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적인 수송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선복량 유지를 위한 신규투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⑱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 항만운송사업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 항만근로자 교육훈련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동법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절차,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신설)
 - ☞ 법에서 교육훈련기관을 특수법인화 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수원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⑲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신설 1, 내용심사 2)

- 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조합은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으로 하며,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내용심사)
 - ☞ 기 시행 중에 있는 유사법률에서도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
-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정함(내용심사)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 ☞ 기 시행 중에 있는 농협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을 비교 시 공공기관범위의 선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
- 조합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신설)
 - 신용사업보험료 : 예금 및 적금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 공제사업보험료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 ☞ 농협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등 유사 법률에서도 규정되어 있고 그 형평성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㉑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고시) 제정안(신설 1)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 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의 회사 및 선박은 보안 책임자 임명 및 교육·훈련실시, 선박보안평가 실시, 선박보안계획서 작성, 선박보안검사 수검, 선박보안기록부 비치, 선박보안경보장치 탑재 및 선체외판에 선박식별 번호를 표시하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함(신설)
- ☞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이 2004. 7.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동 규칙의 개정내용을 국내규정에 수용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다만,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국제해상보안규정이 2004. 7. 1일부터 강제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외항선박들이 외국 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협약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동 규정내용은 법률에 수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고시의 규제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여 2006년까지 동 고시의 내용을 법률화하도록 권고

㉒ 수산업법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어업의 면허를 신청한자 또는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어업면허

를 받는 자가 그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변경신고와 포기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신설)

☞ 어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 또는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신청 또는 면허받은 사항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와 어업면허를 포기하고자할 때에는 현행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연안 및 구획어업 어선의 선복량 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구획어업의 허가 대상에 어구를 포함하도록 함(강화)

☞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업이 허가어업에서 1996년 신고어업으로 전환된 이후, 업체의 난립으로 양식어류가 과잉 생산되고, 1997년 7월 수산물의 전면자유화로 수입이 증가되어 수산물 가격이 하락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어 양식어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획어업은 어선과 어구가 동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어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을 제한하여 수산자원의 남획에 따른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다만, 법 개정안 제41조(허가어업) 제4항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제한을 추가하는 사항은 제41조가 허가어업의 대상 및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선복량의 제한을 동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동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함이 타당한 지 시행규칙에 규정함이 타당한 지를 법제처 심사 시 검토

• 어획물운반업자가 운반어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등에는 당해 어선에 대한 운반업 등록의 폐지신고를 의무화함(강화)

☞ 어획물운반업자가 어획물운반어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어선에 대한 운반업 등록의 폐지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운반어선을 인수 받은 자가 운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어획물 운반업자의 편의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⑫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 제정안(신설 3, 내용심사9)

- 어선원보험에 적용하는 어선원 등의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적용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기준임금의 적용대상으로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정함(내용심사)
 - ☞ 어선원의 임금지급 자료가 없거나 어선원의 임금이 비율급 또는 생산급으로 지급되어 임금의 확인이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등을 기준임금의 적용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법에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어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5톤 미만의 어선,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등을 적용제외 대상 선박으로 정함(내용심사)
 - ☞ 5톤 미만의 어선은 조업구역이 육지인근으로 한정되어 안전성이 높고,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의 승무원을 순수한 어선원이라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 및 공무원 연금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 대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수협중앙회장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어업의 파산·어선의 멸실 등으로 휴업한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를 3회 이상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로 정함(내용심사)
 - ☞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행방불명 또는 방치하는 경우와 어업의 파산, 어선의 멸실 등으로 어업을 휴업한 경우 등에는 어업행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중앙회장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가 변경 신고해야 할 사항을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어선의 선적항, 조업구역, 어업의 종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의한 임금의 변동, 승선어선원수, 그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정함(내용심사)
 - ☞ 어선주가 어선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관계가 변경된 때에는 보험료와 보험급여 등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고항목을 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자발적

인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통하여 원활한 보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법 제40조에서 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제39조의 보험요율의 결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된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 어선보험의 보험요율은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간 보험료 납부액과 보험료지급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 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함(내용심사)
- ☞ 정책보험금의 시행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험요율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3년 간의 보험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본요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부당이득의 징수절차, 연체금의 징수, 보험급여액의 징수, 보험급여액의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내용심사)
 - ☞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방지하고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금액을 환수하며,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물의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납부를 촉진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통해 원활한 보험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다만, 동법 시행령 제정안 제25조(부당이득의 징수)는 상위법에 위임근거조항이 없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은 2004. 1.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조항을 헌법 제75조에 근거하여 동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지와 추후 법 개정 시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의 여부를 법제처 심사 시 검토
-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비율 및 어선보험가입의 기준이 되는 잔존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도록 함(내용심사)
 - ☞ 어선소유자의 재생산 능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당해 어선의 신 건조가격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금전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 보험의 대상이 되는 상법상의 보험원칙에 의해 잔존가액을 최대 보험가액으로 설정하고, 잔존가액

- 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항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심사청구 사건명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
여,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안에 이름 및 주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함(내용심사)
 - ☞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의 구제방법 및 권리행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보험급여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의 심
사청구의 방식을 이해하고 원활한 심리·재결을 위하여 심사청구의 조사 신청서에
기본적인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다만, 동법 시행령 제정안 제37조(심사청구의 방식), 제41조(심리를 위한 조사)
및 제43조(재심사청구의 방식)는 상위법에 위임근거조항이 없어 행정규제기본
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 재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은 2004. 1. 1일부터 시행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조항을 헌법 제75조에 근거하여 동 시행
령에 규정할 수 있는 지와 추후 법 개정 시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경우 문제
점이 없는지의 여부를 법제처 심사 시 검토
 - 중앙회는 필요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 또는 어선원 및 회원조합원
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의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규정하고, 보험가입자는 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재해발생 사항을 중
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 보험가입자와의 보험관계 유지 및 관리,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대한 공정하고도
신속한 조치 등을 위하여 보험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재해 내용을 보고하도
록 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원상복구와 분쟁의 해소를 위해 명확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어선원 보험적용 대상자의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법과 유사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시행규칙 제3장제3절을 인용하도록 함(신설)
 - ☞ 재해발생 시 보험적용의 분쟁을 방지하고 어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재해인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어선원이 재해 시 현실에 근접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그 기준이 적정한 것으
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요양급여 신청, 장애급여 등급기준,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행방불명 급여의 신청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함(신설)

- ☞ 재해발생 시 수급권자인 보험가입자 및 어선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산재법, 선원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관련 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다만, 동법 시행령 제정안 제21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는 상위법에 위임근거조항이 없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은 2004. 1.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조항을 헌법 제75조에 근거하여 동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지와 추후 법 개정 시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의 여부를 법제처 심사 시 검토
-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대위할 것을 전제로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금품 등을 지급하고 동 보험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수협중앙회는 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함(신설)
- ☞ 어선원의 재해발생시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어선주가 어선원 등에게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하도록 하고 후에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대위토록 한 것은 어선원 등의 어려운 생활을 고려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㉓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내·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선박이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을 현행 1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을 위한 예외조항 신설은 내항선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고, 등록 외 사업구역을 운송할 수 있는 가능일수를 단축하는 안은 삭제하도록 권고함

⑭ 위험물선박운송기준(고시) 개정안(강화 1)

- 압력용기 또는 집합형 압력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압력용기 및 집합형 압력용기에 대한 시험주기, 시험압력, 외판의 최소 두께, 용기의 재질 등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강화)
- ☞ 2004. 1. 1일부터 국제적으로 강제 시행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국내 규정에 수용하려는 것으로, 강화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적선 및 국내회주가 외국의 항구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물의 운송 및 취급 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⑮ 항만공사법시행령 제정안(신설 1, 내용심사1)

-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항만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신설)
 - ☞ 항만공사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항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내용심사)
 - ☞ 항만은 국가보안시설로서 항만시설의 경비·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이용자 편의 및 안전사항, 여객부두의 선적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항만관리의 공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감독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다만, 안제30조(지도·감독)조항의 관련법 조항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제처 심사 시 이를 검토

⑯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에관한고시 제정안(내용심사 1)

- 부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선정기준과 조치내용을 정함(내용심사)
 - 경영개선권고 : 순자본비율 0% 미만의 조합,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등

- 경영개선요구 : 순자본비율 마이너스 7% 미만의 조합, 인력의 감축 및 점포 조직의 축소, 지사무소의 폐쇄, 통합 등
- 경영개선 명령 : 순자본비율 마이너스 20% 미만의 조합 등, 합병명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
- ☞ 일반시중은행과 농협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기준과 비교해 볼 때 그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수협의 경영건전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에 취할 시정조치 내용에 합병요구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㉗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요율에관한고시 제정안(내용심사1)

-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요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은 각각 1만분의 20(0.2%)의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 수협의 신용사업보험요율은 비영리사업이라는 점에서는 농협과 동일하므로 공제사업의 보험요율도 농협과 동일수준으로 함이 타당하나 농협보다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농협의 중간수준인 1만분의 2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㉘ 선박설비기준고시 개정안(강화 1)

- 고속선에는 입식 설치금지 등 여객선에 대한 안전설비 등을 강화하고, 유사시 여객이 탈출하는 탈출경로 요건강화, 위성항법장치 등 12종의 새로운 항해장비설치 의무와 동 장비의 성능요건강화 등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내용을 수용 항행안전설비 등을 강화함(강화)
- ☞ 국내여객선의 여객안전을 위하여 고속선에 입식 등 설치 제한, 난간의 설비기준 등을 보완하고, 국제해상인명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하려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㉔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1)

-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면허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그 면허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신설(누락규제))
 - ☞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어업권(입어) 행사계약자에게 양식대상 수산물을 입식 후 양식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며, 단서 조항의 신설은 면허기간이 2년 이하이거나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일 경우의 어업권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양식어장시설기준의 강화(강화)
 - 해조류양식어업의 수하식 김·파래 양식시설기준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강화
 - 복합양식어업의 수하식 김·가리비 중 김양식 시설기준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강화
 - 복합양식어업의 혼합양식 김·바지락, 김·동죽, 김·개량조개 중 김양식 시설기준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강화
 - 패류양식어업의 수하식 굴 양식시설기준의 시설규모를 추가하여 강화함
- ☞ 김 및 굴양식은 양식기술 및 기자재 등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과잉생산 및 품질하락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적정량의 김 및 굴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감축하여 고품질의 김 및 굴을 생산하도록 하여 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설밀식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 악화를 개선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김과 굴을 생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다만, 별첨 6의2 패류양식장 중 수하식 굴양식시설의 기준이 50㎡당 1줄(100m)로 규정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1ha당 100m 길이의 줄을 10줄 내지 20줄 기준으로 설치 등 어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시행규칙 개정 시 검토가 필요

㉔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신설 1, 강화 3)

- 누구든지 지정 해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을 직·간접적으로 오염시키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류 등 양식어업의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투기하거나 개·고양이 등 동물을 사육·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해역 및 주변수역 내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약사법」 제72조의6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동물·용법·용량 및 사용금지 기간 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을 생산하여 국내에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의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수출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 다만, 개정안 제24조의3제1항은 당초 규정을 신설하여 해역 오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①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내에서 해역을 오염시키는 다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제11조,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류 등 양식어업의 시설에서 개·고양이 등 동식물을 사육·방치하는 행위”
-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를 한자는 등록 또는 신고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된 때와 휴업 또는 휴업 후 등록 신고시설을 다시 가동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신고한 행정관청에 변경 및 휴업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등록·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고한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함(강화)
 - ☞ 등록 또는 신고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신고하는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기름·액체 유해물질 또는 폐기물 등의 배출행위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투기하거나 개·고양이 등 동물을 사육·방치하는 행위 등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동 행위에 대한 위반자를 조사·확인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필요한 때에는”이란 문구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일선집행기관에서 직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강화)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두리 양식장 등에서 개·고양이 등 동물을 사육하거나 방치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자로서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 법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다만, 개정안 제56조제3항제2호의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중 “등”을 삭제하고, 제3항제1호를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로 수정할 것을 권고

*집필자 : 이호모 사무관(T.3703-3942, yhomo@opc.go.kr)

2. 해양경찰청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에 대한 강화규제 2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해양경찰청의 2003년 신설규제는 없음

해양경찰청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제60차 경제2분과위 (2003. 3. 28)	원안의결 2	강화 2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 시설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강화하고,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추가(강화)
 - ☞ 현행 규칙에는 시험선이 접안할 수 있는 계류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아 2대 이상의 시험선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의 계류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험응시자의 안전교육실시에 필요한 교육장 설치의무가 누락되어 있어 부대시설 설치기준에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도록 추가하며, 실기시험장 시설 등의 사용권 또는 소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시험대행기관 지정의 필수요건임에도 제출서류 목록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강화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현행 수상레저사업등록 신청기준 중 인명구조요원 관련 조항의 단서내용인 레프팅의 경우 “인명구조요원”을 “레프팅가이드”로 변경하고,
 - 인명구조요원 및 레프팅가이드 자격요건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 수상레저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과 실시해야할 교육과정을 해양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강화)
- ☞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레프팅사업에 고용하는 인명구조요원을 현재 일반레저활동의 안전요원에서 레프팅가이드로 변경하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을 교육이수자나 경력자에서 교육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강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다만, 인명구조요원·레프팅가이드 자격취득교육과정 등을 고시로 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법제처와 협의

* 집필자 : 이호모 사무관(T.3703-3942, yhomo@opc.go.kr)

제14절 — 농림분야

1. 농림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안, 농약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종자산업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령 개정안, 비료관리법 개정안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12개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30건, 내용심사 6건 등 총 4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2건 중 7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3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농림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6건임

농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60차 경제2분과위 (2003. 3. 28)	원안의결 4건	강화 2 내용 2
② 인삼산업법 개정안	제163차 경제2분과위 (2003. 5. 23)	원안의결 1건	신설 1
③ 농약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64차 경제2분과위 (2003. 5. 30)	원안의결 3건 개선권고 3건	강화 6
④ 종자산업법 개정안	제166차 경제2분과위 (2003. 6. 13)	원안의결 1건	강화 1
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제166차 경제2분과위 (2003. 6. 13)	원안의결 1건	내용 1
⑥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안	제167차 경제2분과위 (2003. 6. 19)	원안의결 2건	강화 1 내용 1
⑦ 비료관리법 개정안	제168차 경제2분과위 (2003. 7. 11)	원안의결 2건 개선권고 1건	강화 3
⑧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제168차 경제2분과위 (2003. 7. 11)	원안의결 1건	신설 1
⑨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	제168차 경제2분과위 (2003. 7. 11)	원안의결 4건	강화 3 내용 1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제169차 경제2분과위 (2003. 7. 16)	원안의결 3건	신설 1 강화 2
⑪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제181차 경제2분과위 (2003. 10. 24)	원안의결 8건 개선권고 2건	신설 1 강화 8 내용 1
⑫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184차 경제2분과위 (2003. 11. 21)	원안의결 5건 개선권고 1건	신설 2 강화 4
계		개선권고 7 원안의결 35	총 42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내용심사2)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력·시설을 감안하여 업무처리능력에 맞도록 인증농산물 종류에 따라 인증지역 범위를 국내, 국외(국가단위)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함(내용심사)
 - ☞ 현행규정상 인증기관의 지정은 인증농산물의 종류 구분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인증기관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는 국가간 경계를 넘는 지역까지도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실인증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등 국가단위로 구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 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용가능 자재 중 유기질비료·키토산 등에 대한 사용가능조건에 대하여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농촌진흥청장이 품질규격을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원화하고,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과 비눗물 등은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었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자재는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생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 생물학적 병충해 관리를 위한 자재에 현행 미생물제제 외에 천적을 추가함(강화)
- ☞ 현재 농업용 자재에 대한 관리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품질규격기준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대상품목의 효율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 친환경농산물중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화학적으로 용해 처리한 자연암석분말 등과 합성세제인 비눗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 친환경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친환경농산물중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용수 기준을 “농업용수” 이상에서 “먹는 물의 수질기준 이상”으로 조정하고, 무농약·저농약농

산물 재배방법 중 화학비료 사용제한이 권장사항이었던 것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함(강화)

- ☞ 콩나물 등의 수경재배를 위한 용수기준은 식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수질기준 강화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무농약·저농약농산물의 재배방법 기준 조정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적절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규정에 인증심사위원회에 대한 인증기관 자체 또는 위탁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함(내용심사)
- ☞ 인증심사위원의 인증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으로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② 인삼산업법 개정안(신설 1)

-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인삼류에 대한 확인검사결과, 품질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등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판매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중에 적발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하거나 판매자 또는 제조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품질기준 미달제품, 미검사제품에 대한 수거·폐기 등의 사후관리 신설을 통하여 인삼류의 품질확보를 도모하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③ 농약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6)

- 농약·원제 제조업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추가(강화)
 -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판매업으로 등록한 경우 1회 위반 시 등록취소
 -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약품목, 원제등록, 수입농약·원제 등록된 경우 1

회 위반 시 등록취소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품목을 제조·수입한 자는 1회 위반 시 등록취소
- 등록사항의 변경처분을 받은 품목을 변경하지 않고 제조·수입한 경우 1회 위반 시 당해 품목 제조·수입정지 3월, 2회 위반 시 당해 품목 제조·수입정지 6월, 3회 위반시 당해 품목 등록을 취소
-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제한 품목을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한 경우 1회 위반 시 당해 품목 제조·수입정지 6월, 2회 위반시 당해 품목 등록취소, 3회 위반시 제조업·수입업 등록취소
-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한 경우 1회 위반시 당해 품목 제조·수입정지 6월, 2회 위반시 당해 품목 등록취소, 3회 위반 시 제조업, 수입업 등록을 취소
- ☞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약품목·원제등록, 수입농약·원제 등록한 경우 1회 위반시 등록을 취소”토록 한 것은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 동일한 내용이 기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다시 농림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 그 외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의 실효성확보 및 타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의 포괄적인 위임규정(법 제7조 제1항 제14호, 동조 제3항 제7호)을 하고 있어 그 위임근거가 미약하므로 추후 법률 개정 시에 명시적인 위임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농약의 품목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하는 농약품목은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성 시험성적서를 면제하되, 독성시험 중 신규로 추가되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되는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을 농약품목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강화)
- ☞ 피부자극성, 안점막자극성 독성시험 등이 추가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농약의 품목 재 등록시 동 시험성적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생물농약의 경우 동 생물이 국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므로 농촌진흥청장의 검사방법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농약의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90일에서 6개월, 재등록 처리기간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함(강화)
- ☞ 연도별 신규 농약품목 등록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등록을 위한 시험항목도 늘어남에 따라 신규 농약품목의 등록 검토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재등록의 경우 모든 시험성적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험성적서 등만 검토하게 되고,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재등록시 사업자가 제출하여야하는 시험성적서 범위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검토대상 시험성적서를 확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등록시의 등록 검토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재등록 처리기간 연장안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원제의 등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에 “주성분·부성분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원제공급가능 증빙서류”를 추가하고, 신청서류 처리기간을 90일에서 6개월로 연장(강화)
- ☞ 주성분·부성분 분석에 필요한 자료, 원제공급가능 증빙서류(수입원제에 한함)는 원제분석 및 수입상의 상이한 원제공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원제등록건수와 검토성적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제등록 검토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수출입식품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가스검정기, 가스누출검지기, 염색반응검지기 수를 늘리고(각각 3대 이상 → 4대 이상, 3대 이상 → 5대 이상, 3대 이상 → 5대 이상),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생략가능), 용량 100ℓ 이상으로 온도가 5~50℃ 조절 가능한 공시충사육상(供試蟲飼育床) 1대 이상 설치를 의무화(강화)
- ☞ 방제작업 중 방제기술자 및 작업인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지 장비를 늘리는 것은 직접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경비원을 배치토록 하는 것도 약제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 공시충사육상은 소독효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설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수출입식품방제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강화)
 - 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수출입식품검역처리규정 위반 시
 -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회 경고, 2회 영업정지 2년”을 “1회 영업정지 3월,

2회 영업정지 2년”로 변경

-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1회 경고, 2회 영업정지 1월, 3회 영업정지 3월”을 “1회 영업정지 1월, 2회 영업정지 3월, 3회 영업정지 2년”으로 변경
- 훈증소독 위해 방지를 위해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영업정지 1월에 처하도록 추가
- “훈증사업을 부실하게 한 때”를 “훈증, 약제살포 등 소독작업을 부실하게 한 때”로 변경
- ☞ 중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④ 종자산업법 개정안(강화 1)

- 종자보증 효력 상실요건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보증표시를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때”, “보증받은 포장된 종자의 내용물을 교체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추가하고, 품질표시규정에 의한 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강화)
- ☞ 불량종자 유통방지를 위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 받은 종자 등에 대하여 보증실효 규정과 발아보증시한 기간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농산물등급판정, 농산물보관·포장 및 출하시기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을 정함(내용심사)
- ☞ 금번 시행령에서 정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실시, 응시자격, 가산점부여 기준 등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적절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⑥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령 개정안(강화1, 내용심사 1)

- 가축의 범위에 “고양이”, “타조”를 추가하고, “메추리”, “꿩”을 삭제함(내용심사)
 - ☞ 고양이, 타조는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내용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소해면상뇌증” 또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강화)
 - ☞ 소해면상뇌증(BSE : 일명 광우병)과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은 국제수역(獸疫) 사무국(OIE)의 관리대상 전염병(LIST B)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고, 유럽·북미 등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된 바 있으므로 동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육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⑦ 비료관리법 개정안(강화 3)

-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는 비포장비료를 공급할 경우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이 표기된 보증표를 교부토록 함(강화)
 - ☞ 비포장 형태의 비료를 공급할 경우 제품상의 비료 보증성분 등의 정보 표기가 곤란하므로 별도의 보증표를 교부토록 하는 내용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시·도지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토양미생물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비료의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강화)
 - ☞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미생물비료는 토양미생물 생존기한이 한정되어 있어 별도의 유통기한 설정이 필요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비료는 비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판매중지 등의 사후관리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시·도지사는 비료가 유통기한이 경과했을 때 비료의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는 “……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시·도지사는 비료생산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 후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 추가(강화)

- ☞ 비료생산업체가 반응장치 등 비료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⑧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신설 1)

-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한 농업기계 형식이 형식검사 기준에 달함을 자기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을 한 때와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자기인증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 농업기계의 자기인증을 무효로 하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신설)
- ☞ 자기인증제의 도입 목적이 농민들에게 농업기계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⑨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3, 내용심사 1)

- 가축소유자 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독기준을 강화함(강화)
 - 가축의 소유자 등 : 가축사육시설 및 주변에 대하여 소독을 월 1회에서 주 1회 이상으로 강화
 - 도축업자 : 주 1회 이상 시설 및 주변에 대하여 소독의무 추가
 - 집유장영업자, 사료제조업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업자 : 당해 시설 출입차량에 대하여 소독 및 주 1회 이상 시설 및 주변에 대하여 소독의무 추가
 -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 당해 시설 내 가축의 집합전후로 소독(부화장의 경우 달걀을 부화기에 넣기 전과 부화 후에 소독실시)의무 추가
 - 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 가축사육시설을 출입할 때마다 휴대용 분무소독기 등으로 소독의무 추가
- ☞ 소독의무대상 전염병 매개체를 현실에 맞게 확대 규정하고, 소독주기를 소독효과 지속시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 도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를 추가 함(강화)

- ☞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는 전염 위험성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된 바 있어 유사시 이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가축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관리자 지정·운영, 매몰지 관리 등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함(내용심사)
- ☞ 악취, 침출수 등 가축사체 매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를 규정한 내용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수입동물 검역을 위한 사전신고대상으로 고양이를 추가하고, 개·고양이의 사전신고 요건을 현행 10두에서 5두로 강화함(강화)
- ☞ 광견병 전파 우려가 있는 고양이의 경우 수입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전신고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신고 범위를 “10두 이상”에서 “5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도 수입분포를 감안하면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신설 1, 강화 2)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장을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검사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함(신설)
- ☞ 축산물검사기관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 규정이 필요하며 그 내용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는 기준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추가(강화)
- ☞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소비자의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강화)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허위로 동 명칭을 사용

할 경우 과태료부과가 필요하고, 부과수준도 수산물 HACCP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⑪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신설 1, 강화8, 내용심사1)

- 조합원의 출자금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강화)
 - ☞ 농업협동조합법 제31조에는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만 출자금 환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자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실익이 없음에도 법적분쟁이 빈번하므로 압류 등의 금지규정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조합장이 상임으로 계속 재직할 경우 4년 임기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함. 다만,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하고 비상임조합장의 경우는 적용배제함(강화)
 - ☞ 조합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하기는 하나, 상임조합장은 조합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어 장기 재직 할 경우 조합의 사유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사업, 부실대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일정횟수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3회로 연임을 제한하는 제한횟수도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추가(강화)
 -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으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64조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의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선거공고일 현재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황을 연체하고 있는 자
 - ☞ 조합임직원으로 재직 시 업무상 배임·횡령죄를 범한 무책임한 자 등이 조합임원이 될 경우 조합원 및 예금자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이 높으므로, 조합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취지와 유사 입법례를 반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

어 원안대로 의결

- 조합은 공제사업의 종류,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책임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농림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일반 민영보험사는 금감원의 “보험업무감독규정”에 의한 계약자 보호 등 전반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나, 농협의 공제사업은 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법 제12조) “농업협동조합공제규정기재사항등에관한기준”에 의한 자체감독만 하고 있어 감독의 실효성이 적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제규정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공제사업 감독기준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조합장 임기 개시 일로부터 2년 후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신설)
 - ☞ 조합의 분식결산방지 등 조합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인정되며 그 내용도 유사 입법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조합은 중앙회에 예치한 자금을 대해서는 제3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의 잉여금 배당순서를 “출자액, 사업이용실적”에서 “사업이용실적, 출자액”순으로 변경함(강화)
 - ☞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여유자금은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과 같은 성격으로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토록 허용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조합 잉여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토록 한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근간으로 사업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출자액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조합 등에 해당하는 조합”과 “제명된 지 2년 이내의 조합”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현행규정에는 중앙회의 회원가입 여부에 대한 심사기능이 없어 자본잠식 등 부실조합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중앙회 및 타 회원조합에 부실화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

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중앙회 회원가입제한 대상 중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조합 등에 해당하는 조합”은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및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중앙회 총회 의결권을 조합원의 수가 2,000인 미만인 조합은 1표, 2,000인 이상 조합은 2표로 하고, 중앙회 대의원회도 동일의결권 방식을 적용토록 함(내용심사)
 - ☞ 회원조합 간 조합원수의 편차가 큰 현실을 감안할 때 조합원 수 등에 관계없이 1조합 1표를 부여하는 것은 광역합병조합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 부가의결권제를 도입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중앙회의 상임감사는 중앙회 업무 및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로 선출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조합 등의 임원”은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강화)
 - ☞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직위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선출되도록 자격요건을 정하고, 부실조합의 임원인 자를 중앙회 임원자격에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중앙회 임원자격제한 대상 중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조합 등의 임원”은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및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임원”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정관·의사록비치 의무, 조합원의 이사회회의록,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청구권, 외부기관에 의한 회계감사수감의무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추가(강화)
 - ☞ 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⑫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 4)

- 가축사육업 중 축산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규모를 소 사육업 300㎡ 이상, 양돈업 50㎡ 이상, 양계업 300㎡ 이상으로 정하고, 축산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축산업종류별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과 제출하는 구비서류 등을 정함(강화)

- ☞ 등록해야하는 가축사육업의 규모를 축종별 분뇨발생량, 질병발생 및 전파가능성, 관련규정 등을 참작하고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것으로 가축사육업 중 등록대상 규모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축산업등록 시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과 구비서류도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법에서 위임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행위 및 횡수별로 정함(신설)
 - 사업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종축업의 경우에 한함) : 1회 위반(등록취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1회 위반(등록취소)
 -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①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 1회 위반(영업정지 1월), 2회 위반(영업정지3월), 3회 위반(영업정지 6월) ② 가축사육업 - 1, 2회 위반(시정 명령), 3회 위반(등록취소)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 1회 위반(영업개시촉구 또는 경고), 2회 위반(등록취소)
- ☞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위반횡수별 처분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변경, 부화능력(100분의 20 이상 증가) 및 부화대상가축 변경(부화업에 한함), 사육가축 종류의 변경(종돈과 종계업간, 젖소와 한육우 간), 가축사육시설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종축 및 가축사육업에 한함), 양계업등록자가 백세미용알을 생산·공급하는 경우, 휴·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등 축산업등록의 변경신고와 영업승계신고의 세부절차 등을 정함(강화)
- ☞ 축산업의 등록현황과 실제운영현황이 일치하여야만 축산업등록관리에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변경신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축산업등록의 변경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등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의결
- 축산업등록자에 대하여 시정 명령, 준수사항 등 구체적인 감독규정을 정함(강화)
 - 시정 명령 시 시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개·보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 최소가축사육시설면적확보, 축사와 농장의 청결유지, 친환경경교육이수 등 축산업 등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축산업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축산업등록자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등 축산업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 축산업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기준, 준수사항, 축산업자에 대한 감독대상 등 축산업등록업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중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축사와 농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한다”는 내용은 청결유지의 정도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준수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처분(500만원이하)까지 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규정은 삭제하도록 권고
- 축산업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별, 업종별로 구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중과하도록 함(강화)
 - ☞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며, 부과금액도 법무부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대상을 등록업체로 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를 정하고,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업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인증을 철회하고 인증서를 회수토록 함(신설)
 - ☞ 법에서 위임한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의 인증관련 기준과 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품질불량 정액사용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집필자 : 허수영 사무관(T.3703-2182, hsy1150@opc.go.kr)

2. 산림청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정(고시)등 3개 법령에 대해 강화 16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1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7건 중 8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산림청의 2003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제170차 경제2분과위 (2003. 7. 25)	원안의결 2건, 개선권고 1건 철회권고 8건	강화 10 내용 1
②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정고시 제정안	제183차 경제2분과위 (2003. 11. 5)	원안의결 5건 개선권고 1건	강화 6
계		철회권고 8 개선권고 2 원안의결 7	총 17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 ①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강화 10, 내용심사 1)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또는 결정 시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하는 지정협의 기준을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인지 여부, 산지전용제한지역인지 여부, 보전산지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저촉여부 등으로 정하고, 보전산지가 500만㎡ 이상인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강화)
 - ☞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시의 협의기준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도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좌우 1km 이내의 산지,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 인물에 관계된 산지, 산사태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지 등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할 때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예정면적 등을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며, 공용·공공용 시설(삭도·궤도시설, 방화시설 등), 갭내채굴 시설 등 산지전용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강화)
 - ☞ 주요 산줄기의 범위,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의 범위, 산지전용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할 경우 관보 등에의 공고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규정을 추가하고,
 - 시행규칙 별표1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중 보정인자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발생 시 피해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과 “6. 가옥, 공장 등 주위시설의 배면에 인접하여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산지”는 유사한 사항을 중복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5”는 삭제하도록 권고
- 보전산지 중 임업용·공익용 산지에서의 허용되는 행위를 강화하여 규정함(강화)
 - 임업용산지 : ①농림어업인주택(1,500㎡ → 660㎡), ②축산시설(3만㎡ → 1만㎡), ③누에사육시설(1만㎡ → 3,000㎡), ④종교시설(제한 없음 → 1.5만㎡), ⑤사회복지시설(제한 없음 → 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⑥대기오염배출시설 등(특정유해오염물질 → 일반오염물질 등), ⑦가축방목(제한 없음 → 3만㎡), ⑧물건적치(제한 없음 → 3천㎡)
 - 공익용산지 : 관상수재배(3만㎡ → 1만㎡)
- ☞ 전반적으로 보전산지에서의 개별행위 제한 규제들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시설주체를 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으로 국한하지 아

니하고 있으므로 “개인”까지 확대토록 설립주체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 물건의 적치행위는 시행령에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3천㎡”의 제한규정은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도록 권고
- 단계별 형질변경, 차폐림 조성,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등의 전용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전산지 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산지전용면적이 100만㎡ 이상이고 보전산지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타당성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으로 임도가 단절되지 않을 것, 야생 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등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지적도사본(임야도), 지형도(2만5천분의 1), 종·횡단도 및 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고, 산지전용 협의 시 산지전용허가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강화)
- ☞ 단계별 형질변경,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 조성 등 산지전용 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과 임도 미단절 등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지형도 등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도 산지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 산지전용 허가 시에 붙일 수 있는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업비확보” 조건은 복구비에치, 재해방지명령 등의 사후조치가 산지관리법(제37조 내지 제46조)에 기 마련되어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도록 권고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정함(강화)
 - 산림작업 시 대피시설(허용불가 → 2백㎡)
 - 임산물유통·가공시설(제한 없음 → 1천㎡)
 - 운재로, 작업로(제한 없음 → 2m)
 - 임업시험 연구시설(허가사항 → 1만㎡)
 - 농림어업인주택(허가사항 → 준보전산지 무주택자에 한해 330㎡)
 - 간이농림시설 등(허가사항 → 2백㎡)
 - 가축의 방목(제한 없음 → 준보전산지에 한해 3만㎡)
 - 물건의 적치(허용불가 → 3천㎡)
- ☞ 임산물건조시설 설치, 임업용 자재보관시설 설치, 가축의 방목 등의 행위제한 규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 임산물유통·가공시설의 면적제한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임산물 건조시설·자재보관시설 등과 같이 3천㎡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 농림어업인주택의 주택 및 부대시설 중 무주택세대로 설치주체를 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고, 또한, 물건의 적치 시 3천㎡의 면적제한을 삭제하도록 권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사후에 납부하는 경우 금액별 납부기한을 일부 단축(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30~60일 이내→20~30일 이내)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감면비율을 달리 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구성요소 중 단위면적 당 금액산출기준을 10년까지의 육림비(종전 5년)로 일부변경하고,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토록 함(강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을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농지법령의 농지조성비 감면사례와 형평을 맞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 의료기관 개설, 사회복지시설 및 납골시설 설치, 학교시설용지 조성사업은 농지법령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0, 100(보전, 준 보전산지)”, “0, 100”, “100, 100”으로 변경조정하고,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는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방지 등의 공익적 가치”로 구체화하고, 시행령안 제25조제6항제2호의 “보전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 규격·보유형태 및 기술인력 등을 규정하고, 채석제한사유로 고속국도·철도로부터 4천m 안의 가시지역 산지(종전 2천m 가시지역 내)와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m 안의 산지 등으로 함

- 채석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진입로설계서, 복구설계내역을 포함한 복구설계서, 한국골재협회에서 발행하는 등록증이 유효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고, 채석허가기준으로 7부능선 이하, 평균경사도 30° 이하, 원충구역설정 등을 규정하고, 산지전용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토목용석재의 수량이 5만㎡ 이상인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득하도록 함(강화)

☞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장비요건, 자연경관보호 등을 위한 고속국도·철도에서의 거리제한, 기타 허가기준 및 추가서류 제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골재협회에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도록 권고

-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요건 등은 채석허가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의 채석신고 시 구적도, 한국골재협회에서 발행하는 등록증이 유효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토록 함(강화)
 - ☞ 채석허가 관련사항을 대부분 준용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한국골재협회에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도록 권고
- 토사채취제한사유로서, 고속국도·철도로부터 4천m 안의 가시지역 산지로 확대(종전 2천 m 가시지역 내)하고,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m 안의 산지로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 기준을 채석허가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함(강화)
 - ☞ 채석허가 관련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한국골재협회에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도록 권고
- 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산지전용 등의 기간에 가산하는 보증기간을 사업규모별로 2개월 연장함(강화)
 - ☞ 보증된 복구기간 동안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 산림개발자의 추가 연대보증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으로서 자본금 3억원, 산림기술사, 산림경영기사·토목기사 및 산림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각 1인 고용하도록 하고, 트랜싯트, 공기압축기 등의 복구전문기관 장비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 복구전문기관에게 요구하는 장비요건은 복구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 것으로 판단되나, 산림기술사와 산림경영기사는 자격업무가 중복되므로 산림경영기사 보유요건을 삭제하도록 권고

②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정(고시) 제정안(강화 6)

- 상수원 등의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이내 하천의 양안 500m 안에 위치하는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함(강화)
 - ☞ 유사입법사례와 연구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산지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상수원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도로·철도·스키장 및 채광을 위한 경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하고, 도로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의 경우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가 표준 터널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지형여건에 따라 가능한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를 원칙으로 함(강화)
 - ☞ 관련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산지의 절·성토면적기준과 도로건설 시 터널설치요건 등을 정한 것은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개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강화)
 - 산지절개면의 붕괴방지를 위해 절·성토면의 기울기를 경암(1 : 1 이하), 풍화암(1 : 0.8 이하), 토사(1 : 1 이하), 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1 : 1 이하) 등 토질에 따라 정함(다만, 지질조사결과 또는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절·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배수시설의 설치,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함
 -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개면의 수직높이를 15m 이내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함(다만, 다른 법률에서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개면의 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외)
 - ☞ 토질에 따라 절·성토면의 기울기를 정한 것은 절·성토면의 붕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경사가 있는 절·성토면에 배수시설설치, 비사·낙석방지시설을 하는 것도 재해예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의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규정된 절개면의 수직높이(15m)를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한 것도 산지전용 허가 시에 복구기준 부합여부를 사전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산지전용방법 중 자연경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강화)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표고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도록 함(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이거나 스키장·송배전철탑·통신시설 또는 채광 등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m 이하로 함(다른 법률에서 산지전용 후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 전용하고자하는 산지를 당해 산지표고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토록 하는 것은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진입로 등 과다하게 소요되는 산지훼손을 방지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 산지전용 후 설치되는 시설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사업성격에 따라 오히려 산지훼손을 가중시킬 여지도 있으므로 “산지전용을 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산지전용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보전임지 제한(사업부지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요건의 적용예외 사업을 “시·군 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해당지역이 당해 시·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사업계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로 변경함(강화)
- ☞ 종전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프장·스키장 등의 시설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 수림조성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함(강화)
 - 골프장 :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을 원형존치, 홀과 홀 사이에는 산림존치 또는 수림대조성
 - 스키장 : 슬로프와 슬로프 사이의 산림원형 존치
 - 체육시설, 관광단지, 택지 :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을 시설물 사이사이와 사업부지 경계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 조성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원형 존치율 또는 수림대조성을 규정한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 경관보전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 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집필자 : 허수영 사무관(T.3703-2182, hsy1150@opc.go.kr)

3. 농촌진흥청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에 대해 신설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개선 권고 함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 개정안	제163차 경제2분과위 (2003. 5. 23)	원안의결 1건	신설 1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 개정안(신설 1)

-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진흥청장은 해당기관 및 단체의 신청을 받아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은 농업유전자원을 수집·평가·보존함에 있어서 농업유전자원수집계획서, 연도별 농업유전자원수집결과서, 연도별 농업유전자원 보유목록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유전자원을 시험연구의 목적으로만 국내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분양 시에는 농업진흥청장의 승인 또는 신고하도록 함(신설)
- ☞ 농업유전자원 이용 활성화 및 무단 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국외분양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동 규칙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 및 동 기관에

대한 의무부여는 법률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 확보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추후 법률 개정 시 지정기준,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

*집필자 : 허수영 사무관(T.3703-2182, hsy1150@opc.go.kr)

제15절 _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1. 과학기술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제정안,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제정안 등 3개 법령에 대해 신설 11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1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과학기술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11건임

과학기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 제정안	제180차 경제2분과위 (2003. 10. 17)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신설 6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②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제181차 경제2분과위 (2003. 10. 24)	원안의결 1	신설 1
③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 행령 제정안	제187차 경제2분과위 (2003. 12. 19)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4 내용 2
계		철회권고 1 개선권고 3 원안의결 9	총 13건

① 2003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 제정안(신설 6)

- 비파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의한 기술인력, 장비 등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신설)
 - ☞ 비파괴검사기술은 원전 설비를 비롯한 각종 설비, 장거리수송관, 중화학시설, 가스 시설, 교량 등 대형구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핵심적인 검사기술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의 관리가 어렵고, 체계적인 육성도 곤란한 실정으로 일정한 기술인력·장비 등 기술능력을 갖춘 자만이 비파괴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검사를 방지하는 한편, 비파괴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해 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비파괴검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기술자격,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검사자의 자격향상에 필요한 경력을 관리하고 검사자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신설)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비파괴검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검사자의 기

술자격, 근무처 등을 신고토록 한 것은 검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이나 법률에 정하여야 할 교육의무, 경력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의무, 경력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비파괴검사결과와 신뢰성보증을 위하여 사업자는 비파괴검사계획서 및 비파괴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하도록 하고 검사업무 등의 수행방법, 절차,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신설)

☞ 선진 외국의 경우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에 의한 독립적·책임검사가 보편화되어 있고 검사의 표준절차 및 검사자 자격등급에 따른 검사 범위,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관련법규가 없어 그 책임소재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비파괴검사기술의 신뢰성 및 검사대상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파괴검사에 대한 표준적인 절차 및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사업자 등이 아래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신설)

- 검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공중에 위해를 끼칠 경우
- 검사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타 사업자에게 검사업무를 대행시킨 경우
- 부적합한 규격적용 및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 등록된 검사업체 및 기술자격자 등이 법규에 의한 검사행위를 정확하게 이행하게 함으로써 비파괴검사 대상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검사업무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3회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비파괴검사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검사업무의 정지와 함께 검사업체의 등록취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다음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제정안 제13조의 검사자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제정안 14조에서 정한 표준업무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 제정안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될 때

- ☞ 검사자의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검사수행의 표준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제정안대로 의결.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요건은 이중 규제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명확한 검토가 필요.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의무 관련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교육훈련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②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개정안(신설 1)

-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를 위반할 경우 민·군겸용기술사업 등에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해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등에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타입법의 예(「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③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제정안(신설 4, 내용심사2)

-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핵 물질 및 핵 물질의 등급별 분류 중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10호 자목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사업자를 정함(내용심사)
- ☞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①핵 물질의 등급별 분류와 ②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사업자를 정의함에 있어 대체로 기존 원자력법의 규정과 IAEA 및 미국의 기준을 참고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 원자력시설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를 운영하는 자는 원자력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 상충점이 있으므로 시행령안 제

4조 제1호에 교육용 원자로를 포함시켜 원자력시설을 이용·취급하는 자가 원자력사업자라는 법 취지에 맞추도록 개선권고

- 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사업자에게 위협에 대한 대처 및 정보제공, 물리적방호 관련 조직 및 인력운영, 물리적 방호 관련 시설·장비의 확보 및 운영, 물리적 방호교육의 실시 등 물리적 방호체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및 ‘IAEA 국제지침’ 상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대체로 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정안 제8조제2항제2호 ‘물리적방호 관련 조직 및 인력운영’ 과 제3호 ‘물리적 방호 관련 시설·장비의 확보 및 운영’ 규정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정안 제8조 제2항 제2호(물리적 방호 관련 조직 및 인력운영), 제3호(물리적 방호 관련 시설·장비의 확보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법체계상 시행령 제정안 제9조(물리적 방호 교육)도 삭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두 가지 경우와 같이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개선권고
- 핵 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요건, 핵 물질의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요건, 운송 중인 핵 물질에 대한 방호요건 등 원자력사업자가 위협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호요건을 정함 (신설)
 - ☞ 국제적인 물리적 방호 강화 추세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의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핵 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을 개정·강화하게 되었고, 그 핵심내용은 주요 위협요소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등의 사보타주 및 운송 중인 핵물질에 대한 방호요건을 회원국들이 정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마련과 효과적인 협약이행을 위하여 회원국의 준수사항인 IAEA 국제지침과 관련 기술지침서를 반영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하도록 동 방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핵 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 및 항구에서 핵 물질 또는 방사성물질 등의 검색을 거치도록 함(신설)
 - ☞ 국제운송 중인 핵 물질의 국내에서의 방호를 보장하고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핵 물질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가차원의 검색관리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핵 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상의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 법안 제21조 및 제35조에서 원자력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 중 ①방사능재난대비기구의 설치·운영 ②방사능재난대비 업무전담 인원 및 조직 확보 ③방사성물질의 방

출량 감시·평가시설 ④주제어실·비상운영지원실 등 비상대응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를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 원자로와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외국원자력선 운항자, 핵 원료물질 또는 핵 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자, 방사성폐기물의 지정·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정함(내용심사)

- ☞ 방사능재난대비기구의 설치·운영,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평가시설 등 법상 일부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원자력사업자의 범위를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상의 방호대상규모 이하(2메가와트)와 방사능위험도가 낮은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함(신설)
- ☞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교육의무 및 자격시험인정제도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집필자 : 이태인 서기관(T.3703-3947, goodlti@opc.go.kr)

2. 정보통신부

①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개요

- 2003년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인터넷 주소자원예관한 법률 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등 8개 법령에 대해 신설 9건, 강화 9건, 내용심사 6건 등 총 2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4건 중 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정보통신부의 2003년도 총 신설규제는 9건임

정보통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청소년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158차 경제2분과위 (2003. 3. 14)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내용 3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159차 경제2분과위 (2003. 3. 21)	원안의결 1	강화 1
③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160차 경제2분과위 (2003. 3. 28)	원안의결 1	내용 1
④ 인터넷주소자원어관한법을 제정안	제169차 경제2분과위 (2003.7. 18) 제121차 규개위 (2003. 7. 25)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5
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제177차 경제2분과위 (2003. 9. 19)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신설 2 강화 4
⑥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제178차 경제2분과위 (2003. 9. 26)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4
⑦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제179차 경제2분과위 (2003. 10. 10)	원안의결 1 재심사 1	내용 1
⑧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제181차 경제2분과위 (2003. 10.24)	개선권고 1	내용 1
계		개선권고 5 원안의결 19	총 24건

② 2003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3)

-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예외사항을,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 중 당해 역무의 사업규모와 보급률이

- 낮고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구매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는 등 이용자에게 통신단말장치를 구입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 일정한 할부판매기간을 정하여 그 이자수수료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 신기술의 개발·육성 또는 새로운 전기통신역무의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기준, 지급한도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내용심사)
- ☞ 개정안 제10조의4 제1항제1호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중, 지나친 단말기보조금 지급문제를 발생시킨 셀룰러, PCS 단말기 등에 한해 동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2호(재고단말기 허용), 제3호(할부수수료 지원 인정) 등은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규제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말기 판매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만, 개정안 제10조의 4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상황, 통신단말장치의 생산 및 판매상황,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 및 지급한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
-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함(내용심사)
 - 법 제37조제1항제6호와 법 제3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제12조 제1호제2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 법 제 37조제1항제3호, 제5호 중 이용약관의 변경과 제7호 또는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법 제37조제1항제4호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제12조제3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 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 중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 ☞ 19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온 개별 심결례를 바탕으로 이행기간을 산정한 것으로서 시정조치별 이행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KT 등에 의해 시외전화 고객유치를 위한 시내전화 요금할인 등의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진 바 있어 업무처리절차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전기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시행령

안 별표1과 같이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상한액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시행령안 별표2와 같이 정하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함(내용심사)

- 매출액은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고 다만, 당해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위반행위 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정함

☞ 불공정 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매출액의 3/100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도 이에 준하여 3/100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의 사업자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수준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개정안 별표1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지금까지 “4.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로써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져 왔고, 상호접속 거부 등 근본적인 공정경쟁 저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4.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수준에 맞추어 과징금 부과수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별표1의 “6.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과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에 대한 매출액 대비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2/100 이하, 8억원 이하(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 매출액의 1/100 이하, 4억원 이하(기간통신사업자), 매출액의 1/100 이하, 1억원 이하(별정통신사업자)”로 각각 하향 조정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자우편 · 전화 · 모사전송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로 부호 · 문자 · 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하여 전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강화)
- ☞ 임의의 IP 주소에 대한 영리성 광고전송으로 인한 이용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동 광고방식이 기존의 전자메일 전송방식과 구분되어 현행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신규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자메일, 전화, 모사전송,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각종 전송방법 규제는 수신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③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통신재난 예방 및 통신재난의 신속한 수습 · 복구를 위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년도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기전기통신설비보유자로 하여금 각 자가 운영 또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상황과 대책 등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수시로 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내용심사)
- ☞ 통신재난관리계획 제출, 피해상황 보고, 소속직원 파견 등은 태풍, 화재 등에 따른

통신재난 발생 시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통신사업자의 최소 의무사항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재난 발생시의 통신설비 통합운영규제는 통신망 두절시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④ 인터넷주소자원에만법률 제정안(신설 5)

-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 보장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할당·배정 및 등록·관리 등 이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인터넷주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종류를 정하여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배정 또는 등록·관리 등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기관이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성 보장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관리기관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④관리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관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등록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야 함(신설)
- ☞ 인터넷 이용의 증대로 인터넷 루트서버 등 국가정보통신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시설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미국·유럽 등과 같이 동 시설을 관리하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대한 규제(지정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토록 한 인터넷주소의 할당·배정 및 등록·관리 등의 이용기준은 고시에 규정하기보다 시행령·시행규칙상에 규정할 것을 개선행고
- 관리기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인터넷주소등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한 등록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직원은 인터넷주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은

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 그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선정된 관리대행자에게 부당한 조건의 계약을 강요하여서는 안됨

- 관리기관은 관리대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과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우 그 선정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익과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소속으로 봄(신설)

☞ 인터넷주소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고 인터넷주소 등록에 따른 개인정보 또한 보호되어야 함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대행업체에 대한 이용자 권익보호 등의 의무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대행업체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대행업체와의 불공정한 계약도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직원의 접근권한을 남용한 인터넷주소의 선점행위 등은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인터넷주소를 등록하는 자는 타인이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됨(다만, 상표·상호 등 식별표지를 인터넷주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따름)

- 등록된 인터넷주소가 안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인터넷주소의 등록자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월 동안은 등록말소를 청구한 자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인터넷주소의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말소 청구일 전 계속하여 1년 6월 이상 그 주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월 동안은 등록말소를 청구한 자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신설)

☞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은 정당한 이익을 가진 타인의 인터넷주소등록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동 행위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이버스쿼팅 관련 소 제기자의 등록신청기한을 1월로 두는 것도 온라인으로

신속한 인터넷주소등록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1년 6월 동안 인터넷주소등록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등록말소 청구를 인정하는 것도 1년의 인터넷주소등록 갱신기간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신설)
 - ☞ 인터넷주소 관련 분쟁조정 시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의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종사자 및 동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을 지정 받은 자 등,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 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습으로 타인이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를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신설)
 -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의무이행 확보 및 사이버스쿼팅 방지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한 금융망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관리미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천만 원 이하)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을 개정안 (신설 2, 강화 4)

-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들에게 보안패치 정보를 제작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2회 이상 고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보안패치 정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설치되는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에 통지하도록 함(신설)
 - ☞ 1. 25 인터넷침해사고, 블래스터 워름(Blaster Warm) 피해사고 등 인터넷사고의 주요 요인은 소프트웨어의 보안패치를 소홀히 한데 있었으며 2003. 2~3월 정보보호 실태조사결과 보안패치 및 사전점검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주기적인 보안패치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주요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 제공자 등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인

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에 침해사고 대응지원에 필요한 공격유형별 통계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 주요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 제공자 등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체결한 협약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관 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현행 우리나라의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체계는 사후대응위주로 되어 있으며 침해사고 후 원인분석이 필요한 자료보전, 현장조사 등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여 새로운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차원에서 인터넷침해사고 관련 주요통계정보의 실시간 공유·분석을 통한 사전예방 및 조기대응이 필요하고 또한 침해사고 후에도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보전,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 주요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 제공자 등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간에 체결한 정보제공협약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개정안 제48조의 2 제3항에 별도로 정보통신부장관이 협약체결 후 협약의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약 인가”는 “협약 제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선권고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자동개인정보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또는 설치·운영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업체에게 개인정보보호조치의무를 강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고시에 정하도록 함(강화)

☞ 인터넷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기업체에서는 쿠키(cookies)생성 등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축적·가공·이용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소지가 상당하고,

- 또한 개인정보의 관리 소홀로 인해 LG텔레콤(2002. 8) 및 KTF(2003. 2) 등에서 4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 제28조의 개인정보보호조치 규정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취급업체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사례가 있음에 따라,

- 현재 인터넷 이용 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쿠키 등 기술적 조치에 의한 개인정보수집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고 사업자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치기준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위탁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강화)
 - ☞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관리하는 자는 누구든지 철저한 보호의무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를 위탁한 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에게도 동일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준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 제공자 및 일정규모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고시에 정하도록 하고 주요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 제공자, 대형 온라인쇼핑몰 등은 매년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소관 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안전진단을 받도록 함(강화)
 - ☞ 대형 온라인쇼핑몰, 포털사이트 등의 경우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보보호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며 현재 IDC(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해서만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현행법률 제46조)하고있으며,
 - 주요 ISP(인터넷접속서비스) 및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준수를 권고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음에 따라 ISP, IDC, 대형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해 정보보호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다음과 같이 추가(강화)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도록 한 자
 - 정보보호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정보보호안전진단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보안패치 정보를 2회 이상 고지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의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자
- ☞ 정보보호안전진단 의무이행 확보, 정보보호체계 구축, 개인정보 침해방지 등을 위한 규제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의 부과가 필요하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한 금융망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미비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수준(천만원 이하) 등을 고려 할 때 과태료 부과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 법안 제67조 1항 14의 5호와 14의 6호 규정은 “사인간(私人間)”(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주요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 제공자 등)의 협약위반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同)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필요

⑥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신설 2, 강화 4)

-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거나 감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급을 취소하고 당해 경력수첩 등을 회수하여 폐기하며 2년간 경력수첩 등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함(신설)
-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제도는 국가기술자격자나 경력자 등이 기술자격,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여주는 제도로 기술자격이 없거나 경력이 부족한 자가 국가기술자격이나 경력확인서류를 위·변조하여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 공사의 시공품질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인정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공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신설)
- ☞ 공사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특성상 공사대금의 채권채무관계소송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노임까지 압류됨으로써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근로자, 특히 일급·주급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의 압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정기간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 자재 또는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그 밖의 정보통신공사 관계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1999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부실·부적격업체의 공사업 시장진입수단으로 악용되어 역기능이 심화됨에 따라 부실·부적격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정비が必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특별한 경우(발주자의 승낙,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 등)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하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하며 수급인은 도급 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강화)
 - ☞ 정보통신공사업은 단일업종으로 일괄수주를 받아 시공하여야하는 관계로 정보통신설비의 다양성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특성상 일정부분의 하도급은 필수적이나 현행 법률에는 하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일괄하도급, 다단계하도급,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며 원·하도급업체간의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고 원·하도급업체간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부실공사를 막고 하도급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공사하도급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시·도지사가 공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강화)
 - 공사업등록에 관한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공사업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공사실적·자본금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공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경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제로의 전환 이후 업체수의 대폭증가와 함께 입찰만을 전문으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등의 부실·부적격업체가 다수 생겨나고 이들 업체는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역기능을 하고 있음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가로 일정 부조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과대상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시·도지사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강화)
 - 허위의 내용으로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시·도지사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 현재 공사실적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허위실적제출을 통하여 공사수주를 받는 이익이 과태료처분에 의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허위실적을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의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과태료처분의 추가요건도 공사업등록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⑦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 현행법상 외국인 등의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입제한과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가 최대주주이면서 15%이상의 지분을 갖는 국내법인을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소유에 관하여 외국인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당해 국내법인의 최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수를 포함)로 변경함(내용심사)

- ☞ 외국인 등의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입제한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를 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소유에 관하여 외국인으로 의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상 국내법인을 실제 지배하는 자가 내국인일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의제되어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입을 제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는 국내법인이 외국인으로 의제 될 수 있는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의무 손실분담기준 추가(내용심사)전은 손실보전 분담금 산정기준에 현재의 “매출액” 이외에 “이익”을 추가하는 것은 산정기준을 이원화하고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완 후 재심의

⑧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1)

-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의무의 제공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보편적 의무 손실보전금을 현행 매출액에서 이익 등에 따라 분담토록 함(내용심사)
 - ☞ 손실보전분담금 산정기준에 현재의 “매출액” 이외에 “이익”을 추가하는 것은 산정기준을 이원화하고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 단서 규정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분담비율 조정방법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본 단서규정은 이 영의 시행 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하도록 함

*집필자 : 이태인 서기관(T.3703-3947, goodlti@opc.go.kr)



제4장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제1절 _ 규제연구센터 설립 · 운영

제2절 _ 규제개혁 교육훈련

제3절 _ 규제개혁 국제협력

제4절 _ 선진국 규제개혁사례

제1절_ 규제연구센터 설립·운영

1. 설립배경

규제개혁의 초기단계인 양 위주의 규제개혁 정책에서 규제품질 관리 및 총합적 규제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규제의 품질관리를 위해 규제영향평가(RIA : 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내실화·전문화하기 위한 규제전문연구기관으로 규제개혁센터가 한국행정연구원 내에 설치되게 되었다. 센터는 총 5개 팀(규제연구·조사팀, 규제영향분석팀, 경제1팀, 경제2팀, 행정·사회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2. 기능

규제개혁센터는 규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규제의 제도적

발전 및 이론적 연구를 담당하며 정부의 규제개혁추진기구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규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조사’로서,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현황 분석, 규제영향분석기법의 개발 및 운용, 규제순응도와 규제체감도 조사, 외국(OECD 등)의 규제제도 연구, 규제에 관한 최신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며, ‘규제개혁추진기구 지원’ 사업으로서, 규제개혁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연구 및 기획 업무 지원, 국무조정실의 규제관련 업무 지원 등의 기능과, ‘규제 관련 용역사업 수행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3. 2003년도 활동내용

규제제도의 연구, 규제에 관한 최신 이론과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규제순응도 및 체감도의 조사·분석 등 규제연구의 핵심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성과물로써 총 10개의 연구보고서를 집필·발간하였다.(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경제분야 규제영향분석(주택 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 공장설립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실용적 체계화 등)

‘규제개혁추진기구 지원’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요원의 선발 및 해외 정책연수에 참여하였으며, 교육 훈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전문가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관련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여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OMB 내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를 초빙하여, 실제적인 규제영향분석 적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4. 향후 계획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규제개혁추진체계·전략에 관한 연구, 외국(OECD 중심)의 규제제도 연구, 규제에 관한 최신 이론 및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기존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담당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규제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규제정보자료실을 통해 규제연구와 규제조사·분석결과를 정리, 축적하고 선진 규제이론과 최신 정보의 수집·활용하여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부처의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면밀히 분석·파악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좀 더 바람직한 규제영향분석 기법을 적용토록 하는 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규제개혁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규제체감도 조사 등 규제 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연수·워크숍 프로그램 등 전문 인력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각종 교육기관의 규제관련 교과 강사로 연구진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강의를 접하도록 할 예정이다.

*집필자 : 김달원 사무관(T.3703-3931, orion@opc.go.kr)

제2절 _ 규제개혁 교육훈련

1. 개요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 RIA)은 규제에 의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 심사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중시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할 수 있고, 합리적인 규제수단과 대안의 탐색을 가능케 하며, 기존 규제 검토 시에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질적 규제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영향분석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규제개혁 연찬회와 국내 교육 및 해외 정책연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2. 규제개혁 연찬회

① 연찬회 개요

① 개최목적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담당자들의 의식 및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규제개혁업무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였다.(2003. 5. 27 ~ 5. 28) 특히 이번 연찬회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기본 소양을 배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② 참석대상

이번 연찬회에는 규제개혁조정관실 직원과 규제개혁센터 연구원 및 규제업무 관련 중앙부처, 시·도 공무원 등 총 150명이 참석하였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관련업무가 많은 실·국의 법령 제·개정 담당자가 주요 교육 대상이었다.

② 주요내용

이번 연찬회는 직무교육과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선진국 전문가 특강으로 운영되었다.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전문가로 스캇 H. 제이콥스(Scott H. Jacobs), 제퍼슨 B.(Jefferson B. Hill)이 참여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 Scott H. Jacobs – Good Practices in Regulatory Reform

규제개혁의 선진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규제개혁 성과를 지적하고(소비자 혜택 대폭 증가,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등 7가지), 규제개혁에서의 규제영향분석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규제영향분석의 개선을 통한 질 높은 규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Jefferson Hill - Regulatory Impact Analysis :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양질의 규제를 위한 세 가지 주요요소인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이 개선되어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규제개혁에는 경제적 효용을 제고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일반 대중에 열려 있는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국내 규제영향분석 교육

① 규제영향분석전문가 과정 운영

① 개요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규제영향분석 전문가과정을 개설하여 규제영향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2003. 8. 25~29)

이번 교육과정은 선택 전문 과정으로 인정되었으며, 중앙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검토부서 근무자 또는 근무 예정자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코자 하였다.

미국의 규제개혁관련 전문기관인 JACOBS & ASSOCIATES INC.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규제개혁센터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② 주요내용

국내외 규제영향분석 전문가를 초청하여 규제영향분석의 기초이론에 대한 교육과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규제개혁 및 규제영향분석 이론과 소개, 자료수집 등 규제영향분석의 실시방법론, 규제영향분석 사례 연구(미국, 호주,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현황과 추세, Objectives of RIA in the policy process, 규제영향분석의 개요와 비용편익분석기법, RIA 국내 사례로 오징어 채낚기선 광역제한에 관한 규제, 분묘의 매장기간에 관한 규제영향분석, 해외사례로 Trans Fat in Nutrition Labeling(미국) 등을 주제로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실시하였다.

②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① 규제개혁관련 전담과정 운영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등 규제개혁 전담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규제개혁관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경우, 5~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은 지방규제개혁과정을 운영하였으며, 5~6급 지방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② 기타 관련 교과목운영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중앙·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단일교과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토록 하고 있다.

연간 약 2만여 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시되고 있으며, 규제개혁 관련과목 평균 강의시간은 2~3시간 가량이다.

주된 강의 내용으로 당해연도 규제정비 방향, 규제관련 법규, 추진실적 등이 교육되고 있다.

4. 해외 정책연수

① 개요

규제영향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면담 및 사례연습을 실시하였다.(2003. 11. 10~11. 23)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농림부, 관세청 등 주요 부처의 규제개혁 업무관련자로 국내 교육을 이수한 중앙부처·청 공무원 총 15명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② 연수내용

캐나다의 수상실 재정위원회, 보건부, 식품검사청, 퀘벡시청 및 미국의 관리예산처, 교통부, 회계감사원, 식품안전처, Jacobs&Associates 등 규제영향분석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고급관료뿐만 아니라 담당 실무자와의 면담과 각국의 주요 사례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캐나다의 분야별 규제정책 및 규제영향분석 실태 조사·분석과 사례연습이 이루어졌으며, 규제영향분석 추진체계·활용전략·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등 심층적인 규제영향분석 연구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연수결과보고서 “규제영향분석기법 연구-미국” “캐나다의 규제개혁”을 발간하여, 연수성과를 정리·보고하였다.

5. 향후 추진계획

① 기본방향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개혁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이와 함께 일반 공무원에 대한 규제관련 기본소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기본교재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규제개혁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해외 정책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 과정을 규제개혁센터와 함께 운영하여 좀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깊이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일반공무원 대상 소양교육 강화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축적된 자료를 책자형식으로 발간하여 타 직원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규제전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심화할 예정이다.

*집필자 : 김달원 사무관(T.3703-3931, orion@opc.go.kr)

제3절 _ 규제개혁 국제협력

규제개혁과 관련 국제협력은 크게 OECD와 APEC 관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ECD에서는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국의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과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으며 APEC에서는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Group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3년 규제개혁과 관련된 세부 국제협력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OECD와 관련하여서는 Special Group on Regulatory Policy(2회),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1회), Expert Meeting(2회), APEC-OECD 규제개혁 회의(2회) 등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차원의 규제개혁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내 규제개혁 추진에 참고하였다.

APEC과 관련해서는 2003년 APEC에 제출하는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었는 바, 8월에 개최된 제3차 고위관료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에서 뉴질랜드와 함께 심사를 받았다. 각 활동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의별로 정리하였다.

1. OECD Special Group on Regulatory Policy

* 2002. 11월 OECD 각료회의의 의결에 따라 OECD회원국의 고위관료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특별작업반(Special Group on Regulatory Policy)을 구성하여 2003년 3월 및 12월,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① 제1차 회의(2003. 3. 27~28, 프랑스 파리)

본 회의에서는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간의 관계 및 △노르웨이·핀란드 규제개혁 국별 심사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특정산업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규제기관과 경제전반에 적용되는 경쟁법 적용을 담당하는 경쟁당국 간 어떻게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각국 대표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OECD사무국 측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기하고 각국 대표들은 본 논점에 대해 각국의 사례 등을 기초로 토의하였다.

첫째, 특정문제에 대해 사전규제와 사후의 경쟁법 집행이 모두 가능할 경우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의 선호수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경쟁당국은 특정규제제도가 적절한 지 및 도입 후 필요성이 상실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관여해야 하는가?

셋째,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이 중복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경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양 당국 간의 긴밀한 업무조정과 협력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및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스웨덴과 이태리는 경쟁법 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경쟁당국으로 경쟁법 집행의 이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규제당국에 계만 담당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규제포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쟁당국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프랑스는 경쟁법을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이 중복하여 집행하더라도 양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특히 양자 간의 인사교류가 있다면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호주는 양 당국 중 누가 담당할 지 또는 중복담당할 지 여부는 산업별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호주와 같이 경쟁당국이 독립규제기관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OECD 사무국 측은 동 방식의 장점으로 경쟁당국이 산업별 특성에 따라 사전규제와 사후 경쟁법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규제체제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립규제기관의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규제폐지 시 원활한 인력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규제제도 도입 및 기 도입 규제의 폐지문제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회원국 간 큰 이견이 없었다.

② 규제개혁 국별심사

<< 노르웨이 >>

노르웨이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중앙규제개혁 추진기구의 부재 △국가소유 위주의 공공서비스 시스템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규제영향분석의 일관성 결여 및 △지방 정부의 낮은 규제 수준 등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①중앙규제개혁 추진기구를 설치할 것과 ②생산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지급 중단, ③ICT의 확산, 정보통신, 철도, 체신 등 네트워크 산업의 자유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산업, 교통 및 금융분야 등에서의 과감한 개혁 추진을 권고하였다. 특히 공공분야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④공공지출(전체 GDP의 40%)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⑤과도한 퇴직연금 및 실업급여의 축소 ⑥공공부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분석 수준과 범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⑦중앙감독기구 등의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대부분의 회원국들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지방정부 규제의 수준과 행태개

선을 위해서 ③현행 보조금 지원체계에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는 OECD회원국들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임을 표명하였으나 중앙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설치 권고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분권적 구조 △컨센서스(Consensus)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및 △각 부처의 자율성 존중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 주심사관 : John Fingleton 아일랜드 경쟁위원회 위원장

Ali Haddou-Ruiz 멕시코 연방규제개혁위원회 국장

〈 핀란드 〉

핀란드에 대한 국별심사에서도 회원국들은 노르웨이와 유사한 권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노르딕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컨센서스(Consensus)방식의 정치행정시스템이 지금까지 규제개혁 추진에 애로로 작용해 왔으며 향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컨센서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규제 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중앙규제개혁 추진기구의 부재 △공공분야의 비효율성 △정부 고용 인력의 과다(전 노동인구의 1/4), △노령화 촉진으로 인한 과도한 공공지출 및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쟁부진과 비효율적인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므로 특히 도매업·건설·농업 분야의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중점적으로 권고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중앙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설치를 포함한 OECD회원국의 권고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주심사관 : Peter Mumford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국장

Monica Widegren 스웨덴 경쟁위원회 국장

② 제2차 회의(2003. 12. 4~5, 프랑스 파리)

①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의 효과 : 실증적 분석

회원국들은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고용증대·생산성 향상·경제침체의 충격 감소 등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다양한 실증적 분석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최근 OECD 연구결과에 의하면 규제개혁의 효과가 △경쟁 촉진으로 인한 경제적 지대(rent) 감소 → △생산성 향상 → △GDP 증가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생산시장의 규제정도와 고용률·생산성 향상 간의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설명하였다.

회원국들은 규제개혁이 노동생산성 증가 및 생산기술의 혁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측정하는 데는 연구방법론 상 한계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규제개혁 이외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생변수(새로운 기술의 도입·세계 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를 제거하는 등의 연구방법론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들은 공감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규제개혁이 없었던 분야(예 : 농업분야)를 비교대상으로 규제개혁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② 규제개혁 집행에 있어서의 도전과 극복방안

규제개혁의 비용은 단기간 소수에 집중되는 반면 혜택은 장기간 다수에 분포되는 특징을 지니는 바, 집행과정에서 규제개혁의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회원국들은 공감하였다.

회원국들은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집행과정에서의 △고위 정책결정자 및 일반대중의 지지 확보 △규제개혁 비용/편익 명확화를 통한 규제개혁 순편익의 명시 △자문기제의 활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고위정치권 및 일반대중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혜택을 입증하는 실증적 자료(GDP 성장률, 서비스 이용료 인하 효과 등)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러한 점에서 같은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성장과 규제개혁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③ 규제개혁 국별심사

〈 독일 〉

독일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합의제 의사결정 및 연방제를 기반

으로 하는 정치제도의 경직성 △국가소유 위주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 △불완전한 경쟁정책 등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①중앙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설치, ②공공서비스 부분의 과감한 민영화, ③새로운 시장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 등을 개선방안으로 권고하였다.

특히 회원국들은 독일의 정치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개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신·에너지 부문의 국가 개입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찬성론과 경쟁원리를 저해한다는 반대론으로 대립하였다. 현재 독일은 약국을 하나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회원국들은 이를 경쟁원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임을 표명하였으나, △휴대폰 요금 규제로 인한 통신서비스의 저가 제공 △도서정가제를 통한 출판시장의 보호 등 규제 및 경쟁 제한정책으로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성공하였음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각국의 정책적 목표 및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주심사관 : Declan Purcell 아일랜드 경쟁당국 과장

John Morrall 미국 OMB 팀장

* 독일 수석대표 : Kurt Stockmann 경쟁부 부의장

《 프랑스 》

프랑스에 대한 국별심사에서 회원국은 △항공·통신·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쟁원칙 도입 △복잡한 규제(법률)체계의 개선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의 권고의견을 제시하였다.

회원국들은 최근 프랑스가 추진중인 행정간소화(Administration Simplification) 프로그램과 에너지 분야 등 주요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쟁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개인의 주소 이전하는데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통신·에너지 산업 등 주요시장에서의 경쟁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등 행정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OECD 권고안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임

을 표명하였다.

- * 주심사관 : Edward Donelan 아일랜드 법률심사국 과장
Estrada Gonzalez 멕시코 경쟁위원회 국장
Ali Haddou-Ruiz 멕시코 연방규제개혁위원회 국장
- * 프랑스 수석대표 : Henri Plagnol 국가개혁부 장관

2. OECD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

- * OECD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여 각국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OECD 규제개혁 논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매년 1회 규제개혁 작업반 회의(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를 개최

① 제1차 회의(2003. 9. 27~28, 프랑스파리)

① OECD 회원국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 및 추진상황 발표

회의 도입부에서 회원국들은 최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하였다.

캐나다 대표는 2003년 7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스마트 레굴레이션(Smart Regulation)위원회의 의장으로 Mr. Gaetan Lussier가 임명되었으며, 규제개혁 전략 수립·국제협력 강화·각급 정부간의 협력체계 구축·효율성 제고·규제로 인한 위기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EC 대표는 금년 하반기부터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에 대한 실행계획이 도입·추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자문에 대한 지침을 개발·운영 중임을 발표하였다. 체코 대표는 2000년도에 실시된 규제개혁 국별심사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2002년 10월 규제개혁 기구 개편 및 발전된 규제개혁 수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진전략이 마련, 실시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② 2003~2004년도 작업반(Working Party) 논의주제 검토

사무국은 2003~2004년도 작업반 논의주제로 △각급 정부 간의 규제정책 조정 △규제 개혁 사후평가 △규제영향분석 목록작성 △독립규제 당국 검토 등 4가지를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원국들은 4가지 논의주제 모두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회원국들은 규제영향분석 목록작성(RIA Inventory)이 각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발전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 회원국의 사례수집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OECD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 규제영향분석 목록 작성을 3~4개월 안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규제개혁 국별심사

《독일》

독일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연방제 전통과 규제개혁 추진과의 갈등관계 △중앙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부재 △가이드라인과 집행 사이의 괴리 △규제영향분석제도 활용 미흡 △관료제 전통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부담 등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①강력한 규제개혁을 위해 중앙규제 개혁 추진기구 및 종합 정책을 수립할 것과, ②규제정책 및 집행간의 괴리를 축소할 것, ③규제도입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질적인 활용, ④행정부담 간소화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특히 연방제의 전통은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나 하위정부간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활용하면 규제개혁 추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연방제 전통과 규제개혁 간의 조화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독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 등 규제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현실적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해결방안으로 정치권의 강력한 지지 및 각 정부기관의 지지 확보를 제의하였다. 각 부처 간, 각급 정부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전통으로 인하여 정책 결정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규제영향분

석 제도의 활용이 미흡한 바, 정부 내 협의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협의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과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은 규제영향분석 지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강력한 관료제 전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부담을 계량화하는 작업과 자문기제를 활용하는 방안 도입 등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향후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나, △중앙 규제개혁 추진기구는 각 부처와 관계인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종합적인 규제개혁 추진정책의 수립도 연방제의 전통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처 간, 각급 정부 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규제영향분석이나 자문기제를 성공적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주심사관 : Aarne Rovid 노르웨이 금융부 자문관
Mark Courtney 영국 규제영향분석국 부과장

〈 프랑스 〉

프랑스 국별심사에서는 프랑스가 최근 추진 중인 △행정부담 간소화 및 △One-Stop Shop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회원국들은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구 부재 및 △효율적·체계적인 RIA의 활용 시스템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회원국들은 ①새로운 규제 도입시 전반적인 규제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기구를 설립할 것과 ②규제영향분석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③투명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자문기제의 도입, ④원스톱 숍(One-Stop Shop)의 확대 ⑤행정간소화 평가수단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첫째, 회원국들은 규제관리를 위한 중앙기구의 설립을 통해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현재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 규제개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기구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둘째, 프랑스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종합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규제영향분석이 형식적 절차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의 의무화 및 규제영향분석의 단계적 활용(targeting) 방안 도입 등이 권고되었다.

셋째, 회원국과 사무국은 프랑스가 다양한 자문기제를 가지고는 있으나 실질적·효율적

자문 시스템은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문 확대 및 규제영향분석을 자문기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권고하였다.

넷째, 회원국들은 프랑스가 최근 추진 중인 행정간소화프로그램과 원스톱 숍(One-Stop Shop)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향후 제도개선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OECD 권고안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분권화된 정부구조(National/Region/Department/Municipality)를 감안할 때 중앙 집중적인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설립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이해를 요청하였다.

* 주심사관 : Edward Donelan 아일랜드 법률심사국 과장

Fiorenza Barazzoni 이탈리아 행정개혁위원회 과장

④ 「1995년 정부규제 개선을 위한 OECD 권고안」 및 「1997년 규제개혁 실행계획」 개정작업 추진 검토

사무국은 1995년 작성된 OECD 권고안의 개정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권고안 기준의 개선과 보강 △권고안의 심화 및 발전 △정적인 접근 방법에서 동적인 접근방법으로의 전환 △권고안 적용의 편리성 제고 등을 개정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무국은 2003년 말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착수하여 2005년 상반기까지 개정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정을 제시하고 개정방향 및 일정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영국 및 멕시코 대표 등은 동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이 개정되는 경우 1997년도에 채택된 실행계획과의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두 체크리스트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7년 실행계획에 대하여는 1995년 권고안의 통합방안과 연계하여 향후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키로 결정하고 권고안 및 실행계획 개정작업에 대하여는 각 회원국과 사무국 간의 양자 협조체제를 통해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⑤ 비회원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검토

사무국은 향후 추진될 비회원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APEC-OECD 협력 프로그램

램 △러시아-OECD 규제개혁 협력 프로그램 △남동 유럽(SEE)의 규제개혁 추진협력 프로그램 △중국과의 정책대담 등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APEC-OECD 협력 프로그램에서는 향후 규제개혁 통합 점검목록(Checklist) 작성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회원국 간의 협의를 마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러시아-OECD 규제개혁 협력 프로그램은 러시아 규제개혁 국별심사 작업을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2004년 국별심사 작업을 완수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남동 유럽 규제개혁 추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시장개방 및 독립규제기관 등을 주제로 일련의 세미나가 개최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중국과의 정책대담은 중국의 규제개혁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행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포함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규제개혁 검토

2003년 8월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규제개혁의 영향에 대한 관심 고조되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정전사태를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규제개혁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발족하였음을 알리고 OECD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3. OECD Expert Meeting

* 매년 1~2회 규제개혁과 관련된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OECD 회원국의 규제개혁 전문가가 참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 개최

① 제1차 회의(2003. 6. 30~7. 1, 프랑스 파리)

제1차 회의는 각급 정부에서의 바람직한 규제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중앙집권제 및 연방제 등 국가 형태별로 중앙과 지방간 각급(multi-level) 정부들에서 보다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한 일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정의, 변화하는 규제거버넌스 단계, 규제체계의 유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화(harmonization),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통일성(uniformity)/협력(cooperation)과 정부역량(capacity building), 경쟁적 규제(competitive regulation)과 수범사례 및 벤치마킹 등의 각급 정부 간의 관계에 적용 가능한 규제개혁 원칙과 통합과 능력형성 유인, 양해각서, 공동협정, 자발적 행위규칙, 규제집행과 순응 등 다섯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각급 정부 간 규제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을 유도하였다.

또한 지방(sub-national)으로의 규제권한 이양 추세와 함께 국가나 국제적 차원에서의 규제조화(regulatory harmonization)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제의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되었으며, 따라서 합리적인 개념과 원칙에 따른 서로 다른 차원의 정부 간에 규제권한의 재분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상향적(bottom-up)·하향적(top-down) 방식의 효과적인 결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관련한 논의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서로 다른 차원의 정부들 간의 규제권한, 나아가 정책권한 이양의 문제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회원국들은 공감하였다.

각급 정부로 구성된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규제권력의 주체가 존재하는데 전통적인 중앙정부에 적합한 최선의 규제정책, 수범사례가 과연 각 지방정부나 하위단계의 정부에도 적합한가라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즉, 어느 한 차원(예 : 중앙정부)에서는 양질의 규제가 다른 차원의 정부(예 : 지방정부)에서는 낮은 질의 규제정책으로 변할 위험이 존재하는지의 문제로서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들(RIA, simplification 또는 codification)을 각급 정부에 적용할 때 정부 간의 조율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차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발생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때는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② 제2차 회의(2003. 9. 22, 프랑스 파리)

제2차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사후평가의 대상 △규제 질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규제개혁 사후평가를 통해 규제정책의 오류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규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임의적·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사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원국의 평가시스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제개혁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목록 작성을 계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OECD 회원국의 규제개혁 사후평가 추진현황 △성공적인 사후평가를 위한 정책 및 전략 △규제개혁 수단 및 기구에 대한 사후평가 기법 및 사례 △규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이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ECD 회원국의 규제개혁 사후평가 추진현황

OECD 회원국 중 19개 회원국의 응답을 토대로 규제개혁 사후평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11개 회원국은 이미 규제개혁 사후 평가에 대한 원칙 및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은 필요성에 의해 규제영향분석·자문기제·규제기관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평가가 실시하였으나 공통적으로 평가에 소요되는 자원의 부족이나 측정도구 마련의 어려움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② 규제개혁 사후평가에 대한 정책 및 전략

규제개혁 사후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의 명확한 목표 및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고 사후평가 전략 수립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회원국들은 사후평가 설계 시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 설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사후평가의 정당성 및 의회·감사기구 등과의 연계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③ 규제개혁 수단에 대한 사후평가 : 규제영향분석 및 자문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의 사후 평가 시 사용되는 각종 지표(경제적 비용/편익 등) 선정은 어려운 과제이나 평가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공감하고 측정지표의 개발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영국은 규제영향분석의 자문기제·비용/편익 분석·모니터링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제영향분석 지침에 반영하였음을

발표하였다.

회원국들은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집단 및 비정부기구를 평가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문기구를 사후평가에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기구 사후평가가 단지 형식적인 절차로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환류작용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④ 규제 기관에 대한 사후 평가 : 중앙 규제개혁 기구 및 원스톱 숍(One-Stop Shop)을 중심으로

중앙 규제개혁 기구에 대한 평가는 규제개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로써 향후 추진기구 개혁 및 조직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 중앙 규제개혁 기구를 평가하는 기관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적절한 평가주체의 선택 및 평가주체간의 책임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⑤ 규제의 질에 대한 평가 지표 개발

OECD 사무국은 규제 질에 대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회원국의 의견 및 제안을 요청하였다. 회원국들은 지표개발에 대해 질적 기준과 양적 기준과의 선택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향후 지표개발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4. APEC-OECD Co-operative Initiative

* OECD 회원국의 규제개혁 성과와 경험을 APEC 국가들에게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0년 11월 OECD·APEC 각료이사회에서 결정된 APEC-OECD 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베이징·메리다·제주·밴쿠버에 이어 2003

년에는 밴쿠버와 파리에서 2차례 회의를 개최

① 제1차 회의(2003. 10. 8~9, 캐나다밴쿠버)

① 통합체크리스트 관련

2002. 10월 제주회의에서 APEC과 OECD가 공동으로 규제개혁·경쟁·시장개방정책을 촉진하는데 활용 가능한 통합된 규제개혁 체크리스트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논의하였다.

1995년과 1997년 작성된 OECD 규제개혁 권고안과 2000년도의 APEC의 규제완화 및 경쟁원칙에서 서로 공통되는 사항을 추출하여 규제개혁 통합체크리스트 초안을 작성하였다.(E. Milligan, 규제컨설팅 그룹 사장)

※ OECD 권고안의 경우 규제개혁추진, 법령개정절차, 경쟁정책, 시장개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APEC 원칙의 경우 시장 내의 경쟁과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 원칙은 상호보완적이다.

OECD 측에서 작성한 통합체크리스트 초안은 총 39개의 점검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평적 공통사항(Horizontal policy)에 대한 항목 : 11개
 - 정치지도자나 고위공무원이 규제개혁·경쟁·시장개방 등에 관한 강한 메시지를 일반대중과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는가? 등
-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에 대한 항목 : 8개
 - 새로운 규제와 현재 존치하는 규제의 적정수준이나 정당성 등을 관장하는 중앙기구(central body)가 있는가? 등
-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에 대한 항목 : 11개
 - 경쟁법을 다루는 독립된 기관이 있으며 그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지원이 되는가? 등
- 시장개방(Market openness policy)에 대한 항목 : 9개
 - 관세와 통관절차는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가? 등

동 회의에서는 통합체크리스트 중 규제정책관련사항을 집중 검토하였는 바, 미국 등 선

진국 대표들은 규제개혁추진 성과에 대한 측정·평가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일부 회원국(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은 체크리스트 항목상 질문지 구성의 적정성과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체크리스트가 국제적 규범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OECD와 APEC 회원국들은 본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체크리스트를 계속 보완(補充)키로 하였다.

회원국들은 Steering Group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사항을 검토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수평적 공통사항과 규제정책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각 회원국이 2003년 11월 초까지 OECD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면 OECD 측에서 초안을 재작성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제5차 워크숍(12. 2~3, 파리 예정)에서 재작성된 초안과 경쟁정책 및 시장개방에 관한 점검사항에 대해 집중 검토키로 하였다.

OECD 규제개혁팀은 2004년 컨퍼런스(Conference)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된 후 2005년에 APEC과 OECD에서 승인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회원국에 공지하였다.

② 기존규제 정비 및 개혁관련

• 원칙, 정책 및 제도관련

러시아, 폴란드,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시장개방을 위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새로운 규범을 작성함에 있어 대부분 OECD의 권고안을 따르고 있으며, 투명화·민주화·시장개방·진입장벽철폐·경쟁촉진을 보장하는 입법방향의 견지가 중요하다는데 회원들은 공감하였다.

• 전략 및 수단 관련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제도적 장치와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1단계기간(1998~2002)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1998~1999년간 기존규제 11,125건 중 5,430건을 철폐하고 2,411건 개선한 실적 및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등록제 등 도입 시행한 실적을 발표하였다.

또한, 2단계 기간(2003년부터)에는 양적 개혁에서 규제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속 추진하고, 기업활동 촉진 및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10대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

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전문가 양성 등 규제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보강을 보장하였음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발표내용에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한 일본 측에서 대단한 관심을 표명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러시아 등 회원국들은 규범의 제정과 집행, 추진체제정비 등의 문제 외에도 전기, 통신, 철도 등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는 노력을 경주중임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경우 노인, 아동복지등 사회보장의 분야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국가는 주로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를 따라가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 법령화 및 행정간소화 관련

아일랜드 등 불문법(common law) 국가의 경우 규제정책도 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해 규제관련 법조문을 가지고 있는 성문법(civil law) 국가들에 비해 효율성 저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성문법(civil law) 국가이므로 정부 규제를 조문화 하여 인터넷과 CD-Rom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② 제2차 회의(2003. 12. 2~3, 프랑스파리)

OECD는 수평적 공통사항·규제정책·경쟁정책·시장개방 등 4개 분야·총 39개 점검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초안을 마련하고 1차적으로 제4차 밴쿠버회의(2003. 10)에서 규제정책 분야 검토하고 동 회의에서는 경쟁분야에 대해 각국의 사례 및 경험을 근거로 검토하였다.

회원국들은 △경쟁정책 지지 확보방안 △경쟁당국의 제도의 틀(institutional arrangements) △경쟁의 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확보 방안 △성공적인 경쟁정책을 위한 경쟁법 요소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이를 통해 경쟁분야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쟁부분 체크리스트 초안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각국의 법적·제도

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APEC 국가들은 상당부분의 지하경제 활동(페루 : 약 70%), 소규모 시장으로 인한 자연독점 발생 등 APEC국가의 경제적 특수성을 근거로 각 국가의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경쟁정책 분야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① APEC-OECD 규제개혁 체크리스트 개관

회원국들은 규제개혁 체크리스트 목적이 APEC·OECD 국가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자기평가(self-assessment) 및 향후 규제개혁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다만, 성공적인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적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경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방안

회원국들은 경쟁정책이 시장 전반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소수 이익집단의 반대 △단기적 비용·장기적 혜택이라는 특징으로 경쟁정책 적용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원칙에 의한 강력한 경쟁법 집행 △경쟁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일본) △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실질적인 혜택(예 : 서비스 가격 인하) 창출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③ 경쟁당국의 제도적 틀(institutional arrangements)

경쟁당국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독립성 확보, △규제기관과 경쟁당국 간의 협조관계 구축,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구제절차(due process)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되었다. 한국 대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목적·독립성·타 기관과의 관계·구제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이 경쟁당국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④ 경쟁의 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회원국들은 정부가 경제활동 주체로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민간과 동일하게 경쟁정책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경쟁의 중립성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중립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정부가 시장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 면제 △정부소유 재산의 사용 △저렴한 이자의 융자 △교차보조 등의 경쟁 중립성 원칙 위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쟁법상 공적부분 및 사적부분의 원칙적 분리 △교차보조 금지 △정부와 공기업간의 비시장적 담합의 금지 △경쟁의 중립성 원칙 위반 시 이의제기 제도화 등의 해결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⑤ 성공적인 경쟁정책을 위한 경쟁법 요소

회원국들은 경쟁법의 적용범위, 경쟁법상 금지행위의 종류, 경쟁당국이 가지는 조사권 및 처벌권의 범위는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쟁법 도입은 집행력을 저하시켜 경쟁촉진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각 경제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경쟁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되었다.

※ Co-ordination Group Meeting(Steering Group Meeting)

* 기존의 Steering Group에서 Co-ordination Group으로 명칭 변경

APEC·OECD 사무국은 통합 체크리스트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인 Co-ordination Group Meeting을 개최하고 통합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논의하였다.(미국·이태리·일본·멕시코·뉴질랜드·우리나라 등 6개국 참석)

제6차 APEC-OECD 규제개혁 회의(2004.5, 칠레) 이전까지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분야 체크리스트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마련키로 합의하고, 통합 체크리스트의 서문(preamble)은 멕시코 대표(Ali Haddou)가 작성하여 2004. 1월 중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차 APEC-OECD 규제개혁 회의에서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Co-ordination Group 소속인 회원국은 체크리스트와 관련 전자메일로 새로운 사항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할 것에 합의하고 APEC 회원국들이 본 그룹(Group)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권유키로 하였다.

5. APEC E-IAP 검토회의(2003. 8. 20, 태국 푸켓)

* 개별실행계획(IAP) 검토회의는 APEC 회원국들이 매년 제출하는 개별실행계획 분석을 통하여 회원국의 「보고르(Bogor) 목표」(1994)의 추진성과 중간점검, 자유화 과정에서의 경험 공유 등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개최

① 한국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평가

1996년 이후 한국의 자유화·외환위기의 극복·각 분야의 구조조정·보고르 목표달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팔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던 분야로 △규제철폐 및 규제개혁 △투자 △경쟁정책 △표준적합 △관세절차 등을 선정하였다.

심사단은 1997~1998 경제위기 이후 추진된 자유화 및 개방화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는바, 최근 추진 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상 및 한·칠레 FTA 협정 체결 등이 향후 APEC 회원국 간의 개방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사단은 서비스·투자 등 13개 개별분야에 대해 한국의 보고르(Bogor)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는바, 관세·농업 분야는 비교적 성과가 미흡하며, 2020년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 규제개혁 분야(Deregulation/Regulatory Review and Reform)

한국의 규제개혁은 1997~1998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규제개혁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기존규제 전면 재검토를 통한 40% 규제철폐 등을 수범사례로 제시되었다.

한국 규제개혁의 관심이 수량적 규제철폐에서 품질 높은 규제(smarter regulation)로 이동하였다고 평가되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영향분석(RIA)·규제순응도·규제일몰제·규제총량제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2003년 추진 중인 10대 전략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10대 전략과제와 무역자유화 및 경제 활성화와의 높은 연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개별실행계획(IAP) 각 분야에 대한 토론자 발표

한국의 실행계획 중 비교적 미흡한 분야로 평가받은 관세·농업 분야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관세 분야 등은 정확한 현황 파악 후 개선방안을 마련, WTO 등 타 국제기구와의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국의 FTA 협정 체결 및 시장개방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지나친 문화적 특수성 강조는 경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FTA 협정 체결 시 특정 분야의 제외는 향후 협정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규제개혁 분야(Deregulation/Regulatory Review and Reform)

심사단은 한국의 성공적 규제개혁은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로 가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는 성공적 규제개혁의 필수요소라고 언급한 후 타 APEC 국가의 규제개혁 추진 시 정치지도자 및 고위 관료의 의지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은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이외에 체계적 규제개혁 기제(mechanism)도 성공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한국 규제개혁의 기제(조직·인력·절차 등)는 APEC 회원국의 수범사례라고 평가한 후 그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평가하였다.

③ 주요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과 발표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APEC과의 협조관계를 강화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전문가 평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개진되었던 관세·비관세 분야에서도 자발적 관세인하 조치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북아 허브 구상 등을 통해 주변 APEC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④ 회원국 및 우리나라의 질의·응답

일본 등 일부 회원국은 한국이 OECD 회원국이며, APEC 내에서도 선도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2020년까지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 개진되었다. 우리 측 대표단은 한국은 보고르 목표 달성 예정시기가 당초 2020년으로 협의되었으나, 조기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목표 달성 예정시기와 관계없이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호주 등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일부품목(쌀·배 등)이 제외된 이유와 일부 품목이 제외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원칙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질문하였으나, 우리 측 대표단은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일부품목이 제외되었음을 설명하고, 일부품목의 제외에 대하여 협정 당사자인 칠레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을 설명하였다.

※ 규제개혁 분야(Deregulation/Regulatory Review and Reform)

미국 대표는 한국의 투명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규제도입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더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였다. 우리 측 대표단은 현행 입법예고 기간 중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현재로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도네시아 대표는 한국의 구조개혁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구조개혁의 도구로서 경쟁정책 및 규제개혁 등의 향후 목표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리 측 대표단은 경제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6. 기타

① OECD 러시아 규제개혁 검토회의(2003. 1. 20~21, 프랑스 파리)

* 금번 파리회의는 러시아의 OECD 가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비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2004. 2월 규제개혁 국별심사를 받는 러시아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회원국들의 추진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

① 러시아 규제개혁 현황

러시아는 러시아 규제개혁의 특징을 경제발전과 시장경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규정하였다.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5가지 측면으로 △행정개혁 △조세·예산개혁 △시장기반 조성 △경제의 개방성과 투명성 제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 등을 제시하고 특히, 철도·에너지·정보통신 분야의 경쟁체제의 도입 등 일련의 규제개혁 조치들의 성과에 대해 강조하였다.

러시아의 경제상황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은 개혁조치의 사회적 지지확보·국제사회의 신뢰구축 등을 당면과제로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OECD 회원국의 경험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네덜란드 대표는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충분한 협의에 기반한 규제개혁 추진을 러시아 측에 권고하였다. 또한 핀란드 대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세관개혁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일선의 공무원들의 행태변화 등 실질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논의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역량 >

러시아는 규제개혁 정부역량 부문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개혁 정책 개요 및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러시아 규제개혁은 2001. 7월 승인된 사회경제발전의 중기 프로그램(Mid-Term Programme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2002~2004)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새로운 법률 제·개정 시 내용을 웹사이트(e-Russia) 게재하여 접수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안제출 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연방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경쟁정책 >

러시아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경쟁정책의 목적과 규제개혁에 있어서 반독점기구의 역할

에 대해 설명하였다. 러시아의 반독점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Antimonopoly Policy and Support of Entrepreneurship(MAP of Russia)이며 반경쟁적 기업활동의 예방·시장경제체제 발전·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the Law of Natural Monopoly)에 근거하여 자연독점 분야(철도·통신분야)의 구조조정 및 시장 매커니즘의 도입, 독점 행위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시장개방 〉

러시아는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개방에 대해 무역정책 및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러시아의 무역정책은 연방법(the Federal Law on the State Regulation of Foreign Trade Activity)에 의해 무역 자유화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WTO 등 국제협약과 일치하는 상품의 표준화 및 외국인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러시아 내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기타 분야별 규제개혁 〉

러시아는 부문별 검토 대상으로 철도·정보통신·에너지·천연가스 등을 선정, 각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는바, 철도의 분야의 규제개혁 및 경쟁도입의 방안으로 독점시장의 수평적 분리(horizontal separation)와 수직적 분리(horizontal separation)를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가격제한정책·세계표준으로의 통일(harmonization)·시장의 진입장벽을 현안으로 제시하고 서비스 가격수준의 현실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설명하였다. 러시아는 과거 10년 동안 추진된 에너지 분야의 규제개혁 성과를 설명하고 발전·송전의 분리, 독립규제위원회에 의한 에너지 정책의 결정 등의 개혁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천연가스 시장은 한 회사가 생산·정유·저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점시장을 어떻게 규제하고 경쟁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다.

② 러시아 규제개혁 국별심사 관련 OECD 회원국의 경험공유

OECD 사무국과 독일·체코·폴란드·아일랜드 등 4개국은 국별심사 준비과정, 기획단 구성, 면담준비 절차, 국별심사 결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OECD 사무국은 2004년 2월로 예정된 러시아 규제개혁 국별심사의 일정을 제시하고,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국별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독일 대표는 국별심사의 준비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범정부적 준비기획단(steering group)의 구성·설치와 국별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조정기구(central coordinating unit)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체코 대표는 OECD 미션단 방문 시 면담자를 공무원·비정부기관·각 단위 정부관계자 및 정치인 등으로 대별하고, 각 부문의 면담자 선정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폴란드 대표는 국별심사 이후 OECD 권고사항의 이행여부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권고사항 이행 시 국별심사시 구성된 준비기획단(steering group) 유지·활용을 제안하였다. 아일랜드 대표는 국별심사 이후 OECD 권고사항인 규제영향분석·고위층으로 구성된 규제위원회(High Level Group on Regulation) 등을 도입하였음을 설명하고 국별심사 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권고하였다.

※ 러시아 측에서는 Arkady Dvorkovich(경제개발무역부 차관)를 단장으로 Andrey Tsyganov 반독점무역부 차관 등 7명 참가

② 규제영향분석관련 회의(2003. 1. 23~24, 불가리아 소피아)

* 본 회의는 OECD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성과와 경험을 남동부 유럽 국가들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그리스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인 규제영향분석에 대해 논의

① OECD 회원국 및 남동부 유럽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

OECD 회원국과 남동부 유럽 국가들(SEE)은 자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및 최근 진전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EC 대표는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결정하는 예비분석(preliminary assessment)과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서 실시하는 집중분석(extended assessment)으로 구성된 2단계 규제영향분석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체코·세르비아 등 남동부 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도구로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는 자국의 상황을 소개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규제영향분석의 도입과 적용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규제영향분석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르비아 등 남동부 유럽 국가들은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정부역량 배양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장기적인 시각을 요구한다는 데 접매 의견이 일치하였다. OECD 회원국들은 도입 가능한 분야부터 소규모로 시작하여 장기간의 학습효과 및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② 성공적인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규제영향분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적용범위 설정 및 기관설치 시 고려사항 등 제도적 틀/framework)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규제영향분석에 투입되는 자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중요한 규제에만 완전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적용(targeting)하는 전략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가자들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분야별 이해관계를 반영하되 공정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분석기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하였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이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남동부 유럽의 경우 EU 및 국제기구 가입 등을 목적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는 경우가 있는바, 제도의 형식적인 도입만으로는 불필요한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가 될 수 있음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③ 규제영향분석제도 관련 회원국의 경험·사례 소개

남동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및 추진 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OECD 회원국과 경험·사례를 공유하였다. 불가리아 대표는 EU 가입을 위해 광

범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4,800여 개의 인가권(licence)과 허가권(permit)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소개하였다. 루마니아 대표는 무역회사 등록에 관한 규제를 규제영향 분석한 결과 법률안에 7단계로 규정되어 있던 등록절차가 “원스톱숍(one-stop shop)”의 1단계 등록절차로 개선된 모범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스는 규제개혁을 통한 에너지·정보통신·운송 분야 등 주요 분야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 및 수단

규제영향분석의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최근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기법을 소개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국대표와 네덜란드 대표는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비용과 편익의 측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선호의 표출(revealed preference), 정화비용(cost of clean up) 등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정확한 분석을 위한 새로운 분석기법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규제영향분석이 관료들에게 과도한 행정적·절차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실시 시기와 정책집행 이후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사후적 평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결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급적 규제신설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탐색 가능한 규제대안들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분석, 이후의 규제영향분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⑤ 커뮤니케이션 및 자문(consultation) 도구로서의 규제영향분석 활용방안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과 자문의 중요성 및 실시시기·관련 정보공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과 자문의 강화 등은 정책결정의 투명성 증가, 규제영향분석 자체 수준제고, 순응도 향상과 집행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자문 역시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나 규제대안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③ 규제개혁 글로벌 포럼(2003. 3. 25, 스위스제네바)

* OECD Outreach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OECD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협상참여자와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규제개혁과 무역 및 서비스자유화문제 등을 함께 논의

동 회의에서는 △규제개혁과 도하개발 아젠다와의 연관관계 △무역 및 서비스 자유화와 규제개혁 △국경 및 비(非)국경장벽을 감소해 나가기 위한 규제적 접근방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규제개혁이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주제와 암묵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WTO를 중심으로 한 협상(관세, 보조금 등)의 결과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선행/후속조치로 필요하다는데 참여자들은 공감하고, 아울러 협상 참여자와 규제개혁 담당자들의 상호협조를 통해 이해가 확대되어야 국내적 저항의 극복에 유리하며 보다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참여자들은 공감하였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의 수립 △규제개혁역량과 무역자유화의 연관관계 △규제개혁에 대한 OECD경험의 확산문제 등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무역관련 규제에 적용가능한 일반가이드라인의 수립

모든 국가가 문화적 맥락, 정치적 목표 및 무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나 현재 각국이 무역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할 Positive 가이드라인」을,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어도 하지 않아야 할 Negative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현행 OECD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의 무역 분야 적용의 타당성

OECD 규제개혁의 원칙 중 투명성제고, 경쟁보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불필요한(unnecessary) 무역제한의 회피와 관련해서는 회피되어야 할 최소한의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 규제수단의 대등성(equivalence)에 대해서도 상대국 및 상대국의 규제,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개별적인 확신이 없다면 적용이 곤란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③ 정부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의 시장개방문제

일단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면 정부역량도 자연스럽게 제고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으나 제도적인 기반 없이 시장개방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기업 및 소비자의 저항을 확대함으로써 추가적인 자유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다.

④ 외국기업의 시장접근권 보장과 정책유연성간의 균형유지 수단

일견 상충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양자는 규제개혁의 투명성확보와 국내외 생산자 및 소비자사와 외국인 투자자 등의 대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투명하지 않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내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대한의 투명성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OECD 측은 강조하였다.

⑤ 규제개혁관련 개도국의 주요 이슈

개도국에게는 규제의 정의와 집행방법이 모두 문제이므로 이 분야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가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개도국의 경우 금융, 정보통신 등 서비스분야는 급변하고 있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비해 정부규제는 수준 및 내용의 정교성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이 개도국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규제를 집행하는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도 취약하다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으며 많은 개도국 참가자들은 자국정부의 규제개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⑥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문제

APEC사무국 측은 동일한 규제라 하더라도 개도국에게 더 심각한 장벽으로 느껴진다는 APEC사무국의 서베이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이 앞으로 국제규제체제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발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30-3938, kjyoung@opc.go.kr)

제4절 _ 선진국 규제개혁사례

1. 미국

① 미국 규제개혁의 특징

미국의 규제개혁은 약 25년 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층의 강력한 의지 및 관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30년 전 닉슨 행정부의 '삶의 질 심사프로그램'을 규제개혁의 시발점으로 후임 대통령들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1946년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법령안 제정 시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였으며, 1975년에는 행정명령으로 1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제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실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70년대 후반 및 80년대 초반의 규제완화와 공급 위주 정책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현재에도 미국 규제개혁의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는 행정명령 12866호를 발령하여 각 부처에게 규제가 도입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그 중요성을 평가하며, 규제가 아닌 대안을 검토하고 규제가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의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개

혁의 일환으로 연방법령집 86,000페이지를 검토하여 16,000페이지는 삭제하고 31,000페이지를 수정함으로써 약 40%의 규제를 폐지·개선하였다. 클린턴 정부는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제도도 개선하였다. 비용편익분석 지침을 개정하고 규제기관들은 규제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비용편익분석 지침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② 규제개혁 관련 기구

①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미국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기관은 대통령 직속의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산하의 OIRA이다. OIRA는 정보와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전체직원은 약 60명 정도로 이중 규제를 담당하는 직원은 30명 정도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규제사무에 종사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비용편익분석 등 규제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OIRA는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적 규제개혁 추진기구라 할 수 있다. 우선 대통령 직속 기관이므로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OMB의 예산배정기능을 통해 규제심사와 예산배정을 결합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OIRA의 주요 임무는 규제심사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과 규제심사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규제기관은 OIRA에 그들의 규제를 제출해야 하며, OIRA는 그중 중요규제에 대하여만 심사한다. OIRA는 규제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 Regulatory Working Group

Regulatory Working Group은 규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의장은 OIRA의장이며, 위원은 다수의 규제를 가지고 있는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Regulatory Working Group은 혁신적인 규제기법의 개발, 규제결정과정상의 방법, 효과성·유용성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평가, 소규모 기업 등을 위한 규제접근방식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③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1980년 제정된 Regulatory Flexibility Act에는 규제를 신설하려는 부처가 중소기업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여야만 한다. 또한 SBA는 각 부처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에 고발, 시정토록 하고 있다.

④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연방정부의 규제 행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한다. 의회의 GAO에서는 연방정부의 규제정책을 견제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GAO에서 규제를 전달하는 직원은 5명에 불과하나 정부부처 담당들이 정부정책과 예산을 평가하면서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GAO는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특정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검토과정을 통해 규제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내용의 변경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검토는 90% 이상이 의회 상임위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GAO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제도

미국은 계량적 분석을 기초로 하는 엄격한 비용편익분석을 제도화하고 있다. 모든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 분석정도는 규제의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규제는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로 분류되는데 비용과 편익의 엄격한 계량화는 중요규제에 대해서만 요구되고 있다. 중요규제는 경제에 1억불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거나 환경·안전·보건 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심사 건수는 연평균 약 80건 이상이다. 비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량적 분석이 요구되나 그 요구수준은 중요규제 수준보다 낮으며,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경쟁과 시장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규제영향분석서의 초안과 최종분석서는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이는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④ Smart Regulation 추진현황

미국은 “Smart Regulation”이라는 표제 하에 규제품질제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엄격한 규제영향분석의 실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규제품질제고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의 투명성 제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규제와 관련된 정보공개로 나타나고 있다. OIRA는 심사하고 있는 모든 규제를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있으며 모든 서면정보는 관련기관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영향력이나 뒷거래를 방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청취하기 위하여 모든 미팅에 관련 이해당사자와 규제기관을 함께 참석토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OIRA가 규제에 대해 심사한 후 그 필요성에 문제가 있어 규제기관에 반송하는 경우 예전에는 공식기록 없이 처리하던 것을 공개적으로 문서화하여 각 기관에 반송하고 있다.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모든 규제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며, 심사보류나 지연·이유 없는 철회 등이 국민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② 철저한 규제영향분석

미국은 규제영향분석서 자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규제기관은 제3자에게 오류가 지적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누구나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간접적인 규제영향분석의

품질제고 외에도 직접적인 수단들도 채택되었다.

우선 규제영향분석 자체를 외부 전문가 그룹에 맡기는 방법이다. 또한 전문가를 OIRA에 직접 고용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부학·독성학·보건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OIRA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IRA는 규제기관이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문서화하여 공개적으로 규제기관에 반송한다. 그 결과 2001년 상반기에는 21건을 규제기관으로 반송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한 건도 반송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③ 기관장 및 국민 참여 확대 노력

OIRA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안된 규제에 대해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Smart Regulation을 계기로 각 규제기관에 합리적인 규제안을 자체적으로 개발·제안하고 있다. 각 규제기관에 규제를 제안하면 OIRA에서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탄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기회는 일반국민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규제에 대해 폐지나 개선을 공개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이다.

2. 영국

① 규제개혁 추진배경 및 특징

영국은 경쟁 촉진, 민간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의 성과 제고, 소비자 권한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영국의 규제개혁은 경제구조 개혁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규제개혁은 국영기업으로 대표되는 독점적 시장의 생산성·효율성 저하로 인한 경기침체의 처방책이었다. 규제개혁의 결과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최근의

영국 경쟁력 향상도 상당부분 규제개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신생기업의 성장이 규제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영국 규제개혁의 근간은 1994년의 “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에 이어 2001년 제정된 “Regulatory Reform Act”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영국 규제개혁의 특징은 공공정책적 목표달성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의 질 향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영국은 2002년 5월 이후 행정내부규제도 규제의 범주에 넣어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는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과 규제개혁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법률상의 모순을 시정하는 경우 부령으로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요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였다. 20년 이상의 규제개혁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에서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② 규제개혁 관련 기구

① Regulatory Impact Unit(RIU)

RIU는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관련기구나 민관과의 협력 등 규제개혁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수상실(Cabinet Office)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RIU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기구인 “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와 “Better Regulation Task Force”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RIU의 주요 역할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규제관련 부작용을 검토·확인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며, Better Regulation Task Force를 지원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기존규제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RIU 내부조직은 6개 정도의 전문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기업인·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② Better Regulation Task Force(BRTF)

1997년 설립된 독립자문기구로서 규제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임기 2년의 18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은 영국수상이 직접 임명하고 있다. 기업·시민단체·소비자단체·노조·자율 규제집행기구 등에서 위원이 임명되고 있으며 무보수로 봉사한다. 자문위원회이나 규제개혁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간하여 규제개혁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Better Regulation Task Force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60일 이내에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규제개혁 계획을 세우고 ‘좋은 규제의 원칙’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가 이전의 권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Panel for Regulatory Accountability(PRA)

영국 규제개혁의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로서 각 부처의 규제개혁작업을 견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정부위원들로만 구성되며, 의장은 내각부 장관이다. 위원은 재무부장관, 산업부장관, 내무장관 등이며, Better Regulation Task Force의 위원장 및 소기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주요기능은 규제개혁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규제개혁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극복방안을 논의하며 각 부처 장관을 출석시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개선노력과 이행실적 등을 보고받는 것이다.

④ Departmental Regulatory Impact Unit(DRIUs)

각 부처에 설치된 RIU로서 담당 부처별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 추진의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처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부처에서 만들어지는 규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되도록 하여 민간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있다. 또한 부처의 규제개혁 활동을 조정하고 관련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⑤ 기타 규제개혁 관련 기구

이외에도 영국 규제개혁 추진 주체로서 Small Business Service(SBS)와 Regulatory Reform Ministers, Parliamentary Council Office(PCO)를 들 수 있다. Small Business Service는 2000년 4월 수립된 중소기업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는 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요부처에 대해서는 장관이 규제개혁 장관(Regulatory Reform Ministers)을 겸임토록 하여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Regulatory Reform Ministers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규제의 질은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신의 부처에서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영국 규제개혁의 특징 중 하나는 의회에 규제개혁 전담위원회(Parliamentary Council Office)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제안 등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개혁 입법은 하원의 “Deregulation and Regulatory Reform Committee”와 상원의 “Delegated Powers and Deregulation Committee”에서 모두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③ 규제영향분석제도

영국의 20년 이상의 규제개혁 경험은 규제정책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얼마나 중요하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영국에서는 1985년 이후 부처에서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에 따르는 비용을 분석하도록 요구되었으며, 다른 대안들이 왜 선택되지 못하였는가를 설명하도록 요구되었다. 1996년에는 규제평가제도(Regulatory Appraisal)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정부에 미치는 영향과 편익도 분석하도록 규제영향분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2년에는 행정내부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는 근래의 국영기업 민영화와 독립기관(Agency)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공공부문 내부의 규제가 급격히 증대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은 반드시 계량화된 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용측면과 편익측면 모두 계량화되어 분석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건강·안전·환경 관련 규제는 위

협분석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절차상의 특징으로는 모든 규제에 대해 예비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같이 공표하여야 한다.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RIU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반영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0년부터는 주무장관이 심사를 위해 법안을 제출하기 전 각 정부부처의 규제장관의 친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서를 읽고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뜻에서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질을 높이고 규제영향분석 작성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다른 특징은 규제영향분석을 규제도입 초기부터 준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시 이미 규제영향분석서 초안을 첨부하여 피규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결정과정과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관성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위해 비용편익분석에는 재무부의 지침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규제영향분석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 수집전략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3. 아일랜드

① 규제개혁의 배경 및 특징

아일랜드는 1980년대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1990년 초반 실업률은 15%로 EU국가 중 최악이었고, 1987년 이전에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이 117%까지 상승하였고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아일랜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는데, 이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외자유치 덕분이었다. 1990년대부터 연평균 6~7%의 고속성장을 지속한 결과 2002년 GDP 3만불 이상의 고소득 국가로 변모한 것이다.

1980년대 이전 아일랜드는 외국자본이 국내기업 소유를 막기 위해 제조업체 의결권의 51%를 국민이 소유하도록 하여 아일랜드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제조업통제법」을 가지고 있을 만큼 강력한 규제국가였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경제침체가 지속되자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개방정책 추진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구체적인 조치로서 적극적인 제조업·정보통신산업의 유치활동, 법인세 감면으로 전 세계 15개 거점사무소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였으며, 1987년 경제특구로 더블린에 국제금융서비스센터를 설치, 외국금융기관을 유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은 빠른 경제성장의 결과를 관리하고 계속적 성장유지 능력을 형성토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국내외 기업들의 필요성에 응답하는 역동적 경제구조를 갖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일랜드 규제개혁의 특징은 일괄적·종합적 접근방법보다는 점진적·실용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속도는 일반적인 OECD 국가에 비해 느린 편이나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수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② 아일랜드 규제개혁의 원칙

아일랜드 규제개혁 원칙은 1990년대 중반 “Delivering Better Government”(1996)의 공포를 통하여 천명되었다. “Delivering Better Government”에서 표명된 4대 규제개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규제 수량을 줄이기보다는 규제 품질을 제고한다. ②불필요한 혹은 비능률적인 규제를 철폐한다. ③필요 규제와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한다. ④규제 준수비용을 줄이고, 규제에 더욱 접근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즉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으며 1999년 “Reducing Red Tape”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Reducing Red Tape”의 핵심내용은 규제관리시스템 개혁의 실천프로그램의 수립이다. 각 실천프로그램은 새로운 규제절차의 제도화와 일련의 이행사항의 명시로 구성된다. 각 부처에서는 새로운 법률과 규제를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 일명 “Quality Regulation Checklist”에 의하여 규제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부 고위 관리층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규제개혁 관련 기구

① Department of Taoiseach (the Prime Minister)

총리실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총괄하면서 정부부처 간 조정 및 협의를 통하여 규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총리실에는 Central Regulatory Reform Resource Unit이 설치되어 있다. Central Regulatory Reform Resource Unit은 규제와 관련하여 부처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A Statute Law Revision Unit

1992년 2월 법무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산하에 현행 법률과 규제를 검토하는 부서로서 기존 규제의 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③ Government Legislation Committee

정부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이행여부를 매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법률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으며 각 규제관련 정부 관료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종합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④ 독립규제위원회

아일랜드에는 각 부분의 규제에 대해 결정하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대표적인 독립규제위원회로는 전력규제위원회(Commission for Electricity Regulation)와 통신규제위원회(Commission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가 있으며, 전력과 통신부분의 경쟁정책 도입 등을 책임지고 있다.

④ 규제영향분석 제도

아일랜드의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타 서구국가에 비해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뒤늦게 받아들였으며(1999년) “Quality Regulation Checklist”에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명시되기 전까지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부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Quality Regulation Checklist”가 채택되고 나서 새로운 규제의 도입 시 규제영향분석의 실시가 의무화되었고 실질적인 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Quality Regulation Checklist”에 수록된 규제영향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안된 법령이나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제인가? 즉 문제가 올바르게 정의되고 다른 수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가?
2. 법령이 시장 진입에 영향을 주는가? 경쟁에 관한 어떤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가?
3. 법령이 특히 전자정부, 전자상거래와 같은 정보사회에서의 발전과 양립될 수 있는가?
4. 제안서로 인해 부담을 안게 될지 모를 특정한 경제, 사회적 영역을 위해서 면제 또는 절차간소화를 고려한 내용(중소기업 부문을 포함하여)을 기술하라.
5. 다음 원칙의 적용에 주어졌던 고려를 기술하라:
Sunsetting(효력만기일 설정), Review date(재검토일자 설정), Replacement(대체 원리)
6. 기존에 존재하는 이익단체 또는 부처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 사안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거나 영향받는 측과 상담한 내용을 기술하라. 해당 당사자들의 견해도 요약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규제영향분석은 아직 정책결정과정에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체크리스트의 적용을 통해 성공적인 출발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호주

① 규제개혁의 배경 및 특징

호주는 경제구조 개혁의 일부분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약 2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철도·항만 등 국가기간 산업의 생산력 향상 없이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규제개혁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는 경제 각 분야에 경쟁을 확산시킨다는 목표 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 관세감면과 보조금 삭감을 비롯하여 무역관련 규제완화, 금융·통신·교통 등의 분야에서 경쟁 영역을 확대해 나아갔다. 1990년대 중반에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상설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COAG)를 설치하여 전정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나갔다.

1993년에는 Australian Tax Office(ATO)가 조세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였으며, 조세법안의 제정과 개정 시에는 규제영향분석과 유사한 조세영향분석(Tax Impact Statements)을 실시토록 의무화하였다. 1994년에는 규제의 신설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The Legislative Instrument Act”가 제정되었으며 1998년까지 모든 규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전면적 검토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6년 6월까지 전 부처가 경쟁제한규제에 대한 검토계획을 수립, 2000년까지 검토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1997년에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준수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침·규약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Commonwealth Interdepartmental Committee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지침·규약들도 효력 및 강제성이 일반 규제 및 법령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같은 지침·규약들의 도입과 개정 시에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규제기관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규제도입이나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1998년 도입하였다.

② 규제개혁 관련 기구

① Office of Regulatory Review(ORR)

호주의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연방정부의 미시경제 개혁정책과 산업정책에 관한 자문기구이다. 생산성위원회 내에는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서 ORR이 설치되어 있다. ORR의 주요기능은 규제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국 부처가 규제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심사하고 규제개혁에 관한 백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필요시 내각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자문을 하고 지방정부의 규제개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ORR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② Small Business Deregulation Taskforce(SBDT)

호주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개혁을 통해 이러한 공약을 달성하려는 시도로서 1996년 Small Business Deregulation Taskforce가 설립되었다. Small Business Deregulation Taskforce는 고위공무원 1명과 중소기업인 6명으로 구성된다. Taskforce는 성과위주의 규제, 규제대안의 적극적 개발, 전자정부 등 새로운 기술 활용 등 62개에 달하는 건의사항을 6개월 동안 검토, 제출하고 해체되었다. 건의사항은 각 관련부처가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독은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가 담당토록 하였다.

③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COAG)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1990년 설립된 Special Premier's Conferences의 후신이다.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여전히 연방과 지방정부의 협의체로서 규제개혁 및 행정부담 간소화 등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협의하는 기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법령은 Ministerial Council에서 검토되고 각종 표준 관련 제도는 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이들 기구에서 검

토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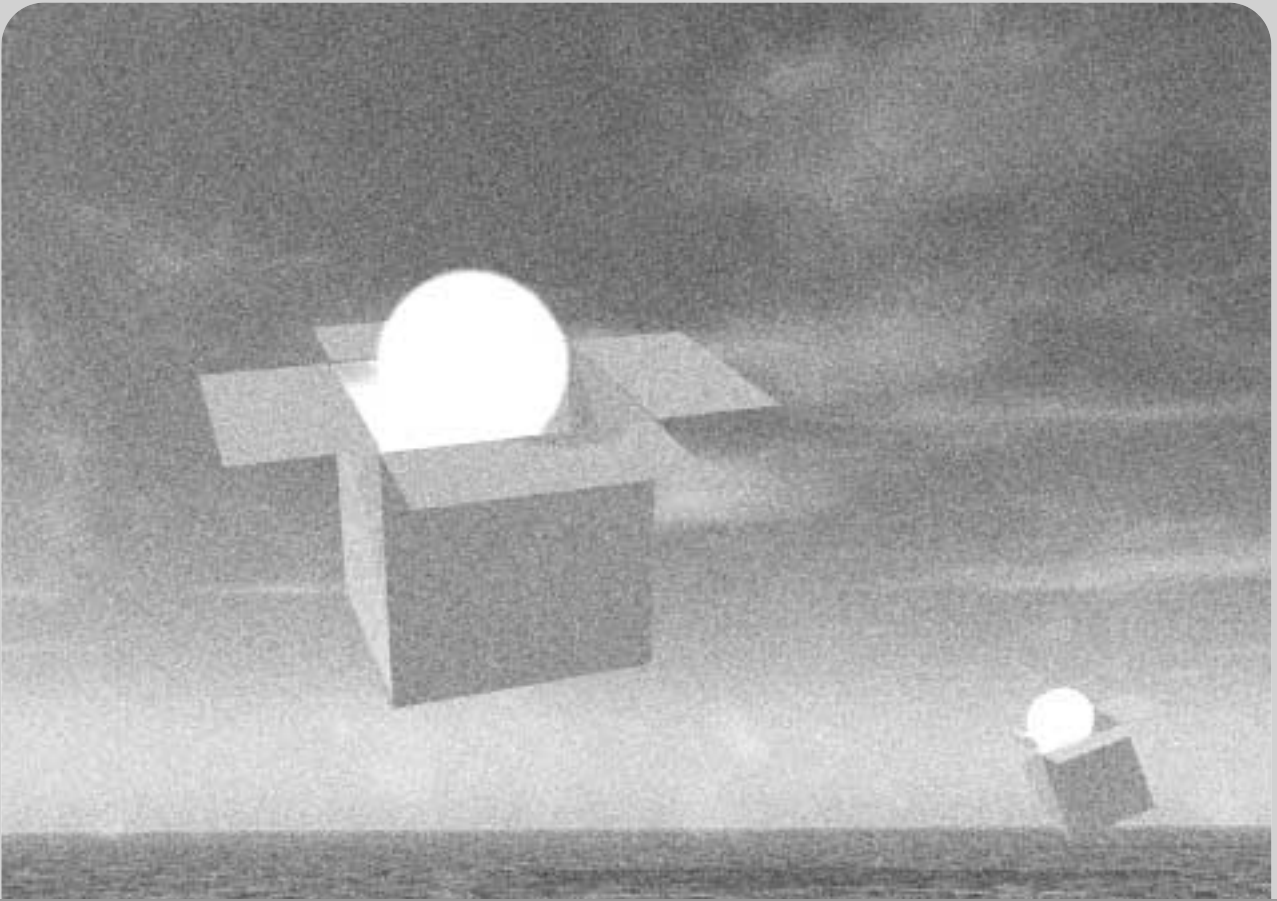
③ 규제영향분석제도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은 1985년 내각지침으로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하였고 1997년 3월 수상지침으로 규제영향분석으로 발전시켰다.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제한하는 규제, 가격과 생산량에 관한 통제를 포함하는 규제, 재화나 용역의 품질 또는 장소를 제한하는 규제, 광고나 판매촉진을 제한하는 규제,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타입과 가격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나 특정기업에만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규제 등 기업에 영향을 주는 법령에 대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의회에 제출될 때 공표되도록 하고 있다. 규제기관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는 ORR에 의해서 검토되며, ORR은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지침을 직접 작성한다. 규제영향분석의 주요내용인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는 특정한 경우에만 요구된다.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건강·안전·환경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위험분석이 행해져야 하며, 경쟁과 시장개방에 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몇 가지 특징으로는 조세영향분석과 무역영향평가를 지적할 수 있다. 조세관련 규제에 있어서는 조세영향분석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준수비용과 행정부담에 대해 별도로 분석을 요하는 항목이 있어 제안된 규제가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여야 한다. 호주는 규제의 일몰제를 특수한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에는 제안된 규제의 시행과 사후검토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는데 이 항목에서는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동 규제의 폐지·개선 방안을 담도록 되어 있다.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3703-3931, kjyoung@opc.go.kr)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_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실적 평가

제2절 _ 규제개혁 추진평가 및 향후과제(외부기고)

제3절 _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제1절 _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실적 평가

1. 규제개혁의 어제와 오늘 : 10년의 세월을 넘어

*집필자 : 최중원 규제개혁위원(서울대 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① 서론

규제개혁백서 편집위원회로부터 규제개혁위원의 입장에서 2003년도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글을 써 달라는 청을 받고 어떠한 글을 쓸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첫째, 참여정부 출범 1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실적을 중간평가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었으며, 둘째, 규제개혁위원회의 2003년도 전략과제 및 부처별·분야별 규제개혁 건수를 자세히 부연하는 것도 백서의 다른 내용들과 중복되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셋째,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동료 학자들에 의하여 매우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왔다. 따라서 그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새삼스럽게 피력하기도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필자가 오래 전 쓴 논문인 “정부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제15권 1호, 1993)을 보는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규제

개혁에 관하여 10년 전과 현재를 동일인의 시각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1993년에 필자가 제기하였던 문제들 중 2003년도 현재 해결된 문제들이 무엇이고, 여전히 남는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의미한다. 1993년도와 2003년의 비교는 10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양 시기 모두 새로운 정부의 출범시기로서 규제개혁이 중요한 화두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1993년에 제기되었던 논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시의 규제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원인,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절에서는 2003년 현재의 시각에서 살펴본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겠다. 1993년에 제기된 논점들 중 비교적 만족스럽게 해결된 문제들이 무엇이고,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규제개혁의 향후 정책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② 1993년에 제기되었던 규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1990년 이후 정부는 전 산업에 걸쳐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¹⁾ 1993년은 문민정부 출범 첫해로서 규제개혁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 의약품, 화장품, 연탄, 주류, 자동차관리, 석유산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일부 산업에서 규제완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연탄공급구역제한이 완화되어 공급구역이 광역화되고, 20년간 신규면허가 동결되었던 주류제조업 및 주류도매업의 면허가 개방되고, 주류도매상의 판매구역제한 및 소주의 자도주판매의무제 폐지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첫째, 1990~1993년 기간 중 정부의 규제개혁 전수는 행정쇄신, 민원간소화 등을 포함할 경우 1,000여 건을 넘었으나 가시적인 규제개혁의 정책효과는 앞서 언급

1) 1990년 5월 31일 정부규제를 과감히 축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행정규제완화위원회 구성 및 체계를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장관 등을 위원으로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 산하에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 경제기획원 차관)와 일반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 총무처 차관)를 설치 운용하여 각각 해당 분야의 정부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시다발적인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

둘째, 규제완화의 주요 대상으로 기업활동 애로요인 제거라는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각종 절차의 간소화가 강조된 반면 진입제한, 가격규제, 사업영역제한 등 핵심적 규제는 규제개혁의 주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셋째, 핵심적인 규제가 규제개혁대상이 되더라도 피규제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가 추진하려 하였으나, 기존사업자들의 반발로 조치 유보된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연탄제조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사료제조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이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였다.

왜 수많은 규제개혁 건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고, 국민들의 관심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가. 또한, 왜 핵심적인 규제사항은 규제개혁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간혹 규제개혁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용두사미적인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이 제시되었다.

첫째, 규제개혁 추진주체상의 문제로서, 당시의 규제개혁 추진주체는 “행정쇄신위원회,” “행정규제완화위원회” 등 한시적인 위원회 형태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조직이었으며, 위원회 산하에 실무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규제개혁은 규제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규제담당기관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규제담당기관은 규제완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되므로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개혁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대체로 그들의 접근방법은 규제 자체에 대한 존재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 규제존속하의 절차간소화라는 단편적, 국부적인 접근방법이었다.

둘째, 체계적인 산업실태 조사·연구 및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의 결여로 인하여 산업별 규제의 실태나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러한 점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객관적인 조사·연구가 결여됨으로써 산업별 규제완화정책은 피규제산업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피규제집단 또는 규제를 직접 담당하는 소관부처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었으며, 그들의 불합리한 규제완화 반대논리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규제개혁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시민단체, 공익단체, 일반시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해당사자의 제한적 참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인 및 관료집단의 높은 시간할인율(time discount

rate)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짧은 재임기간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이 생략되었다. 또한 당시 문민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제 정책과정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의 정책스타일이 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넷째, 정부규제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이 기존의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새로운 정부규제 도입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정부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두어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전담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규제개혁의 추진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므로 하부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조직은 적절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 규제완화는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피규제집단 및 규제기관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므로 강력한 정책집행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규제개혁 상설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규제개혁 대상산업 및 과제의 발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의, 기 시행된 규제개혁업무의 이행 점검 및 평가 등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정책 수립의 전제는 올바른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이다. 즉 규제개혁 대상과제가 제대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추진 상설기구 산하에 부문별(산업별) 규제개혁민간협의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부문별 협의회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이해관계집단의 대표, 그리고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별 추진계획에 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상설기구에 정책 건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피규제집단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의 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나 위험-편익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후생손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사회각계 각층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큰 수혜자인 일반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폐단과 개선필요성 그리고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넷째, 기존 정부규제의 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정부규제에 대한 적절한 사전심사의 필요

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여 규제개혁추진 상설기구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증명의 부담(burden of proof)을 규제기관에게 주어 불필요한 규제도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③ 2003년 현재 시점에서의 규제개혁 평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1993년도에 제기되었던 논의들을 2003년도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가장 큰 제도개선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정비이다. 1997년도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제2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설립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법률에 근거한 규제개혁 추진주체가 탄생한 점이다. 과거의 추진주체가 하부집행기관이 없는 한시적인 위원회형태의 조직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 제2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의 규제개혁업무가 규제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이나 피규제산업에 의하여 좌지우지된 점에 비추어 매우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고 판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비교적 만족스럽게 해결된 또 다른 문제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제도의 정착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에는 정부규제에 관한 대부분이 논의가 기존의 불합리한 정부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새로운 정부규제 도입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방안이 전무하였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심사를 한 후(제7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제10조),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제12조), 위원회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 정부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실효성이 높은 조치로서 매년 약 30%의 신설·강화규제가 폐지 또는 개선권고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가 규제를 강행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규제개혁관련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낮은 참여 및 소극적인 의견수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였으며, 누구든지 서면, 모사전송(fax), 컴퓨터통신,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규제에 대한 상시적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경제5단체 규제개혁건의, 기업규제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업불편·애로사항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1993년도에 제기된 문제들 중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1998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설립 이후에 약 6,000여 건의 규제가 폐지되고 많은 규제들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규제개혁 건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1993년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정부(1998~2002)에서 기존 규제의 50%를 줄인다는 규제개혁 목표는 수치상으로는 초과 달성되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소비자후생이 획기적으로 증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산업이 과연 몇 개나 될 지를 생각하면 다소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본 글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1993년도에 제기되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첫째,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규제개혁의 목표에 대한 혼돈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론적으로는 규제개혁의 목표를 경쟁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자율과 창의의 극대화,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을 들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규제개혁을 기업의 성장 및 활동의 애로요인 해소 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공장입지, 수출입, 통관, 금융차입 등과 관련된 각종의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환경, 고용 및 해고, 검사기준 등 각종 기준의 완화는 중요한 규제개혁 대상으로 강조되어 왔다.

반면에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영역제한 등 기존사업자에게 타격을 주나 소비자후생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핵심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는 규제개혁의 주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1998년도에 57개, 1999년에는 33개의 주요 규제개혁 대상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규제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전문자격사, 주류분야 등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독점적 사업영역이 개방되는 실적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규제개혁대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은 행정절차적인 규제였다는 데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규제들이 정치논리에 가려서 충분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규제개혁 대상과제의 실제적인 선정과정을 보면 아직도 규제의 주무부처와 기존 사업자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는 기존 규제의 정비에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에게 통보하고, 주무부처는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정책과정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기계적(기존 규제의 몇 % 정비), 원론적(기존 규제의 제로베이스적 검토, 경쟁국 벤치마킹 등)인 차원의 지침만을 주고 있으며, 기존규제 정비는 실질적으로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주무부처에게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5단체 등 기존사업자들로부터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정기적으로 제안받고 있다. 그런데 기존사업자들은 행정절차적 규제의 완화에만 관심이 있을 뿐 가격규제, 진입규제, 사업영역제한 등 경쟁제한적 핵심규제의 철폐는 그들의 이해에 반하는 일이다.

셋째, 핵심규제의 개혁에 대한 규제기관과 기존사업자들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합리한 규제의 후생손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규제의 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영향분석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규제도입의 정책적 당위성만을 반복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계량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④ 규제개혁의 향후 정책과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다양한 측면의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본 절에서는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첫째, 선택과 집중에 의거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혁 추진이 요구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개혁에너지는 매우 희소성이 높은 자원으로 전략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 분야에 걸친 백화점식 개혁보다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거나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소수의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요법적인 방식의 규제개혁은 큰 의미가 없고 목표지향적인 규제정비가 요구된다. 즉, 규제개혁 대상 산업과 분야의 선정에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든 산업과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이해관계집단의 대표, 그리고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문별(산업별) 규제개혁민간협의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전략과제로 지정하고 과제별 전담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적인 Task Force의 구성과 운영이 주무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져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적용제외분야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는 의원입법, 세제 및 병무관련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등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적용제외는 삼권분립 정신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입법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세제 및 병무관련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심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도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대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규제개혁위원회와 사무국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전문성의 확충이 요구되며,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갖는 규제담당기관과 기존사업자들의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심도 있는 규제심사를 위하여 사무국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주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도 규제담당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조사결과를 직접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을 위한 사무국의 전문인력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확충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하나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들과의 정책공조가 중요하다. 우선 규제개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양 위원회의 정책연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03년 2월에 설치된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개혁연구센터가 규제영향분석 등 관련 연구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국무조정실 산하의 분야별 국정연구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야 한다.

2. 2003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집필자 :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연구위원

① ‘참여정부’의 2003년 규제 추진계획 및 실적

① ‘참여정부’의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2003년은 ‘참여정부’ 출범의 원년으로 그 동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규제개혁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려는 노력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정부를 통해 기존규제의 수가 50% 정도 폐지되는 양적 감축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체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과 규제 품질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과 지적에 근거하여, 참여정부는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과거의 '수량감축 위주의 규제개혁'에서 '품질개선 위주의 규제개혁'으로 전환했다. 다시 말해, 참여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이 단순히 규제의 수량을 줄임으로써 규제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식에서, 규제의 내용을 합리화, 현실화, 효율화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개혁 방식의 초점을 전환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규제 분야를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팀(Task Force)을 통해 이들에 대한 준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전략과제에 대한 규제정비 방식으로는 경쟁국으로부터의 벤치마킹, 무(無)규제 상태를 전제로 한 제로베이스(zero-based)방식의 규제정비, 규제과정의 정비에 초점을 맞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방식 등 전략과제별 특성에 적합한 추진방식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2003년에는 기업활동의 촉진에 역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 공장 설립, 수출입 통관 등 10개의 전략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중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제외한 9개 과제에 대한 준비를 추진하였다. <표 1>은 2003년도에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과 관련하여 선정된 10대 전략과제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2003년도 10대 전략과제

번호	전략과제명	완료시기	비고
1	물류·유통분야 규제개선	2003. 12	기업활동분야
2	금융회사 영업활동관련 규제개선	2003. 12	"
3	준조세 정비	2003. 12	"
4	공장설립·입지관련 규제개선	2003. 11	"
5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개선	2003. 11	"
6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관련 규제개선	2003. 11	"
7	건축규제의 합리화	2003. 12	국민생활분야
8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	2003. 12	"
9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2003. 12	"
10	식품안전 규제의 합리화	2004. 6	"

다음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는데, 이미 1998~1999년에 1차 일제 정비가 실시된 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2차 일제 정비를 실시한 것이다. 2차 일제 정비에서는 과거 일률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해 놓던 방식에서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정비 목표를 설정하여 정비토록 하였고, 정비율이 높은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규제에 대한 2차 정비에서는 그 동안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그 존치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2차 정비에서는 기존 규제 중 준수도가 낮거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여 규제의 품질 제고에 주력하였다. 규제정비 방식에 있어서는 100개 이상의 규제를 갖고 있는 20개의 부처별로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의 경우 이를 일괄 폐지토록 하는 제로베이스(zero-based)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우선 규제총량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심사절차의 효율화 및 규제영향분석(RIA)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차단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실적이 부진하고 실효성이 발현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를 각 부처 기관장 및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태 및 인식이 변화되지 못한 점과 이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규제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개혁 마인드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고객 중심의 업무처리를 강조하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② ‘참여정부’의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2003년도 규제개혁의 추진 실적은 크게 전략과제의 추진과 기존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활동 촉진에 역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 공장 설립 등의 10개 과제를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2003년 동안 이 가운데 9개 과제를 추진 완료하였다. 다음의 <표2>는 이러한 추진 결과 개선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2003년 전략과제 주요 개선내용

전략 과제명	주요 개선내용
1. 물류·유통분야 규제개선 → 4개 분야, 21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화물자동차 개별사업 허용(사업요건 5대→1대) 항만관세자유지역 토지임대기간 연장(3년→최대 50년) 및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대상 확대(3,000만불→500만불)
2. 금융회사 영업활동관련 규제개선 → 4개 분야, 25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비등록주식 투자한도 폐지 증권사의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강제규제 폐지 추진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외국변호사 등 추가
3. 준조세 정비 → 5개 분야, 33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부담금 폐지(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12개) 중복 과징금 폐지(초지관리과태료 등 5개) 불합리한 과징금 개선(공동주택관련과징금 등 6개)
4. 공장설립·입지관련 규제개선 → 3개 분야, 8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공장총량 설정단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대기업첨단업종 신증설 확대 산업단지 조성 최소면적기준 완화(15만㎡→3만㎡)
5.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개선 → 4개 분야, 12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요건 확인대상물품 축소(4,800건→4,000건) 월별 관세일괄납부 허용 및 업체자율관세심사제 도입 부두내 하선기간(5→3일) 및 공항만내 물품보관기간 (1년→3개월) 단축
6.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관련 규제개선 → 8개 분야, 29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투기업 수도권 공장신증설 허용기간 1년 연장(2003말→2004년말) 내국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및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기준 완화(5년→3년)
7. 건축규제의 합리화 → 3개 분야, 14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허가(형질변경, 농지전용) 임의 사전결정제도 도입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건축계획 중심으로 간소화 건축복합민원 일괄처리를 위한 협의회의체 설치·운영
8.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 → 3개 분야, 7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도면고시 의무화 및 행위규제 내용의 DB화 81개 개별구역의 통폐합 등 지역지구 단순화 개별구역의 실효제 및 일몰제 도입·확대
8.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 7개 분야, 22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장 명칭사용권 판매 제도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익사업 및 경기장 운영 활성화 골프장 건설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요트 등 6개 체육시설의 설립요건 완화 (등록→신고)

다음으로, 2003년에는 100개 이상의 규제를 갖고 있는 20개 부처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상 규제를 선정하고 제도베이스에서 규제정비를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7,855건의 규제 중 172건(2.2%)를 폐지하고, 487건(6.2%)을 개선함으로써 실제적인 규제정비율이 8.5%에 불과한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이 이외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5단체를 비롯한 민간부문이 건의한 규제를 심사하거나,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제안된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 처리하였다. 특히, 경제5단체가 건의한 과제 91건을 검토하여 이 중 48건을 개선하였고, 광주전남지역 현지 간담회에서 제기된 23건의 과제를 검토하여 이 중 13건을 개선 조치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의 질적 개선과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개혁분석 전문가 양성 및 부처 규제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전문가 초청 교육 및 선진국 규제영향분석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에 규제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규제영향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노력하였다.

② 2003년도 규제개혁 평가

‘참여정부’의 2003년의 규제개혁의 추진 실적을 보면 외형상 ‘국민의 정부’에 의해 추진된 규제개혁의 그것에 비해 차별화될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목표가 규제의 품질개선이라는 질적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통계자료를 통해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특히, 부처별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실적 및 노력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의욕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라규제에 대한 정비도 여전히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① 전략과제의 추진실적 평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동안 9개 전략과제를 추진하여, 총 35개 분야에 걸쳐 191개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191개 과제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쉽게 하기 위해 산업단지 면적에 관한 요건을 완화(15만㎡ → 3만㎡)하는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128개 과제와, 토지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지이용정보 시스템 구축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6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 191개의 개선방안 중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은 총 129개로서 폐지가 30건, 완화 85건, 규제합리화가 14건이었으며, 이외에 규제개혁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육성지원정책 등 비규제 개선방안이 52건이 마련되었다.(〈표 2〉 참조)

그러나, 2003년 중 추진된 9개 전략과제의 개선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자유지역 확대, 외국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입지 허용 등 정책적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합의 도출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경쟁국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정 정비 중심의 BPR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과제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겠다

② 기존규제정비의 분석

2003년도 규제개혁 실적을 살펴보기 위해 1999년 이후 연도별 규제수의 변경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이 표를 보면, 2003년의 경우 등록 규제수가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의 마지막 해인 2002년의 7,547건에 비해 7,730건으로 18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등록 규제수의 증가분의 내용을 보면, 2002년에 비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신설된 규제의 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줄어든 반면, 폐지된 규제의 수는 약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미한 규제수의 증감보다 중요시해야 할 점은 전체적으로 등록규제의 수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2000년을 고비로 등록규제의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의 등록 규제수도 이러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수의 증가에 대한 우려는 규제내용에 대한 통계자료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통계에 의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즉, 〈표4〉에 따르면 규제강화 건수가 158건으로 규제완화 81건에 비해 약 두 배 정도에 이른다는 점과, 이러한 추세는 2002년에 비해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2003년 현재 양적으로 규제의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신설규제의 증가

추세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되는 규제의 수가 완화되는 규제수의 두 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규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량적 결과만으로도 규제개혁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행정규제변경 현황

(단위 : 건)

연도	등록 규제수	규제수 변경					증감소계	등록 규제
		증가			감소			
		신설	누락 등록	기타	폐지	기타		
1998	2	28	73	23	174	309	-359	-357
1999	10,352	380	156	190	3,597	191	-3,062	7,290
2000	7,343	244	250	166	696	352	-388	6,955
2001	6,912	509	76	254	246	261	332	7,248
2002	7,251	275	56	27	16	46	296	7,547
2003	7,541	233	83	13	80	60	189	7,730

〈표 4〉 규제내용의 변경 현황

연도	규제강화	규제완화	존속기한 연장	기타
1998	28	109	0	0
1999	142	1,717	0	0
2000	110	536	0	0
2001	230	283	0	0
2002	180	77	0	0
2003	158	81	0	3

〈표5〉는 등록된 규제사무를 유형별·연도별로 정리한 것인데, 2003년의 현황을 보면, 2002년에 비해 인허가·면허, 확인·증명, 지도·단속, 의무·금지 등 전 유형에 걸쳐서 고루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0년을 기점으로 규제의 수가 전 유형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표 5〉 유형별 규제사무 현황

(단위 : 건)

유형별		연도별						
		1998. 8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12	2002. 12	2003. 12
인허가·면허 등 소	소 계	2,562	2,523	1,761	1,623	1,529	1,640	1,670
	허가	669	657	524	459	428	425	431
	인가	270	272	190	195	191	191	190
	면허	74	72	66	64	59	60	62
	특허	19	19	13	13	13	13	12
	승인	642	627	368	336	306	311	320
	지정	360	352	248	212	215	228	235
	추천	26	24	18	18	16	15	17
	동의	23	23	8	8	9	13	15
	기타	479	477	326	318	292	384	388
확인·증명 등	소 계	619	599	460	433	441	450	461
	시험	51	56	45	43	43	43	45
	검사	276	254	223	205	205	209	211
	인정	47	47	36	34	42	45	41
	확인	93	92	66	61	60	61	69
	증명	40	40	30	29	28	28	31
기타2	112	110	60	61	63	64	64	
지도·단속 등	소 계	1,723	1,718	1,272	1,180	1,219	1,254	1,327
	결정	42	42	32	31	31	33	36
	명령	555	55	372	338	344	346	352
	지도	228	223	123	110	130	131	143
	단속	76	78	66	59	55	58	65
	행정질서벌	648	648	553	526	539	562	578
	행정형벌	11	10	3	2	-	-	1
	기타3	163	162	123	114	120	124	152
의무·금지 등	소 계	5,813	5,805	4,019	3,807	3,992	4,089	4,272
	신고의무	1,040	1,031	593	542	635	599	605
	보고의무	464	457	233	202	208	206	202
	등록의무	204	205	160	161	190	197	211
	고용의무	55	56	44	42	45	45	46
	통지의무	60	62	41	38	46	43	63
	제출의무	280	277	166	156	165	175	185
	기준설정	1,495	1,498	1,155	1,139	1,127	1,256	1,388
	금지	758	759	592	570	625	619	635
	기타4	1,457	1,460	1,035	957	951	949	937
총계		10,717	10,645	7,512	7,042	7,181	7,433	7,730

한편, <표6> 부처별·연도별 강화된 행정규제, <표7> 부처별·연도별 폐지된 행정규제, <표8> 부처별·연도별 완화된 행정규제를 보면, 우선 2003년도에 '강화'된 규제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처(10건 이상)는 보건복지부(41), 노동부(40), 해양수산부(19), 환경부(1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폐지'된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처(10건 이상)는 관세청(23), 재정경제부(15), 문화관광부(10)로 나타났으며, '완화'된 규제가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19), 노동부(13), 농림부(12), 금융감독위원회(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처별·연도별 강화된 행정 규제 (1998-2003)

(단위 : 건)

소관부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관부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설교통부	0	9	13	11	4	8	경찰청	0	1	0	14	6	11
공정거래위원회	0	6	0	0	7	1	과학기술부	0	1	0	11	9	0
교육인적자원부	0	1	0	0	0	0	국세청	0	1	0	0	0	0
금융감독위원회	0	7	15	12	8	5	노동부	0	0	0	15	29	40
농림부	0	4	7	8	34	4	문화관광부	0	7	3	0	0	0
문화재청	0	0	1	0	1	1	법무부	0	1	0	2	1	0
병무청	0	1	0	0	0	0	보건복지부	0	2	17	8	7	41
산림청	0	0	4	10	9	0	산업자원부	0	17	1	17	10	0
식품의약품안전청	1	3	18	7	0	7	재정경제부	0	2	0	8	1	0
정보통신부	0	1	7	11	3	6	철도청	0	0	0	1	0	0
청소년보호위원회	0	0	11	0	0	0	통일부	0	1	0	0	0	0
특허청	0	1	0	0	0	0	해양수산부	1	17	4	13	33	19
행정자치부	0	0	4	23	10	1	환경부	0	59	5	59	8	14
							총 계	2	142	110	230	180	158

<표 7> 부처별·연도별 폐지된 행정 규제 (1998-2003)

(단위 : 건)

소관부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관부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설교통부	18	175	179	16	1	0	경찰청	0	77	62	0	0	0
공정거래위원회	0	19	0	0	0	0	과학기술부	0	208	1	13	1	0
관세청	0	101	0	0	0	23	교육인적자원부	0	88	0	45	0	0
국가보훈처	3	36	0	3	0	2	국방부	0	15	0	0	0	0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소관부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관부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국세청	3	4	0	0	0	0	금융감독위원회	0	208	12	57	1	5
기상청	0	14	0	0	0	0	노동부	0	115	6	8	1	1
농림부	2	258	53	8	2	5	농촌진흥청	4	3	0	0	0	0
문화관광부	0	102	41	3	2	10	문화재청	0	64	1	0	0	0
법무부	0	4	0	0	1	0	병무청	0	2	0	0	0	0
보건복지부	0	575	148	41	0	6	산림청	1	43	54	1	0	0
산업자원부	0	336	21	5	2	8	식품의약품안전청	58	34	28	8	0	0
외교통상부	0	5	1	0	0	0	재정경제부	14	183	1	10	1	15
정보통신부	26	148	13	3	0	2	조달청	0	16	0	6	0	0
중소기업청	0	40	6	2	0	0	철도청	4	21	0	1	0	0
통계청	0	7	0	0	0	0	통일부	0	18	0	0	0	0
해양수산부	16	334	17	5	4	1	해양경찰청	6	50	1	0	0	0
환경부	0	157	0	3	0	1	행정자치부	0	126	51	5	0	0
특허청	12	11	0	3	-	1	총 계	167	3597	696	246	16	80

이러한 규제개혁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우선 '강화'된 규제의 건수가 많은 부처로 보건복지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로 나타났는데, 이들 부처들의 공통점은 이 부처 업무의 대부분이 사회규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마약관리, 식품위생법,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공중위생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제정비의 주된 내용들이고, 노동부의 경우도 근로자 직업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고령자고용촉진, 고용보험, 산업안전 및 안전보건 등 전형적인 사회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강화 내용은 해양오염방지, 수산업협동조합, 유류오염 손해배상, 수자원 보호 등에 관한 것이며, 환경부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 환경정책기본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야생동식물 보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2003년도의 강화된 규제는 사회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폐지'된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처인 관세청과 재정경제부의 규제 정비 내용은 대부분이 경제규제와 관련된 것이고, 문화관광부의 경우는 관광 진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출판 및 인쇄 진흥, 저작권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사회규제와 관련

된 사안들이다. 또한 '완화'된 규제가 많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동부, 농림부의 경우도 사회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2003년도 부처별 행정규제의 현황을 강화, 폐지, 완화란 차원에서 정리하면, 대체로 사회규제에 대한 강화 노력과 경제규제에 대한 폐지 노력이 주목할 만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사회적 규제는 품질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8〉 부처별 · 연도별 완화된 행정 규제 (1998-2003)

(단위: 건)

소관부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관부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설교통부	4	107	164	24	3	0	경찰청	0	64	5	6	12	4
공정거래위원회	0	9	0	0	0	0	과학기술부	0	2	2	1	0	0
관세청	0	39	0	1	0	0	교육인적자원부	0	28	0	11	2	0
국가보훈처	0	9	0	4	0	0	국방부	0	3	1	0	0	0
국세청	10	7	5	0	0	0	금융감독위원회	1	122	29	45	14	10
기상청	1	5	0	0	0	2	노동부	11	58	13	28	8	13
농림부	9	126	20	10	5	12	농촌진흥청	0	5	0	0	0	0
문화관광부	1	62	33	0	0	0	문화재청	0	14	7	0	2	0
법무부	1	11	0	2	1	0	병무청	3	9	18	2	0	0
보건복지부	0	113	68	37	0	7	산림청	5	38	46	1	0	0
산업자원부	0	150	13	2	3	1	식품의약품안전청	17	40	20	3	0	19
외교통상부	0	11	2	0	0	0	재정경제부	14	97	9	53	1	7
정보통신부	7	70	22	12	3	2	조달청	0	3	0	8	0	0
중소기업청	0	8	7	0	0	0	철도청	4	5	0	0	0	0
통계청	0	2	0	0	0	0	통일부	0	15	0	0	0	0
해양수산부	11	169	9	1	17	0	해양경찰청	3	24	0	0	0	0
환경부	0	194	2	7	0	4	행정자치부	4	88	37	22	6	0
특허청	3	10	4	3	0	0	총 계	109	1717	536	283	77	

정리하자면, 2003년도 규제개혁의 실적은, 비록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종전과는 달리 규제의 실질적인 품질개선을 위해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개혁을 시도한 점

근방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정비의 내용을 보면, 참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엿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직까지 가야할 길은 멀지만 경제관련 부처에서 경제규제를 폐지하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회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통계자료상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지속되어 오고 있는 규제의 양적 증가 추세가 억제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③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2003년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규제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향후 과제와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대상 확대와 지속적 추진

2003년도에 자율적으로 부처별로 추진한 규제정비의 실적이 미진한 점과 규제정비의 속성상 일회적으로 추진되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규제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규제의 시간적·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규제정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정비의 일정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부처의 자율적인 정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핵심규제나 중요규제의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정비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앙부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제정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즉, 규제정비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하여 일반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면서도 규제개혁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온 공기업이나 협회 등과 같은 준공공기관의 유사규제에 대한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규제총량제 도입 및 규제일몰제의 활성화

2000년 이후 규제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총량제의 조속한 도입과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각 부처별로 규제의 총량을 정하여, 규제의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수의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규제 신설의 경우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일정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지되는 규제일몰제(sunset law)가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그 실효성이 낮은 상태이므로 이를 보다 활성화하여 규제의 양적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일몰제의 도입은 현대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 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생애(life cycle)가 단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의 품질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하겠다.

③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한 규제심사 기능 강화

우리의 경우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규제영향분석을 내실화 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고, 이로 인해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전에 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심사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분야 전문인력의 부족과 각 부처의 규제담당 부서의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인해 내실있는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매년 300~400건 정도의 규제가 신설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으며, 규제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최소한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규제개혁의 품질을 논의한다는 것은 현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한계 점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규제영향분석서의 첨부를 의무화 하면서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세가 보다 신중해졌다. 따라서 향후 부처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규제영향분석서로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제출된 규제안건에 대해 전문성 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 규제는 그 자체가 국민 생활에 보다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

고, 규제에 대한 순응도도 제고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규제담당인력도 실질적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도 전문성 있는 안전 심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핵심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에도 적용될 것이며, 이는 국민 및 공무원들의 규제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시 이러한 변화는 규제개혁에 대한 순기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④ 규제 관련 교육·훈련의 강화

규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즉,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운영하거나,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의 서류를 요구하는 등 규제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와 인식에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과,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소양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훈련의 노력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정규 교과과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교육기관의 규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단계별, 수준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교육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인적, 재정적 투자가 미미하며, 이 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규제 담당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전문성 축적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_ 규제개혁 추진평가 및 향후과제 (외부기고)

1.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

* 집필자 : 신중익 前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① 2003년의 규제개혁 평가

2003년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물론, 이 같은 변화는 새 정부의 출범과 이에 따른 경제정책기조 변화에 기인한다. 뒤돌아보면 1980년 초의 5공화국 이래 정권은 여러 번 교체되었지만 ‘작은 정부’(공공개혁), ‘공기업 민영화’, ‘규제개혁’ 등 신자유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정책기조는 각 정부에서 견지되었다. 역대 정권들은 집권 초에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관례였다.

① 달라진 규제개혁 환경

참여정부도 규제개혁을 중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진 강도나 내용면에서 전임 정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과제 중에서 규

제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강화’와 ‘모든 규제에 규제일몰제 적용여부 검토’가 전부였다. 이에 비해 규제강화 쪽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들은 훨씬 많았다.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규제 강화, 공익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증권집단소송제도 조기 도입, 완전포괄주의 상속증여세 시행, 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와 같은 각종 금융회사를 계열에서 분리(계열분리 청구), 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의 주주(출자자) 자격 요건 강화,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와 대출한도 축소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경제정책기조가 바뀜에 따라 규제개혁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개혁, 준조세 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기획예산처의 정부개혁실은 폐지되었다. 이들 업무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넘어갔지만, 광의의 규제인 정부기능을 개편하거나 공공부문 전반을 개혁할 추진력은 전보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에 대한 각계의 관심도 낮아졌다. 피규제자인 기업은 규제개혁보다는 또 다시 강화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규제 등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경영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비하기에 바빴다. 규제개혁을 측면에서 지원했던 학계나 언론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여건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과 같이 기존규제를 재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지만, 기존규제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추진 강도나 성과가 예년과 같을 수 없었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규제심사 강화나 모든 규제에 규제일몰제 적용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참여정부는 지난해에 시장개혁, 인사개혁, 전자정부, 지방분권, 행정개혁, 노사개혁 등 주요 분야에 개혁 ‘로드맵(roadmap)’을 작성하여 금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행정업무와 관련되는 규제개혁에 대한 로드맵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문민정부’는 출범 100일간 규제를 집중적으로 완화했고, ‘국민의 정부’는 출범 첫해에 기존규제의 절반을 폐지했다. 이들 정부와 비교할 때 규제개혁에 관한 참여정부의 출범 첫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기록될 것이다.

② 전략과제 추진으로 규제개혁의 새로운 접근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작년에 새로 시도한 규제개혁방식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공장설립, 토지이용, 물류 등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이들 분야의 규제체계

(entire regulatory regime)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성과는 금년부터 추진될 법령개정 결과를 두고 봐야하겠지만,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전기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간의 규제개혁은 주로 개별 법령에서 문제되는 규제조항을 고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많은 규제가 폐지되거나 정비되었지만, 기업의 거래비용이나 절차비용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규제개혁으로 성장이나 고용창출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 공장설립, 판매, 유통 등 대부분의 기업활동에는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어, 거의 모든 부처가 규제를 개혁하더라도 한 개의 부처에서 규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분야별로 제도를 새로 설계하거나 불필요해진 규제를 일괄정비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10대 전략과제는 이 같은 방식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고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경우 규제개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었음에도 전략과제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규제개혁이 제도화되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리더십이 향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스템에 의한 규제개혁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기존공장의 증설이나 경유승용차의 허용여부 등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을 조속히 마무리짓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②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① 규제개혁 여건 검토

그간 많은 규제가 폐지되거나 정비되었지만 규제개혁이 아직 미흡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강화, 고용창출, 외국인투자 유치나, 부정부패 척결, 행정서비스 개선, 정치자금제도 개혁 등 정치사회분야의 이슈가 논의될 때에도 규제개혁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보다 ‘규제혁파’, ‘규제철폐’와 같이 보다 강도 높은 용어가 즐겨 사용될 정도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규제개혁이 잘 안된다는 것은 규제량이 줄어들지 않고, 규제의 질도 잘 개선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00년 말에 7,000여 건으로 감소했던 규제 수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통계를 보더라도 일선행정기관의 규제사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는다. 개별규제도 이리한데, 광의의 행정규제인 정부의 민간 영역에 개입이나 경제제도의 질까지 포함하면 아직 규제개혁은 가야 할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문제는 규제개혁이 지금도 잘 되지 않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견할 때 향후의 규제개혁도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첫째, 남아 있는 규제는 개혁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이들 규제는 1998년과 1999년 2차례에 걸쳐 일괄심사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만큼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논리와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의 반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청와대의 지원을 받아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강화하거나 규제개혁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반대하는 부처나 이해관계자들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제는 규제 질의 향상이 개별규제의 정비보다 중요한데, 규제품질을 제고하기는 무척 어렵다. 대부분의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여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많으며, 현실과 괴리되어 규제를 준수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등 규제의 질이 낮다. 규제의 질은 개별 규제의 투명성이나 책임성뿐만 아니라 규제에 이뤄진 각 분야의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보호, 사업장 안전, 토지이용 등의 경제제도가 빠르게 변하는 경제환경에 부합되고, 동일한 기업활동에 대해 2중, 3중으로 규제하지 않고, 외국의 유사제도에 비해 경쟁력을 가져야 질 좋은 규제인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즉 규제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규제품을 높이려면 규제생산부처와 관련부처들이 함께 규제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데, 부처할거주의 등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규제품질 제고가 규제 폐지나 보완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셋째,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문성과 권위, 추진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규제개혁에 관한 총론 찬성, 각론 반대가 무성한 데 있다. 규제개혁이 잘 되려면 논쟁이 지속되는 규제에 대해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를 정의하는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쟁점 규제에 대해 규제인지 아닌지, 규제로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지 못한다. 규제일몰제 등 법에서 정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추진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규제 중 상당부분은 규제여부나 존폐에 대해 거의 10년 이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정부기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과 같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과 규제개혁위원회 간의 협조도 원활치 않다.

넷째,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국민이 규제개혁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규제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대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통합을 이룩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추세는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에 관한 국정책임자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행정규제를 개혁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관심이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규제개혁이 제도적으로 이뤄진다는 미국과 영국 등 규제개혁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이나 관심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이다.

②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규제개혁의 첩경은 규제량을 최소화하고 규제질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전반의 규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마저 줄어든다면 규제개혁은 한결 용이해 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탈규제와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 구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수준에서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 단계로 올리려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도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의 규제개혁은 문제되는 규제는 폐지하면서 규제개혁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와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외국에 비해 불리한 규제, 기업이나 국민들이 신고하는 규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선정한 중점과제들의 개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규제개혁에 관한 제도중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들도 보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 유통, 금융, 공정거래 등 주요 분야별로 관련제도를 일제히 개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혁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이 국민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현실과 개선과제

규제개혁 현실	부작용	개선과제
규제개혁 공감대 결여	개혁 추진력 상실	성공사례 개발과 확산
규제여부 판단 곤란	논쟁만 무성, 결론 없음	규제판단기준 정립
규제개혁관련 제도 작동 미흡 : 규제영향평가, 규제일몰제도, 기존규제 정비 등	정책과 제도신뢰성 약화	도입한 제도의 철저 이행
문제 규제만 개선	개혁효과 기대안	규제체계를 개편
규제개혁관련기구 분산	전문성, 추진력 결여	관련기구의 통합과 협조체제
중복규제 증가	개혁효과 약화	관련부처 통합, 기능 통합
국회의 규제개혁 관심 낮음	행정부의 규제신설 감시 미흡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등

(i) 현행 제도의 철저한 활용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규제개혁을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를 철저히 활용하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는 규제일몰제, 규제영향평가(RIA), 규제등록, 규제법정주의, 기존규제 정비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들 제도만 법대로 운영되면 불합리한 규제신설을 억제하고, 문제되는 기존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규제일몰제에 따라 규제시한은 5년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시한이 정해진 규제는 전체의 0.5%도 안 된다. 그나마, 공정거래법의 금융정보거래요구권(제좌추적권)과 같이 각 부처는 시한이 도래하면 계속 연장하려 한다. 규제영향평가는 아직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내용만을 봐서는 그 규제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알아내기 어렵다. 또한 규제분류도 부처별, 유형별, 법령별로 되어 있어 규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규제를 연구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규제일몰제부터 취지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해당부처는 규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시한이 도래하는 규제만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더라도 많은 규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일몰제는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규제품질이 높아질데 기여할 것이다.

규제등록 내용도 대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등록된 규제에는 그 규제의 취지와 기대

효과, 다른 규제와의 중복되는 내용, 동 규제가 폐지되기 위한 전제조건 등을 담아야 한다. 규제분류 방식도 진입, 가격, 품질 등의 전통적 분류방식을 따라야 한다. 규제등록 내용을 이 같이 보완하면 관련부처는 자신들의 규제를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규제가 개혁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가격, 진입, 품질, 기준 등의 규제를 전면 심사할 수 있어, 다른 제도와 중복되거나 질 낮은 규제를 일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어 보다 나은 개혁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1993년에 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제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라는 명칭 때문에 기업을 지원한다는 인식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규제완화 특별법(가칭)’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이나 네델란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하여 문제되는 규제들을 일괄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이 법을 활용하면 기존규제를 일괄 정비하거나 출자총액규제 처럼 늘 쟁점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ii) 기존규제의 재설계

개별적으로 문제되는 규제는 대부분 정비되었으므로 향후 규제개혁은 규제의 존폐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기존규제를 새로 설계(redesign of regulation)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현행 규제 중에서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 이전에 도입되어, 전자정부, 투명성과 지배구조 등의 기업제도 개혁, 국내시장 개방, 피해구제방식 개선 등 달라진 경제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고 ‘표시광고 공정화 법률’이 제정되는 등 소비자보호 방식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의 규제가 대부분 존치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이 미흡할 때 도입되었던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규제가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 지배구조와 투명성 관련 법제 보완, 통합금융감독기구 발족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향후의 규제개혁은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토지, 금융, 노사 등 주요 분야의 규제가 그간 달라진 제도나 경제환경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전면 폐지 혹은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에서 접수되는 내용을 분석한 후 피규제자들의 불만이 많은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부처에 규제전반의 개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규제 수는 감소하고 규제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몇 년 전부터 42개나 되는 금융관련법을 5~6개의 기능 중심의 법으로 통

폐합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에 관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매마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행정업무절차 재구축(BPR)이나 정부조직 재설계 등을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규제 재설계와 연계하여 추진하기가 한결 용이할 것이다.

(iii) 규제 판단기준의 법제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규제들은 거의 10년 이상 담당부처와 기업, 혹은 정부부처간에 규제의 존폐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이다. 규제인지 아닌지, 규제로서 적정한지의 논란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정하는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0년에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을 작성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같다. 이 기준을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령 등으로 법령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부처도 규제신설에 신중해질 것이며, 이 기준은 신설규제의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에 지침이 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심사를 하는 데 있어 결정의 권위도 높여줄 것이다.

(iv) 규제개혁에 국회의 적극적 참여

규제는 법이므로, 결국 국회에서 규제개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회와 정치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가 규제개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규제를 ‘숨은 세금’(hidden tax)으로 보고, 행정규제를 예산과 같이 의회에서 강도 높게 심의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국회에서 규제를 심사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의 의회 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은 행정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우리도 규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를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이 백서에는 매년 규제개혁의 성과, 남아 있는 규제의 규제비용, 향후 개혁되어야 할 규제,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제기한 규제의 개혁을 관련부처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가 독자적으로 이들 규제에 대한 개혁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금이나 부담금 등에 대해

서는 주무부처가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국민부담의 증가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v)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 확산

그간 많은 규제를 개혁하였지만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규제가 제대로 개혁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탓도 있고, 규제개혁으로 인해 각 분야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데도 기인할 것이다. 하여튼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지지하지 않으면 국회나 정치권에서도 규제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 신산업 발전, 행정서비스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에 관련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규제개혁에 회의적이었던 국민들도 규제개혁을 지지할 것이며, 정치권도 규제개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나가느냐가 향후 규제개혁의 관건이 될 것이다.

2. '삶의 질' 과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할 규제개혁

*집필자 : 권혜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정부개혁위원장

① '삶의 질 향상' 이 규제의 목표가 되어야

규제개혁과 관련해 시민-정부-기업부문의 시각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나 기업부문을 규제개혁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부문을 과도한 규제비용으로 기업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공동화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상의 격차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정부는 전수 중심의 규제개혁을 하고 있고, 시민과 기업부문을 진정으로 원하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식상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왜 규제하는가. 규제개혁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참여정부는 규제개혁 목표를 “경쟁국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와 동일한 목표¹⁾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규제개혁의 최상위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규제개혁의 최상위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인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최상위 목표라면 사실상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상위 목표일 때에만 규제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즉 삶의 질을 기준으로 규제 강화 영역과 규제 완화 영역이 구분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원활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국가목표달성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규제효과, 규제품질 개선 및 투명성 제고’라는 전략을 통해 “경쟁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만 ‘규제품질 개선 및 투명성 제고’라는 전략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만 ‘규제효과’ 전략은 전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규제효과를 통해 규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효과’라는 과격한 용어 선택에는 규제는 완전히 없애야 할 부정적인 개념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없는 기관이다. 모든 규제를 폐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② 수요자(소비자) 중심적 규제개혁으로 전환되어야

이와 같은 불분명한 규제개혁 목표와 전략뿐만 아니라 실제 규제개혁 건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03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7개 주요 경제부처의 규제건수가 2003년 12월 현재 3,375건으로 2002년 말(3,238건)보다 137건(4.2%)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재경부가 4

1)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 목표로 ①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 ② 서비스 질의 향상과 국민생활의 편의 개선, ③ 부정부패의 축소를 제시하고 있다.

건 감소했고, 건교부(50건), 금감위(34건), 노동부(28건), 환경부(20건) 등 다른 부처는 증가했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8월 3,668건이던 경제부처의 규제는 1999년 말에는 외환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개혁 정책으로 25.4%나 줄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행정규제기본법의 유효성, 규제일몰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및 운용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OECD, 2000)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서 규제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 2.6%, 2001년 7.4%, 2002년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행정규제의 변화를 살펴보자. 참여정부 출범 시 7,575건이던 각종 행정규제는 1년 만에 7,797건으로 2.93%인 222건이 증가했다. 이를 부처별로 보면 문화관광부(183건 → 252건, 69건), 건설교통부(762건 → 810건, 48건), 교육인적자원부(139건 → 180건, 41건), 금융감독위원회(539건 → 573건, 33건) 등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전체 행정규제 중 0.58%에 불과한 45건만이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규제일몰제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www.rrc.go.kr)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일몰제는 보다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시하기로 한 규제총량제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규제의 품질관리를 제시하면서 건수중심의 규제개혁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않고 있다. 일반인들에는 아직도 건수중심의 규제개혁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규제의 총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규제는 하나의 사무가 아니라 일련의 사무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과정에 있는 일부 규제를 줄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상대해야 할 담당 기관이나 공무원의 수는 줄어들지 않은 채 단순히 서류 제출과 같은 규제 건수 몇 건을 줄이는 것은 수요자에게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규제개혁(규제완화)과 재규제는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 감시가 줄어들면 공무원의 규제논리에 포획되어 규제 강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규제가 공급자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자 중심적 사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공무원은 규제 수요자를 위한 컨설턴트(Consultant)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규제지도(regulatory map)를 작성²⁾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현존하는 규제 중 무엇이 장애요인이 되고, 이 장애요인

2) 규제지도의 작성에 대해서는 방민석(2003)의 논문을 참고

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컨설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규제개혁을 위해 고객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기업 유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적극적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하면 정부부문이 기업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 즉 윈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알라바마 주정부는 우리나라 기업(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도로 개설, 학교 설립, 나아가 법 개정 등을 최단기간 내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가 영국에 공장을 설립했을 때 영국정부는 보조금, 도로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지원했다. 이와 같이 중국, 미국과 영국은 소득 및 고용창출을 위해 모든 규제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부문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규제개혁의 목표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법이라면 어떤 애로사항도 확인하면 즉석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장설립에 필요한 기한이나 단계 또는 필요 서류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식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중복기능의 통폐합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보다 과감한 법규의 통합을 통한 규제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설정해둔 채 사실상 방치해 두고 있고,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³⁾

그러므로 현재 생산자, 서비스 공급자 중심⁴⁾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행정조직과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에 서서 부처 간 기능 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정부기능과 조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을 통하여 국민 다수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려면 정부부처 간 규제기능의 배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부처 간 또는

3) 영국의 예를 보면, 1960년대 말에 5개 정부부처, 9개 감독기관 및 지방정부, 9개 관련법률에 분산·중복되어 있던 산업안전 관련 규제기관과 법규를 통합(9개법 폐지, 1개법 제정)하고 안전보건청으로 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4) 한국의 규제행정조직은 1960~70년대에는 개별산업의 육성이 주된 기능이었으며, 그후 육성기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육성기능과 이의는 반대로 소비자의 편에 서서 기업의 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규제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정책이 육성·지원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사공영호, 1998)

산하규제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더라도 당사자인 규제기관 간의 협상에 기능의 배분을 맡기기보다는 국민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기준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직접 조정안을 이끌어내어야만 소비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③ 규제의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

상당수의 규제는 담당 공무원에게 시간이나 범위 설정에 상당한 재량요인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눈치를 보고, 잘못 보이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재량적 요인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말없이 지켜보면서, 내가 선심을 쓰겠다는 심리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규제는 부패와의 연루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각종 인허가 규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처리한 서울시의 사무처리는 이러한 점에서 좋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제수요자가 무엇을, 왜 어려워하는지 헤아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규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규제를 통한 권력남용 가능성은 엄격한 정당성 확보절차를 거치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 서비스 지향적 사고방식으로 전환되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안에 대해 각종 규제절차를 최대한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규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부문이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즉 서류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인허가절차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설립을 위한 모든 인허가절차를 직접 인허가부서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업활동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활동을 위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과정에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규제에 공무원의 재량적 요인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규제개혁과정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인사중심의 규제개혁은 실패하기 쉽다. 공무원들을 과제 발굴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합목적적인 평가와 보상의 연계는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규제개혁 성공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김태운, 2003)

④ 핵심규제의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해 228건의 신설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기업부문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부처이기주의와 정책규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체감할 수 있는 개혁성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체감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규제에 대해 영기준(Zero-base)에서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확대와 신설 규제 사전심사제도의 도입,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등은 바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주요 핵심규제의 분석과 개선을 위하여 개발된 정책 도구들임을 감안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핵심규제의 개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규제의 개선이나 민원성 행정절차의 개선은 과거에도 해 왔고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개혁기관을 법에 의하여 만든 것은 주요 핵심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철저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 및 합의도출과정을 거쳐 핵심규제의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개혁을 위한 장·단기 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좀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규제의 개혁에 대하여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자유경쟁원리의 구현, 사유재산권의 보장, 집단이기·특권적 규제의 일괄적 폐지 등의 개혁원칙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규제개혁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가시화하며, 현실적인 충격을 완화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규제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그것도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계적이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설득력 있는 개혁안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필요는 없다.

핵심규제들 중에는 재벌개혁, 노동계약 및 노동조합 관련 규제의 개혁과 같이 정치성이 강한 규제 현안들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동안 정치성이 강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슈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벌개혁이나 노사개혁 등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다른 규제

현안에 비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월등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이슈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지연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결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슈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이슈들도 본질적으로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로서 다른 규제들과 달리 접근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규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규제정책과정은 정치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성의 강도가 활동범위를 제한할 기준이 된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영역은 극도로 제약될 수 있다. 그리고 힘없는 집단들에게 개혁에의 순응을 요구할 경우 결국 힘없는 집단만이 자신들의 이권을 상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개혁정책의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오히려 규제개혁과 경제자유화라는 큰 원칙 하에서 이들 문제에 접근해야만 국가정책간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 규제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시장경제 창달을 지향하는 규제개혁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쇠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이들 규제다.(윤봉준, 1999) 획기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도 대기업 및 노사관련 규제들에 상당히 비롯되고 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들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친재벌이니 반재벌이니 하는 식의 음해성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노사정위원회,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들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굳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들 정책에 대하여 대응력을 갖는 것은 규제개혁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이다.(사공영호 외, 2000) 첫째, 재벌규제나 노동규제는 기업과 근로자라는 경제의 기본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규제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둘째, 이들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명확한 이유 없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과 같은 여타의 핵심적인 규제개혁대상의 논의에서도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영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목적인 핵심적인 규제의 개혁보다는 민원성의 행정 절차적 규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⑤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을 개선해야

규제(특히 경제규제)란 일단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더라도 완화하기가 쉽지 않다. 규제로부터 지대를 얻는 집단이 조직화되어 해당 규제를 지키기 위한 로비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Rowley와 Tollison(1986) 같은 학자는 규제란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는 소비자들이 자신으로부터 생산자로의 소득이전(지대)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더라도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후생손실은 마찬가지로이므로 규제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전심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규제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다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막고 규제신설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좀더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최종적으로 채택된 규제정책 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정책에 대한 규제영향도 함께 평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나 해당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거나 규제영향분석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에 포함할 정책대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중요규제들에 대해서는 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스스로 또는 관련 연구소를 동원하여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회를 갖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관련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윤(2003).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규제연구 12(1), 한국규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 방민석(2003)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사공영호(1997). 규제완화 제약요인의 해소방안 모색, 한국행정연구원.
- 사공영호·하혜수·권해수(2000).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김대중 정부 2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 서울행정학회
- 윤봉준(1999). 「노동조합 정치세력화의 폐해」, 자유기업센터.
- Rowley, Charles and Robert Tollison(1986). "Rent-Seeking and Trade Protection," *Swiss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pp.141-166.
- OECD(2000). *The OECD Review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OECD.

제3절 _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 집필자 : 김진남 사무관(T.3703-3926, twinjin@op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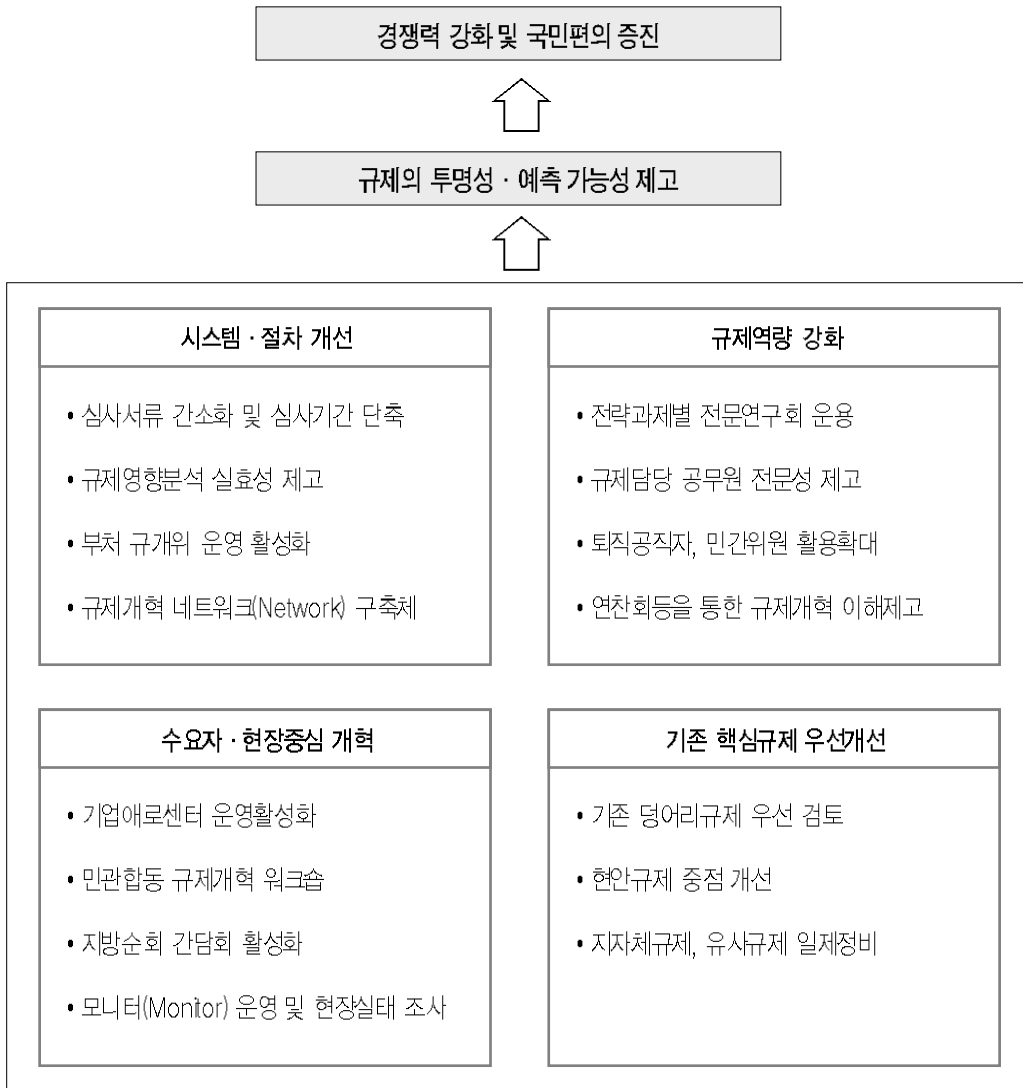
1. 추진방향

세계화의 진전으로 민간의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과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가 중요해지는 등 외부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규제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어 기존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수요 측면을 보면 사회 각계각층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계에서는 토지 등 핵심규제 개혁, 규제집행절차의 개선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생활의 안전차원에서 환경, 보건, 식품 등 사회규제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및 수요변화에 맞춰 규제개혁업무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규제개혁관련 조직 및 운영시스템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시스템 및 절차 개선, 규제역량 강화,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기존 핵심규제의 우선 정비라는 전략하에 규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세부추진계획

(1)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절차 개선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심사요청 후 5일(현행 10일) 이내에 중요규제 여부(규개위 심

사 대상규제)를 결정하고 심사대상이 아닌 규제는 즉시 통보하여 자체 규제심사안대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중요규제(규개위 심사대상 규제)중 분과위 심사대상 규제는 심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본회의 심사대상 규제는 4주(현행 45일)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설계 단계부터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토록 하며 비중요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을 간소화하여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검토 및 위원회 심의과정에 집행기관,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규제개혁 역량 강화

기존규제의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소관부처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에서 정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규제개혁 의지·경륜·전문성을 갖춘 전직 공무원 및 전문가로 규제개혁자문단을 운영한다. 자문단은 기존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심사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규제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의식개혁을 위해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규제개혁 과정을 전문과정으로 신설하고 선진국의 규제영향분석기관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파견하여 규제영향분석전문가를 양성하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찬회,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규제 정비, 일선기관의 집행 점검, 심도있는 규제영향분석 검토 등을 위해 사무국의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전략과제의 발굴·개선을 위해 별도의 전략기획팀을 운영하고 일부 인원은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파견·충원받을 예정이다.

(3)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국무총리실 내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관련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경제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월 국무총리 주재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들이 직접 지역주민과 기업인을 찾아가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순회간담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4) 기존규제 정비

중앙부처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향후 4년간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존치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규제의 형식과 내용 등 품질을 제고하는 기존규제 일제정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4년도 정비대상 규제 중 10% 이상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방식에 의해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규제위에서 시의성 있는 중소기업 과제를 선정하여 BPR, 투명성 중심으로 집중 정비하고 주요 기업활동 분야별로 주관부처를 지정, 주관부처에서 관련분야 규제실태조사 및 규제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법령 제개정내용 조례미반영, 법령미근거 규제운용 등의 사례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규제위에서 상반기중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형별(시·도, 시·군·구) 정비모형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협회·공단·공사 등 준공공기관에 의한 유사행정규제의 일제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5) 효율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정부 전체 및 부처별 규제개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규제지수를 개발하여 동 규제지수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고, 대내외 홍보 및 규제개혁 전략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 및 규제개혁방안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산·정착시키고자 한다.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프로그램(Monitoring Program)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과제를 객관적으로 점검·도출하고 모니터링 프로그램(Monitoring Program) 추진을 계기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을 독려하고, 우리의 규제개혁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록

제1절 _규제개혁 관련 법령

제2절 _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제1절_ 규제개혁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 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되기 1년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청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 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
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 받은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
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
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내
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업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

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규제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훈령·고시 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 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 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 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관련 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681호, 1998. 2.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 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할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 여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 용이성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

양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의견 제출의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컴퓨터통신·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 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2000. 5. 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1분과위원회
2. 경제2분과위원회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배치한다.

- 제6조(소관) ① 경제1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건설교통·산업자원·공정거래·금융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경제2분과위원회는 정보통신·과학기술·해양수산·농림·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외교통상·통일·국방·법무·복지·교육·노동·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 제7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 시 정부위원의 경우 국장급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 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 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의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요규제 여부의 결정
2.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3.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토록 위임한 사항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조정관실의 직무) 규제개혁조정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조정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14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1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며, 용역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0. 5.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절 _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1. 규제개혁위원회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차	1998. 4. 18	제1호 제2호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분과위원회 구성 및 간사위원 지명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계획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2차	1998. 4. 24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안 •전문연구기관 지정안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혁방안(1) •규제개혁기본계획시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정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보 류 수정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3차	1998. 5. 8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 관련 규제개혁방안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완화방안 •규제개혁 우선추진과제 추진상황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4차	1998. 5. 2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련분야 규제개혁방안(1)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1) -해운항만부문 규제개혁 •우선추진과제 규제개혁방안 •전문연구기관 지정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일부보류 원안의결
제5차	1998. 6. 5	제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속영업 및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개혁방안(1) 	의결사항	수정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8호	• 자동차관련분야 규제개혁방안(II)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6차	1998. 6. 19	제19호	• 건설분야 규제개혁방안(I)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0호	• 물류· 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II)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1호	•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I)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2호	• 관광산업 관련 규제합리화방안(I)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3호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4호	•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7차	1998. 7. 3	제25호	• 주차장관련 규제개혁방안(I)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6호	• 물류· 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II-1) (판매· 물류시설의 설립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27호	• 1998년 규제개혁실적평가 및 향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8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정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8차	1998. 7. 16	제29호	• 수출입통관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30호	•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1호	•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개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2호	• 항만행정 간소화방안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3호	• 도심주차 정책방향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4호	• 1998 부처별 기존규제 정비계획종합 및 심사 계획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5호	• 1998 상반기 신설· 강화규제법령안 심사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9차	1998. 8. 14	제36호	• 1998 부처별 기존규제정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37호	• 1998 통계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8호	• 1998 조달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39호	• 1998 관세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0호	• 1998 국세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1호	• 주류분야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2호	• 항만하역 노무공급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보 류
		제43호	• 건설기계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4호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0차	1998. 8. 28	제45호	• 1998 농촌진흥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제46호	• 1998 해양경찰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7호	• 1998 산림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48호	• 1998 경찰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1차	1998. 9. 11	제49호	• 1998 통일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부 록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제54호 제5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외교통상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국방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병무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국가보훈처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풍속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II)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보류 일부보류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보 류
제12차	1998. 9. 18	제56호 제57호 제58호 제5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금융감독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중소기업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특허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결 원안의결 일부보류 원안의결
제13차	1998. 9. 25	제60호 제61호 제62호 제63호 제6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기상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과학기술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정보통신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환경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일부보류 원안의결
제14차	1998. 10. 2	제65호 제66호 제6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교육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 류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15차	1998. 10. 16	제68호 제69호 제70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 제7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 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재정경제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산업자원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건설교통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철도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병역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보류 일부보류 수정의결 일부보류 수정의결 부 결 원안의결
제16차	1998. 10. 26	제75호 제76호 제77호 제7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 규제정비지침안 •1998 문화재관리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해양수산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 류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79호 제8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농림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결 수정의결
제17차	1998. 10. 30	제81호 제82호 제83호 제84호 제85호 제86호 제87호 제88호 제89호 제90호 제91호 제92호 제9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법무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 1998 보건복지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장기이식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 1998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노동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문화관광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1998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재심사안 • 1999 규제정비지침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보류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 류 수정의결 부 결 원안의결
제18차	1998. 11. 6	제94호 제95호 제96호 제97호 제9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부처청별 기존규제 추가정비계획 • 1998 기존규제 정비결과 종합보고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 수상레저안전법 제정안 규제심사안(2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접수 원안접수 수정의결 원안의결 부 결
제19차	1998. 11. 20	제99호 제100호 제101호 제10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규제 재심사안 • 매장및모지등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 은행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20차	1998. 12. 4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06호 제10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 • 환경분야 각종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폐지에 대한 재심사안 • 1998 하반기 신설·강화규제법령안 심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 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부 록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08호	•규제개혁 관련 법률정비 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1차	1998. 12. 18	제109호	•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0호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지정등에관한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1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보 류
		제112호	•1998 부처청별 기존규제폐지계획2차분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2차	1999. 1. 29	제11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14호	•1999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5호	•지방자치단체의 1999 행정규제정비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6호	•1998 규제개혁법률 입법 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7호	•1999 핵심과제 추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8호	•1998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19호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실태 점검결과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20호	•1999 OECD 규제개혁 국별 심사준비 관련 보고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3차	1999. 2. 12	제121호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제122호	•연안어장환경관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23호	•외국인유학생 출입국제도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4호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5호	•변호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제126호	•규제등록 및 전산화 추진현황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24차	1999. 2. 26	제127호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보고사항	원안접수
		제128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29호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5차	1999. 3. 12	제130호	•취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1호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1)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132호	•자동차운전속도제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의결사항	원안의결
제26차	1999. 3. 26	제133호	•경쟁 제한적인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의결사항	수정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34호 제13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 부처별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방안 •1998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계획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27차	1999. 4. 9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II)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체제 운영계획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제28차	1999. 4. 23	제139호 제140호 제141호 제14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에너지절약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료용구산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비업무용 공장용지 종과세제도 및 공장 업종 구분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업무실적 및 향후계획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원안접수
제29차	1999. 5. 7	제143호 제144호 제145호 제146호 제147호 제14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방안 •비업무용 토지제도 및 공장업종구분 개선방안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개혁방안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1999 OECD규제개혁 국별심사준비 관련보고(II)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수정의결 수정의결 보 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30차	1999. 5. 21	제149호 제150호 제151호 제15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처리시설설치 관련 규제개혁방안 •굴뚝자동측정기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및부착시기지정고시 규제심사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개선방안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31차	1999. 6. 4	제153호 제154호 제155호 제156호 제15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자동차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 규제 합리화방안 •보세구역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32차	1999. 6. 18	제158호 제159호 제160호 제16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규제개선방안 •석유·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합리화방안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지역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부 록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62호	•규제총량 변경상황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3차	1999. 7. 2	제163호 제164호 제165호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증명민원 개혁방안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34차	1999. 7. 16	제166호 제167호 제168호 제169호 제169-1호 제170호 제171호	•안마사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추진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방안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결과보고 •OECD 규제개혁심사팀 방안결과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수정의결 수정의결 보 류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35차	1999. 7. 30	제172호 제173호 제174호 제175호 제17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1999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999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2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직업단 운영방안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36차	1999. 8. 13	제177호 제178호 제179호 제180호 제181호	•1999년 노동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1999년 산림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승강기검사제도 개선방안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개혁 •중앙일보 규제개혁 기획보도 관련 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원안접수
제37차	1999. 8. 27	제182호 제183호 제184호 제185호	•1999년 정보통신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1999년 교육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1999년 건설교통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개혁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38차	1999. 9. 3	제186호 제187호 제188호 제189호	•1999년 환경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1999년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기업의 준조세 관련 규제개혁(1) •1999년 경찰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90호	•규제개혁 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39차	1999. 9. 17	제191호	•자격제도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2호	•1999년 과학기술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3호	•1999년 농림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4호	•1999년 문화관광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5호	•1999년 재정경제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6호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0차	1999. 10. 1	제197호	•1999년 산업자원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8호	•1999년 행정자치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99호	•1999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0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1호	•2000년 규제개혁추진지침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02호	•교육부잔존규제 정비계획 중 의결유보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03호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3차)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1차	1999. 10. 29	제204호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5호	•저작권 형사 관련 규제개혁방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6호	•약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8호	•전기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9호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제도 개선 방안 추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0호	•민영교도소등 의설치 · 운영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결과 보고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2차	1999. 11. 12	제211호	•지정진료제도 개선방안
제212호	•항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개선방안 조정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4호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원단 운영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5호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운영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6호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7호	•타조의 식용허용 관련 규제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부 록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43차	1999. 11. 26	제218호 제219호 제2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44차	1999. 12. 10	제221호 제222호 제223호 제224호 제225호 제22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 소방 관련 법령·규제정비계획보고 • 증명민원 서류감축 추진상황 보고 •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 제4차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 “고시 등” 하위규정 일제정비계획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45차	1999. 12. 24	제227호 제228호 제229호 제230호 제23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 노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대학원·박사과정 설치 관련 규제 재심사안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 규제대안 개발연구용역 결과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46차	2000. 1. 28	제232호 제233호 제234호 제23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어선 출입항 신고제도 개선방안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행정규제의 판단 및 단위분류 기준 • 2000년도 부처별 중점규제개혁 추진과제 	의결안건(개별)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접수
제47차	2000. 2. 11	제236호 제237호 제238호 제239호 제240호 제24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도 규제개혁 업무계획보고 •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규제개혁방안 • 보험 관련 전문가격사제도 개선방안 • 폐기물관리 관련 규제개선방안 • 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2000년 계획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48차	2000. 2. 25	제242호 제243호 제244호 제24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의 진입규제 개선방안 • 외국인 국내활동 관련 규제개혁방안 • 농약유통 및 안전 관련 규제개선방안 •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추진실적 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49차	2000. 3. 10	제246호 제247호 제248호 제24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Ⅱ)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Model)보고 • 통합방송법령 시행관련 보고 •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작업단 2000년 추진계획보고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수정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50차	2000. 3. 24	제250호 제251호 제252호 제253호 제254호 제25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지역·지구제도개선방안 청소년보호연령 기준관련 규제 개선방안 감사인 수입제한제도 개선방안 임산물 굴취·채취·매각 관련 규제개혁방안 생태계보존협력금에 대한 규제재심사안 공원지역 내 행위제한 규제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수정의결 상정보류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제51차	2000. 4. 7	제256호 제257호 제258호 제25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 수입제한제도 개선방안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 관련 규제개선방안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 코스닥(KOSDAQ)시장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52차	2000. 5. 15	제260호 제261호 제26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 항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후속 조치보고 규제개혁위원회운영세칙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의결
제53차	2000. 5. 26	제263호 제264호 제265호 제266호 제267호 제26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산업안전 관련 건축물 시설기준 합리화방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료보험 관련 규제개혁방안 중 의결 보류사항 검토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상정보류 접수보류
제54차	2000. 6. 9	제267호 제269호 제270호 제271호 제27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관련 규제개선방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의료보험 관련 규제개선방안 중 의결 보류사항(의료전달체계) 검토보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중 의결보류사항 검토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보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55차	2000. 6. 23	제26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결

부 록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심사안 •보험영업관련 규제개선방안 •해운분야 규제개혁 방안 •증명민원 서류 감축방안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 신설규제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부 의 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56차	2000. 7. 7	제277호 제278호 제27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을 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부 의 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제57차	2000. 7. 21	제280호 제281호 제282호 제29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제도 개편방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규제개혁모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00년 규제정비계획보고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제에 대한 국가 검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상정보류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58차	2000. 8. 18	제284호 제285호 제286호 제28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제개혁방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59차	2000. 9. 1	제288호 제289호 제29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재활용 관련 규제개선방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 규제재심사안 •증명민원감축 추진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60차	2000. 9. 15	제291호 제292호 제293호 제29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학원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Ⅰ) •사법시험법 제정안 규제심사 결과보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접수보류
제61차	2000. 9. 29	제295호 제296호 제297호 제298호 제29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산지의 보존 및 이용 관련 규제합리화방안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Ⅱ)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300호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30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제심사안 • 사법시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건축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재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62차	2000. 10. 13	제305호 제306호 제307호 제308호 제309호 제3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돗물 절수 및 상수원 수질보전 개선대책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2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지하수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63차	2000. 10. 27	제311호 제312호 제313호 제314호 제315호 제316호 제317호 제318호 제3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산업규제의 합리화방안 규제심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 고용보험 관련 규제개혁방안 •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관련 규제 합리화방안 • 제대군인 지원 관련 규제심사안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64차	2000. 11. 10	제320호 제321호 제322호 제3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문화재보호 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조치계획 •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안 심사결과 보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 류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65차	2000. 11. 24	제324호 제325호 제326호 제32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 농지 관련 규제개선방안 • 경제5단체 건의 관련 규제정비계획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원단 추진실적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 류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부 록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328호 제329호 제330호	향후추진계획 • 경쟁제한 규제개혁지원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기간이동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원안접수 원안접수 수정의결
제66차	2000. 12. 8	제331호 제332호 제333호	• 고창군 규제개혁 추진현황 • 전북도 규제개혁 추진현황 • 환경· 교통· 재해등영향평가법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의결
제67차	2000. 12. 22	제334호 제335호 제336호 제337호 제338호	• 건설현장 환경관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결과 보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제심사 •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2차)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68차	2001. 1. 19	제339호 제340호 제341호 제342호	• 2001년도 규제개혁업무 추진계획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보고 • 2000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 계획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재심사 보고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69차	2001. 2. 2	제343호 제344호 제345호	• 진입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방안 •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70차	2001. 3. 2	제346호 제347호 제348호 제349호	• 금강· 영산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고등교육기관 설립· 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 보고 • 규제개혁 여론조사 결과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71차	2001. 3. 16	제350호 제351호 제352호	• 영재교육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보고 • 관광진흥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 • 환경 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규제심사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72차	2001. 3. 30	제353호 제354호 제35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중등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결과 보고 	의결사항 보고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73차	2001. 4. 13	제356호 제35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수정의결
제74차	2001. 4. 28	제35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75차	2001. 5. 11	제359호 제360호 제361호 제36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제안 처리상황 보고 경제5단체 건의과제(건설·산업부문) 규제개혁방안 경제5단체 건의과제(소방·도로교통·노동분야) 규제개혁방안 환경 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II)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76차	2001. 5. 25	제363호 제364호 제365호 제36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5단체건의과제(공정거래, 교통, 농림, 해양수산분야) 규제개혁방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정부규제업무평가지침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보 류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77차	2001. 6. 8	제364호 제367호 제368호 제369호 제37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농지거래제한 규제개선방안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경제5단체 제3차 건의(환경, 농림 등 4개분야) 관련 규제개혁방안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관련 추진경과 및 조치계획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안건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78차	2001. 7. 6	제371호 제37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5단체건의(재경·건설분야) 관련 규제개혁방안(II) 경제5단체건의(광고물·소방·노동·통일)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부 록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373호	분야) 관련 규제개혁방안(Ⅱ) •민간합동기업규제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79차	2001. 7. 20	제374호 제375호 제376호	•접도구역제도 개선방안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규제심사안 •해양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제80차	2001. 8. 17	제377호 제378호 제379호 제380호	•석탄산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대학등록금납부제도 개선방안 검토 •지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 •2단계 금융규제정비계획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수정접수 수정접수 원안접수
제81차	2001. 8. 31	제381호 제382호 제383호	•도로교통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맥주제조시설기준 완화방안 •국민불편·애로사항 개선방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제82차	2001. 9. 14	제384호 제385호 제386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방안 제심사안 •산업자원부소관 지식정보화과제 추진상황 •환경 관련 중복규제개선방안(Ⅲ)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83차	2001. 9. 28	제387호 제388호 제389호 제390호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사항 조치계획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계획 •환경 관련 중복규제 정비계획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84차	2001. 10. 12	제391호 제392호 제393호 제39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 관련 규제 정비계획(Ⅱ) •기업규제실태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85차	2001. 10. 26	제395호 제396호 제397호 제398호 제399호	•오수처리시설기준 관련 규제개선방안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산지부 소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종합 정비추진 보고안 •2002년도 규제정비지침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제86차	2001. 11. 9	제400호 제401호	•금융감독규제자율기능 활성화 및 보고 부담경감 방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사항 의결사항	원안의결 수정의결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402호 제40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결 수정의결
제87차	2001. 11. 23	제404호 제405호 제406호 제40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및 교육제도 규제개혁방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제정비계획 재심사안 주택조합공급비율지침 개정안 규제심사안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제88차	2001. 12. 7	제408호 제409호 제410호 제411호 제4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리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행정사제도 폐지 재심사안 기업규제 개선방안(Ⅰ)(행자부, 노동부 소관) 기업규제 개선방안(Ⅱ)(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소관) 무선국운용 및 검사 관련 규제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제89차	2001. 12. 21	제413호 제414호 제415호 제416호 제417호 제418호 제4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규제 개선방안(Ⅲ) 기업규제 개선방(Ⅰ-1) 환경 관련 중복규제 개선방안 건설·자원분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해양수산분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환경분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부대입찰제 연장심사 재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90차	2002. 1. 18	제420호 제421호 제4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소음·진동 관련 규제합리화방안 2001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91차	2002. 2. 1	제423호 제424호 제4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자격사 및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개혁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제개혁방안 문화관광분야 하위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92차	2002. 2. 22	제426호 제42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93차	2002. 3. 8	제428호 제42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규제개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수정접수
제94차	2002. 4. 12	제430호 제43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보류 개선권고

부 록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432호	•세무사법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95차	2002. 4. 26	제433호 제434호 제435호	•APEC-OECD 규제개혁 서울회의 준비계획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96차	2002. 5. 2	제436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재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97차	2002. 6. 3	제437호 제438호	•규제개혁위원회 간사·분과위원장 지명 및 분과위원 임명안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98차	2002. 6. 14	제441호 제440호 제439호	•국민의 정부 4년간 부처별 규제개혁실적 평 가 결과 •여산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99차	2002. 6. 28	제442호 제443호 제444호 제445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소방법 체계개편안 규제재심사안 •신의료 기술등결정및조정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방문판매법및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 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규제재심사결과보 고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의결부류 원안접수
제100차	2002. 7. 12	제446호 제44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101차	2002. 8. 9	제448호 제449호 제450호 제451호 제452호 제453호	•신의료 기술등결정및조정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재심사안 •공익사업유위험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재심사안 •운항관리자제도 폐지 관련 의결사항 재심사안 •유사행정규제 정비모델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구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정안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02차	2002. 8. 23	제454호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55호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정 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56호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57호	• 선박항행구역의 합리적 조정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58호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459호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03차	2002. 9. 6	제460호	• 보험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61호	• 방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62호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안 규제심사결과 보고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63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결과 보고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464호	•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 개최준비 상황 보고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04차	2002. 9. 27	제465호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66호	• 근로기준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보류
		제467호	• 건축물의피난및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68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신설·강화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보류
		제469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05차	2002. 10. 2	제470호	• 방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71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72호	• 근로기준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06차	2002. 10. 24 ~25	제473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동의
제107차	2002. 11. 1	제474호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75호	• 교육과정개편 관련 규제개선방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476호	• 행정사제도 폐지에 대한 재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부 록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08차	2002. 11. 15	제477호 제478호 제479호 제480호 제48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도구역제도 개선방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금융기관 유사업무 관련 법규 통·폐합 및 투산업 관련 공시제도 개선방안 •자산운용업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동의 원안동의 개선권고
제109차	2002. 12. 6	제483호 제484호 제485호 제486호 제48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취방지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료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2003년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접수
제110차	2002. 12. 13	제488호 제489호 제49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특정·지식정보화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경제5단체 등 건의과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동의 원안접수 수정의결
제111차	2003. 2. 7	제491호 제492호 제49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주권시대 규제개혁 발전방안 •2003년도 규제순응도 조사지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접수 원안접수 개선권고
제112차	2003. 2. 21	제494호 제495호 제49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2003년도 규제정비 지침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권고 수정접수 수정접수
제113차	2003. 4. 4	제497호 제498호 제49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14차	2003. 4. 18	제500호 제50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15차	2003. 5. 2	제502호 제50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출판된간행물의유통질서에관한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권고 철회권고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504호	•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 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신문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16차	2003. 5. 16	제505호 제506호 제507호 제508호 제509호 제510호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국민연금법시행령·규칙 개정안규제심사안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규칙 개정안규제심사안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규칙 개정안규제심사안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규칙 개정안규제심사안 • 10대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계획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차기회의 상정 원안접수
제117차	2003. 5. 30	제511호 제512호 제509호 제513호	• 10대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계획 보고안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규칙 개정안규제심사안 • 승강기검사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접수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118차	2003. 6. 13	제514호 제515호 제516호 제517호 제518호 제519호 제520호 제521호	• 외국인 투자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추진계획(10대 전략과제) • 물류·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10대 전략과제) • 건축규제의 합리화방안 추진계획 (10대 전략과제) •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방안 추진계획(10대 전략과제) • 금융회사 영업활동관련 규제완화방안 추진계획(10대 전략과제) • 준조세 정비 추진계획(10대 전략과제) • 경제5단체 2/4분기 건의과제 개선방안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수정접수 개선권고
제119차	2003. 6. 25	제522호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120차	2003. 7. 11~15 (서면심사)	제523호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부 록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121차	2003. 7. 25	제524호 제525호 제52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인터넷주소사원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 도로교통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22차	2003. 9. 5	제527호 제528호 제529호 제5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규제정비종합계획(Ⅰ) • 광주·전남지역 건의과제 개선방안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지적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견안건	원안의결 수용곤란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23차	2003. 9. 19	제531호 제532호 제533호 제534호 제53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관광진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200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 • 3/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수용곤란
제124차	2003. 9. 26~29 (서면심사)	제536호	• 복권의발행및 관리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25차	2003. 10. 2	제537호 제538호 제53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제 건의과제 개선방안(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 국민연금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용곤란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26차	2003. 10. 17	제540호 제541호 제542호 제54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제 건의과제 개선방안(Ⅱ)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규제개혁 전략과제(안) 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수용곤란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접수
제127차	2003. 11. 7	제544호	•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128차	2003. 12. 5	제545호 제54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석유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29차	2003. 12. 9	제54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결과 보고 - 준조세 정비방안 - 금융회사 영업활동 관련 규제완화방안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대책 - 물류·유통분야 규제개혁방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구 분	회의일자	호수별	상 정 안 건	의결보고사항	회의결과
		제548호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549호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550호	•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551호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보고안건	원안접수

2. 경제1분과위원회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96차	2003. 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97차	2003.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화물차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98차	2003.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심사결과에 대한 변경추진 보고안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보 류
제199차	2003.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사용의제한또는금지에관한조정·명령공고안 규제심사안 승강기안전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개정안 관련 보고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보 류 원안접수
제200차	2003.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유기중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약관의규제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보 류
제201차	2003. 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 신뢰도·전기품질유지기준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건의과제 원안의결
제202차	2003.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신문업에있어서의물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신문고시) 개정안 경과보고안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203차	2003.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과련 보고안 신문업에있어서의물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신문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보 류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204차	2003. 4.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신문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여행자및승무원 휴대품통관에관하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 류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205차	2003.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신문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항공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206차	2003.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대규모내부거래에관한이사회결의결및공시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207차	2003.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재채취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고시) 기준규제심사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대외무역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송강기검사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약관의규제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철화권고
제208차	2003.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09차	2003.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거래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2/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 담배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을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건의과제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210차	2003.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부 록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211차	2003. 6. 18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212차	2003. 7. 2	• 산업발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보 류
		• 결합재무제표작성기업집단의자산규모기준에대한 검토보고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선방안 보고안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3차	2003. 7. 9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14차	2003. 7. 16	• 산업발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가스시설의안전거리기준 기준규제정비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215차	2003. 7. 30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216차	2003. 8. 13	• 주차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17차	2003. 8. 19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218차	2003. 8. 29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보 류
		•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의결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보 류
제219차	2003. 9. 3	• 3/4분기 경제5단체 건의사항 개선방안	의결안건	건의과제
		• 2003년도 부처별 기준규제정비계획	의결안건	원안의결
		• 광주·전남지역 건의사항 개선방안	의결안건	건의과제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금융권별 예금보험요율 관련 중장기 개선방안	보고안건	원안의결
		• 신탁업감독규정 및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220차	2003. 9. 17	• 하천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측량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221차	2003. 9. 24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항공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주택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222차	2003.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223차	2003.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224차	2003.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제 건의과제 개선방안 • 도로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의과제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225차	2003. 1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권고 보 류 원안의결
제226차	2003.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시설립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권고
제227차	2003.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권고 보 류
제228차	2003.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재정경제부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 • 금감위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회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229차	2003.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안전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 은행업감독규정 및 종합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부 록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개선권고
제230차	2003.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도시공원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231차	2003.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 제로베이스 검토결과 보고(재경·산자·건교부, 공정위, 금감위) 4/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심사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을 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건의과제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232차	2003.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을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대규모소매점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및 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3. 경제2분과위원회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56차	2003.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총허용어획량적용대상어업의종류등의지정에관한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57차	2003.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및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운동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선박의구획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사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58차	2003.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결 수정의결 안전철회(환경부)
제159차	2003.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의결
제160차	2003.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5단체 건의관련 규제개혁방안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의과제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61차	2003.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162차	2003.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의결(본회의상정)
제163차	2003.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5단체 건의관련 규제개혁방안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인삼산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의과제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수출수산물·수산물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64차	2003.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제165차	2003.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166차	2003.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산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관련 (대체 도시락용기 가격동향보고)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사항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재 심 사
제167차	2003.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관련 (대체 도시락용기 가격동향보고) 	의결안건 의결사항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168차	2003.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선검사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비료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69차	2003.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규제심사안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수정의결 (본회의 상정) 원안의결
제170차	2003.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관련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사항	수정의결 수정의결 재심사
제171차	2003.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관련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의결사항	수정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72차	2003. 8. 14	• 수자원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 제조·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화학 물질고 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오산화비소에대한관리기준고시 제정안 규제 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 및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73차	2003. 8. 22	• 여객선운항관리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 연안유조선의적정선복량유지를위한선복투입제한 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74차	2003. 8. 29	• 2003년도 환경부 규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 2003년도 정보통신부 규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 광주· 전남지역 건의과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건의과제
		• 야생동· 식물보호법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재심사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안 규제 심사안	의결안건	재심사
제175차	2003. 9. 5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본회의 상정)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본회의 상정)
제176차	2003. 9. 9	• 2003년도 농림부 규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 2003년도 과학기술부 규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 2003년도 해양수산부 규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 2003년도 농촌진흥청 규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 2003년도 산림청 규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 2003년도 기상청 규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 2003년도 해양경찰청 규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건의과제
제177차	2003. 9. 19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정안관련 환경부 수정제의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규제심사안 • 향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원안의결
제178차	2003. 9. 26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 기업규제 건의과제 개선방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건의고제
제179차	2003. 10. 10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및 제고방안(농림부 소관) 보고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수산업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안 규제심사안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재심사
제180차	2003. 10. 17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위험물선박운송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제181차	2003. 10. 24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및 제고방안(정보통신부 소관) 보고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및 제고방안(과학기술부 소관) 보고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및 제고방안(환경부 소관) 보고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 항공공사법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제182차	2003. 10. 31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및 제고방안(해양수산부 소관) 보고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및 제고방안(해양경찰청 소관) 보고 •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에관한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요율에관한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원안접수 수정의결 원안의결
제183차	2003. 11. 5	• 산지전용허가기준 의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정고시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84차	2003. 11. 21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 선박설비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안 •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85차	2003. 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86차	2003.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제187차	2003.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제로베이스 규제정비계획 	보고안건	원안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고시 제·개정안 규제심사안 	의결안건	수정의결

4.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제181차	2003. 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관리에관한법개정안(복지부) • 식품의기준및규격고시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심의보류
제182차	2003.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기관지정고시제정안(행정자치부) • 식품의기준및규격고시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및규칙개정안(문화관광부) •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및기능사필기시험면제등에관한규정개정안(노동부) •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고시제정안(노동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183차	2003.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운영규정제정안(노동부) • 식품위생법시행령·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84차	2003. 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제도 개선방안(행정자치부) • 사업내자격을정사업지원규정개정안(노동부)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및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보건복지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심의보류
제185차	2003.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안(노동부)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후관리방안(보건복지부)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복지부)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접수 개선권고
제186차	2003.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경제단체건의과제(행정자치부) • 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 	의결안건의 결안건	본회의 개선권고
제187차	2003. 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노동부) • 관광진흥법시행령및규칙개정안(문화관광부) • 도로교통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경찰청) 	의결안건의 결안건의 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88차	2003.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의약품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관한규정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 •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 • 경제단체건의과제(노동부·행정자치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철회·개선 개선권고 본회의
제189차	2003.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된간행물의유통질서고시제정안(문광부) 	의결안건	철회권고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회계기준제정안(보건복지부) • 화장품 원료지정과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청)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철회·개선
제190차	2003.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노동부) • 대한약전 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식약청) • 의료용구 의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식약청) • 정신보건법 개정안(보건복지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91차	2003.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 개정안(병무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192차	2003.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식약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노동부) •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관리법 개정안(문화관광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93차	2003.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단체 건의과제(행정부·법무부)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문화재청)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복지부)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 제정안(외교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본 회의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권고 개선권고
제194차	2003.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문화재청) • 재해안전관리 기본법(행정자치부) • 경제단체 건의과제(노동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동의 개선권고 본 회의
제195차	2003.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노동부)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노동부) • 2/4분기 경제단체 건의과제(노동부)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문화관광부)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교육인적자원부)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보훈처) •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본 회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196차	2003.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확대방안(보건복지부) •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노동부)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197차	2003.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노동부) 	의결안건	개선권고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관학교 · 단기사관학교 · 간호사관학교설치법개정안(국방부) •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교육인적자원부) • 학교시설축진법시행령개정안(교육인적자원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198차	2003.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사관학교등설치법개정안규제심사처리결과(국방부) • 산업교육촉진및산학협력증진법시행령개정안(교육인적자원부) • 독학에의한학사학위취득에관한법개정안(교육인적자원부) •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2차)(노동부) • 청소년보호법개정안(청소년보호위)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개선권고 원안의결 철회 · 개선 개선권고
제199차	2003.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개정안(경찰청) • 옥외광고물관리법개정안(행정자치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200차	2003.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배치기준고시제정안(행정자치부) •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 · 가공시설이용기준(고시)제정안(식약청) • 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안(식약청)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심사보류 원안의결
제201차	2003. 8.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기준규제정비계획(교육부, 문광부, 노동부, 국방부, 보건처, 병무청, 방송위, 문화재청, 청보위, 여성부) • 3/4분기경제5단체건의과제및기업규제개선과제(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문화재청 등) • 식품첨가물규격기준개정안(식약청) • 지적법개정안(행자부)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시행령및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동의 의결안건	원안접수 본회의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202차	2003.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기준규제정비계획(복지부, 식약청, 법무부, 행자부, 경찰청) • 기업규제개선과제(노동부) • 경비업법시행령및규칙개정안(경찰청)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203차	2003.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제개선건의과제(노동부) • 도로교통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경찰청) • 관광진흥법개정안(문화관광부)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본회의 원안동의 철회 · 개선
제204차	2003. 9.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순응도조사결과(노동부) 	보고안건	원안접수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안(노동부) • 변호사법개정안(법무부) • 복권법제정안(국무조정실)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제205차	2003.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개정안(보건복지부)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 • 건강기능식품고시제정안 등(식약청) • 고용보험법시행령및규칙개정안(노동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안(경찰청)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206차	2003.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순응도조사결과및제고방안(노동부, 문광부, 보훈처, 방소위, 경찰청, 노동부 등) • 기업규제개선건의과제(노동부) •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문화관광부) • 청소년기본법개정안(문화관광부)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시행규칙개정안(교육인적자원부) •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제정안(식약청) •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인정기준에관한규정제정안(식약청) •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제정안(식약청) •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 원료등에관한규정제정안(식약청)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원안접수 본회의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개선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제207차	2003.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 •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청구심사기준제정안(보건복지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문화관광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제208차	2003.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간호사과징등에관하고시제정안(보건복지부)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개정안(식약청) •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제정안 2차심사(식약청)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개선권고 개선권고 조건부동의
제209차	2003.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골프장건설관련규제완화(전남도간담회건의과제) • 특수장소의방염물품사용의무규제순응도조사결과보고(행정자치부) • 온천과관련된허위·과장의표시·광고행위금지규제순응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추후재심사 원안접수 원안접수

부 록

차수	회의일자	상 정 안 건	구 분	회의결과
		도조사결과보고(행정자치부) •농술고사외필답고사제한규제순응도조사결과보고 (교육인적자원부)	보고안건	원안접수
제210차	2003. 11. 26	•식품첨가물의한시적기준·규격인정기준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및규칙개정안(경찰청) •유기기구안전성검사실시규제순응도조사결과보고 (문화관광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접수
제211차	2003. 12. 10	•고용보험법시행령및규칙개정안(노동부) •고용보험법적용제외건설업업의총공사금액고시개정안 (노동부) •지적법시행령및규칙개정안(행정자치부) •병역법시행령개정안(행정자치부) •청소년유해매체물규제순응도조사결과(청보위)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접수
제212차	2003. 12. 17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개정안(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보건복지부) •경제단체건의과제(보건복지부, 노동부) •2003제로베이스과제추진상황(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규제순응도조사결과보고(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문화재청) •관광·스포츠산업활성화종합대책(전략과제)(문화관광부) •지지체골프장건설관련관계법령검토(행정자치부)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원안의결 개선권고 본 회 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2003년도

규제개혁 백서

발행처 · 발행인 규제개혁위원회

편집협력 엔더블유기획정보 T.02-2235-6114

인쇄 · 제본 엔더블유기획정보

발행일 2004. 5.

ISSN 1739-2632

규제신고센터 · 기업애로해소센터안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308호 규제개혁위원회(우: 110-755)

전화 (02)722-9797 / 1688-1472

팩스 (02)720-2056

홈페이지 <http://www.rrc.go.kr> (규제신고센터)